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미국 편 -

2017. 12.

연구총괄 신상화 부연구위원

연구자 박지우 전문연구원
이재선 관세사

목차

제1편 개관	1
I. 일반 개황	1
II. 경제 개황	4
1. 주요 경제지표	4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9
3. 외국인 투자 동향	15
III.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19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22
1. 미국의 FTA 현황	22
2. 한-미 FTA 현황	25
가. 한-미 FTA 현황 및 평가	25
나. 한-미 FTA 개정협상 이슈	31
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주요 현안	33
제2편 통관제도	38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38
1. 통관행정조직	38
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설립과 역사	38
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책무와 주요 활동	41
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직	42
2. 통관 관련 법	52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59
1. 관세의 과세요건	59
가. 과세물건	59
나. 납세의무자	60
다. 과세표준	61
라. 관세율	62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63
가. 관세의 확정방식	63
나. 관세채권의 확보	64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68
가. 세금	68
나. 수수료	70
III. 관세평가제도	73
1. 관세평가	73
2. 과세가격 결정방법	74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75
나.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and similar merchandise)	82
다. 공제가격(Deductive value)	83
라. 산정가격(Computed value)	85
마. 다른 가격이 결정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의 가격 (Value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or used)	85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87
1. 품목분류	87
2. 관세율 수준 및 종류	89
가. 관세율 수준	89
나. 관세율표의 구성	93
다. 관세율의 종류	95

V. 감면 및 환급제도	113
1. 관세감면제도	113
가. 제98류에 의한 감면	114
나. 기타 감면	127
2. 관세환급제도	128
가. 제조품 환급	129
나. 미사용 물품 환급	132
다. 인수거절 물품 환급	134
라. 가공 완료된 석유파생물의 대체물품 환급	136
VI. 원산지제도	138
1. 원산지 개관	138
2. 원산지 표시제도	139
가. 관련 규정	139
나. 원산지 표시방법	142
3.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144
가. 비특혜원산지	145
나. 특혜원산지	147
VII. 보세제도	149
VIII. 수입규제제도	154
1. 수입규제제도	155
가. 관세	155
나. 무역구제(불공정무역행위)제도	156
다. 비관세 장벽	160
라. 수입금지품목 및 제한품목	165
마. 인증	166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177
IX. 행정구제제도	184
1. 개관	184

2. 행정심판	185
3. 사법심판	190
X. 벌칙	192
1. 관련 법령	192
2. 민사제재 및 벌칙	194
3. 형사제재 및 벌칙	198
4. 개인처벌 및 법인 처벌	202
XI. AEO 제도	204
1. C-TPAT(AEO) 제도 개요	204
2. 미국 C-TPAT 특징	205
가. 대상	205
나. C-TPAT 사업파트너 요구조건(Business Partner Requirement)	206
다. 내부공인기준	207
라. 공인인증 절차	209
마. 혜택	210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212
I. 수입 통관절차	212
1. 일반수입 통관	212
가. 물품신고(Entry)	213
나. 물품검사 및 반출	227
다. 납세신고(Entry Summary)	231
라. 관세납부 및 정산(Liquidation)	235
마. 서류보관	239
2. 특수수입 통관	240
가. 소액물품(Informal Entry)	240
나. 우편물	243
다. 개인용품	245

II. 수출 통관절차	250
1. 수출 통관 개요	250
가. 수출신고	251
나. 서류심사 및 화물심사	254
참고문헌	259
부록 I. 관세담보(Customs Bond) 양식	264
부록 II. 수입 통관서류	266

표 목차

제1편

〈표 1-Ⅱ-1〉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2013~2016)	7
〈표 1-Ⅱ-2〉 기준금리 변동 추이(2015.12.~2017.12.)	8
〈표 1-Ⅱ-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9
〈표 1-Ⅱ-4〉 미국 수출입 동향(2013~2016)	10
〈표 1-Ⅱ-5〉 미국의 상품 수출입 동향	10
〈표 1-Ⅱ-6〉 미국 10대 수출품목(2016)	11
〈표 1-Ⅱ-7〉 미국 10대 수입품목(2016)	12
〈표 1-Ⅱ-8〉 미국의 서비스 수출입 동향	12
〈표 1-Ⅱ-9〉 서비스부문 주요 수출 분야	13
〈표 1-Ⅱ-10〉 서비스부문 주요 수입 분야	14
〈표 1-Ⅱ-11〉 미국 외국인 투자 현황(Inward)	16
〈표 1-Ⅱ-12〉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Outward)	16
〈표 1-Ⅱ-13〉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투자 동향	17
〈표 1-Ⅱ-14〉 업종별 대미 해외투자 현황(2016)	18
〈표 1-Ⅲ-1〉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20
〈표 1-Ⅲ-2〉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2016)	21
〈표 1-Ⅲ-3〉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입품(2016)	21
〈표 1-Ⅳ-1〉 미국의 FTA 체결현황	23
〈표 1-Ⅳ-2〉 한-미 FTA 협정문 구성	25
〈표 1-Ⅳ-3〉 한-미 FTA 전체상품 양허 결과	27
〈표 1-Ⅳ-4〉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28
〈표 1-Ⅳ-5〉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무역 동향	30

제2편

〈표 2-I-1〉 미국 연방법전(U.S. Code)의 구성	52
〈표 2-I-2〉 미국 연방법전 19편(U.S. Code Title 19)의 수록법	55
〈표 2-I-3〉 미국 「관세법」(19 U.S. Code Chapter 4-Tariff AcT of 1930)의 구성	56
〈표 2-I-4〉 미국 연방 관세규정(C.F.R Title 19 Customs Duties)의 구성	58
〈표 2-II-1〉 소비세 부과목적과 대상	69
〈표 2-II-2〉 물품취급수수료(MPF)	70
〈표 2-II-3〉 무역특혜물품과 물품취급수수료(MPF)	71
〈표 2-III-1〉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76
〈표 2-III-2〉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76
〈표 2-III-3〉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용역	78
〈표 2-III-4〉 거래가격의 적용 인정요건	79
〈표 2-III-5〉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	81
〈표 2-IV-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	89
〈표 2-IV-2〉 미국 관세율 수준(2017년 기준)	90
〈표 2-IV-3〉 미국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7년 기준)	91
〈표 2-IV-4〉 미국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7년 기준)	92
〈표 2-IV-5〉 특별관세율(Special duty)의 종류	96
〈표 2-IV-6〉 일반특혜관세(GSP) 수혜국가	98
〈표 2-IV-7〉 HTSUS의 FTA 협정세율 규정	99
〈표 2-IV-8〉 CBERA 수혜국	103
〈표 2-IV-9〉 AGOA 수혜국	104
〈표 2-IV-10〉 CBTPA 수혜국	105
〈표 2-IV-11〉 HTSUS 제99류에 따른 잠정관세율	106
〈표 2-IV-12〉 관세할당 대상 물품(2017년 기준)	108
〈표 2-IV-13〉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현황(2017년 기준)	111
〈표 2-V-1〉 상태개선 또는 향상 없이 재수입된 물품 감면	115

〈표 2-V-2〉 개선 또는 향상 후 재수입된 물품 감면	116
〈표 2-V-3〉 개인용품 면세	117
〈표 2-V-4〉 정부, 국제기구, 교육·과학용품 면세	120
〈표 2-V-5〉 담보제공 물품 면세	122
〈표 2-V-6〉 비상업용 물품 감면	124
〈표 2-V-7〉 기타 특정물품 감면	125
〈표 2-VI-1〉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률	140
〈표 2-VI-2〉 미국 연방법 Title 19, CFR Part 134(Country of Origin Marking)의 표시의무	141
〈표 2-VI-3〉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규정 관련법	145
〈표 2-VI-4〉 비특혜원산지 판례	146
〈표 2-VIII-1〉 최근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	157
〈표 2-VIII-2〉 미국 가금류 SPS 분쟁 사례	161
〈표 2-VIII-3〉 미국 Animals SPS 분쟁 사례	162
〈표 2-VIII-4〉 인증지정품목	171
〈표 2-VIII-5〉 주요 UL 인증 종류 및 대상제품	174
〈표 2-VIII-6〉 미국의 주요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75
〈표 2-VIII-7〉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	178
〈표 2-VIII-8〉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	179
〈표 2-VIII-9〉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180
〈표 2-X-1〉 미 관세제재 관련 규정(U.S. Code)	193

제3편

〈표 3-I-1〉 법규준수를 위한 점검표(checklist)	214
〈표 3-II-1〉 EEI 제출정보 목록	255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미국 달러지수 추이(2017.1.~2018.1.)	2
[그림 1-II-1] 자산가격 상승 추이(2008~2016)	5
[그림 1-II-2]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증감 추이(2012~2016)	6
[그림 1-II-3] 개인소비지출 및 물가상승률 추이(2008~2016)	7
[그림 1-IV-1]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분야별 수지(2016)	30
[그림 1-IV-2] USTR 연례보고서 중 한-미 FTA 관련 부분 발췌	32
[그림 1-IV-3] 한-미 FTA 진행상황	35

제2편

[그림 2-I-1] 미국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40
[그림 2-I-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	46
[그림 2-I-3]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 조직도	48
[그림 2-I-4]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 조직도	51
[그림 2-IV-1] 미국 관세율표 예시	94
[그림 2-VIII-1] 미국 「통상법」 Unfair trade practices 관련 규정	158
[그림 2-IX-1] 이의신청 양식(CBP Form 19)	186
[그림 2-IX-2] 미국 행정구제제도 절차(행정심판)	189
[그림 2-IX-3] 미국 행정구제제도 절차(사법심판)	191

[그림 2-XI-1] C-TPAT 공인인증 절차 210

제3편

[그림 3-II-1] 미국 수출 통관 절차 252

[그림 3-II-2] 자동수출신고(AES) 운용 시스템 254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¹⁾

- 국가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으로 수도는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임
- 인구는 약 3억 2,520만명이며 백인, 흑인 등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임
 - 인종 구성은 백인(78.4%), 흑인(13.0%),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4.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 이상 인종(2.3%) 등임²⁾
- 국토 면적은 937만 2,610km²으로 세계 3위이며, 한반도의 약 42배 크기임
 - 국토는 농지 47%, 산지 29%로 이뤄져있으며,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임

1) 외교부, http://www.mofa.go.kr/countries/northamerica/countries/20160928/1_75734.jsp?menu=m_40_30_20 (검색일자: 2017. 3. 17.),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ja>, 2016년 12월 기준 (검색일자: 2017. 5. 9.)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2>, <http://www.pewforum.org/religious-landscape-study/>, 2016년 12월 기준 (검색일자: 2017. 3. 17.)

2)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ja> (검색일자: 2017.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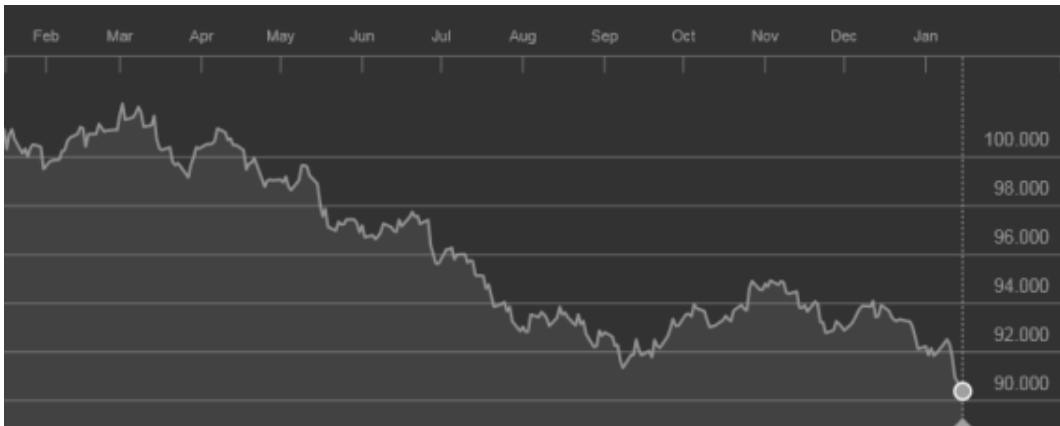
2 제1편 개관

- 남북 위도차가 24°로 대륙 내 기후 차이가 심함
 -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溫帶)에 위치하여 따뜻한 편이나,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기후 조건이 다양함

- 공용어는 영어이며 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됨
 -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6.3%임³⁾

- 화폐단위는 미 달러(USD, \$)이며, 미 달러지수(US Dollar Index; 이하 DXY)는 하락하는 추세임
 - 2018년 1월 12일 기준 DXY는 90.974으로 전년 동일 101.180 대비 10.2포인트 하락함
 - DXY 지수는 달러 베이스로 수치가 하락할수록 통화 가치가 하락함
 - 최근 1년간(2017-2018) 원/달러(KRW/USD) 환율은 약세가 지속됨
 - 2017년 1월 12일 달러당 1,184원에서 2018년 1월 12일 달러당 1063.50원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⁴⁾

[그림 1-1-1] 미국 달러지수 추이(2017.1.~2018.1.)



주: 횡축은 일자(2017년 1월~2018년 1월), 종축은 달러지수(point)임
자료: 블룸버그, <https://www.bloomberg.com/quote/DXY:CUR> (검색일자: 2018. 1. 12.)

3) U.S. Census Bureau, 2015년 7월 기준 추정치, 2016년 12월 기준

4) 연방준비위원회,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current/>

- 종교는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등으로 구성됨
- 정부형태는 연방공화국(대통령중심제)으로 상하 양원제이며 주요 정당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음
 - 공화당은 미국의 가장 큰 보수주의 우익정당이며 민주당은 중도자유주의 정당임

II.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지표

- 2016년 국내총생산(이하 GDP)은 18조 6,244억달러로 세계 1위이며, 1인당 GDP는 5만 1,549달러로 세계 8위임⁵⁾
 - 2016년 GDP 기준 2위 중국(11조 1,991억달러), 3위 일본(4조 9,394억달러), 4위 독일, 5위 영국 등이며 우리나라는 1조 4,112억달러로 세계 11위임

- 2016년 월셔(Wilshire) 5000지수⁶⁾는 전년 대비 10.8% 상승하였고 주택가격지수(S&P Case-Shiller)는 전년 대비 5.4% 상승하는 등 자산가격(asset price)이 상승함
 - 월셔 5000지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23,254.54, 2016년 12월 31일 기준 20,979.51임
 -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12월 기준 175.24, 2016년 12월 기준 184.69임

5)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16, <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

6) 미국 주식가치의 포괄적인 측정치로 사용

[그림 1-II-1] 자산가격 상승 추이(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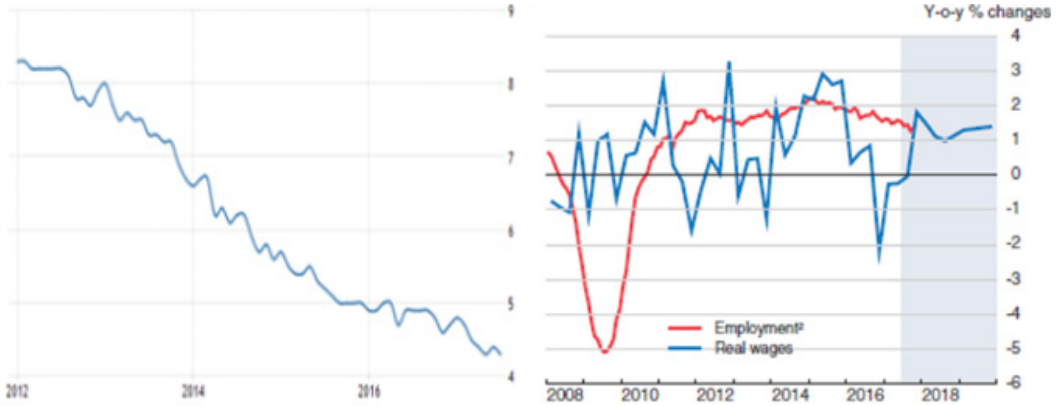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Forecast Summary,” 2017. 11, <http://www.oecd.org/eco/outlook/united-states-economic-forecast-summary.htm> (검색일자: 2017. 12. 18.)

- 2016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4% 감소,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 증가, 시간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흐름을 유지함⁷⁾
 - 2016년 평균실업률은 4.9%로 당해 연준의 목표실업률인 6.9%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2017년 평균실업률은 4.4%로 예상됨
 - 평균고용률은 2015년 59.3%, 2016년 59.7%를 기록했으며, 2017년 평균고용률은 60.15%로 예상됨
 - 비농업부문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2015년 107.0, 2016년 109.8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함

7) BLS,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검색일자: 2017. 12. 12.)

[그림 1-11-2]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증감 추이(2012~2016)



주: (좌) 실업률 추이

(우) 빨간선은 고용증감률(%), 파란선은 실질임금증감률(%)

자료: OECD, "Economic Forecast Summary," 2017. 11, <http://www.oecd.org/eo/outlook/united-states-economic-forecast-summary.htm> (검색일자: 2017. 12. 18.)

- 2016년 개인소비지출(이하 PCE) 가격지수는 전년 109.48에서 110.78로 약 1.2%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물가는 전년 0.1%에서 1.3%로 1.2% 상승함⁸⁾
 - PCE 지수 측정 항목은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집계됨
 - 상품은 자동차, 기계, 설비 등 내구재(durable goods)와 식음료, 의류 등 비내구재(nondurable goods)로 구성됨
 - 서비스는 가계(household)에서 지출되는 부분과 민간비영리기관이 가계에 제공하는 서비스(NPISHs)로 구성됨
 - 근원 PCE(PCE Core) 지수는 PCE에서 소비변동이 큰 계절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므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음⁹⁾

8) 2009년 평균 PCE를 100으로 설정 시 2015년 1/4분기 108.95, 2/4분기 109.41, 3/4분기 109.76, 4/4분기 109.81이며, 2016년 1/4분기 109.96, 2/4분기 110.56, 3/4분기 111.03, 4/4분기 111.58임. BEA, <https://www.bea.gov/iTable/iTable.cfm?reqid=19&step=3&isuri=1&1921=underlying&1903=2075#reqid=19&step=3&isuri=1&1921=underlying&1903=2013>, <http://www.usinflationcalculator.com/inflation/current-inflation-rates/>

9)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미국내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지수화한 것.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Core) 가격지수는 PCE에서 계절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측정

- 미국은 물가상승률의 중요 지표로 PCE를 채택하는데, 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PCE와 인플레이션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음¹⁰⁾

[그림 1-11-3] 개인소비지출 및 물가상승률 추이(2008~2016)



주: 빨간선은 물가상승률, 파란선은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초록선은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자료: OECD, "Economic Forecast Summary," 2017. 11, <http://www.oecd.org/eco/outlook/united-states-economic-forecast-summary.htm> (검색일자: 2017. 12. 18.)

<표 1-11-1>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2013~2016)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6	1.4	1	0.9	1.1	1	1	0.8	1.1	1.5	1.6	1.7	2.1	1.3
2015	-0.1	0	-0.1	-0.2	0	0.1	0.2	0.2	0	0.2	0.5	0.7	0.1
2014	1.6	1.1	1.5	2	2.1	2.1	2	1.7	1.7	1.7	1.3	0.8	1.6
2013	1.6	2	1.5	1.1	1.4	1.8	2	1.5	1.2	1	1.2	1.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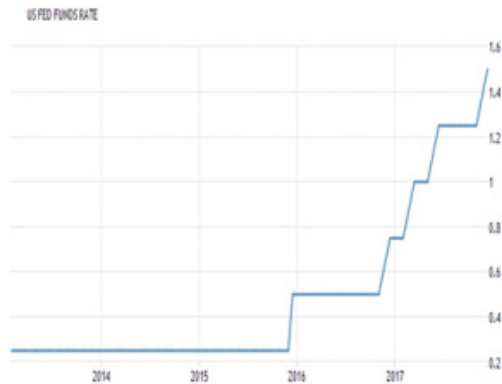
자료: US Inflation Calculator, <http://www.usinflationcalculator.com/inflation/current-inflation-rates/> (검색일자: 2017. 12. 18.)

10) Laurence H. Meyer, *The PCE as Reference Index for an Inflation Objective at the Fed*, 2006. 11., https://www.bea.gov/about/pdf/Meyer_PCE_110306.pdf (검색일자: 2017. 12. 18)

- 2016년 12월 기준금리 상단은 0.75%로 전년 동월 대비 0.25% 인상됨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2017년 기준금리를 0.25%씩 총 3차례 인상했으며 2017년 12월 기준금리는 1.25~1.50%임
 -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근거는 노동시장 호조, PCE 지수 상승 등이며 2018년에는 3회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된다¹¹⁾

〈표 1-11-2〉 기준금리 변동 추이(2015.12.~2017.12.)

금리변동일	증가	감소	금리수준(%)
2017.12.14	25	0	1.25~1.50
2017.6.15	25	0	1.00~1.25
2017.3.16	25	0	0.75~1.00
2016.12.15	25	0	0.50~0.75
2015.12.17	25	0	0.25~0.50



자료: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openmarket.htm>
(검색일자: 2017. 12. 18.)

- 2016년 이후 미국 경제는 자산가격 상승, 실업률 하락, 내수소비 증가, 우호적 재정정책 등의 요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¹²⁾
 -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2.5%, 2018년 2.5%, 2019년 2.1%, 2020년 2.0%로 전망함
 - 실업률은 2017년 4.3%, 2018년 4.1%, 2019년 4.1%, 2020년 4.2%로 전망함
 - PCE 상승률은 각 1.7%, 1.9%, 2.0%, 2.0%로 전망함

11) Federal Reserve News & Event,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171213a.htm> (검색일자: 2017. 12. 18.)

1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sion, 2017.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171213.htm> (검색일자: 2017. 12. 18.)

〈표 1-11-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GDP(10억달러)	16,691.5	17,427.6	18,120.7	18,624.5
PCE(10억달러)	11,361.2	11,863.7	12,332.3	12,820.7
고용률(%)	58.6	59.0	59.3	59.7
실업률(%)	7.4	6.2	5.3	4.9
시간당임금 (단위: 2010년 임금을 100으로 설정)	103.7	105.1	107.0	109.8
외환보유고(백만달러)	448,508	434,416	383,728	405,942
대외부채(백만달러)	16,487,771	17,258,054	17,710,436	18,025,120
기준금리(%)	0~0.25	0~0.25	0.25~0.50	0.50~0.75
10년 만기 국채금리(%)	2.35	2.54	2.14	1.84

자료: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2017),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3117121e.pdf?expires=1515825729&id=id&accname=ocid72023593&checksum=DA9F72CB36A19B5FBFEAD31FDDD3E588>, World Bank>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검색일자: 2017. 12. 18.)

2 수출입 동향 및 교역규모

- 2016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1.8% 감소함¹³⁾
 - 2016년 수출액은 2조 2,080억달러이며 수입액은 2조 7,128억달러임
 - 2017년 1~10월 미국의 수출액은 1조 1,931억달러, 수입액은 2조 3,941억달러임
- 2016년 기준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0.86% 확대됨
 - 2013년에서 2017년(1~10월)까지 연속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13)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표 1-II-4〉 미국 수출입 동향(2013~2016)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수지
2017년(1~10월)	1,931,074	2,394,152	-463,082
2016	2,208,072	2,712,866	-504,793
2015	2,263,907	2,764,352	-500,445
2014	2,375,905	2,866,241	-490,336
2013	2,293,457	2,755,334	-461,876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 2016년 수출 중 상품부문 수출비중은 65.9%, 서비스부문 수출비중은 34.1%이며, 수입 중 상품부문 수입비중은 81.4%, 서비스부문 수입비중은 18.6%임
- 2016년 기준 상품부문 수출액은 1조 4,557억달러이며, 상품부문 수입액은 2조 2,082억달러로 7,5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함
- 2017년(1~10월) 상품부문 수출액은 1조 2,750억달러이며 상품부문 수입액은 1조 9,513억달러로 6,762억달러 적자를 기록함

〈표 1-II-5〉 미국의 상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수지
2017년(1~10월)	1,275,029	1,951,310	-676,281
2016년	1,455,704	2,208,212	-752,508
2015년	1,510,757	2,272,612	-761,855
2014년	1,633,986	2,385,480	-751,494
2013년	1,592,002	2,294,247	-702,245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 2016년 기준 미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3%이며, 10대 수입품목이 전체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임
- 10대 수출품목은 기계류, 기타 석유조제품, 경질유와 조제품 등임
- 10대 수입품목은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임

〈표 1-11-6〉 미국 10대 수출품목(2016)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6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기계류	120,784	1.6
2	기타 석유조제품	38,561	-20.9
3	기타 조제품	33,111	-2.5
4	경질유와 조제품	25,453	-1.8
5	대두	22,869	20.9
6	승용자동차	21,941	1.2
7	전자직접회로	19,851	9.4
8	다이아몬드	18,846	2.9
9	통신기기	18,844	1.8
10	소매의약품	18,816	-9.5
	총계	1,455,704	-3.4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표 1-II-7〉 미국 10대 수입품목(2016)

(단위: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2016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승용자동차	106,378	9.2
2	원유	101,848	-19.2
3	기타 조제품	63,668	3.8
4	소매의약품	51,063	6.5
5	승용자동차	50,111	-13.1
6	셀룰러통신망이나 그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49,797	-5.5
7	음성·영상이나 그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45,289	13.3
8	자동차료처리기계	35,858	-8.4
9	다이아몬드	23,025	-0.3
10	기타 석유조제품	21,785	-25.7
	총계	2,208,212	-2.3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 2016년 기준 서비스부문 수출액은 7,523억달러이며, 서비스부문 수입액은 5,046억달러로 2,4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17년(1~10월) 서비스부문 수출액은 6,462억달러이며 수입액은 4,428억달러로 2,0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표 1-II-8〉 미국의 서비스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수지
2017년(1~10월)	646,255	442,842	203,413
2016년	752,368	504,654	247,714
2015년	753,150	491,740	261,410
2014년	741,919	480,761	261,158
2013년	701,455	461,087	240,368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 서비스 흑자분야는 유지보수서비스, 여행, 금융, 지식재산권사용요금,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등임¹⁴⁾
 - 2016년 기준 서비스 수출액 7,523억달러 중 유지보수 256억달러, 운송 843억달러, 여행 2,059억달러, 보험 163억달러, 금융 981억달러, 지식재산권사용요금 1,244억달러,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364억달러,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1,422억달러, 정부조달상품 및 서비스 188억달러 등임
 - 2016년 기준 서비스 수입액 5,046억달러 중 유지보수 88억달러, 운송 968억달러, 여행 1,236억달러, 보험 480억달러, 금융 256억달러, 지식재산권사용요금 443억달러,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368억달러,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989억달러, 정부조달상품 및 서비스 215억달러 등임

〈표 1-11-9〉 서비스부문 주요 수출 분야

(단위: 백만달러)

유형	2013	2014	2015	2016
유지보수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n.i.e.)	18,568	21,149	23,406	25,628
운송 (Transport)	86,776	90,729	87,609	84,318
여행 Travel (for all purposes including education)	177,484	191,918	205,418	205,940
보험 (Insurance Services)	16,696	17,333	16,229	16,348
금융 (Financial Services)	95,131	106,949	102,595	98,180
지식재산권사용요금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n.i.e.)	128,034	129,716	124,442	124,453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34,419	34,691	35,664	36,455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Other Business Services)	121,530	128,915	136,622	142,231
정부조달상품 (Government Goods and Services n.i.e.)	22,816	20,518	21,165	18,814
계	701,455	741,919	753,150	752,368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14) BEA,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92-present" 엑셀파일(검색일자: 2017. 12. 26.)

〈표 1-II-10〉 서비스부문 주요 수입 분야

(단위: 백만달러)

유형	2013	2014	2015	2016
유지보수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n.i.e.)	7,420	7,520	9,010	8,810
운송 (Transport)	90,634	94,188	97,061	96,827
여행 Travel (for all purposes including education)	98,120	105,668	114,723	123,618
보험 (Insurance Services)	53,420	51,011	47,822	48,077
금융 (Financial Services)	21,545	24,883	25,740	25,629
지식재산권사용요금 (Charges for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n.i.e.)	38,860	41,983	39,858	44,392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Telecommunications,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s)	35,034	36,502	36,270	36,851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 (Other Business Services)	90,714	94,771	99,665	98,922
정부조달상품 (Government Goods and Services n.i.e.)	25,341	24,236	21,592	21,528
계	461,087	480,761	491,740	504,654

자료: BEA,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엑셀파일, 2017. 12. 5. <https://www.bea.gov/international/index.htm> (검색일자: 2017. 1. 12.)

3 외국인 투자 동향

- 2016년 기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투자 총액은 3조 7,254억달러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함
 - 주요 투자부문은 제조업(41.1%), 금융업(32.9%), 도매업(23.9%) 등임
 - 전체 제조업 투자 중 화학부문에 약 42.6% 집중되었으며, 전자장비, 가전 및 부품, 정보산업, 금융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기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5조 3,322억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함¹⁵⁾
 - 주요 투자부문은 지주업(51.7%), 금융업(12.6%), 제조업(12.5%) 등임
 - 제조업 중 영역별 투자비중은 화학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수송장비 등의 순임

15) BEA, "U.S. Direct Investment Abroad - All Countries Total," 2017, <https://www.bea.gov/international/factsheet/downloadXLS.cfm> (검색일자: 2017. 9. 22.)

〈표 1-11-11〉 미국 외국인 투자 현황(Inward)

(단위: 백만달러)

총계 (모든 국가)	제조업										정보 산업	예금 수탁 기관업	금융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	지주업	기타	
	제조 Total	식품	화학	1차 및 가공재	기계 및 전자 제품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전자 장비, 기전 및 부품	수송 장비	기타 제조	도매업 소매업							
																	수송 장비
2016	3,725,418	1,532,365	95,606	653,594	65,627	94,026	76,899	43,297	143,894	359,482	367,596	72,403	185,806	504,780	82,261	197,948	591,595
2015	3,303,586	1,362,109	89,217	566,595	67,171	90,721	58,069	38,901	134,623	316,812	362,747	63,245	169,861	407,227	74,759	154,272	515,930
2014	2,945,795	1,114,540	72,994	385,850	63,447	83,364	47,454	38,105	116,026	307,300	332,424	58,911	147,618	385,997	65,374	130,015	512,914
2013	2,727,825	942,695	69,350	294,130	55,702	76,023	38,998	37,087	108,513	262,891	324,284	52,634	169,216	343,902	54,415	104,360	521,415
2012	2,584,708	864,437	54,700	239,902	50,110	74,787	43,253	30,293	107,938	263,454	293,406	48,965	119,989	367,810	48,665	96,389	539,139

자료: BEA, "U.S. Direct Investment Abroad - All Countries Total," 2017, <https://www.bea.gov/international/factsheet/downloadXLS.cfm> (검색일자: 2017. 9. 22.)

〈표 1-11-12〉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Outward)

(단위: 백만달러)

총계 (모든국 광산업 가)	제조업										정보 산업	예금 수탁 기관업	금융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	지주업	기타	
	제조 Total	식품	화학	원료 및 조립 금속	기계류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전자 장비, 기전 및 부품	수송 장비	기타 제조	도매업							
																	제조 Total
2016	5,392,225	198,742	666,580	60,602	147,836	25,512	46,404	97,015	12,893	204,956	244,296	195,187	129,319	674,664	120,159	2,761,524	341,754
2015	5,048,773	198,800	620,746	61,197	142,820	26,949	40,848	90,293	13,353	184,516	227,815	181,688	123,194	657,685	111,160	2,622,873	304,812
2014	4,910,065	218,054	613,079	68,010	134,211	26,590	41,331	86,758	12,922	187,585	228,727	165,472	135,129	695,696	110,902	2,450,117	292,889
2013	4,579,713	213,081	623,700	64,766	135,824	27,138	47,871	88,448	13,361	194,704	228,582	147,853	126,595	629,357	95,973	2,228,127	286,446
2012	4,410,015	208,897	582,583	56,580	131,626	25,142	51,925	84,125	11,261	178,067	208,539	141,793	112,199	775,772	91,488	2,002,880	285,864

자료: BEA, "U.S. Direct Investment Abroad - All Countries Total," 2017, <https://www.bea.gov/international/factsheet/downloadXLS.cfm> (검색일자: 2017. 9. 22.)

- 우리나라의 2017년 1사분기 대미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432건, 신규법인 수는 139개, 신고금액은 51억달러임
 - 신고건수는 2013년 1,334건에서 2016년 1,727건으로 약 30% 증가함
 - 신고금액은 2013년 59억달러에서 2016년 180억달러로 약 205% 증가함

〈표 1-11-13〉 우리나라의 대미 해외투자 동향

(단위: 건, 개, 천달러)

연도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1~9월)	1,371	411	10,930,846	1,834	13,108,158
2016	1,727	509	18,002,132	2,350	12,905,683
2015	1,623	542	10,784,974	2,244	6,983,845
2014	1,549	523	9,439,766	2,230	5,838,442
2013	1,334	508	5,936,161	1,963	5,783,565

주: 2017년 자료는 2017년 9월말까지 실적 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검색일자: 2017. 12. 18.)

- 2016년 기준 대미 주요 투자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약 84%의 비중을 차지함
 - 도매 및 소매업 투자금액은 약 40억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약 36억달러, 금융 및 보험업은 약 25억달러임

〈표 1-Ⅱ-14〉 업종별 대미 해외투자 현황(2016)

(단위: 건, 개, 천달러)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8	0	3,770	8	970
광업	26	5	177,511	35	116,802
제조업	474	104	1,206,684	656	769,3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4	126,562	18	126,12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1	2,050	3	2,050
건설업	21	7	47,263	23	46,316
도매 및 소매업	366	106	7,140,929	510	3,973,306
운수업	33	7	41,967	37	19,301
숙박 및 음식점업	114	46	458,764	156	483,94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5	61	340,484	257	317,719
금융 및 보험업	101	40	3,721,566	158	2,538,4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9	47	3,780,683	159	3,625,0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5	35	908,662	180	841,3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13	4,055	45	2,686
교육 서비스업	14	7	2,756	21	2,7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	15,390	15	18,5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	5	9,793	37	9,6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	18	13,121	32	11,292
N/A	8	0	123	0	0
계	1,727	509	18,002,132	2,350	12,905,6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검색일자: 2017. 8. 22.)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으며, 수입은 1.8% 감소함
 - 2016년 대미 수출액은 664억달러이며, 수입액은 432억달러임
 -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입 교역국임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직접회로 반도체 등임
 - 전년 대비 승용차, 직접회로 반도체의 수출이 각각 11%, 24.7% 감소했으며, 개별 소자 반도체와 보조기억장치의 수출은 각각 95.6%, 36.1% 증가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은 직접회로 반도체, 항공기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임
 - 전년 대비 직접회로 반도체와 항공기의 수입이 각각 7.2%, 24.7% 감소했으며, 항공기부품, 승용차의 수입은 각각 87.2%, 39.5%

〈표 1-III-1〉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단위: 천달러, %)

순번	국가명	2015						2016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1	중국	137,123,934	-5.6	90,250,275	0.2	46,873,659	124,432,941	-9.3	86,980,135	-3.6	37,452,806		
2	미국	69,832,103	-0.6	44,024,430	-2.8	25,807,673	66,462,312	-4.8	43,215,929	-1.8	23,246,383		
3	홍콩	30,418,178	11.6	1,493,026	-14.7	28,925,152	32,782,449	7.8	1,614,845	8.2	31,167,604		
4	베트남	27,770,750	24.2	9,804,831	22.7	17,965,919	32,630,457	17.5	12,495,154	27.4	20,135,303		
5	일본	25,576,507	-20.5	45,853,834	-14.7	-20,277,327	24,355,036	-4.8	47,466,592	3.5	-23,111,556		
6	싱가포르	15,011,164	-36.8	7,942,129	-29.7	7,069,035	12,458,894	-17.0	6,806,348	-14.3	5,652,546		
7	대만	12,004,264	-20.4	16,653,850	6.1	-4,649,586	12,220,455	1.8	16,403,201	-1.5	-4,182,746		
8	인도	12,029,587	-5.9	4,240,565	-19.6	7,789,022	11,596,286	-3.6	4,189,284	-1.2	7,407,002		
9	멕시코	10,891,938	0.4	3,464,245	6.0	7,427,693	9,720,804	-10.8	3,695,371	6.7	6,025,433		
10	마셜제도	7,494,648	-7.0	27,969	-55.9	7,466,679	7,728,391	3.1	132,898	375.2	7,595,493		
	계	526,756,503	-8.0	436,498,973	-16.9	90,257,530	495,425,940	-5.9	406,192,887	-6.9	89,233,05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st.screen> (검색일자: 2017. 1. 12.)

〈표 1-III-2〉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2016)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15,485,389	-11
2	자동차부품	6,749,499	-2.8
3	무선전화기	6,466,727	3.3
4	직접회로 반도체	1,869,006	-24.7
5	제트유 및 등유	1,823,813	-19.9
6	타이어	1,440,929	3.6
7	개별소자 반도체	1,361,650	95.6
8	냉장고	1,102,672	0.5
9	보조기억장치	959,517	36.1
10	항공기부품	852,198	-8.6
계		66,462,312	-4.8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국가수출입>품목별,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검색일자: 2017. 1. 12.)

〈표 1-III-3〉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입품(2016)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직접회로 반도체	3,482,850	-7.2
2	항공기부품	2,437,616	87.2
3	반도체제조용장비	2,082,341	5.6
4	승용차	1,680,219	39.5
5	가축육류	1,428,392	13.6
6	항공기	1,367,251	-30.1
7	LPG	1,220,369	65.2
8	의약품	1,124,149	10.8
9	사료	1,044,037	2.3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927,734	-8.2
계		43,215,929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국가수출입>품목별, <http://stat.kita.net/stat/kts/ctr/Ctr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17. 1. 12.)

IV. 자유무역협정(FTA) 현황

1 미국의 FTA 현황

- 2017년 12월 기준, 미국은 20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20개국 중 12개 국가와 양자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국가와 다자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다자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DR-CA(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협정임
 - NAFTA 협정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했으며 1994년에 발효됨
 - DCA 협정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과 체결했으며 2007년에 발효됨

- 2017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원칙은 자국 권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임¹⁶⁾
 - 통상정책 담당 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의 권익 우선, 불공정 무역행위에 엄격한 법집행,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재협상 등의 원칙을 세우고 있음

16)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Presi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 pp. 1~6

〈표 1-IV-1〉 미국의 FTA 체결현황

기발효	체결 후 탈퇴	협상 중
한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파나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미-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자료: USTR 홈페이지,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검색일자: 2017. 7. 14.)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NAFTA 재협상이 공식화되었으며 재협상 관련 논의사항은 회원국별로 상이함¹⁷⁾
 - 멕시코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유지
 - 수입관세 또는 수입쿼터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 것
 - 자동차산업 및 제조업의 공급체인을 유지하는 것
 - 전자상거래, 에너지, 통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항의 삽입
 - 각국에 대한 세부 원산지 규정 제정의 반대
 - 멕시코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액(FDI) 관리, 멕시코로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에 대한 제재 반대
 - NAFTA 협정과 관련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
 -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멕-미 간 송금 거래 보호
 - 멕시코로 유입되는 불법적 무기 또는 불법자금의 차단
 - 미국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축소
 -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의 원산지 규정 강화
 - 국가별 세부 원산지 규정의 도입
 - 미국 농식품 수출에 관한 비관세장벽의 철폐
 - 전자상거래 및 국경을 초월해 교환되는 데이터에 대한 대책
 -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자국 기업 또는 자국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세이프 가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17)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FTA 주요동향』, <http://fta.go.kr/main/info/info/data/1/> (검색일자: 2017. 12. 26)

24 제1편 개관

- 캐나다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시장으로의 우선 접근 구조 유지
 - 수입관세 또는 보상적 쿼터 부과의 방지
 - 미국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와 관련 ‘BUY AMERICA’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 공급체인 유지

- 미국은 2017년 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¹⁸⁾을 탈퇴함
 - TPP 협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에 따라 2015년 10월 타결되었으나,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규제 권한을 사용해 협정에서 탈퇴함
 - 미국을 제외한 TPP 체결 11개국은 TPP 발효 작업 지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TPP 탈퇴, 기존 FTA 재협상 논의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임¹⁹⁾
 - NAFTA 재협상을 통한 관세율 인상,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협정국과의 통상관계 악화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은 향후 양자 FTA를 기반으로 실리적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²⁰⁾
 - 양자 FTA는 무역상대국에 따라 협상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기조는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더욱 강화될 예정임

18) TPP는 높은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 체결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 노동자·가족·농업인·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TPP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체결국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페루임

19)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issued a letter to signatorie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at the United States has formally withdrawn from the agreement per guidanc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letter emphasizes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free and fair trade, and encourages future discussions on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more efficient markets and higher levels of economic growth. USTR 홈페이지 발췌

20)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Presi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 pp. 1~6

2 한-미 FTA 현황

가. 한-미 FTA 현황 및 평가

-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되었으며 협정문은 서문, 최초규정 및 정의 조항, 협정 본문(21개의 장), 예외 조항과 최종규정으로 구성됨²¹⁾
 - 협정 제2~10장까지는 상품교역에 대한 내용으로 상품 분야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과 의료기기, 원산지 기준, 통관행정, 동식물 검역, 기술장벽, 무역구제 등을 포함함
 - 제11장 투자, 제12~14장 서비스, 제15~22장 무역규범 관련 내용으로 구성됨

〈표 1-IV-2〉 한-미 FTA 협정문 구성

구성	유형	제목
서문(preamble)		
장(chapter)	일반규정*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제24장 최종규정
	분야별규정	제2장 상품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및 의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제12장 서비스
제13장 금융서비스		

21) 챗터별 상세사항은 다음을 참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0&ccfNo=1&cciNo=1&cnpClsNo=2> (검색일자: 2017. 5. 22.)

〈표 1-IV-2〉의 계속

구성	유형	제목
장(chapter)	분야별규정	제14장 통신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 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9장 노동
		제20장 환경
		제21장 투명성
		제23장 예외
부속서(3)		
서한(5)		

주: * 협정문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
 자료: 한-미 FTA 협정문 참조 저자작성

- 상품 분야 협정의 핵심은 품목별 관세양허안의 합의이며, 서비스 분야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지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을 정하는 것임²²⁾
- 2016년 기준 상품 양허 수준은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2%, 미국은 92.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²³⁾
 - 양국은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함²⁴⁾
 - 농축산물 협상품목 1,531개 중 1,502개인 98%가 관세철폐 이행품목임

22) 원중현,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7. 8.
 23) HSK별 양허상세는 다음을 참조,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or/07-2MarketAccess_USnotes.pdf (검색일자: 2017. 5. 22.)
 2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fulltext.pdf p.198 (검색일자: 2017. 5. 22.)

〈표 1-Ⅳ-3〉 한-미 FTA 전체상품 양허 결과

(단위: 백만달러, %)

양허단계	우리나라 전체 품목				미국 전체 품목			
	품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 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9,003	80.0	21,778	77.6	8,623	82.1	28,280	69.2
5년 소계	10,357	92.0	25,981	92.6	9,745	92.8	39,134	95.7
10년 소계	11,068	98.3	27,344	97.4	10,423	99.2	40,885	100
10년 초과	161	1.4	477	1.7	82	0.8	2	0.0
계절관세/ 현행관세	16	0.1	213	0.8	-	-	-	-
제외	16	0.1	26	0.1	-	-	-	-
합계	11,261	100	28,060	100	10,505	100	40,887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k_fulltext.pdf (검색일자: 2017. 7. 6.)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실적임
 - 5년간(2012~2016) 대미 수출은 3.4%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은 2.0% 감소함
 - 대미 수출이 2.8%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 이후에도 대세계 수출 감소율이 11%인 것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기록함

- 대미 수출입업체 수, 수출품목 수, 수출·수입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 2011년 대비 2016년 대미 수출입 업체수는 약 6천개 증가하였고 수출 품목 수 600여개 증가함
 - 2016년 FTA 활용률은 수출부문 75.6%, 수입부문 70.7%로 2012년(발효 직후) 대비 각 8.7%, 9.7%로 증가함²⁵⁾
 - 2016년 미국 수입부문 활용률은 71.6%임²⁶⁾

25) 수출(수입)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 대상품목 수출(수입)실적×100,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anage/ImportAgreeFtaUseRate.do?layoutMenuNo=32131&cnvnNm=ALL> 참조

26) USTIC 자료로 계산, <https://dataweb.usitc.gov/scripts/REPORT.asp>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감소분은 다른 교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함
 -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입이 연평균 5.0% 감소한 데 비해 미국은 연평균 0.6% 소폭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기록함

-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둔화,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²⁷⁾
 - 발효 이후 5년간(2012~2016)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3.5% 감소한 데 비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함
 - 2016년(발효 5년차)에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하면서 교역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6.4%)에 비해 감소폭이 적음

〈표 1-Ⅳ-4〉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간
				(발효 1년)	(발효 2년)	(발효 3년)	(발효 4년)	(발효 5년)	연평균
수출	376.5	498.2	562.1	585.2	620.5	702.8	698.3	664.6	3.4
증감률	-18.8	32.3	12.8	4.1	6.0	13.3	-0.6	-4.8	
수입	290.4	404	445.7	433.4	415.1	452.8	440.2	432.2	-0.6
증감률	-24.3	39.1	10.3	-2.8	-4.2	9.1	-2.8	-1.8	
교역	666.9	902.2	1,007.80	1,018.70	1,035.60	1,155.70	1,138.60	1,096.80	1.7
증감률	-21.3	-35.3	11.7	1.1	1.7	11.6	-1.5	-3.7	
한국의 대세계 교역	6,866.20	8,916.00	10,796.30	10,674.50	10,752.20	10,981.80	9,632.60	9,016.20	-3.5
증감률	-19.9	29.9	21.1	-1.1	0.7	2.1	-12.3	-6.4	
세계 교역 (수출) ¹⁾	114,230	138,630	164,100	164,430	169,220	170,850	152,010	148,050	-2.0
증감률	-21.5	21.4	18.4	0.2	2.9	1.0	-11.0	-2.6	

주: 1) 세계 교역은 주요국 71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2015년 기준 세계 수출의 약 90% 차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검색 일자: 2017. 7. 6.)

2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 3, p. 33

- 2016년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액 비중이 10년내(2006~2016) 가장 높은 수준임²⁸⁾
 -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5년 차인 2016년 3.19%를 기록해 발효 전 2.57%에서 0.62% 증가하며 경쟁국인 일본의 성과(0.2% 상승)를 앞섬
 - 미국의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8.50%에서 2016년 10.64%로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준을 기록함

- 서비스 분야 조약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최혜국 대우, 자유화 후퇴방지 매커니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함²⁹⁾
 -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보조치 및 구체적 약속이 없는 한 상대국에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허용함
 - 기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합치조치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규정한 경우만 가능함³⁰⁾

-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1년 약 109억달러에서 2015년 약 140억달러로 확대됨
 - 2011년 서비스부문 수출은 159억달러이며 수입은 268억달러였으며, 2016년 서비스부문 수출은 146억달러이며 수입은 286억달러임

2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 3, p. 33

29) 모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전제하고, 만약 국내적으로 판단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규제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

30) 원종현,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7. 8

〈표 1-IV-5〉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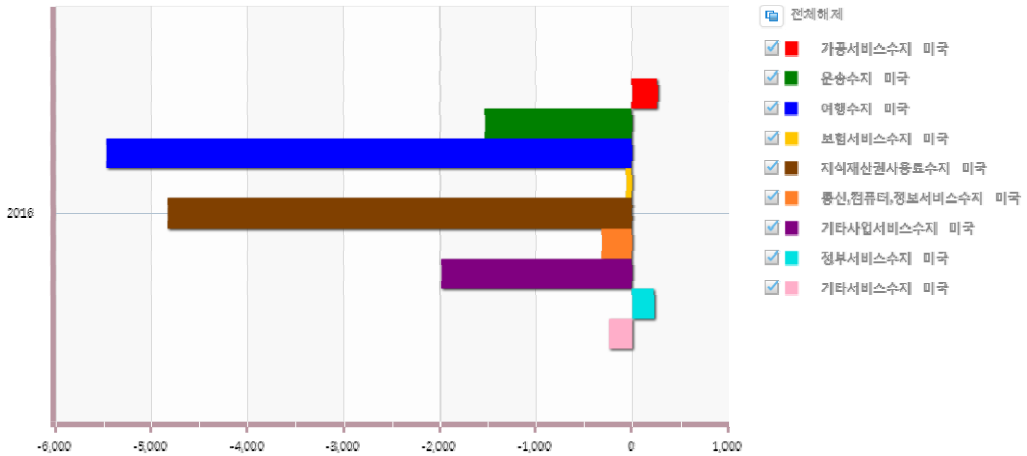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15,851.1	17,677.4	18,154.1	17,850.4	14,847.1	14,618.3
증감률	14.1%	11.5%	2.7%	-1.7%	-16.8%	-1.5%
수입	26,822.4	30,136.9	29,249.6	28,851.0	28,933.7	28,559.1
증감률	0.5%	12.4%	-2.9%	-1.4%	0.3%	-1.3%
수지	-10,971.3	-12,459.5	-11,095.5	-11,000.6	-14,086.6	-13,940.8

주: 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수입하는 서비스부문 수출입액 및 증감률
 통계상 수출은 서비스수입, 수입은 서비스지급으로 표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제수지>지역별국제수지>미국, <http://ecos.bok.or.kr/>

- 2016년 기준 여행과 지식재산권사용료 서비스 분야에서 현저한 서비스수지 적자를 보임³¹⁾
 - 한-미 FTA 체결로 지식재산권사용료 지불이 크게 증가하여 해당 서비스 분야의 적자폭이 확대됨
 - 가공서비스,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보임

[그림 1-IV-1]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분야별 수지(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제 수지>지역별 국제수지>미국,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17. 12. 26.)

31) 한국은행 경제분석,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나타내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나. 한-미 FTA 개정협상 이슈

-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양국의 국익 극대화과 이익균형을 이루겠다는 입장임³²⁾
 - 2017년 10월 4일, 양국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함
 - 2018년 1월 15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됨³³⁾

- 미국 측은 한-미 FTA로 인한 미국 무역적자 증대 등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함³⁴⁾
 -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를 지적하며, 2011년³⁵⁾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대한 수출은 12억달러 감소했으며 대한 수입은 130억달러 증가한 점을 근거로 불공정한 협정임을 주장함

-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통상절차법」상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2017.11.10./2017.12.1.), 국회보고(2017.12.18.) 등을 규정하고 있음³⁶⁾

- 주요 협상 안건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강화와 추가 개방 등임
 -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된 자동차,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 내용을 포함하며, 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서비스산업 개방 폭의 추가 확대가 논의될 예정임

32) 전문 부록 수록, <http://fta.go.kr/main/info/news/data/doc/> (검색일자: 2017. 5. 18.)

33) 2017. 8. 22.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2017. 10. 4.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워싱턴 D.C.)했으며, 11월 10일 개최된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한-미 FTA 재협상 반대로 중간에 종료됨

34) 미 USTR 홈페이지 무역협정원칙 부분 참고, <https://ustr.gov/trade-agreements> (검색일자: 2017. 5. 18.)

35) FTA 발효 직전 연도

3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fta.go.kr/us/paper/1/> (검색일자: 2017. 1. 12.)

- 에너지부문에 대한 협정 추가, 원산지 규정,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환율조작 금지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차단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임
- 미국은 USTR을 통하여 한-미 FTA가 불공정한 무역협정임을 주장하고 있음
 - USTR 연례보고서는, 지금이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 중요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함
 - 이에 따라 양자협상에 중점을 두어 공정성 표준을 더 높게 요구하고, 불공정 행위 (unfair activities)에 대해 법적조치(무역구제조치 등의 수입규제가 될 것으로 보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함

[그림 1-IV-2] USTR 연례보고서 중 한-미 FTA 관련 부분 발췌

1) Further, the largest trade deal implement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 our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 has coincided with a dramatic increase in our trade deficit with that country. From 2011 (the last full year before the U.S.-Korea FTA went into effect) to 2016, the total value of U.S. goods exported to South Korea fell by \$1.2 billion. Meanwhile, U.S. imports of goods from South Korea grew by more than \$13 billion. As a result, our trade deficit in goods with South Korea more than doubled. Needless to say, this is not the outcome the American people expected from that agreement.

2) Plainly, the time has come for a major review of how we approach trade agreements. For decades now, the United States has signed one major trade deal after another - and, as shown above, the results have often not lived up to expecta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believes in free and fair trade,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developing deeper trading relationship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who share that belief. But, going forward, we will tend to focus on bilateral negotiations, we will hold our trading partners to higher standards of fairness, and we will not hesitate to use all possible legal measures in response to trading partners that continue to engage in unfair activities

자료: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USTR 중 p. 6, p. 18 발췌

다. 한-미 FTA 개정 관련 주요 현안

-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관련 개선요구가 있는 사항은 관세 분야와 비관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관세 분야 관련 미국 측의 개선 요구 사항은 FTA 사후 검증 엄격성 완화, 미국 측 관세철폐 및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 선별적인 추가 개방임
 - 비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 혁신신약의 약가 인정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요구함

- 미국 측은 주요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및 할당관세 물량 확대 등의 국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³⁷⁾
 - 미국은 쇠고기, 오렌지, 쌀 등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관심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할당관세(Quota Tariff) 대상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의 선별적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FTA 적용 대상 품목 전반에 걸쳐 협정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³⁸⁾
 - 미국은 무역불균형에 민감한 국가이므로 수치지향적(Result Oriented)³⁹⁾으로 무역 적자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관세인하방식에는 선형관세인하방식(Linear Tariff Cut), 조화인하방식(Harmonization Cut), 무관세방식(Zero For Zero), 고협정세율일괄인하방식(Peak Preferential Cut)이 거론됨

- 원산지 사후 검증 엄격성에 대한 완화도 요구함
 - 그동안 한국 관세당국의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목표하에 2013~2017년간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추징액이 증가하였음
 - 이로 인해 미국 수출기업들은 USTR과 의회 등에 한국세관이 사후검증을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주장함⁴⁰⁾

37) 박홍규·박상태, 「한-미 FTA 재협상시의 대응방안 고찰」,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7. 2, pp. 115~118

38) Domenick Gambardella, “US/KOREA FTA”, PWC, 2011, pp. 4~11

39) 예를 들어 무역적자 50억불 감소 등의 목표에 맞춘 세율인하안을 말함

40) 우리나라 세관의 검증 정도는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700여건을 사후검증한데 반하여 미국은 430여건으로 한국 세관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세관의 한-미 FTA 사후검증을 통하여 거두어들

- 농축오렌지주스(Orange Juice Concentrates⁴¹)의 경우 협정관세 0% 적용을 배제하고 54%를 부과한 사례 발생
 - 동 물품의 기본관세율 54%는 한-미 발효 후 0%로 변경되었음
 - 우리나라 관세청은 외국산 과실류(HS 0805.50)가 미국으로 수입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산으로 취급되어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결과 과실류가 미국 수출자 농장에서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미비로 원산지 확인이 불가하여 특혜적용 배제함
- 원산지 검증 문제로 인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한-미 원산지 검증 공동지침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²⁾⁴³⁾
- 미국 역시 FTA 원산지 검증업무를 8대 중점업무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정보수집 분석과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⁴⁴⁾
- 미국 측은 비관세 분야 중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혁신 신약에 대한 가격에 가치 반영 등을 요구함
-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환경 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장함
 -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옴
 - 그 외 논의 대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 정부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요구, 금융정보 해외 위탁규정에 대한 불만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이하 ISD)와 무역구제제도 개선을 요구함
-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법령과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인 추정현황을 살펴보면 추정금액이 적지 않다. 2013년=66건, 8,425백만원, 2014년=60건, 22,117백만원, 2015년=68건, 13,661백만원, 2016.8=61건, 7,682백만원임

41) 사후검증 문제로 통상 현안이 되었던 품목

42) 박상태, 「관세측면의 한-미 FTA 성과와 전망」, 법무법인 율촌, 2017. 3, p. 16

43) 산업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17. 6, (http://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3387); 김수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우리금융연구소, 2017. 8;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 12.

44) CBP, Trade agreement, <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trade-agreements> (검색일자: 2017. 12. 26.)

-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임
 -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그림 1-IV-3] 한-미 FTA 진행상황

- 2018.01.15.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 D.C.)
- 2017.12.01. 제2차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 2017.11.22.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서울)
- 2017.11.10. 제1차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서울)
- 2017.10.04.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워싱턴 D.C.)
- 2017.09.22. 산업부, 미국 USTR에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서한 발송
- 2017.09.20. 한-미 통상장관간 한-미 FTA 관련 진정방안 논의
- 2017.08.22.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 2017.07.21. 우리나라 산업부장관 답신
- 2017.07.12. 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
- 2017.01.12. 제4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2014.01.01. 개정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HS 2012 기준) 발효
- 2014.12.15. 제3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워싱턴 D.C.)
- 2013.10.05.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발리)
- 2012.12.24. 한-미 FTA 섬유원산지 규정에 관한 각서 교환
- 2012.05.15.~18.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워싱턴)
- 2012.03.15. 발효
- 2012.02.21.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 2012.02.21. 발효일자 합의(외교 공한 교환)
- 2012.02.19.~20.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시애틀)
- 2012.01.27.~01.28. 한-미 FTA 이행점검협의(LA)
- 2011.12.19.~20.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워싱턴)
- 2011.12.05.~06.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워싱턴)
- 2011.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1.10.21.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2011.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10.11.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그림 1-IV-3]의 계속

- 2011.10.05. 미 하원 세입위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10.03.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2011.09.16.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
2011.06.0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05.0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02.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2010.11.30.~12.03.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12.03. 추가협상 타결
- 2009.04.2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08.10.08.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18대 국회 제출
- 2007.09.07.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17대 국회 제출
2007.06.30.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07.06.21.~22. 추가협약(서울)
2007.05.29.~06.06. 법률검토회의(워싱턴)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3.26.~04.02.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서울)
2007.0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2007.03.08.~12. 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02.11.~14. 한-미 FT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7.01.15.~19. 한-미 FTA 제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 2006.12.04.~08. 한-미 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
2006.10.23.~27. 한-미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
2006.09.06.~09. 한-미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2006.07.10.~14.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06.27.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06.05.~09.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6.04.17.~18. 한-미 FTA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3.06. 한-미 FTA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개최
2006.02.03.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2006.02.02.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
2006.01.31. 본부장-Portman USTR 대표 면담(워싱턴)
-

[그림 1-IV-3]의 계속

- 2005.11.16.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 2005.10.11.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 2005.09.20.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 2005.09.19.~21. 본부장 방미, 주요 정부관계자 면담
 - 2005.09. 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2005.07.24.~28. 본부장 방미, 주요 상하원의원 및 업계 설득
 - 2005.06.03.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2005.05.02.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 2005.04.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3차 회의 개최 (워싱턴)
 - 2005.03.28.~29.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2차 회의 개최(워싱턴)
 - 2005.02.0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 1차 회의 개최(서울)

 - 2004.11.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
점검회의 개최 합의
 -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 2003.0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fta.go.kr/us/info/2/> (검색일자: 2017. 1. 12.)

제2편 통관제도

I.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1 통관행정조직

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설립과 역사

-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세관, 출입국, 국경보안 및 농업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국경을 관리 및 통제하는 기관임⁴⁵⁾
 - CBP는 미국 최대 법집행기관 중 하나로 2003년에 CBP가 설립되기 전에는 미국 국경의 무결성을 지키는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였음⁴⁶⁾

- 미국의 관세청(Customs Service)은 1789년 6월 제1대 의회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시스템을 수립하면서 설립됨⁴⁷⁾
 - 1891년 출입국 관리사무소(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Immigration)가 설립되면서 출입국 검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1912년에는 농업보호를 위한 식물 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이 제정되었음⁴⁸⁾

45) CBP, <https://www.cbp.gov/about> (검색일자: 2017. 5. 2.)

46)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 (검색일자: 2017. 5. 2.)

47) CBP,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p. 6

48)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 (검색일자: 2017. 5. 2.)

- 또한 미국 국경의 무결성 수호를 담당하는 국경수비대(Border Patrol)는 1924년 의회가 국경 순찰 요원의 고용을 승인함으로써 설립되었음⁴⁹⁾
- 관세청은 설립 이후 세관검사, 세금징수, 국경보안 및 「연방법」 집행에 대한 수많은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적 및 제도적 변화를 겪음⁵⁰⁾
 -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를 아우르는 통합된 법집행과 국토안보 활동에 대한 요구에 따라 관세청 조직은 크게 변화하였음
- 2002년 「국토안보법」에 따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설립되었고, CBP는 DHS 산하에 관세청 조직, 출입국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주요 기능, 국경수비대, 농무부의 동식물검역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음⁵¹⁾
 - 2006년에는 출입국·관세단속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항공·해상운영본부(Air and Marine Operations Division)를 흡수하였음
- CBP의 임무는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경을 보호함으로써 미국민을 위협한 사람 및 물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⁵²⁾
 - CBP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 이민국, 동식물검역소 등 기존 기관의 관련 기능을 모두 반영하여 설립됨⁵³⁾

49) CBP, <https://www.cbp.gov/about/history> (검색일자: 2017.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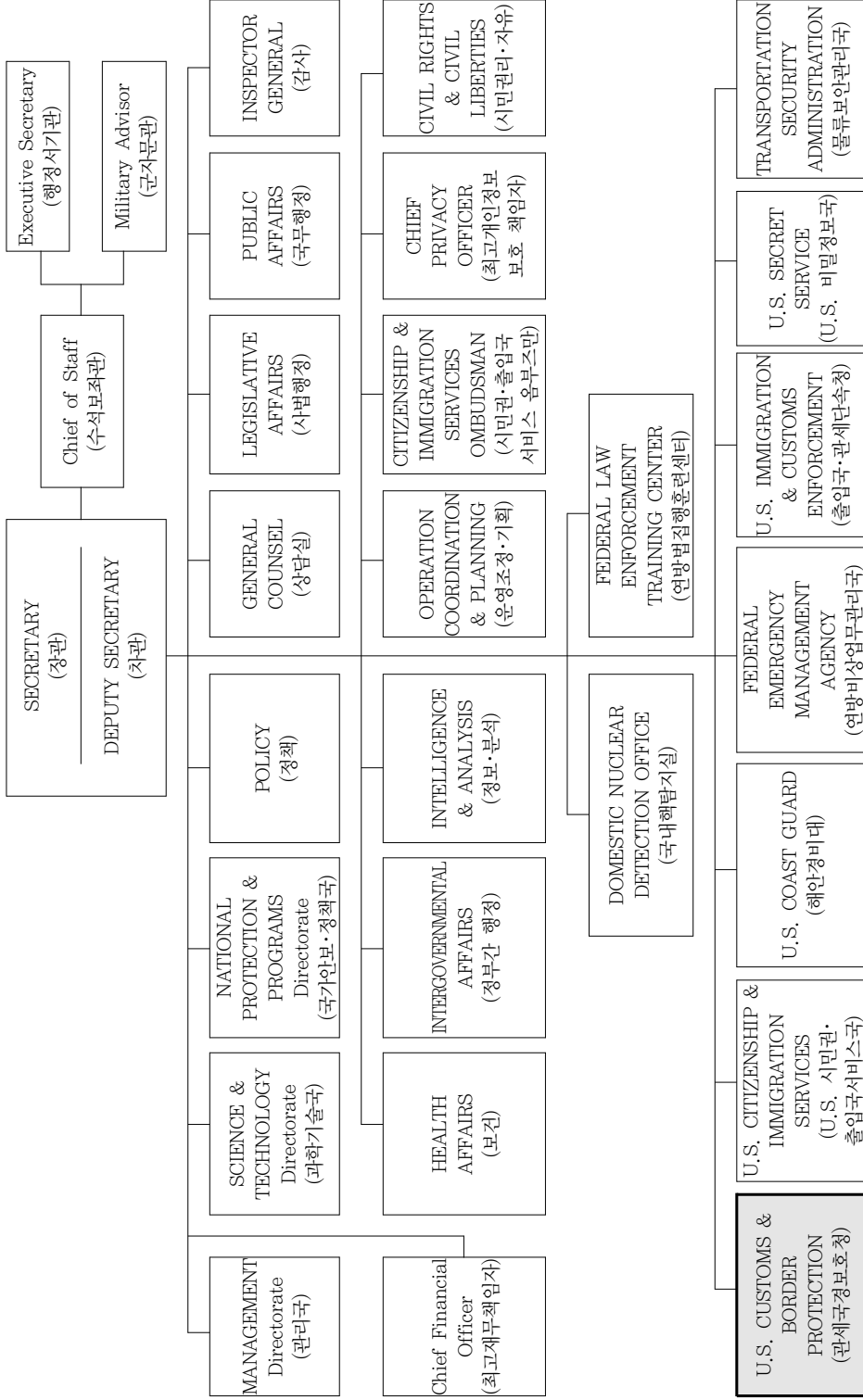
50) CBP,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p. 6

51) CBP,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p. 6

52) CBP, <https://www.cbp.gov/about> (검색일자: 2017. 5. 2.)

53) CBP,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5. p. 7

[그림 2-1-1] 미국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자료: DHS,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ublic%20Org%20Charts%202017.04.12.pdf> (검색일자: 2017. 5. 4.)

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책무와 주요 활동⁵⁴⁾

- CBP는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의 입국이나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경을 지키는 책무를 가짐
 - CBP의 현장운영국(Field Operations), 국경수비대(Border Patrol) 및 항공해상 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은 국경보안을 위한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임

- CBP는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및 미국 국민의 귀국 등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Global Entry), 전자여행허가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ATA)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Global Entry는 사전 승인된 미국 시민, 영주권자 및 저위험 국가 국민이 CBP의 심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Global Entry에 등록된 자는 자동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신속한 입국이 가능함
 - ESTA는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그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여행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CBP는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태러민-관파트너십(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차세대 수입통관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 등을 운영함
 - C-TPAT에 따른 특정 보안기준을 충족한 수입업자는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받으며, 이를 통하여 CBP는 고위험 물품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음
 - ACE는 국경 처리를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상업거래 처리 시스템으로써 모든 통관절차가 전산화되어 처리됨
 - CBP의 운영지원국에서는 산업분야별 10개의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를 통하여 해당 분야별 상관행에 따른 통관절차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

54) CBP, "A summary of CBP facts and figures," 2017. 6.

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조직⁵⁵⁾

- CBP는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과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을 신설하는 등 본부 조직 구조를 변경하였음
 - 운영사무국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운영지원실은 기존의 정보기밀연락담당국, 대외업무국을 흡수하였음
 - 조직지원실은 청내의 부서 간 상호협력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지원국, 기술혁신국, 정보기술국, 훈련개발국을 통합하여 신설하였음
 - CBP의 4대 조직인 국경수비대(U.S. Border Patrol),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항공·해상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 대외무역국(Trade)은 유지되었음

- 청장(Commissioner)은 CBP의 적법한 무역과 여행을 촉진하면서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들의 입국은 방지하는 CBP의 핵심 임무의 수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짐
 - 6만여명의 CBP 인력과 약 130억달러의 예산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연방정부에서 가장 큰 법집행기관이면서 두 번째로 큰 세입기관을 운영함⁵⁶⁾

- 차장(Deputy Commissioner)은 CBP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지도와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경관리당국의 최고 운영 책임자임
 - 효과적인 국경을 수호하는 반면, 저위험 물품 및 여행객의 적법한 국제이동을 도모하는 CBP의 임무를 관리하여야 함

- 참모장(Chief of Staff)은 CBP의 모든 이슈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와의 연락을 담당함
 - 참모장은 청 내부의 타부서, 국토안보부, 기타 국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장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도움을 줌

55) CBP,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Fiscal Year 2016*, 2017. 3, pp. 9~15

56) CBP, <https://www.cbp.gov/about/leadership-organization/commissioners-office> (검색일자: 2017. 5. 2.)

- 통합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West)는 국토안보부가 지원하는 기동부대로서 남서부 국경의 보호를 목표로 함
 - CBP는 다국적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해체하기 위한 운영모델을 4개의 남서부 경계지역에서 통일함으로써 통합태스크포스를 지원함

- 공보국(Public Affairs)은 CBP의 임무를 내외부 관련자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한 소통을 담당함
 - 내외부의 관련자는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국제무역 및 여행 이해당사자들, 미국 국경을 지나는 여행객들, 미국 및 국제 정부기관 등을 말함
 - 또한 공보국은 CBP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관리하며, 'CBP in 60', 'CBP Postmaster', 'CBP net' 등과 같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관리함

- 의회업무국(Congressional Affairs)은 CBP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단일 연락창구 역할을 함
 - 의회업무국은 CBP 지도층이 입법 제안할 CBP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하며, CBP와 관련된 국토안보부의 의회 활동을 지원함

- 무역교섭자문관실(Trade Relations)은 CBP와 국제무역공동체의 의사소통을 관장함
 - 무역교섭자문관실은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준수의 촉진을 위한 규제 공정성 대표 역할을 수행함
 - 의회에서 승인된 무역자문단인 상업적 관세 운영 자문 위원회(Commercial Customs Operations Advisory Committee)와 사용자 부담금 자문 위원회(User Fee Advisory Committee)를 관리함

- 정부간공공연락국(Intergovernmental Public Liaison)은 CBP의 정책과 계획들이 주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청장, 부청장, 관련 사무소에 자문을 제공함
 - 주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제안된 CBP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CBP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여 CBP와 주 및 지역 정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함

- 직업윤리국(Professional Responsibility)은 CBP의 운영, 인력 및 설비의 모든 부분에서 감독기간으로서 역할을 함
 - 부정부패, 부정행위 또는 부실경영과 관련된 CBP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준수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내부보안 및 무결성 인식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입사예정자들의 신원조회를 하고, 법집행관들에게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함
 - 또한 직원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사생활·다양성담당관실(Privacy and Diversity)은 CBP가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교정시설성폭력금지법」(Prison Rape Elimination Act) 등 연방의 적용가능한 모든 차별반대 관련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함
 - 또한 CBP가 무역업자나 여행객의 시민권 및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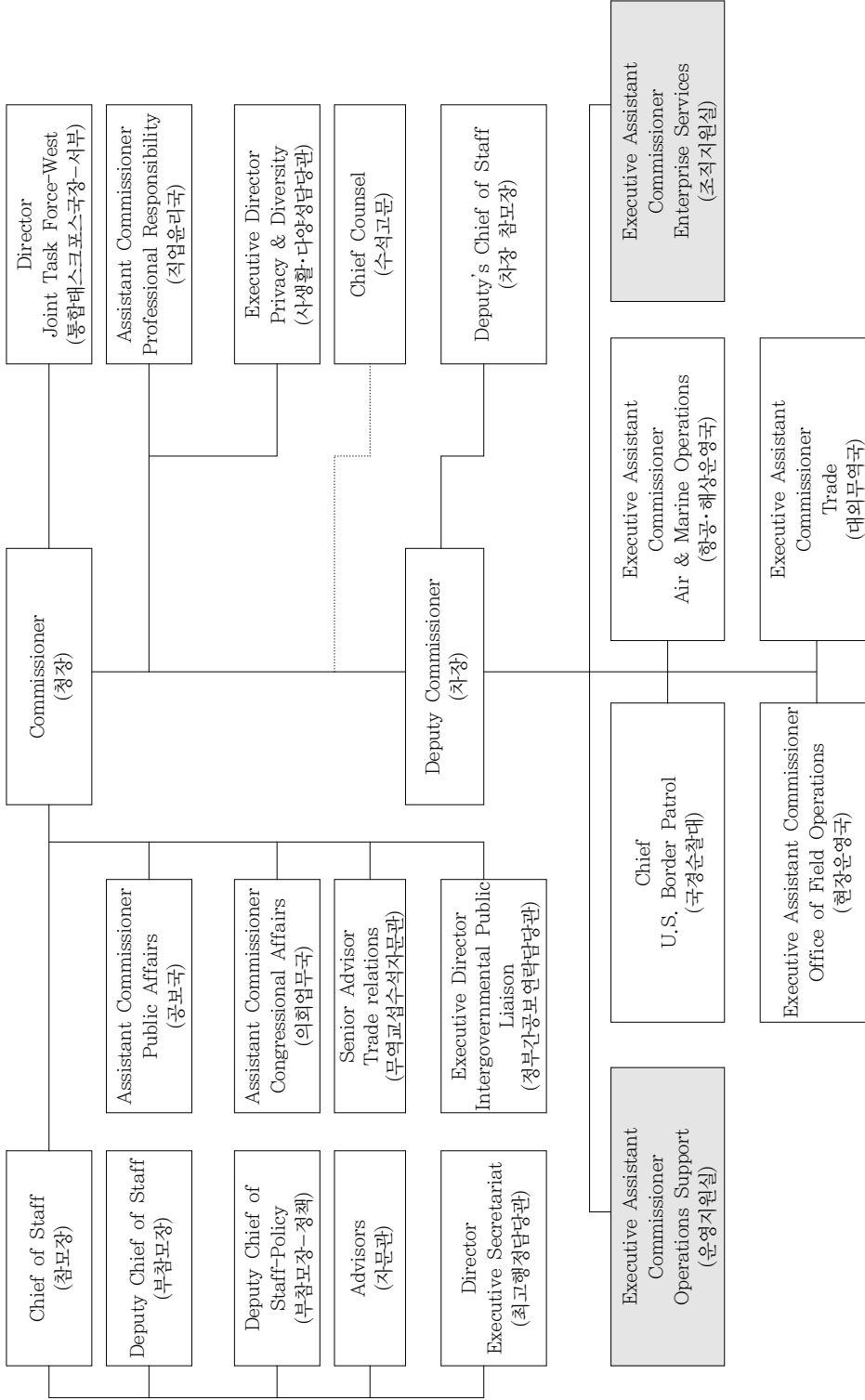
- 수석고문(Chief Counsel)은 CBP의 법무 책임자로서 청장의 법률고문이며, 조직의 윤리 책임자임
 - 또한 CBP의 활동과 역할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CBP의 구성원을 대리하며, 법적인 자문을 제공함
 - 수석고문은 국토안보부의 자문위원에게 보고의 의무가 있음

- 국경수비대(U.S. Border Patrol)는 CBP의 법집행기관으로서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무기, 불법체류자, 마약과 이를 밀수하는 자 등이 통관항으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무가 있음
 - 주요 임무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포함한 국경을 통하는 고속도로의 검문소를 유지하고, 시내 순찰, 운송 검문 및 밀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임
 - 국경수비대는 미국의 남서부, 북부, 해안지대에 20개의 지구를 두고 있음

-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은 미국 국경에서 관세, 출입국, 농업 관련 법 및 규정을 집행하며,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무기가 통관항으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의무가 있음

- 현장운영국은 20개의 현장운영사무소와, 328개의 통관항, 전국 각지의 통관항에 설치된 10개의 전문센터, 캐나다, 캐리비안, 아일랜드,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있는 16개의 사전허가사무소를 운영함
 - 또한 60개의 컨테이너 보안 시행 항구, 12개의 출입국 관리 프로그램 및 공동 경비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현장운영국은 법과 규정을 집행하면서 통관항를 통한 물품과 사람의 효과적인 이동을 보장함
- 항공·해상운영국(Air and Marine Operations)은 선진화된 항공 및 해양 기술을 통하여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연방의 법집행기관임
- 1,637명의 연방 지원인력, 239대의 항공기, 315대의 선박을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운영하면서 미국 국경에 근접해 있는 불법 입국자와 화물을 제지하고 있음
 - 또한 범죄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국가적인 만일의 사태에 대응함
- 무역국(Trade)은 무역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략 방향을 통합함
- 무역국은 환적을 포함한 약탈적인 무역관습, 지식재산권 침해, 덤핑 등을 행하는 업체에 대한 법 집행 대응을 지시하고, 징계 조치를 취함
 - 또한 공중보건 및 안전의 위협요소,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물품을 수입품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하여 위협기반 조사, 감지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감독함

[그림 2-1 -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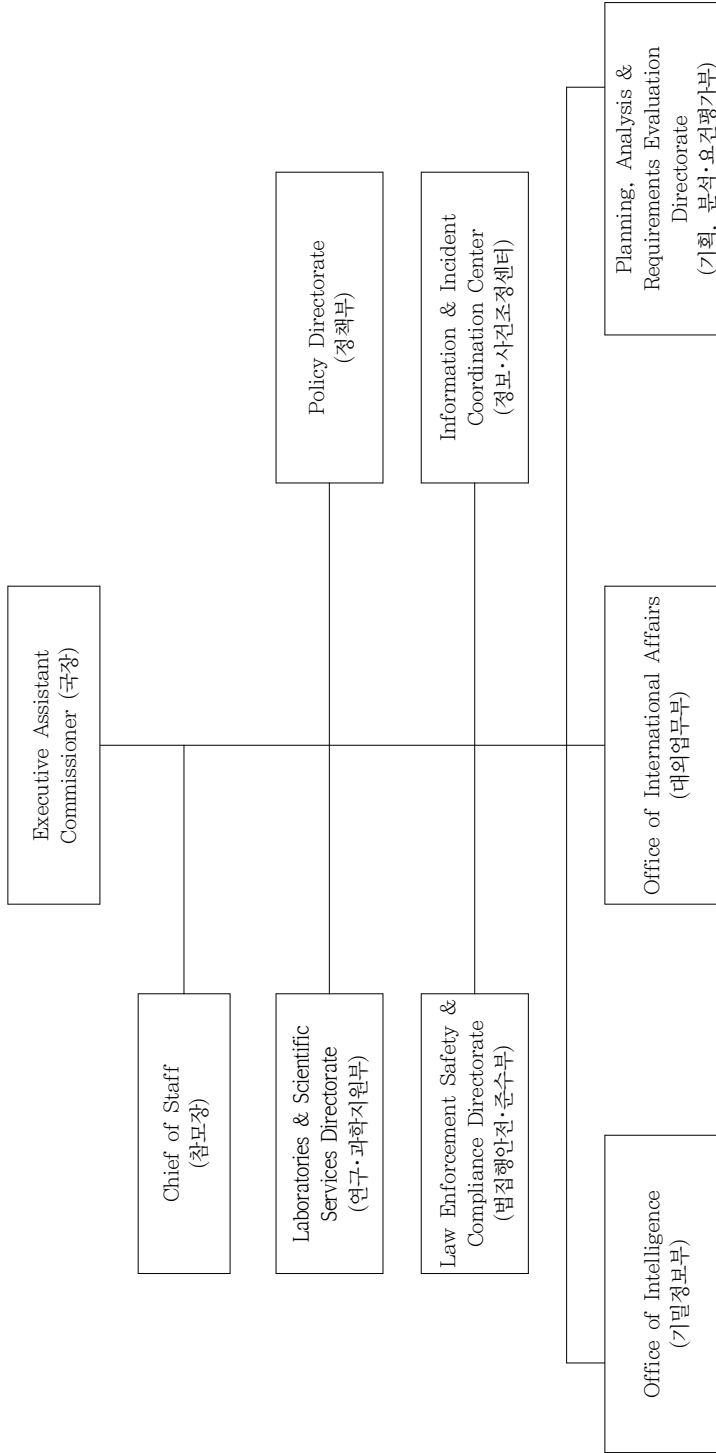


자료: CBP, <https://www.cbp.gov/document/publications/cbp-organization-chart> (검색일자: 2017. 5. 4.)

-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은 2016년 신설된 조직으로 CBP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사무소를 직접 지원하는 전문가, 분석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⁵⁷⁾
 - 연구·과학지원부(Laboratories & Scientific Services)는 무역, 법의학, 국경보안의 분야에서 법집행에 대한 결정을 위한 과학적 시험, 법의학적 분석, 기술 지원을 제공함
 - 법집행안전·준수부(Law Enforcement Safety & Compliance)는 CBP의 각 운영요소에서 요구되는 업무, 기능, 임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강제 정책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기준을 마련함
 - 최고 수준의 교육과 훈련, 무기 및 기타 전술적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CBP의 법집행요원의 안전성, 준비성, 책임성 및 운영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 정책부(Policy)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하여 CBP의 통일된 정책방향을 정립함
 - 정보·사건조정센터는 CBP 현장요원들과 국토안보부의 관리인력 간 의사소통 및 정보의 교환을 담당함으로써 CBP의 내외부 상황 파악 및 사건 대응 능력을 관리함
 - 기밀정보부(Intelligence)는 다양한 정보 능력을 통합하여 CBP의 임무를 여러 방면에서 지원함
 - 여행객과 화물의 사전 정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CBP의 대적 정보 활동을 관리하며 기밀정보를 적기에 분석함
 - 또한 연방, 주, 지역 및 원주민의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 관계를 구축함
 - 대외업무부(International Affairs)는 미국 정부기관과 외국 행정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CBP의 국제업무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함
 - 22개의 아타세(attaché) 사무소와, 8개의 지역 자문소, 국방부 산하인 3개의 통합전투사령부에 배속된 대표단을 통하여 CBP의 국제협력업무를 지원함

57) CBP, <https://www.cbp.gov/about/leadership-organization/executive-assistant-commissioners-offices> (검색일자: 2017. 5. 4.)

[그림 2-1 -3] 운영지원실(Operations Support)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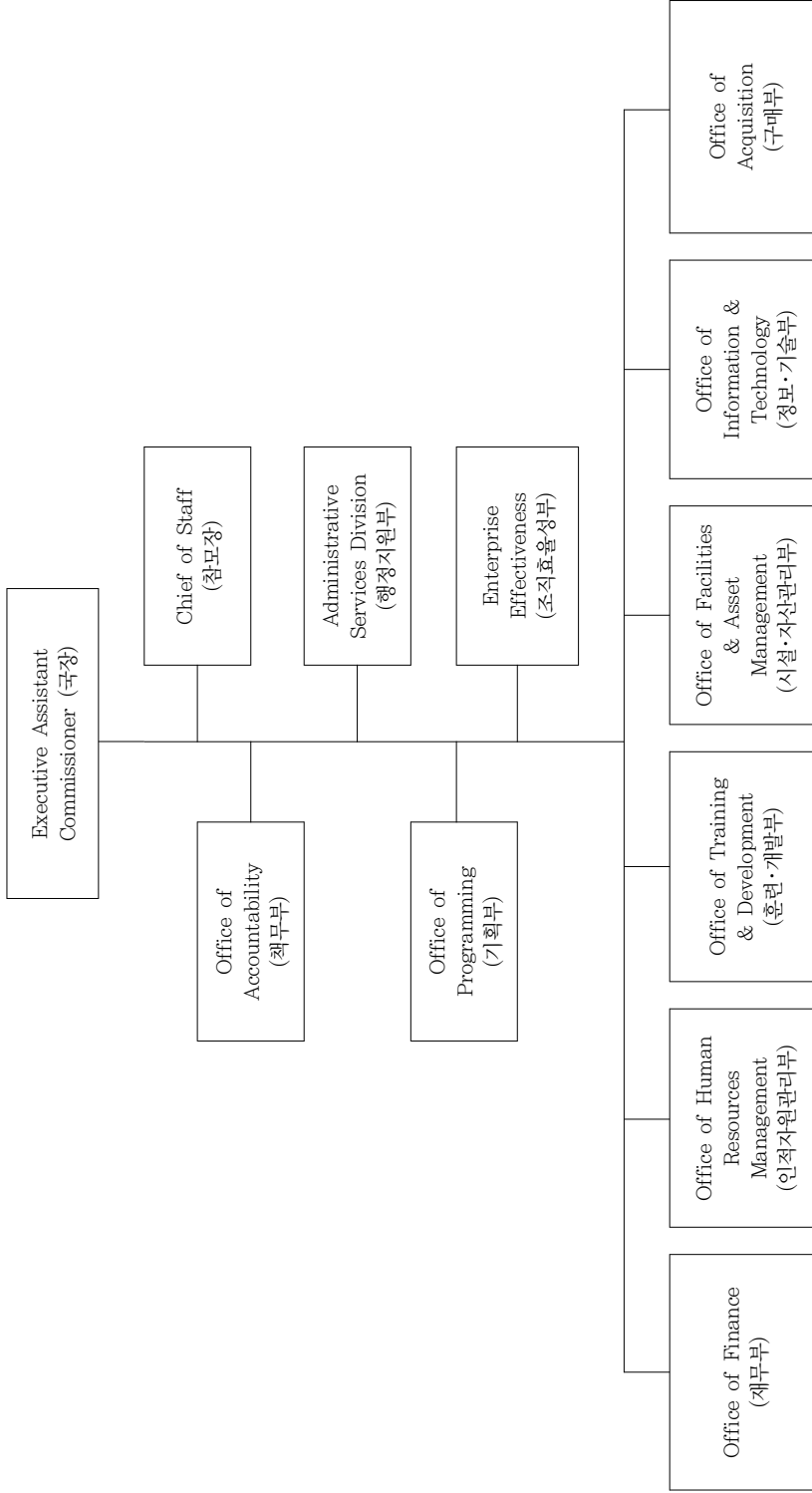


자료: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OS-Org-Chart-061516_0.pdf (검색일자: 2017. 5. 4.)

-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은 조직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신설한 부서로 8개의 산하부서는 CBP의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지원함
 - 책무부(Accountability)는 CBP의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함
 - 기획부(Programming)는 CBP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CBP의 5개년 전략 계획을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함
 - 행정지원부(Administrative Services)는 지원실의 모든 행정과 임무 지원 요청 사항을 담당함
 - 조직효율성부(Enterprise Effectiveness)는 조직의 성과 관리, 고객 서비스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략적 자원 관리, 리더십 개발, 비즈니스 관행, 고객 관계 및 사업정보 사용을 감독하거나 관리함
 - 재무부(Finance)는 예산 및 재정문제에 대하여 CBP의 수석고문 역할을 함
 - 재무 관리, 매출 수집 및 관리, 회계 정책 및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 예산 수립 및 집행, 감사 관리 등의 책임이 있음
 - 재무부는 법집행과 국제무역의 운영을 위한 CBP의 순예산 151억달러를 관리하며, 이는 국토안보부 구성부서 중 2번째로 큰 규모임
 - 2016년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세수입이 있는 CBP의 446억달러에 달하는 징수액을 관리하였음
 - 재무부는 예산, 재무 관리 및 운영, 투자 분석 등 세 가지 핵심부서로 구성됨
 - 인적자원관리부(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전국 및 해외 모든 CBP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 집중식 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함
 - 조직 구조, 직원 배치, 보상 관리, 복리 후생, 작업장 안전, 인사 조치 및 노사 관계를 포함한 인적자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감독함
 - 훈련개발부(Training & Development)는 모든 CBP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관함
 - 모든 교육이 CBP의 사명과 전략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CBP의 훈련 표준 및 정책을 수립함
 - 시설·자산관리부(Facilities & Asset Management)는 CBP 재산 및 자산의 보급 및 유지에 중심을 둔 조직임
 - CBP의 일선 및 행정 인력에게 주거, 장비, 복장을 제공하고 지원함

- 시설·자산관리부의 시설 관리·엔지니어링 부서는 46억 3천만달러 정도의 CBP 소유의 시설과 전술적 공공시설을 관리함
- 정보기술부(Information & Technology)는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의 침입을 막아 미국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기반시설, 통신, 서비스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
- 구매부(Acquisition)는 CBP의 구성요소 취득을 담당하며 모든 CBP 구매 프로그램이 국토안보부 및 CBP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하도록 감독함

[그림 2-1-4] 조직지원실(Enterprise Services) 조직도



자료: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ES-Org-chart-061516_0.pdf (검색일자: 2017. 5. 4.)

2 통관 관련 법

- 관세 부과와 통관절차에 있어 기본법적 역할을 하는 「관세법」은 연방법전(U.S. Code) 제19편 관세(TITLE 19 Customs Duties)의 제4장(Tariff Act of 1930)에 규정되어 있음⁵⁸⁾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세법」을 개별 법률로 운영하지 않고 연방법전에 관세 관련 법률을 포함시키고 있음⁵⁹⁾

- 총 54편의 연방법전에는 「관세법」 이외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른 법률도 포함되어 있음⁶⁰⁾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는 비관세장벽인 농업보호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법률은 제7편 농업(Title 7 Agriculture), 제15편 통상과 무역(Title 15 Commerce and Trade), 제16편 보호(Title 16 Conservation), 제17편 지식재산권(Title 17 Copyrights) 등에 규정되어 있음

〈표 2-1-1〉 미국 연방법전(U.S. Code)의 구성

Title No.	법
1	GENERAL PROVISIONS
2	THE CONGRESS
3	THE PRESIDENT
4	FLAG AND SEAL, SEAT OF GOVERNMENT, AND THE STATES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6	DOMESTIC SECURITY
7	AGRICULTURE
8	ALIENS AND NATIONALITY
9	ARBITRATION
10	ARMED FORCES

58) 성한경·이민선·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 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56

59)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p. 17

60) 정재호·정재완(2015), p. 17

〈표 2-1-1〉의 계속

Title No.	법
11	BANKRUPTCY
12	BANKS AND BANKING
13	CENSUS
14	COAST GUARD
15	COMMERCE AND TRADE
16	CONSERVATION
17	COPYRIGHTS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19	CUSTOMS DUTIES
20	EDUCATION
21	FOOD AND DRUGS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23	HIGHWAYS
24	HOSPITALS AND ASYLUMS
25	INDIANS
26	INTERNAL REVENUE CODE
27	INTOXICATING LIQUORS
28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29	LABOR
30	MINERAL LANDS AND MINING
31	MONEY AND FINANCE
32	NATIONAL GUARD
33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35	PATENTS
36	PATRIOTIC AND NATIONAL OBSERVANCES, CEREMONIES, AND ORGANIZATIONS
37	PAY AND ALLOWANCES OF THE UNIFORMED SERVICES
38	VETERANS' BENEFITS
39	POSTAL SERVICE
40	PUBLIC BUILDINGS, PROPERTY, AND WORKS
41	PUBLIC CONTRACTS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표 2-1-1〉의 계속

Title No.	법
43	PUBLIC LANDS
44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45	RAILROADS
46	SHIPPING
47	TELECOMMUNICATIONS
48	TERRITORIES AND INSULAR POSSESSIONS
49	TRANSPORTATION
50	WAR AND NATIONAL DEFENSE
51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52	VOTING AND ELECTIONS
53	[Reserved]
54	NATIONAL PARK SERVICE AND RELATED PROGRAMS

자료: 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http://uscode.house.gov/browse/tables&edition=prelim> (검색일자: 2017. 6. 7.)

- 연방법전 제19편은 제4장의 「관세법」(Chapter 4 Tariff Act of 1930)뿐 아니라 통상교섭 및 무역협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어 광의의 「관세법」이라고 할 수 있음⁶¹⁾
 - 「통상법」(Chapter 12 Trade Act of 1974), 「통상협정법」(Chapter 13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북미자유무역협정(Chapter 21 NAFTA) 등이 통관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음
 - 특히, 「교역촉진법」은(Chapter 28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기존 「통상법」을 보완한 법으로 대미 무역 흑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⁶²⁾
 - 환율조작국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인 관찰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음

61) 정재호·정재완(2015), p. 16

6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70404001548250 (검색일자: 2017. 6. 7.)

〈표 2-1-2〉 미국 연방법전 19편(U.S. Code Title 19)의 수록법

Chapter	조항	수록법
1	1~70조	COLLECTION DISTRICTS, PORTS, AND OFFICERS (징세구역, 항 및 직원)
1A	81a~81u조	FOREIGN TRADE ZONES(외국무역지역)
2	91~107조	THE TARIFF COMMISSION ¹⁾ [Repealed or Omitted] (관세위원회)[폐지 또는 삭제]
3	121~580조	THE TARIFF AND RELATED PROVISIONS (관세율표 및 관련 규정)
4	1202~1683g조	TARIFF ACT OF 1930(1930년 「관세법」)
5	1701~1711조	SMUGGLING(밀수)
6	1751~1756조	TRADE FAIR PROGRAM(공정무역프로그램)
7	1801~1991조	TRADE EXPANSION PROGRAM(무역확대프로그램)
8	2001~2033조	AUTOMOTIVE PRODUCTS(자동차)
9	2051~2052조	VISUAL AND AUDITORY MATERIALS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HARACTER (교육적·과학적·문화적인 시청각 재료)
10	2071~2084조	CUSTOMS SERVICE(관세청)
11	2091~2095조	IMPORTATION OF PRE-COLUMBIAN MONUMENTAL OR ARCHITECTURAL SCULPTURE OR MURALS (콜럼버스 이전의 기념물, 건축적 조각 또는 벽화의 수입)
12	2101~2497b조	TRADE ACT OF 1974(1974년 통상법)
13	2501~2582조	TRADE AGREEMENTS ACT OF 1979(1979년 통상협정법)
14	2601~2613조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문화자산에 대한 조약)
15	2701~2707조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카리브해 경제 회복)
16	2801~2806조	WINE TRADE(와인무역)
17	2901~2906조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ADE AGREEMENTS(통상협정의 교섭과 실시)
18	3001~3012조	IMPLEMENTATION OF HARMONIZED TARIFF SCHEDULE (통일관세율표의 실시)
19	3101~3111조	TELECOMMUNICATIONS TRADE(전기통신무역)
20	3201~3206조	ANDEAN TRADE PREFERENCE(안데스 무역특혜)
21	3301~3473조	NORTH AMERICAN FREE TRADE(북미자유무역)
22	3501~3624조	URUGUAY ROUND TRADE AGREEMENTS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
23	3701~3741조	EXTENSION OF CERTAIN TRADE BENEFITS TO SUB-SAHARAN AFRICA(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정무역 혜택 확대)

〈표 2-1-2〉의 계속

Chapter	조항	수록법
24	3801~3813조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양자무역 촉진 권한)
25	3901~3913조	CLEAN DIAMOND TRADE(투명 다이아몬드무역)
26	4001~4112조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도미니카 공화국-중남미 공정무역)
27	4201~4210조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양자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
28	4301~4454조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2015년 교역촉진법)

주: 1) 1975년에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http://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9&edition=prelim> (검색일자: 2017. 6. 7.)

- 제4장의 「관세법」(Chapter 4 Tariff Act of 1930)은 미국 통일관세율표, 특별규정, 행정절차,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담배의 수입요건, 연질목재 등 총 6개의 절(Subtitle)로 구성되어 있음⁶³⁾
 - 제 I 절의 관세율표와 제 III 절의 제1관 및 제3관에서 관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제1관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제3관에는 과세와 납세에 관한 행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제 IV 절에서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표 2-1-3〉 미국 「관세법」(19 U.S. Code Chapter 4 - Tariff Act of 1930)의 구성

Subtitle		Part	조항	주요 내용
I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	1202조	관세율표
II	SPECIAL PROVISIONS	제1관	1301~1323조	수입금지물품
		제2관	1330~1341조	미국 국제통상위원회
		제3관	1351~1367조	국제통상의 진흥

63) 정재호·정재완(2015), p. 19

〈표 2-1-3〉의 계속

Subtitle		Part	조항	주요 내용
III	ADMINISTRATIVE PROVISIONS	제1관	1401~1414조	통관 및 과세의 정의
		제2관	1431~1467조	외국무역선(기) 등의 입출항
		제3관	1481~1529조	수입통관과 과세 및 납세절차
		제4관	1551~1565조	보세화물의 운송과 장치
		제5관	1581~1631조	불법수출입물품에 대한 조치
		제6관	1641~1654조	관세사와 수출신고요건 등
IV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제1관	1671~1671h조	상계관세의 부과
		제2관	1673~1673i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3관	1675~1676a조	산업피해구제
		제4관	1677~1677n조	신업구제 관련 기타 일반사항
V	REQUIREMENTS APPLICABLE TO IMPORTS OF CERTAIN CIGARETTES AND SMOKELESS TOBACCO PRODUCTS	-	1681~1681b조	특정담배 및 무연담배제품의 수입 적용요건
VI	SOFTWOOD LUMBER	-	1683~1683g조	연질목재

자료: 성한경·이민선·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58; 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http://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9&edition=prelim> (검색일자: 2017. 6. 7.)

- 「관세법」의 하위규정인 연방 관세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에는 관세와 통관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⁶⁴⁾
 -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과 유사한 성격인 연방 관세규정은 총 4개의 장(Chapter)과 360개의 관(Part)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 I 장은 CBP, 국토안보부, 재무부 관련 규정, 제 II 장은 국제무역위원회, 제 III 장은 국제무역청 관련 규정을 담고 있음
 - 제 IV 장은 이민관세국과 국토안보부 관련 규정이지만 공표가 보류되고 있음

64) 정재호·정재원(2015), p. 20

〈표 2-1-4〉 미국 연방 관세규정(C.F.R Title 19 Customs Duties)의 구성

Chapter		Part(Article)	주요 조항 및 내용	
I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the Treasury	0~192 (0,1~192,14조)	10.1~10.3034	조건부감면
			54.5~54.6	특정수입 임시면세
			101.0~101.10	일반규정
			102.0~102.25	원산지규정
			113.0~113.75	관세담보
			114.0~114.34	까르네(Carnets)
			132.0~132.25	할당
			159.0~159.64	관세정산
			162.0~162.96	검사, 조사 및 압수
			171.0~171.64	벌금, 벌칙 및 몰수
		191.0~191,195	환급	
II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213 (200,735~213,6조)	202.1~202,6	물품가격조사
			204.1~204,5	농업프로그램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 조사
			213.1~213,6	무역구제
III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Commerce	351~360 (351,101~360,108조)	351.101~351,702	반덤핑 및 상계관세
			356.1~356,30	NAFTA 이행을 위한 절차 및 규정
IV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erved]	

자료: 성한경·이민선·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p. 59; The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6dbcc383930206b56ed387f0997b3763&mc=true&tpl=/ecfrbrowse/Title19/19tab_02.tpl (검색일자: 2017. 6. 7.)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과세요건

-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그 시점에서 법률상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됨⁶⁵⁾
 -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은 ① 과세물건, ② 납세의무자, ③ 과세표준, ④ 세율의 네 가지임

가. 과세물건

- 19 CFR 제141.1조는 관세의 납세의무는 수입물품이 적재된 선박이 통관항구에 도착한 때 또는 선박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된 경우 미국의 관세영역에 도착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의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19 U.S.C. 제4장 제1절의 ‘성문화(Codification)’ 부분에서 관세율표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 및 면세대상의 목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관세의 과세대상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65)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59

- 또한 미국의 관세율표(HTSUS)의 일반주1도 외국에서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당해 표의 일반주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세의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임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관세율표 일반 주1의 대상에서 제외됨⁶⁶⁾
 - 시신과 그 시신이 안장된 관 및 꽃
 - 전기통신 전송물
 - 우주에서 반환된 물품
 - 사업, 공학기술, 탐구작업과 관련한 기록, 도표, 기타 데이터(종이, 카드, 사진, 청사진, 테이프 또는 다른 매체 형태인지 불문함)
 -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45일 이내에 반환된 물품으로 운송인 또는 외국 세관의 관할권 내에 있었던 것
 - 미국 국적의 항공기가 외국에서 국제운송 중에 사고, 고장 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제거된 부분품 또는 장비로서 제거된 지 45일 내에 미국으로 반환되고, 외국에서 운송인 또는 외국 세관의 관할권 내에 머물러있던 것
 - 국제운송수단에 남아있는 미국에서 수출된 벌크화물의 잔여물

나. 납세의무자

- 수입물품에 대하여 산정된 관세는 물품신고(Entry)⁶⁷⁾를 하는 때에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함⁶⁸⁾
 - 수입업자란 물품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물품신고는 화주, 구매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화주, 구매자, 수하인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할 수 있음⁶⁹⁾
- 일반적으로 화주 또는 구매자란 물품거래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자격을 갖춘 관세사(Customs broker)는 CBP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⁷⁰⁾

66) HTSUS(2017), General Note 3, (e) Exemption

67) 미국의 수입신고는 물품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CBP, "Entry," 2004, p. 10)

68) 19 U.S.C. 제1505조 (a) 산정된 관세 및 수수료의 납부

69) 19 U.S.C. 제1484조 물품신고

70) CBP, "Entry," 2004, pp. 8~9

- 예를 들어 물품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함
 - 실제 물품의 소유자(화주)나 구매자
 - 구매 또는 판매 대행인
 - 위탁매매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한 자
 - 대차 또는 임대계약으로 물품을 수입한 자
 - 무역박람회 전시를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자
 - 수리, 개조 또는 추가 조립을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자

- 수하인의 대리인이나 실제 물품의 화주가 아닌 자가 물품신고를 한 경우 수하인 신고(Declaration of consignee)나 화주 신고(Declaration of owner)를 하지 않으면 대리인이 관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⁷¹⁾하거나 신고인이 추가되는 관세⁷²⁾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함
 - 물품신고를 한 대리인이 수하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⁷³⁾
 - 실제 화주가 아닌 자가 물품신고를 한 경우 ① 신고 당시 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② 화주의 이름과 주소, ③ 물품신고일 90일 이내에 추가 또는 증가된 관세를 실제 화주가 납부하겠다고 기재된 신고서를 CBP에 제출하여야 함⁷⁴⁾

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말함⁷⁵⁾
 - 물건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종가세라 하고, 물품의 수량(개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종량세라 함

71) 19 U.S.C. 제1484조 (c) 대리인

72) 19 U.S.C. 제1484조 (d) 증가한 관세액에 대한 수입자의 책임

73) 19 U.S.C. 제1484조 (c) 대리인

74) 19 CFR 141.20 Actual owner's declaration and superseding bond of actual owner

75)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l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a%b3%bc%ec%84%b8%ed%91%9c%ec%a4%80&searchWord=&type=1&vocaId=4383> (검색일자: 2017. 8. 31.)

- 미국은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⁷⁶⁾
 - 종가세 대상물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량세 대상물품은 수입물품의 중량 또는 기타 수량 기준이, 복합세 대상물품은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과세표준이 됨
 - 19 U.S.C. 제1503조는 종가세 대상물품의 관세 산정은 정산(Liquidation) 또는 재정산(Reliquidation)에 따른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라. 관세율

- 관세율이란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며⁷⁷⁾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관세율표에 기재되어 있음
 - 미국은 19 U.S.C. 제1202조에 관세율표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방법전에 수록하지는 않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간행하고 있음⁷⁸⁾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신고가 이루어지는 때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한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⁷⁹⁾
 -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위하여 물품신고 되었던 물품이 소비를 위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경우 반출되는 때 적용되는 관세율
 - 종량세 또는 관세할당 대상이 아닌 물품이 최초 수입항에서 운송되기 위하여 즉시 반출을 위한 물품신고가 되고, 수하인이 지정한 항구에서 소비를 위한 신고가 된 경우 즉시반출을 위한 물품신고를 한 때 적용되는 관세율
 - 소비를 위한 신고가 담당 세관공무원의 관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소비를 위한 물품신고가 되었으나 아직 세관 관할권 내에 있던 물품이 초과운송, 비접근성, 파업, 불가항력 또는 예상치 못한 우발사건으로 인하여 항구 또는 반출이 예정된 기타 장소로부터 이동된 후 이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항구 또는 예정된 장소로 돌아온 경우 최초 물품신고가 이루어진 때 적용되는 세율

76)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6

77)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l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a%b4%80%ec%84%b8%ec%9c%a8&searchWord=&type=1&vocaId=4367> (검색일자: 2017. 8. 31.)

78) 19 U.S.C. 제1202조 기타1. 관세율표의 간행

79) 19 CFR 141.69 Applicable rates of duty

- 일반적인 세관검사나 이동에 관하여 CBP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서류를 통하여 최초 물품신고 된 물품과 반환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
- 최초 물품신고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물품신고를 한 때의 수하인과 돌아온 때의 수하인이 동일한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돌아왔을 때 물품신고는 다시 이루어져야 함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가. 관세의 확정방식

- 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만, 이렇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납부나 징수를 위하여 당해 관세채무의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함⁸⁰⁾
 - 이러한 관세채무 금액의 확인 및 통지를 납세의무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고 납부제도이며, 과세관청인 세관이 하는 제도가 부과고지제도임
- 미국은 19 CFR 제141.4조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다만, HTSUS의 일반주3(e)에 따라 미국의 관세율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⁸¹⁾과 다음의 물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⁸²⁾
 - 국제무역 또는 상업에 사용되는 선박, 비거주자가 미국 관세영역 내로 반입한 유람선
 - 컨테이너, 리프트밴, 철도차량 및 기관차, 트럭 캡 및 트레일러(신고는 제외되지만, 적하목록에 의하여 장부기록은 되어야 함)
 - 관세부과대상이 아닌 제8601호, 제8602호의 철도기관차, 제8606호의 비자주식 화차(수입자는 담보(Bond)를 제공하여야 함)

80) 김기인(2007), p. 92

81) 자세한 대상은 제2편 II. 관세의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과세요건 참조

82) 19 CFR 141.4 Entry required

나. 관세채권의 확보

- 미국은 물품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관세를 납부한 경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품신고를 제출하는 때에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Bond)를 제공하여야 물품이 반출됨⁸³⁾
 -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관세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⁸⁴⁾ 물품신고 시에 예정관세 (Estimated duty)를 기탁(Deposit)한 후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는 물품신고 시 예정관세(Estimated duty)를 기탁(Deposit)⁸⁵⁾하거나 담보 (Bond)를 제공하여야 함⁸⁶⁾
 - 납세신고가 제출되고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예정관세가 기탁된 경우 담보제공은 면제될 수 있음
 - 이 외에 담보가 보장하는 물품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청과의 거래에 대하여 체납이나 고발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은 면제될 수 있음 - 다만, 할당 대상물품이나 항만장이 쉽게 관세평가 또는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물품 등은 제외됨

1) 담보의 개념 및 당사자

- 관세담보(Bond)란 법 또는 규정에서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에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증권과 같음⁸⁷⁾
 - 담보는 수입물품에 대한 모든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수입자가 자신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됨
 - 미국에 물품을 상업적 용도로 수입하거나 미국을 경유하여 수입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담보가 필요함

83) 송선욱, 「미국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8. p. 82

84) 물품신고와 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제3편 I.수입 통관 절차 1. 일반수입 통관 참조

85) 19 U.S.C. 제1505조 관세 및 수수료의 기탁

86) 19 CFR 142.4 Bond requirements

87)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1

- 담보는 일반적으로 본인(Principal), 보증인(Surety), 수혜자(Beneficiary)의 3인 당사자로 구성되며, 본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보증인이 부담하게 됨⁸⁸⁾
 - 본인과 보증인은 담보의 채무자(Obligor)로써 본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담보를 제공하며, 보증인은 본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해를 책임지기로 동의함
 -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보세창고 운영인, 외국무역 지역 운영인 또는 세관과 사업을 하는 기타 당사자가 본인이 되며, 관세담보를 발행하도록 인증한 보험 회사가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됨
 - 관세청은 모든 관세담보의 수혜자임
- 본인과 보증인은 담보를 제공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세청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함⁸⁹⁾
 -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담보의 조건에 따라 설정되며, 담보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본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은 본인과 보증인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떤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관계없음
 - 만약 보증인이 관세청에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본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세청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는 아님

2) 담보의 형식 및 형태

- 관세담보는 CBP 양식 301⁹⁰⁾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과 보증인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⁹¹⁾
 - 담보에 본인 및 보증인의 이름과 그들의 대표적인 거소가 나타나야 하며, 본인 및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명칭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나타나야 함⁹²⁾
 - 또한 담보에는 그것이 실제 실행된 날짜, 담보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88)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1

89)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3

90) 서식은 부록 참조

91) 19 CFR 113.22 Witnesses required

92) 19 CFR 113.21 Information require on the bond

- 관세담보로 보증서의 형태 대신 보증서에서 요구되는 금액과 동일한 액면가의 현금, 미국채권, 미국채무증서, 재무성 중기증권, 재무성 단기증권이 기탁될 수 있음⁹³⁾
 - 현금, 미국채권 등을 보증서 대신 기탁하는 것은 수입자의 선택이며, 이 경우 CBP 양식 301에 기탁된 현금, 미국채권 등이 담보하는 행위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담보의 종류 및 금액

- 관세담보는 담보되는 관세거래 또는 물품신고의 수에 따라서 개별담보와 포괄담보로 구분됨
 - 수입과 관련된 관세거래나 물품신고가 단일 건인 경우 세수확보를 위하여 개별담보가 요구되고, 여러 건의 관세거래나 물품신고의 경우 포괄담보가 제출되어야 함⁹⁴⁾
 - 포괄담보는 연간 다수의 물품신고를 하는 수입자 또는 여러 항구를 통하여 수입을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함⁹⁵⁾
- 담보금액은 본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청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⁹⁶⁾, 담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개별담보의 담보금액은 물품가격에 모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만약 물품이 연방기관의 요건이나 제한 대상인 경우 담보금액은 물품가격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음⁹⁷⁾
 - 포괄담보의 최소담보금액은 5만달러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본인이 지급한 세액과 수수료의 총액의 10% 중 큰 금액임⁹⁸⁾
- 법 또는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담보의 최소금액은 100달러이며, 적정한 담보금액은 CBP가 결정함⁹⁹⁾

93) 19 CFR 113.40 Acceptance of cash deposits or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lieu of Sureties on bonds

94) 19 CFR 113.11 Bond application

95)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3

96)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2

97)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4

98)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S," 2006, p. 3

99) 19 CFR 113.13 Amount of bond

- CBP가 담보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함
 -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지급한 관세, 제세, 수수료에 대한 기록
 - 이전에 본인이 CBP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재반입한 기록, 관세법 또는 기타 법, CBP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기록
 - 보장되는 거래에 포함된 물품의 가격 및 성질
 - 손해배상지급을 포함한 담보 의무이행에 관한 본인의 기록 등

4) 담보의 요건

- 관세담보는 관세 납부, 물품신고이행, 물품검사 등과 같은 수입 또는 물품신고와 관련한 의무이행을 보장하여야 함¹⁰⁰⁾
 - 물품을 수입한 후 세관 관할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채무자(본인 및 보증인)는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출 시 부과되는 관세, 제세, 수수료를 기탁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CBP가 요구하는 경우 담보가 보장하는 물품신고에 대하여 추후에 발견된 추가 관세 등의 지불도 보장하여야 함
 - 본인은 물품이 즉시반출절차에 따라 물품신고 전에 반출된 경우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다음을 위하여 서류를 제출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CBP 관할로부터 물품을 반출할지 여부의 결정
 -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세평가
 - 물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
 -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결정
 - 본인은 서류 또는 증빙이 작성되기 전에 조건부로 물품이 반출된 경우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또는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 또는 증빙을 CBP에 제출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 본인은 요구되는 증빙이 작성되기 전에, 중량 또는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또는 미국으로의 반입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조건부로 물품이 반출된 경우 반출물품이 다음에 해당하여 CBP가 요구하는 때에 재반입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미국으로의 반입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00) 19 CFR 113.62 Basic importation and entry condition

- 「관세법」에서 요구하는 검사, 조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본인은 미국으로의 반입허가 전에 물품이 조건부로 반출된 경우 미국 반입허가와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표시, 청소, 소독, 폐기, 수출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한 처분을 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CBP 공무원의 책임하에 있는 장소 또는 부두 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받도록 허가받은 경우 본인은 다음에 동의하여야 함
 - 물품이 적절하게 반출될 때까지 검사 장소에 물품을 장치시키는 것
 - CBP에 의하여 물품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물품에 부착된 세관봉인을 유지하는 것 등
- 채무자는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된 대로 CBP 공무원의 비용 또는 보상을 지불할 것과 물품의 수입, 물품신고, 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손해·비용으로부터 미국과 그 공무원은 면죄라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물품에 대한 관세, 제세의 부과 없이 또는 경감된 세율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 본인은 면세요건에 규정된 방법 및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CBP에 적기에 제출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가. 세금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¹⁰¹⁾
 - 미국은 주 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음
- 소비세는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부과되며, 세율은 주마다 매우 다양함¹⁰²⁾

101) 성한경 외 2인(2014), p. 67

102) WTO, *Trade Policy Review Body UNITED STATES 2016*, 2017. 3, p. 49

- 하나의 물품에 여러 수준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소비세는 내국물품과 수입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됨
- 연방에서 부과하는 소비세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기금이나 일반 용도를 위한 일반 기금에 예치됨

〈표 2-II-1〉 소비세 부과목적과 대상

목적(기금)		대상물품
신탁	고속도로 신탁기금	휘발유, 경유, 알코올 연료, 에탄올, 메탄올, 바이오디젤, 액체연료, CNG, LPG, LNG, 기타 특수 연료, 고속도로 트랙터, 대형트럭, 트레일러, 대형 차량용 타이어, 고속도로용 대형 차량
	항공기 및 항공로 신탁기금	항공 화물, 항공 연료
	내륙 고속도로 신탁기금	경유 및 기타 액체연료
	항만유지 신탁기금	상업 화물
	지하 저장탱크 누출 신탁기금	특정 연료, 석탄으로 생산된 메탄올 및 에탄올 연료
	기름 누출 책임 신탁기금	원유 및 수입 석유제품
	낚시용 어류 복원 및 보트 신탁기금	낚시대, 릴 및 기타 낚시장비, 모터보트 연료, 소형엔진 연료
	토지 및 수자원 보호 신탁기금	활 및 화살, 일반 총기 및 탄약, 모터보트 연료
	탄진폐증 장애 신탁기금	석탄
일반	백신 상해 보상 신탁기금	특정 백신
	증류주, 와인, 맥주	증류주, 와인, 맥주
	담배	담배 조제품, 쉐럴 종이 및 튜브
	저연비 자동차	자동차(세금은 차량 연비 등급과 관련됨)
	오존파괴물질	특정 프레온가스(CFC) 및 관련 화학물질
	총기	기관총, 산탄총 등

자료: WTO, *Trade Policy Review Body UNITED STATES 2016*, 2017, 3, p. 50

나. 수수료

1)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는 CBP가 물품의 수입 신고 및 반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비용과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임¹⁰³⁾
 - MPF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CBP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음

〈표 2-11-2〉 물품취급수수료(MPF)

구분	수수료	
정식 통관 (가격 2,500달러 초과)	과세가격의 0.3464%	최소금액: 25달러 최대금액: 485달러
약식 통관 (가격 2,500달러 이하)	2달러	자동 통관
	6달러	수동 통관
	9달러	자동 또는 수동 관계없이 세관의 준비가 필요한 것
소규모 공항 또는 시설 이용 화물	해당 회계연도에 공항 또는 시설에 보상해야 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특송화물 또는 집중허브 시설 물품	1달러	각 개인화물당

자료: 19 CFR 24.23 Fees for processing merchandis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MPF는 FTA, TPA, 자유무역지역협정, 「특별무역법」 등에 따라 특혜관세(특별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음
 - 다만, 미-모로코 FTA, 미-요르단 FTA 적용대상의 경우 MPF는 면제되지 않음
 - 또한 특별관세율이 적용되는 특정물품의 경우도 MPF가 면제되지 않음

103) CBP, "Merchandise Processing Fee Analysis," 2016. 4, p. 2

〈표 2-11-3〉 무역특혜물품과 물품취급수수료(MPF)

구분	부과 여부	비고
FTA, TPA	면제	미-모로코, 미-요르단 FTA는 면제 제외
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면제	- 대미수출관세면세특구(웨스트뱅크 및 가자지구, 이집트, 요르단)는 면제 제외 - 이스라엘 물품은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면제 ¹⁾
「아프리카성장기회법」	부과	-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물품은 면제 - 제9819호의 섬유제품은 면제
「카리브연안경제부흥법」	면제	특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카리브연안무역협력법」	면제	특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HTSUS 제98류	면제	
미국관세영역 밖의 미국령의 섬	면제	특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일반특혜관세	부과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물품은 면제
민간항공기	부과	
연료중간체	부과	
의약품	부과	

주: 1) 이스라엘은 미국과 자유무역지역협정뿐 아니라 FTA도 체결하고 있음
자료: CBP, "MPF and Preferential Trade Programs," 2015. 5, pp. 1~2

2)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HMF)란 미국의 항구를 이용하는 자가 항구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CBP가 부과하는 수수료임¹⁰⁴⁾
 - HMF는 항구를 이용하는 수입화물, 국내 간 선적화물, 자유무역지대 반입화물, 여객 등에 대하여 부과되며, 항공기로 수입되거나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음
- HMF는 선박에 적재되었거나 하역된 화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0.125%가 부과됨¹⁰⁵⁾
 - 다만, 다음의 화물은 HMF가 면제됨
 - 병커유, 선박 또는 해상 창고 및 선박 장비

104) CBP,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83/~/_what-is-the-harbor-maintenance-fee-%28hmf%29%3F (검색일자: 2017. 9. 1.)

105) 19 CFR 24.24 Harbor maintenance fee

- 이전에 양륙된 적 없는 어류 및 기타 해양생물
- 미국 내 또는 미국과 인접국가 간 여객을 수송하는 페리
- 미국령 섬,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적재 또는 하역된 화물
- 내국수로연료세(Inland Waterway Fuel Tax) 대상인 연료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
- 미국으로 입항한 후 외국으로 즉시 운송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품(멕시코 또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화물은 제외)
- 미국, 미국의 대리인 또는 미국의 중개인의 물품 또는 선박
- CBP가 인증한 비영리 단체 또는 협동조합이 소유하거나 조달한 화물로서 인접국을 포함한 외국의 인도적 개발 원조에 사용하기 위한 것

Ⅲ.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함¹⁰⁶⁾
 - 수입물품의 가격이 관세를 산출하는 과세표준인 종가세 대상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임

- 관세액은 관세율에 과세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납세 의무자의 관세부담이 달라지며, 따라서 관세평가는 관세의 부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임¹⁰⁷⁾
 - 과세가격이 저가로 결정되면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고가로 결정되면 국제 무역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임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106)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layoutMenuNo=343&pageUnit=10&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a%b4%80%ec%84%b8%ed%8f%89%ea%b0%80&searchWord=&type=1&vocaId=1188> (검색일자: 2017. 7. 31.)

107) 김기인(2007), p. 289

-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제도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1947년 GATT 제7조의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을 마련하였으며,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WTO 평가협약이 발효되었음¹⁰⁸⁾
 - GATT 제7조의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이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1949년 세관목적에 관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브뤼셀평가협약)이 체결됨
 - 브뤼셀평가협약은 과세가격을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인 CIF 가격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과세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인 FOB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이 가입하지 않았음
 - 미국의 주도로 1979년 GATT 제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GATT 신평가협약)이 채택되었으며, GATT 신평가협약에서는 과세가격을 CIF로 택할지, FOB로 택할지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GATT 신평가협약은 WTO의 설립협정 부속서의 부속 협정의 하나로 WTO에 편입되었고, WTO 회원국은 WTO 평가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 미국은 1979년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을 통하여 GATT 신평가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으며, 19 U.S.C. 제1401a조에 관세평가 규칙을 규정하였음¹⁰⁹⁾

2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는 ① 거래가격, ②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④ 공제가격, ⑤ 산정가격, ⑥ 다른 가격이 결정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없을 때의 가격에 따라 이루어짐¹¹⁰⁾
 - 거래가격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용됨
 -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산정가격이 공제가격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물품의 산정가격이 결정될 수 없고 공제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격을 근거로 물품의 가격을 평가함

108) 김기인(2007), pp. 289~290

109) CBP, "Customs Value," 2006, p. 7

110) 19 U.S.C. 제1401a조 (a) Generally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포장비용, 수수료 등의 가산요소를 합친 금액임¹¹¹⁾

가) 실제지급금액

-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란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함¹¹²⁾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간접 지급금액이란 ①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인하한 금액 등을 말함¹¹³⁾
- 미국은 실제지급금액에서 수입 장소까지의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 보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요금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과세가격을 본선인도가격인 FOB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¹¹⁴⁾
 - WTO 평가협약은 제8조에서 수입 지점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비, 보험료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 수입 후에 발생한 일정 비용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함¹¹⁵⁾

111)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12)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13) CBP, "Customs Value," 2006, p. 8

114) 우리나라, 일본 등은 운송비 등을 가산요소로 명시함으로써 과세가격을 CIF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음

115)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표 2-III-1〉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공제요소
① 다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당한 비용 및 지출 - 미국으로 수입된 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또는 유지 및 기술지원 - 수입 이후 물품의 운반비용 ② 그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연방세, 미국에서 통상 판매인이 납부의무를 지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산정된 연방 소비세

자료: 19 U.S.C. 제1401a조 (b) (3)

나) 가산요소

-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포장비용, 수수료 등을 가산한 가격을 말함¹¹⁶⁾
 - 가산요소에 따른 비용은 ①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될 수 있음
 - 해당 비용이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산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음

〈표 2-III-2〉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야 하는 요소

가산요소
①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 ②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③ 적절히 할당된 생산지원금액 ④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수입물품의 매도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 ⑤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수입 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

자료: 19 U.S.C. 제1401a조 (b) (1)

116)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 포장비용(Packing Costs)

- 포장비용이란 물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운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 및 포장지 비용과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¹¹⁷⁾
- 이러한 비용이 인건비인지 또는 자재비인지 여부를 불문함

(2) 판매수수료(Selling Commissions)

- 판매수수료란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함¹¹⁸⁾
- 판매대리인이 판매자 등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업무란 판매물품의 구매자 찾기, 견본을 관리하고 장래의 구매자에게 소개하기, 수출서류 준비, 운송, 보험 등 수배 등이 있음¹¹⁹⁾
- 판매수수료는 가산요소로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만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매수수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음¹²⁰⁾
-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장정보 수집, 샘플 수집, 구매자의 요구사항 판매자에게 전달, 상품 조달, 상품 검사 및 포장, 선적 및 지불 준비 등이 있음

(3) 생산지원비용(Assist)

- 생산지원비용이란 수입물품의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물품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차액을 말함¹²¹⁾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지원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됨

117) 19 U.S.C. 제1401a조 (h) (3)

118) CBP, "Customs Value," 2006, p. 9

119) CBP, "Buying and Selling Commissions," 2006, p. 11

120) CBP, "Buying and Selling Commissions," 2006, pp. 8~9

121) 19 U.S.C. 제1401a조 (h) (1)

〈표 2-III-3〉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용역

생산지원
①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자재,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품목 ②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품목 ③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④ 미국 이외의 곳에서 개발되었고,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설계, 도안, 계획 및 스케치 다만, ④에 해당하는 서비스 및 활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지원으로 보지 않는다. - 미국 내 거주하는 자에 의해 이행된 것 - 수입물품의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일하는 자에 의해 이행된 것 - 미국 내에서 개발된 다른 기술, 설계, 디자인, 계획 및 스케치에 수반하는 것

자료: 19 U.S.C. 제1401a조 (h) (1)

□ 생산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¹²²⁾

-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을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구매한 경우 그 구매 비용 또는 수입자나 수입자와 관련 있는 자가 생산한 경우 그 생산비용
- 비용에는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지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사용, 수리, 변경 등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됨

(4)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Royalty or License Fee)

□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입된 상품의 판매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됨¹²³⁾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과세 여부는 ①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와 ②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됨¹²⁴⁾

□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지 여부는 ① 수입물품이 특허하에 생산되었는지 여부, ②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의 생산 또

122) CBP, "Customs Value," 2006, p. 12
 123) CBP, "Customs Value," 2006, p. 9
 124) 19 CFR 152.103 (f) Royalties or license fees

는 판매에 관여했는지 여부, ③ 수입자가 로열티 등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음¹²⁵⁾

- ①, ②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수입물품과 로열티 등은 관련성이 없고, ③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거래조건이 아니므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5) 사후귀속이익(Proceeds)

-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으로써 과세됨¹²⁶⁾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만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당금, 기타 다른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음¹²⁷⁾

2)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만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음 순위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¹²⁸⁾

〈표 2-III-4〉 거래가격의 적용 인정요건

인정요건
①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②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③ 구매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다만, 가산요소로 적절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없거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명된 경우

자료: 19 U.S.C. 제1401a조 (b) (2) (A)

125) CBP, *Valuation Encyclopedia(1980~2015)*, 2016, pp. 364~365

126) CBP, "Customs Value," 2006, p. 9

127) 19 CFR 152.103 (h)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128)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가) 수입물품의 사용에 대한 제한

- 수입물품을 구매자가 수입 후 처분 또는 사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음¹²⁹⁾
 - 다만, 해당 제한이 ① 법에 의해 부과 또는 요구되는 것, ② 물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제한하는 것, ③ 물품의 가격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모델연도의 개시 특정일 이전에는 판매 또는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물품의 가격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임¹³⁰⁾

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

- 수입물품의 판매 또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¹³¹⁾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지정된 수량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수입물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다른 물품을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함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한 해당 조건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다) 적절히 조정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절히 조정할 수 없다면 거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¹³²⁾

129)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30) 19 CFR 152.103 (k) Restrictions and conditions on sale

131) 19 CFR 152.103 (k) Restrictions and conditions on sale

132)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 적절히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한 정보란 그러한 금액, 차이, 또는 조정의 정확성을 입증해주는 정보를 말함¹³³⁾

라)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

-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수 없음¹³⁴⁾
-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표 2-III-5>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

특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형제, 자매(완전한지 또는 이복관계인지 여부 불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②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 ③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다른 조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자 ④ 동업자 ⑤ 고용인 및 피고용인 ⑥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 이상 소유, 통제 또는 점유한 자 ⑦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자를 통제하거나 그에 의해 통제받거나 또는 그에 의해 공동의 통제를 받는 자

자료: 19 U.S.C. 제1401a조 (g) (1)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라고 해서 거래가격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음¹³⁵⁾
- 해당 거래가격이 미국 내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자와 거래에서의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공제가격 또는 산정가격과 유사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됨

133) 19 U.S.C. 제1401a조 (h) (5)

134)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135) 19 U.S.C. 제1401a조 (b)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 이 경우 거래단계, 수량, 가산요소,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에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

나.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and similar merchandise)

-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던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¹³⁶⁾
 - 동일물품이란 평가대상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같은 국가 및 같은 사람에 의해 생산된 물품을 말함¹³⁷⁾
 - 상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물품도 포함함
 - 이 경우 생산지원에 해당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설계, 도안, 디자인, 계획 또는 스케치가 결합되었거나 구현되어 있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
- 수입물품의 동일물품을 찾을 수 없거나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적이 없는 경우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¹³⁸⁾
 - 유사물품이란 평가대상 물품과 같은 국가 및 같은 사람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특성과 구성 원자재가 평가대상 물품과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것을 말함¹³⁹⁾
 -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 물품과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특성과 구성 원자재가 평가대상 물품과 유사하고,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것도 포함함
 - 이 경우 생산지원에 해당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 설계, 도안, 디자인, 계획 또는 스케치가 결합되었거나 구현되어 있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

136) CBP, "Customs Value," 2006, p. 14

137) 19 U.S.C. 제1401a조 (h) (2)

138) CBP, "Customs Value," 2006, p. 14

139) 19 U.S.C. 제1401a조 (h) (4)

-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은 평가대상 물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하며, 그 거래가격은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거래와 같은 거래단계, 상당히 유사한 수량의 거래를 근거로 하여야 함¹⁴⁰⁾
- 만약 그러한 판매거래가 없다면 다른 거래단계이거나 수량이 다른 거래 또는 거래 단계와 수량이 모두 다른 거래를 그 차이를 조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두 가지 이상의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가격 중 더 낮거나 가장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함

다.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물품, 동일 물품, 유사물품이 수입 후 미국에서 재판매된 가격에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된 공제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¹⁴¹⁾
- 공제가격은 수입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가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됨
 - 수입자가 산정가격의 적용을 선택하였으나 산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제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가 이루어짐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기 위하여 어떠한 생산지원을 제공한 자에 대한 판매거래는 공제가격 산출에 사용될 수 없음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재판매가격이란 다음의 단가를 말함¹⁴²⁾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 일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때에 판매된 경우 물품이 그 날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때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었을 때의 단가
 -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의 단가란 수입 후 첫 번째 거래단계 또는 이후 거래단계에서 다른 어떤 거래보다 많은 수량으로, 그 단가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수량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판매된 단가를 말함

140) 19 U.S.C. 제1401a조 (c)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and similar merchandise

141) CBP, "Customs Value," 2006, p. 14

142) 19 U.S.C. 제1401a조 (d) Deductive value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이지만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일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때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었을 때의 단가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대상 물품의 수입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 물품이 이후 거래단계에서 수입일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었을 때의 단가
 - 이 단가는 수입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담당 세관공무원에게 동 방법의 채택을 지정 및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재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¹⁴³⁾
- 일반적으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정한 수수료 또는 수출국과 상관없이 동종·동질물품의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에 대해 추가되는 금액
 -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둘 중에 하나의 금액만 공제됨¹⁴⁴⁾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출국에서 미국으로 국제운송되면서 발생한 운송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장소로부터 미국 내 인도장소로 운송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운송비, 보험료 및 관련 비용으로 일반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시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연방세,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산정된 연방소비세
 - 수입일 이후 180일이 경과되기 전 재판매된 가격에 의한 경우 수입 후 추가 거래단계에서 추가되는 가격으로서 거래단계 진행에 따른 가격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금액

143) 19 U.S.C. 제1401a조 (d) Deductive value

144) CBP, "Customs Value," 2006, p. 15

라. 산정가격(Computed value)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제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¹⁴⁵⁾
 - 또한 수입자가 공제가격 대신 산정가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 적용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산정가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가격임¹⁴⁶⁾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또는 가격, 그리고 조립 및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수출국가가 원자재에 대하여 또는 그 특성에 따라 부과하는 내국세액이 해당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물품이 수출된 때에 환급된 경우 해당 내국세액은 포함하지 않음
 - 수출국 내 생산자가 제조한 수입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때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원자재비용,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
 - 포장비용

마. 다른 가격이 결정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의 가격(Value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or used)

-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없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공제가격 또는 산정가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부터 파생된 가격을 기본으로 평가되어야 함¹⁴⁷⁾
 -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한 시기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¹⁴⁸⁾
 - 평가대상 물품의 생산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음

145) CBP, "Customs Value," 2006, p. 15

146) 19 U.S.C. 제1401a조 (e) Computed value

147) 19 U.S.C. 제1401a조 (f) Value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or used

148) 19 CFR 152.107 (b) Identical merchandise or similar merchandise

- 동일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음¹⁴⁹⁾
- 수입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90일 이내에 판매된 경우에 대한 요건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음¹⁵⁰⁾

- 이러한 방법은 가격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가격은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없음¹⁵¹⁾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
 - 선택 가능한 두 가지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가격
 -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물품가격
 - 평가대상 물품과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산정가격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이외의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미국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
 - 최저기준 평가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149) 19 CFR 152.107 (b) Identical merchandise or similar merchandise

150) 19 CFR 152.107 (c) Deductive value

151) 19 U.S.C. 제1401a조 (f) Value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or used

IV.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1 품목분류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상품의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물품 및 관세 분류체계인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을 채택함¹⁵²⁾
 - 1988년 1월 1일 ‘HS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204조에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를 채택하여 1989년 발효하였음¹⁵³⁾

- HS는 국제적으로 21개의 부(Section), 97개의 류(Chapter)로 구성되며, 약 5,000여개의 호(Heading) 및 소호(Subheading)에 따른 품명에 의하여 물품이 분류됨¹⁵⁴⁾
 - 4단위 호의 처음 2자리는 류를 나타내며, 필요한 경우 2자리가 더하여져 6단위의 소호로 세분됨

152)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9

153)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154)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10

- 미국은 국제통일단위인 6단위에 2단위를 추가한 8단위를 관세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목적으로 10단위를 사용하기도 함
- ‘HS 협약’의 품목분류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상품 분류에 사용되는 해석규칙, 부·류 및 소호의 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하고 있음¹⁵⁵⁾
 - 법적 구속력을 갖는 HTSUS의 구성요소는 ① 통칙(General Notes), ② 해석의 일반규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③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¹⁵⁶⁾, ④ 관세율 및 관련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4자리, 6자리 또는 8자리의 코드로 구성된 22개 부 및 99개 류, 부 및 류의 주와 미국의 추가 주, ⑤ 화학 물질, 의약품, 염료 중간체에 대한 부록임
 - 그 외에 통계 주석, 수량 단위, 목차, 각주, 색인 등이 HTSUS를 구성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
- ‘HS 협약’은 추후 사용을 위한 제77류와 각 국가별 사용이 가능한 제98류 및 제99류를 유보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22부에 제98류 및 제99류를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¹⁵⁷⁾
 - 제98류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포함됨
 - 제99류는 정책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제1류 내지 제98류까지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부수적인 법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155)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156) HTSUS(2017) General Notes 1,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 (a) 실제 용도(actual use)를 제외한 용도에 따른 품목분류는 그 물품의 수입 당시 또는 직전에 해당 물품과 동종 또는 동급의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된 용도(principal use)에 따라 결정됨
- (b) 수입품이 실제 용도(actual use)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수입 시에 의도되어야 하며, 그 용도대로 사용한 증거가 물품의 반입일로부터 3년 내에 제시되어야 함
- (c) 부분품이란 어떤 완제품의 일부분으로써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 (d) 2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혼합섬유제품에 관한 제11부의 원칙은 방직용 섬유재료가 명시되어 있는 기타의 조항의 품목분류에도 적용됨

157)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2 관세율 수준 및 종류

가. 관세율 수준

- WTO에서는 HS 코드를 기준으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 평균 관세율을 산출하고 있음¹⁵⁸⁾
 - 농산물에는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곡물 및 그 조제품, 설탕 및 과자류, 음료 및 담배, 면섬유 등이 포함됨
 - 비농산물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수산물, 광물 및 금속 제품, 석유 및 화학 제품, 목제품, 식물 및 의류, 기계 및 전자기기, 수송기기 등이 분류됨

〈표 2-Ⅳ-1〉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¹⁾

농산물	비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동물(1류), 육류(2류) 및 이를 원재료로 가공식품(16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5류) - 낙농제품(4류) - 채소(7류), 과일(8류), 수액(13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14류) - 커피 등 차(9류, 18류) - 곡물 및 그 조제품(10류, 11류, 19류, 21류) - 종자 및 기름(12류, 15류) - 설탕 및 과자류(17류) - 음료 및 담배 (22류, 24류) - 면섬유(52류) - 기타 농산물(23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3류) - 광물 및 금속제품(25류, 26류, 31류, 68~71류, 72~76류, 78~83류) - 석유제품(27류) - 화학제품(44~45류, 47~49류, 94류) - 목제품 및 종이(44~45류, 47~49류, 94류) - 식물 및 의류(50~63류, 65류) - 고무, 가죽, 신발 등의 제품(40류, 41~43류, 64류) - 기계류(84류) - 전자기기(85류) - 승용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86~89류) - 기타 제조업 제품(46류, 66류, 67류, 90~93류, 95~97류)

주: 1) 대표적인 류를 기재한 것으로 세부적인 호, 소호에 따라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p. 32~34(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78에서 재인용)

158)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77

- 미국의 2016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는 3.5%이며, 농산물은 5.2%, 비농산물은 3.2%로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세율차는 크지 않음
- 2016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 3.5%는 우리나라(13.9%), 일본(4.0%), EU(5.2%)보다 낮은 수준임
 - 농산물의 경우 5.2%로 우리나라(56.9%), 일본(13.1%), EU(11.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비농산물의 3.2%는 일본(2.5%)을 제외한 우리나라(6.8%), EU(4.2%)보다 낮음
- 2015년 평균 MFN 실행관세와 비교해보면 전체 품목,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음

〈표 2-Ⅳ-2〉 미국 관세율 수준(2017년 기준)

(단위: %)

구분	기준연도	미국	우리나라	일본	EU
전체품목	2016	3.5	13.9	4.0	5.2
	2015	3.5	13.9	4.0	5.1
농산물	2016	5.2	56.9	13.1	11.1
	2015	5.2	56.8	12.9	10.7
비농산물	2016	3.2	6.8	2.5	4.2
	2015	3.2	6.8	2.5	4.2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 82, 101, 105, 177;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6*, 2016, p. 81, 100, 104, 175

- 양허관세(Bound duty)¹⁵⁹⁾와 MFN 실행관세의 범위를 구간별로 나눈 후 각 구간에 적용되는 품목(Tariff lines)¹⁶⁰⁾이 전체 품목¹⁶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비농산물은 무관세 품목이 가장 많음
- 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양허관세 기준 30.2%, MFN 실행관세 기준 30.8%이며, 비농산물의 무관세 적용 품목 비율은 각각 49%, 48.4%로 농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9)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부속서인 관세양허표에 의하여 적용되는 세율(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p. 205)

160) 양허관세의 경우 미양허 품목은 제외된 품목(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 32)

- 50%를 초과하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농산물은 0.7(양허관세)~1.1%(MFN 실행관세), 비율인 반면 비농산물은 50% 이하의 관세율만 적용되고 있음

〈표 2-Ⅳ-3〉 미국 관세율 분포: 양허관세 및 실행관세(2017년 기준)

(단위: %)

구분		무관세	0% 초과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15% 이하	15% 초과 25% 이하	25%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 산 물	양허관세	30.2	44.5	12.3	4.8	3.2	1.6	0.2	0.5
	2016년 MFN 실행관세	30.8	46.0	11.8	4.7	3.2	1.6	0.3	0.8
	2015년 수입 ¹⁾	48.9	40.2	14.1	3.1	2.2	1.0	0.4	0.1
비 농 산 물	양허관세	49.0	25.2	17.0	4.8	1.9	0.5	0.0	0.0
	2016년 MFN 실행관세	48.4	26.3	16.7	4.8	1.8	0.4	0.0	0.0
	2015년 수입	52.6	34.9	6.9	1.0	3.6	1.0	0.0	0.0

주: 1) 전체 수입 중 해당 구간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비중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 177

- 각 산업군별 품목을 세분화하여 관세율을 살펴보면 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음료와 담배(MFN 19.1%, 양허 15%), 낙농제품(MFN 16.6%, 양허 16.6%)이며, 비농산물의 경우 의류(MFN 및 양허 11.6%)임
-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산물에서는 기타 농산물(MFN 61%, 양허 58.9%)로 나타났으며, 비농산물에서는 목제품과 종이제품(MFN 89.8%, 양허 90.2%)로 나타났음
 - 평균관세율이 높은 낙농제품은 무세 비율도 0.3%로 매우 낮았으며, 석유제품(MFN 및 양허 0%), 의류(MFN 2.8%, 양허 2.9%)도 무세 비율이 낮음
- 농산물의 음료와 담배에 적용되는 350%(MFN 및 양허)가 최고세율로 나타났으며, 비농산물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MFN 및 양허관세 모두 55%가 적용되는 가죽과 신발 등임

〈표 2-Ⅳ-4〉 미국 산업별 관세율 수준(2017년 기준)

(단위: %)

품목	양허관세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¹⁾	최고 세율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고 세율	비중 ²⁾	무관세 비중 ³⁾
동물제품	2.3	(30.8)	26	2.2	(30.8)	26	(0.6)	(21.4)
낙농제품	16.0	(0.3)	63	16.6	(0.3)	63	(0.1)	(13.5)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4.9	(20.2)	132	4.7	(21.1)	132	(1.5)	(25.8)
커피, 차	3.3	(53.5)	48	3.3	(53.5)	48	(0.6)	(76.4)
곡물 및 그 조제품	3.6	(21.0)	38	3.1	(20.1)	38	(0.7)	(32.8)
종자, 기름	4.4	(23.9)	164	7.2	(25.9)	164	(0.4)	(34.7)
설탕 및 과자류	13.2	(2.9)	64	16.4	(2.7)	64	(0.2)	(6.0)
음료, 담배	15.0	(27.7)	350	19.1	(26.2)	350	(1.1)	(50.6)
면섬유	4.6	(38.3)	16	4.6	(38.3)	16	(0.0)	(79.9)
기타 농산물	1.1	(58.9)	52	1.0	(61.0)	52	(0.4)	(67.8)
어류 및 수산물	1.0	(82.1)	35	0.8	(84.6)	35	(0.9)	(92.0)
광물, 금속	1.7	(60.6)	38	1.7	(60.9)	38	(11.3)	(69.3)
석유제품	6.5	(0.0)	7	6.5	(0.0)	7	(6.8)	(0.0)
화학제품	2.8	(40.7)	7	2.8	(40.5)	7	(10.7)	(67.0)
목제품, 종이제품	0.5	(90.2)	14	0.5	(89.8)	16	(4.0)	(91.6)
직물	8.0	(14.8)	34	7.9	(15.0)	34	(2.1)	(13.2)
의류	11.6	(2.9)	32	11.6	(2.8)	32	(4.0)	(0.9)
가죽, 신발 등	3.9	(39.4)	55	3.8	(39.1)	55	(2.1)	(15.0)
비전기기계	1.2	(65.2)	10	1.2	(65.2)	10	(15.0)	(78.5)
전기기계	1.4	(57.2)	15	1.7	(49.0)	15	(14.6)	(68.5)
운송기기	3.0	(55.7)	25	3.1	(55.3)	25	(14.8)	(15.7)
기타 제조업 제품	2.1	(54.2)	32	2.4	(44.2)	32	(7.5)	(71.7)

주: 1) 해당 품목군의 전체 HS 6단위 중 무세인 HS 6단위의 비중

2)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3)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p. 175

나. 관세율표의 구성¹⁶¹⁾

- HTSUS는 관세, 품목번호, 품명 등이 기재된 몇 개의 열로 구성된 표의 형태임
 - 열에는 호, 소호, 통계적 주석, 품명, 수량 단위, 관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첫 번째 열의 표제는 호(Heading)/소호(Sub-heading)로서 4단위, 6단위, 8단위의 3단계 코드로 구성된 품목번호가 표기됨
 - 품목번호 4단위는 호, 6단위 또는 8단위는 소호라고 부르는데, 4단위와 6단위는 국제적 통일 단위이며 8단위는 국가 단위임
 - 관세율은 8단위 품목번호에 기재되며, 8단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
- 두 번째 열에는 통계 접미사(Statistical Suffix)가 표기되는데, 관세 목적의 품목보다 더 세분화된 무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추가된 주석임
 - 8단위의 품목번호에 2단위 이상의 통계보고용 번호를 추가한 형태로 관세율은 8단위에서 결정되므로 8단위가 동일한 품목의 경우 10단위 번호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됨
 - 해당 열이 비어 있는 경우 통계보고용 번호는 8단위 품목번호에 '00'을 추가하면 됨
 - 10단위 통계보고용 번호는 무역자료의 수집 및 통계를 위한 것이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세 번째 열의 품명(Article Description)은 호, 소호, 통계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임
 - 물품은 해석의 일반규칙 또는 필요한 경우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에 따라서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됨
- 네 번째 열에는 물품을 통계 목적으로 집계하는 수량 단위(Unit of Quantity)가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단위는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함
 - 수량 단위는 하나의 품목에 두 개 이상이 표기되기도 하는데 두 번째 단위는 할당량과 같은 수입규제 조치에 사용되는 단위임

161)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p. 33~35

- 다섯 번째 열은 미국 관세영역¹⁶²⁾에 들어오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Rates of Duty)이 표기됨
 - 다섯 번째 열은 Column 1과 Column 2로 나뉘며 Column 1은 다시 일반(General) 관세율 및 특별(Special)관세율로 구분됨
 - 일반관세율은 최혜국 또는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 국가에 대한 관세율로 미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적용받는 세율임
 - 특별관세율은 특정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장려하거나 특정 산업의 교역 촉진,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시장통합을 위하여 도입된 세율임
 - Column 2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¹⁶³⁾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로 해당 세율은 일반관세율의 NTR 관세율보다 높음

[그림 2-IV-1] 미국 관세율표 예시

Heading/ Subheading	Stat. Suf- fix	Article Description	Unit of Quantity	Rates of Duty	
				1 General	2 Special
0101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Horses:			
0101.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Free	Free
	10	Males.....	No.		
	20	Females.....	No.		
0101.29.00		Other.....		Free	20%
	10	Imported for immediate slaughter.....	No.		
	90	Other.....	No.		
0101.30.00	00	Asses.....	No.	6.8%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Other:			
0101.90		Imported for immediate slaughter.....	No.	Free	Free
0101.90.30	00	Other.....	No.	4.5%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0101.90.40	00	Other.....	No.	4.5%	Free (A+, AU,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0102		Live bovine animals:			
		Cattle:			
0102.21.00		Purebred breeding animals.....		Free	Free
		Dairy:			
	10	Male.....	No.		
	20	Female.....	No.		
		Other:			
	30	Male.....	No.		
	50	Female.....	No.		

자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s://hts.usitc.gov/current> (검색일자: 2017. 7. 21.)

162) HTSUS(2017) General Notes 2. 관세율표에서는 미국 관세영역이란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만을 포함함

163) 쿠바, 북한(HTSUS(2017) General Notes 3. (b) Rate of Duty Column 2

다. 관세율의 종류

1) 일반관세율(General duty)

- 법정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일반 또는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 국가에 적용됨¹⁶⁴⁾
 - 특별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적용됨

2) 특별관세율(Special duty)

- 자유무역협정 등 특별관세율 대우 프로그램에 따른 세율로서 특별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적절히 분류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임¹⁶⁵⁾
 - 하나의 물품에 둘 이상의 특별관세율 대우 프로그램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됨
 - 특별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이거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물품을 수혜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한 경우 일반관세율이 적용됨

164) HTSUS(2017) General Notes 3, (a) Rate of Duty Column 1

165) HTSUS(2017) General Notes 3, (a) Rate of Duty Column 1

〈표 2-Ⅳ-5〉 특별관세율(Special duty)의 종류

코드	종류
A, A*, A+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H	「미국-바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	북미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물품(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MX	북미자유무역협정, 멕시코 물품(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CL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KR	미국-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MA	미국-모로코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OM	「미국-오만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P+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SG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IL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1985년 법률」(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of 1985)
CO	미국-콜롬비아 무역촉진협정(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PA	「미국-파나마 무역촉진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미국-페루 무역촉진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JO	「미국-요르단 자유무역지역 이행에 관한 법률」(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B	「자동차 무역법」(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C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K	의약품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Pharmaceutical Products)
L	염료 중간체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D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E, E*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R	「미국-카리브연안 무역협력법」(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자료: HTSUS(2017) General Notes 3. (c) Products Eligible for Special Tariff Treatmen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개발도상국에게 적용되는 특혜세율로서 HTSUS에서 “A”, “A*”, 또는 “A+”로 표시됨¹⁶⁶⁾
 - “A”는 특혜가 적용되는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며, “A*”는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적용됨
 - “A+”는 무세(free)라는 표시와 함께 기재되며, 최빈개발도상국에게 적용되는 세율임

- 일반특혜관세는 수혜국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 미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¹⁶⁷⁾
 - 수혜국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란 수혜국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의 합계가 수입 통관 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동일한 국가연합에 속하는 둘 이상의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은 하나의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것으로 간주함

166) HTSUS(2017) General Notes 4,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167) HTSUS(2017) General Notes 4,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표 2-IV-6〉 일반특혜관세(GSP) 수혜국가

구분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독립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브라자빌), 콩고(킨샤사), 지부티,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예멘공화국,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상투 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티모르레스테, 토고, 통가, 튀니지, 터키,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비독립국가 및 지역	앵귤라, 영국령 인도양지역, 크리스마스섬(호주), 코코스(킬링)제도, 쿡제도,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 허드섬과 맥도널드제도, 몬트세라트, 니우에, 노퍽섬, 핏케언제도, 세인트헬레나, 토켈라우, 영국령버진군도, 윌리스푸투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서부사하라
국가연합 (하나의 국가로 취급)	안데스그룹(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WAEMU)(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보츠와나, 모리셔스, 탄자니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카리브공동시장(CARICOM)(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트세라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빈개발도상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킨샤사), 지부티,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예멘공화국, 르완다, 사모아, 상투 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탄자니아, 솔로몬제도, 티모르레스테, 토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자료: HTSUS(2017) General Notes 4,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나) 협정관세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및 무역촉진협정(Trade Promotion Agreement)

- 미국은 호주, 바레인, 북미(캐나다, 멕시코), 칠레, 대한민국, 모로코, 오만, 도미니카공화국-중미,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와 무역촉진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스라엘, 요르단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HTSUS에서는 자유무역지역 협정에 관한 주해를 규정하고 있음

〈표 2-IV-7〉 HTSUS의 FTA 협정세율 규정

구분	규정
미국-호주 FTA	General Notes 28,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바레인 FTA	General Notes 30,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NAFTA	General Notes 12,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칠레 FTA	General Notes 26,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미국-한국 FTA	General Notes 33,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모로코 FTA	General Notes 27,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오만 FTA	General Notes 31,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	General Notes 29,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싱가포르 FTA	General Notes 25,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미국-콜롬비아 TPA	General Notes 34,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미국-파나마 TPA	General Notes 35,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미국-페루 TPA	General Notes 32,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자료: HTSUS(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각 협정에서 양허한 물품을 체약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하였거나 각 협정에서 정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을 한 후 미국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됨
 - 자유무역협정, 무역촉진협정 대상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입되는 경우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도 면제됨¹⁶⁸⁾
 - 다만 미-모로코 FTA 적용대상 물품은 물품취급수수료가 부과됨

(2)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미국은 이스라엘¹⁶⁹⁾, 요르단¹⁷⁰⁾과 각각 자유무역지역 설립에 관한 협정을 하고, 이스라엘 또는 요르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함
 -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대미수출관세면세특구(Qualifying Industrial Zone)¹⁷¹⁾를 포함함
- 이스라엘¹⁷²⁾ 또는 요르단¹⁷³⁾과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에서 정한 물품 중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스라엘 또는 요르단에서 생산된 물품이란 ①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② 해당 국가에서 새롭거나 전혀 다른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의미함
 - 새롭거나 다른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의 합계가 수입 통관 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를 말함
 - 해당 비율의 계산 시 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평가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비용 또는 가격도 포함될 수 있음

168) HTSUS(2017) General Statistical Notes 1. (c)

169) 1985년 4월 22일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Israel) 발효

170) 2000년 10월 24일 미국과 요르단 하심왕국의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the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발효

171) 이스라엘과 요르단 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미국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공업지대로 물품 반입 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됨(HTSUS(2017) General Notes 3. (a) (v) (G))

172) HTSUS(2017) General Notes 8,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of 1985

173) HTSUS(2017) General Notes 18,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다) 특정물품에 적용하는 특별관세

- 미국은 특정 산업의 교역을 촉진¹⁷⁴⁾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을 정하여 무세를 적용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또는 OE(Original Equipment)용 자동차용품에 대하여 무세(Free (B))를 적용함¹⁷⁵⁾
 - 캐나다에서 생산된 물품이란 NA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함
 - 무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제87류의 제8702호(10인승 이상의 차량), 제8703호(승용자동차), 제8704호(화물자동차) 또는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된 트럭 트랙터(automobile truck tractor)를 말함
 - 무궤도전차, 삼륜차는 제외함
 - OE용 자동차용품이란 미국의 자동차 생산자의 주문, 계약, 협약에 따라 캐나다 공급자로부터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을 의미함
 - 트레일러나 트레일러의 제조 시 사용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음
-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항공기 엔진, 지상비행훈련장치와 그들의 부분품, 부속품, 조립품은 해당 용도로 사용할 것을 증명하는 경우 무세(Free (B))가 적용됨¹⁷⁶⁾
 - 민간항공기에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연안경비대(Coast Guard)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은 제외함
 - 해당 물품은 항공기의 개발, 시험, 평가, 제조, 수리, 유지, 보수, 변경, 개조에 OE용 또는 RE(Replacement Equipment)용으로 사용되어야 함
 - 또한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제조 또는 운영되는 물품이어야 함

174)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4

175) HTSUS(2017) General Notes 5. Automotive Products and Motor Vehicles Eligible for Special Tariff Treatment

176) HTSUS(2017) General Notes 6. Articles Eligible for Duty-Free Treatment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의약품에 관한 관세율표 별표(Pharmaceutical Appendix to the Tariff Schedule)¹⁷⁷)에서 명시하는 의약품은 수입 시 무세(Free (K))가 적용됨¹⁷⁸)
 - 별표 1의 물품과 별표 2의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포함하는 별표 1의 물품의 염, 에스테르 및 수화물을 포함함
 - 염, 에스테르 및 수화물은 별표 1의 물품과 동일한 HS 6단위에 분류되어야 함
- 염료중간체에 관한 관세율표 별표(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Appendix to the Tariff Schedule)¹⁷⁹)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 무세(Free (L))가 적용됨¹⁸⁰)

라) 기타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특별관세

(1)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CBERA)¹⁸¹)

- 카리브연안의 국가, 영역, 정치계승체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로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고, 해당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에 적용됨
 - 수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란 ①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② 해당 국가에서 새롭거나 전혀 다른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의미함
 - 새롭거나 다른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의 합계가 수입 통관 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평가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율의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음
 -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하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이전 수혜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가공의 직접비용 또한 해당 비율 계산 시 합산됨

177) 대상물품은 <https://hts.usitc.gov/current> 참조

178) HTSUS(2017) General Notes 13. Pharmaceutical products

179) 대상물품은 <https://hts.usitc.gov/current> 참조

180) HTSUS(2017) General Notes 14.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181) HTSUS(2017) General Notes 7.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

〈표 2-IV-8〉 CBERA 수혜국

수혜국			이전 수혜국
앤티가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엘살바도르
바베이도스	벨리즈	퀴라소	과테말라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온두라스
아이티	자메이카	몬트세라트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앤티리스 ¹⁾	세인트키트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 버진군도	코스타리카
			파나마

주: 1) 적용대상목록에는 남아 있지만, 법적지위 변경으로 특혜는 종료되었음
 자료: HTSUS(2017) General Notes 7,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CBERA)

- 특혜대우를 받기 위하여 단순가공 이상의 작업 수행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수혜국에서 단순 조립 또는 포장이나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희석 등의 작업만 수행할 경우 특혜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수혜국에서 물품의 가치가 향상되거나 상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는 미국 또는 수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CBERA에 따른 특혜관세는 HTSUS 특별관세란에 “E” 또는 “E+”로 표시됨
 - E는 시계와 시계부분품을 제외한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로 E가 표시된 모든 물품에 특혜가 적용됨
 - E+는 해당 표시가 있는 물품 중 일부 물품과 일부 국가는 특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2)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¹⁸²⁾

-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혜세율로 “D”로 표시됨
 - 특혜대우는 2025년 9월 30일 종료됨

182) HTSUS(2017) General Notes 16,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 AGOA에 따른 특혜는 수혜국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 해당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수입된 경우 적용됨
 - 수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란 ①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② 해당 국가에서 새롭거나 전혀 다른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것을 의미함
 - 새롭거나 다른 물품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이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과 개발도상국가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의 직접적인 비용의 합계가 수입 통관 시의 평가가격의 35%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미국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비용 또는 가격이 평가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율의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음

〈표 2-IV-9〉 AGOA 수혜국

수혜국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니비사우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자료: HTSUS(2017) General Notes 16.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3) 「미국-카리브연안 무역협력법」(CBTPA)¹⁸³⁾

- 카리브연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세율로 HTSUS의 특별세율란에 “R”로 표시됨
 -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미국이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발효된 날 또는 2020년 9월 30일 중 더 빠른 날에 특혜가 종료됨
 - 어떤 물품에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에 따른 관세율과 CBTPA에 따른 관세율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둘 중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됨

183) HTSUS(2017) General Notes 17.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of 2000

- CBTPA에 따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혜국에서 완전히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거나 NAFTA 규정을 충족한 물품이 해당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어 수입되어야 함
 - 일부 신발¹⁸⁴의 경우 NAFTA 규정 대신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에 따른 규정을 충족시키면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수혜국에서 단순 조립 또는 포장이나 본질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희석과 같은 공정만 수행한 경우 특혜는 적용되지 않음
 - 특혜대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FTA 체결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이전 수혜국은 수혜국과 동일하게 취급됨
 - 다만, 이전 수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어 수입된 물품은 특혜대우를 받을 수 없음

〈표 2-IV-10〉 CBTPA 수혜국

수혜국		이전 수혜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퀴라소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자료: HTSUS(2017) General Notes 17. 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of 2000

3) 법정관세율

- 쿠바 또는 북한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일반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품목분류법」(Tariff Classification Act of 1962), 「통상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통상법」(Trade Act of 1974), 기타 법률 또는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결정됨¹⁸⁵
 - 물품이 쿠바 또는 북한에서 직접 또는 간접 수입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함

184) 제6403.59.60호, 제6403.61.30호, 제6403.99.60호, 제6403.99.90호

185) HTSUS(2017) General Notes 17. (b) Rate of Duty Column 2

4) 잠정관세율

- 미국은 HTSUS의 제99류에 제1류 내지 제98류의 조항의 일시적인 수정 또는 변경 사항, 다른 법에 따른 수입규제나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¹⁸⁶⁾
 - 제99류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율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1류 내지 제98류의 관세율 대신에 적용됨

- 제99류는 총 20개의 절¹⁸⁷⁾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법안, 무역법안에 따른 잠정 변경, 「농업조정법」에 따른 추가 수입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제4절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 따라 「농업조정법」(Agreement on Agriculture)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¹⁸⁸⁾
 - 소고기, 양고기, 밀크와 크림, 버터, 치즈, 땅콩, 면사 등에 대하여 적용됨
 - 제5절 내지 제20절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할당물량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품목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Ⅳ-11〉 HTSUS 제99류에 따른 잠정관세율

구분		유효기간
제1절	추가 의무를 위한 임시법안	종료
제2절	관세율의 잠정 경감	종료
제3절	무역법안에 따른 잠정수정	중지 또는 종료될 때까지
제4절	농업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농업조정법」 제22조에 따른 추가수입규제	중지 또는 종료될 때까지 ¹⁾
제8절	농산품 무역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정에 따른 잠정수정	2017년 12월 31일
제12절	미-모로코 FTA에 따른 수정	2023년 12월 31일
제13절	미-호주 FTA에 따른 수정	2022년 12월 31일
제15절	미-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에 따른 수정	2025년 12월 31일
제16절	미-오만 FTA에 따른 수정	2018년 12월 31일
제17절	미-페루 TPA에 따른 수정	2025년 12월 31일

186) HTSUS(2017) 제99류 U.S. Notes 1

187) 제5절 내지 제7절, 제9절 내지 제11절, 제14절은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되었음

188) HTSUS(2017) 제99류 제6절 SAFEGUARD MEASURES PURSUANT TO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표 2-IV-11〉의 계속

구분		유효기간
제18절	미-콜롬비아 TPA에 따른 수정	2026년 12월 31일
제19절	미-파나마 TPA에 따른 수정	2028년 12월 31일
제20절	미-한국 FTA에 따른 수정	2026년 12월 31일

주: 1)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루, 오만,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수입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HTSUS(2017) 제99류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RADE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관세할당¹⁸⁹⁾

- 미국은 입법, 대통령 선포 또는 집행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을 시행하고 있음
 - CBP는 수입할당을 관리하지만,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국제 무역위원회, 농무부, 해양수산부, 상무부 등의 정부기관이 할당량을 결정하고 수정함
- 미국의 수입할당은 할당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한 수입 가능 여부에 따라 절대할당과 관세할당으로 구분됨
 - 절대할당은 특정기간 동안 미국에 진입할 수 있는 특정물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된 할당량이 모두 수입되면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입은 금지됨 - 2017년 현재 미국에서 절대할당량을 설정한 물품은 없음
 - 관세할당은 할당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물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지는 않음
- 관세할당은 특정 법에서 규정하거나 HTSUS에 명시하기도 하며, FTA 및 「특별 무역법」 또한 관세특혜수준(Tariff-Preference Level)을 설정함
 - 관세특혜수준도 관세할당과 마찬가지로 특정기간 동안 수입된 지정 수량 내의 물품에 대하여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고세율을 적용함

189) CBP, <https://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17. 8. 17.)

〈표 2-Ⅳ-12〉 관세할당 대상 물품(2017년 기준)

규정	물품
HTSUS	밀크와 크림(0404.20.20), 참치 조제품(1604.14.22), 올리브 조제품(제20류), 세트수머(만다린) 조제품(2008.30.42), 비(9603), 양복술(9603.10.05.), 기타 비(9603.10.40), 에틸알코올(9901.00.50), 육지면(9903.52)
Miscellaneous Trade and Technical Corrections Act of 2004,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	18.5 미크론 미만의 수모한(Worsted) 양모직물(9902.21.11)(제99류 제2절 주15), 18.5 미크론 이상의 수모한(Worsted) 양모직물(9902.51.15)(제99류 제2절 주16), 18.5 미크론 이상의 수모한(Worsted) 양모직물(9902.51.16)(제99류 제2절 주17) ¹⁾
Tax Relief and Health Care Act of 2006	면직물(9902.52.08~9902.52.19)(제99류 제2절 주19) ¹⁾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 우루과이라운드	소고기(제2류 추가주3), 밀크와 크림(제4류 추가주5), 건조한 밀크와 크림(제4류 추가주9), 유제품(제4류 추가주10), 응축한 밀크와 크림(제4류 추가주11), 건조한 밀크, 크림 및 유청(제4류 추가주12), 캐나다 체다치즈(제4류 추가 주18), 땅콩(제12류 추가주2), 설탕(제17류 추가주5), 설탕을 건조중량으로 65% 이상 함유한 것(제17류 추가주7), 설탕을 건조중량으로 10%이상 함유한 것(제17류 추가주8), 혼합시럽(제17류 추가주9), 코코아파우더(제18류 추가주1), 초콜릿(제18류 추가주2), 초콜릿 및 저지방 초콜릿 부스러기(제18류 추가주3), 유아용 조제품(제19류 추가주2), 베이커리제품 혼합물과 반죽(제19류 추가주3), 땅콩버터와 페이스트(제20류 추가주5), 혼합 조미료(제21류 추가주4), 아이스크림(제21류 추가주5), 동물용 사료(제23류 추가주2), 담배(제24류 추가주5), 원면(제52류 추가주5), 거친 면(제52류 추가주6), 면(28.575mm<스테인플<34.925mm)(제52류 추가주7), 면(34.925mm≤스테인플)(제52류 추가주8), 카드한 면사(제52류 추가주9), 면섬유(제52류 추가주10)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AGOA)	의류(제98류 제19절 주2), 저개발국가 의류(제98류 제19절 주2)
「카리브연안 무역협력법」 (CBTPA)	편물제 의류(제98류 제20절 주3), 티셔츠(제98류 제20절 주4)
「협력을 통한 아이티반구 기회법」	의류(제98류 제20절 주6)
NAFTA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 양모 의류, 면 또는 인조섬유 직물, 면 또는 인조섬유 사(제11부 추가주3~5)

〈표 2-IV-12〉의 계속

규정	물품
미-이스라엘 농산품무역협정	버터, 신선한 또는 산패한 크림(제99류 제8절 주3), 건조한 밀크(제99류 제8절 주4), 치즈 및 치즈대용품(제99류 제8절 주5), 땅콩(제99류 제8절 주6), 아이스크림(제99류 제8절 주7)
미-칠레 FTA	닭·칠면조(제99류 제11절 주4), 유제품(제99류 제11절 주5~7), 농축우유(제99류 제11절 주8), 치즈(제99류 제11절 주9), 아보카도(제99류 제11절 주10~11), 설탕(제99류 제11절 주12), 담배(제99류 제11절 주14), 호텔·식당용 테이블용품·주방용품(제99류 제11절 주17), 식물(제99류 제11절 주22), 의류(제99류 제11절 주23)
미-모로코 FTA	소고기(제99류 제12절 주3), 액상 유제품(제99류 제12절 주4), 버터(제99류 제12절 주5), 밀크 파우더(제99류 제12절 주6), 기타 유제품(제99류 제12절 주7), 치즈(제99류 제12절 주8), 건조 양파(제99류 제12절 주9), 건조 마늘(제99류 제12절 주10), 땅콩(제99류 제12절 주11), 보존처리한 토마토제품, 페이스트, 푸레(제99류 제12절 주13), 토마토소스(제99류 제12절 주14), 담배(제99류 제12절 주15), 면(제99류 제12절 주16), 의류(제99류 제12절 주17~61), 식물 및 의류(제99류 제12절 주64),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생산된 면섬유를 함유한 사, 식물(제99류 제12절 주65)
미-호주 FTA	소고기(제99류 제13절 주3), 크림·아이스크림(제99류 제13절 주4), 버터(제99류 제13절 주5), 무지방 건조 밀크(제99류 제13절 주6), 기타 밀크 파우더(제99류 제13절 주7), 기타 유제품(제99류 제13절 주8), 농축우유(제99류 제13절 주9), 기타 치즈(제99류 제13절 주10), 유럽타입치즈(제99류 제13절 주11), 체다치즈(제99류 제13절 주12), 아메리칸치즈(제99류 제13절 주12), 고야치즈(제99류 제13절 주13), 스위스타입치즈(제99류 제13절 주14), 아보카도(제99류 제13절 주16~17), 땅콩(제99류 제13절 주18), 담배(제99류 제13절 주19), 면(제99류 제13절 주20)
미-바레인 FTA	소고기(제99류 제14절 주3), 액상 유제품(제99류 제14절 주4), 버터(제99류 제14절 주5), 밀크 파우더(제99류 제14절 주6), 기타 유제품(제99류 제14절 주7), 치즈(제99류 제14절 주8), 땅콩(제99류 제14절 주9), 설탕(제99류 제14절 주10), 담배(제99류 제14절 주11), 면(제99류 제14절 주12), 면 또는 인조섬유 식물, 의류(제99류 제14절 주13)
미-중미-도미니카 FTA	멕시코 재료를 사용하여 계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한 식물제 의류(제98류 제22절 주21), 설탕 및 설탕 함유 제품(제98류 제22절 주24~25), 신선한 우유(제99류 제15절 주5), 버터(제99류 제15절 주6), 건조한 밀크와 크림(제99류 제15절 주7), 기타 유제품(제99류 제15절 주8~9), 치즈(제99류 제15절 주10~11), 땅콩(제99류 제15절 주12), 땅콩버터(제99류 제15절 주13), 아이스크림(제99류 제15절 주14), 니카라과산의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제99류 제15절 주15), 코스타리카산의 식물제 양모 맞춤 의류(제99류 제15절 주16), 코스타리카산의 수영복(제99류 제15절 주17)

〈표 2-Ⅳ-12〉의 계속

규정	물품
미-오만 FTA	소고기(제99류 제16절 주3), 액상 유제품(제99류 제16절 주4), 버터(제99류 제16절 주5), 밀크 파우더(제99류 제16절 주6), 기타 유제품(제99류 제16절 주7), 치즈(제99류 제16절 주8), 땅콩(제99류 제16절 주9), 설탕(제99류 제16절 주10), 담배(제99류 제16절 주11), 면(제99류 제16절 주12),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제99류 제16절 주13)
미-페루 TPA	특수 설탕(9822.06.16), 설탕(제98류 제22절 주28), 농축 우유(제99류 제17절 주3), 유제품(제99류 제17절 주4), 치즈(제99류 제17절 주5)
미-콜롬비아 TPA	설탕(8922.08.01), 소고기(제99류 제18절 주3), 유제품(제99류 제18절 주4~7), 아이스크림(제99류 제18절 주8), 담배(제99류 제18절 주9)
미-파나마 TPA	설탕(9822.09.17), 설탕원료(9822.09.18), 특수 설탕(9822.09.20), 소고기(제99류 제19절 주3), 유제품(제99류 제19절 주4~7)
미-한국 FTA	담배(9822.07.10), 유제품(제99류 제20절 주3), 식물(9920.95.00, 9920.99.00)

주: 1) 상무부가 발급한 면허 또는 다른 수입자의 면허를 사용하기 위한 서면허가서를 소지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음

자료: CBP, <https://www.cbp.gov/trade/quota/guide-import-goods/commodities> (검색일자: 2017. 8. 17.)

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 동종의 외국물품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수출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함¹⁹⁰⁾
 - 다만 덤핑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고, 해당 상품의 수입 또는 수입된 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미국 내 산업의 정착이 실질적으로 지체된 경우에 한함
- 수출국 또는 수출국 내의 공공단체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계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관세에 추가하여 상계보조금 상당의 관세를 부과함¹⁹¹⁾

190) 19 U.S.C. 제1673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191) 19 U.S.C. 제1671조 상계관세의 부과

- 보조금으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고, 미국 내 산업의 정착이 실질적으로 지체된 경우에 한함
- 2017년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8건이며, 덤핑방지관세가 21건, 상계관세는 7건임
-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7건은 모두 덤핑방지관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음

〈표 2-Ⅳ-13〉 우리나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현황(2017년 기준)

품명	HTSUS	규제	부과일
스탠다드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7306.30	덤핑방지	1992-11-02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Welded ASTM A-312 stainless steel pipe)	7603.40	덤핑방지	1992-12-30
스테인리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7221.00	덤핑방지	1998-09-15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Stainless steel sheet & strip)	7219.13/14/31/32/3 3/34/35/90, 7220.12/20/90	덤핑방지	1999-07-27
		상계	1999-08-06
철강후판(Carbon steel plate)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덤핑방지	2000-02-10
		상계	2000-02-10
폴리에스터 단섬유(Polyester staple fiber)	5503.20	덤핑방지	2000-05-25
P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7312.10	덤핑방지	2004-01-28
연벽 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7306.61	덤핑방지	2008-08-05
유압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8504.23, 8504.90	덤핑방지	2012-08-31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8450.20, 8450.11, 8450.90	덤핑방지	2013-02-15
		상계	2013-02-15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7304.29, 7305.20, 7306.29	덤핑방지	2014-09-10
무방향성 전기 강판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7225.19, 7225.50, 7225.99, 7226.92, 7226.99	덤핑방지	2014-12-03

〈표 2-IV-13〉의 계속

품명	HTSUS	규제	부과일
강철 못(Steel Nails)	7317.00	덤핑방지	2015-07-13
송유관(Welded Line Pipe)	7305.11, 7305.12, 7305.19, 7306.19	덤핑방지	2015-12-01
부식방지처리 강판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12/30/90, 7225.91/92, 7226.99	덤핑방지	2016-07-25
		상계	2016-07-25
강벽 사각파이프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7306.61	덤핑방지	2016-09-13
냉연강판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7209.15/16/17/18/ 25/26/27/28/29, 7210.70, 7211.23/29/90, 7212.40, 7225.50/99, 7226.92	덤핑방지	2016-09-20
		상계	2016-09-20
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7208.10/25/26/27/ 36/37/38/39/40/53/ 54/90, 7210.70, 7211.14/19, 7225.11/19/30/40/99, 7226.11/19/91	덤핑방지	2016-10-03
		상계	2016-10-03
인동(Phosphor Copper)	7405.00	덤핑방지	2017-04-24
페로바나듐(Ferrovandium)	7202.92	덤핑방지	2017-05-15
탄소합금강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7208.40/51/52, 7211.13/14, 7225.40, 7226.20	덤핑방지	2017-05-25
		상계	2017-05-25

자료: 코트라,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 2, pp. 21~26;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V. 감면 및 환급제도

1 관세감면제도

- 개정교토협약¹⁹²⁾에 따르면 관세감면이란 물품이 특정상황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그 정상적인 관세 품목분류나 정상적인 조세부담과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관세와 제세 없이 관세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도록 통관되는 것을 말함¹⁹³⁾
 - 이 경우 수입관세의 부담을 전부 없애는 것을 면세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없애는 것을 감세라고 하며,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감면이라고 함¹⁹⁴⁾

- 미국은 HTSUS의 제98류에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¹⁹⁵⁾
 - 또한 19 U.S.C. 제1321조 행정상 예외 규정에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명시하고 있음

192)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193)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 정의 E2./F1.

194) 김기인(2007), p. 387

195)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

- 관세감면은 재수입 물품, 개인용품, 정부, 국제기구 또는 종교·교육·과학기관 물품, 담보제공 물품, 비상업 물품, FTA 및 「특별무역법」 대상 물품 등에 적용됨
- 관세감면의 요건, 대상 등은 주로 HTSUS 제98류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절차 등은 CFR 제10.1조 내지 제10.183조에 규정되어 있음

가. 제98류에 의한 감면

1) 재수입 물품

- 제98류 제1절 내지 제3절에는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감면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 제1절은 상태의 개선 또는 향상 없이 재수입된 물품, 수출 후 재수입된 동물, 제2절은 해외에서 개선 또는 향상되어 재수입된 물품, 제3절은 반복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대한 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 제1절은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해외에서 가치향상이나 상태개선 없이 재수입된 물품,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방목한 후 재수입하는 동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제9801.00.70호, 제9801.00.80호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는 재수입감면이 적용되지 않음¹⁹⁶⁾
 -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 수입통관 시 내국세가 부과되어 해당 내국세를 수출 전에 납부하였고, 환급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 보세창고에서 또는 제9813.00.05호(수리·대체·가공을 위한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생산된 후 법에 따라 수출된 경우

196) HTSUS(2017) 제98류 제1절 주1

〈표 2-V-1〉 상태개선 또는 향상 없이 재수입된 물품 감면

HTSUS	요건 ¹⁾
9801.00.10	미국 상품이 수출된 후 재수입되었거나 어떤 상품이라도 수출된 후 3년 이내에 재수입된 경우
9801.00.11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자가 재수입하는 미국 정부 소유물로 미국 정부 소유임이 증명되는 경우
9801.00.20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을 임대계약 등에 따라 수출하였다가 최초 수입과 수출을 한 자의 책임으로 재수입된 경우
9801.00.25	최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후 3년 내에 수출하였다가 전본 또는 명세서와의 불일치를 이유로 최초 수입과 수출을 한 자의 책임으로 재수입한 경우
9801.00.26	최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후 3년 내에 개인용품으로 수출판매하였다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재수입하는 경우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수출자의 책임으로 재수입한 경우
9801.00.30	최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임대계약 등에 따라 수출하였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재수입한 경우
9801.00.40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전시, 시험, 실험을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
9801.00.50	서커스 또는 동물쇼를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
9801.00.60	공공 박람회, 품평회 또는 학회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
9801.00.65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과 관련하여 수출되었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
9801.00.70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거나 제9813.00.05호에 따라 감면된 항공기
9801.00.80	무알코올 맥주, 알코올, 담배 및 담배조제품, 담배종이
9801.00.85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출자의 책임으로 재수입되는 전문서적, 직업용구
9801.00.90	일시적인 방목을 위하여 소유주가 외국으로 보낸 동물, 가축으로 8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

주: 1) 외국에서 가치향상 또는 상태개선 등을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1절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 IN CONDITION; ANIMALS EXPORTED AND RETURNED

□ 제2절에는 해외에서 수리, 개조 등을 통하여 가치가 향상되거나 상태가 개선된 후 재수입된 물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수입감면이 적용되지 않음¹⁹⁷⁾
 -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의 경감, 면제, 환급을 받은 경우
 -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 미국의 법, 연방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 제9813.00.05호(수리·대체·가공을 위한 물품)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

〈표 2-V-2〉 개선 또는 향상 후 재수입된 물품 감면

HTSUS	요건
9802.00.20	미국에서 제조된 사진 필름 또는 건판으로 해외에서 노출된 것(상업용의 영화 필름은 제외함)
9802.00.40	하자보증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조하기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물품
9802.00.50	기타 미국에서 수출되었다가 해외에서 가치향상 또는 상태개선을 위한 제조공정을 거친 후 수입되는 물품
9802.00.60	미국에서 제조된 금속제품으로 해외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물품
9802.00.80	구성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제품인 물품으로 해외에서 조립하기 위하여 추가 가공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수출되어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조립과 세척, 윤활, 도장 등을 거친 후 다른 가치향상 또는 상태개선을 위한 제조공정 없이 수입된 물품
9802.00.90	미국에서 재단된 구성품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조립된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추가 가공 없이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수출되어 물리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조립과 표백, 염색, 세척 등을 거친 후 다른 가치향상 또는 상태개선을 위한 제조공정 없이 수입된 물품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2절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ADVANCED OR IMPROVED ABROAD

- 제3절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용기가 재반입 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가 면제되는 컨테이너 또는 용기는 비어 있는 상태로 수입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내용물과 분리되어 수입 통관 및 판매되는 것¹⁹⁸⁾으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함

197) HTSUS(2017) 제98류 제2절 주1
 198) HTSUS(2017) 제98류 제3절 주1

- 미국에서 생산된 것 또는 외국에서 생산되었지만 최초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한 것
- 재무부 장관이 국제운송장비로 분류한 것
- 국제운송장비인 외국 생산 컨테이너의 수리부품, 부속품
- 다만, 다음의 것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음¹⁹⁹⁾
 -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재수입된 경우
 - 보세창고에서 또는 제9813.00.05호(수리·대체·가공을 위한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생산된 후 법에 따라 수출된 경우

2) 개인용품

- 제98류 제4절 내지 제7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면세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제4절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미국 시민,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이 휴대하거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임
 - 제5절은 미국 정부의 명령이나 지시로 미국으로 대피하는 미국 시민의 소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를 명시하고 있음
 - 제6절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에 적용되는 면세규정이며, 제7절은 기타 개인용품에 대한 면세규정임

〈표 2-V-3〉 개인용품 면세

HTSUS	요건
9804.00.05	해외에서 미국에 도착한 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책, 장서, 가구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으로서 수입자와 그 가족이 1년 이상 사용한 것(타인 또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9804.00.10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전문서적, 장비, 도구 등의 직업용구로서 수입자에 의하여 또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해외로 가지고 갔던 것
9804.00.15	해외에서 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전문서적, 장비, 도구 등의 직업용구로서 수입자가 외국에서 직접 취득하고 사용한 것(연극 무대장치, 용품 및 의상, 제조설비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타인 또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9804.00.20	미국에 도착한 비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의복, 개인 장식용품, 화장실용품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품으로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수입자의 소유인 것(개인용도의 것이어야 하며, 타인 또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함)

199) HTSUS(2017) 제98류 제3절 주2

〈표 2-V-3〉의 계속

HTSUS	요건
9804.00.25	미국에 도착한 비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50개비 이하의 시가, 200개비 이하의 켈런, 200kg 이하의 흡연용 담배, 11 이하의 주류로서 성인인 비거주자가 자신을 위하여 구매한 것
9804.00.30	미국에 도착한 비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100달러 이하의 선의의 선물(6개월 내에 동호에 따라 면세를 요청한 적이 없고, 72시간 이상 미국에 머무르지 않아야 함)
9804.00.35	미국에 도착한 비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트레일러, 항공기, 오토바이, 자전거, 유모차, 보트, 마차, 말 및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으로서 수입자, 그의 가족 및 손님을 위하여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
9804.00.40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이동 중에 있는 비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
9804.00.45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모든 개인 및 가정용품으로서 수입자에 의하여 또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해외로 가지고 갔던 것
9804.00.50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외국 또는 외국시민이 수입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트로피, 상품 등의 금속제품
9804.00.55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사냥물로 수입자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냥한 것
9804.00.60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로 거주자가 해외에서 렌트한 후 수입자, 그의 가족 및 손님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
9804.00.65 ¹⁾	미국령 버진군도, 자유구역 또는 자유항구를 유지하는 인접국가, 기타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상 머물다가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자가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해외에서 취득하고, 총금액이 취득국가의 소매가격으로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수입자가 휴대하여야 함)
9804.00.70 ¹⁾	미국령 버진군도, 자유구역 또는 자유항구를 유지하는 인접국가, 기타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상 머물다가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자가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해외에서 취득하고, 총금액이 취득국가의 공정시장가격으로 1,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수입자가 휴대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9804.00.72 ¹⁾	미국령 버진군도, 자유구역 또는 자유항구를 유지하는 인접국가, 기타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상 머물다가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자가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해외에서 취득하고, 총금액이 취득국가의 시장가격으로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수입자가 휴대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9804.00.75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제9804.00.70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되었으나 수입자의 불만족을 이유로 수입 후 6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의 감독하에 수출된 물품의 대체품으로 수입되는 것
9804.00.80	미국에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선박, 항공기 등 국제운송수단의 승무원의 개인용품
9804.00.85	미국에서 도착한 거주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하는 때에 해외에서 사망한 자의 소유인 개인 및 가정용품

〈표 2-V-3〉의 계속

HTSUS	요건
9805.00.50	미국의 관세영역 밖에 있는 우체국 또는 역에서의 공무를 종료하고 돌아오는 자 및 그와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 또는 미국정부의 명령 또는 지시로 대피하는 자의 개인 및 가정용품
9806.00.05	외국 정부의 대사관, 장관, 담당차관, 비서관, 참사관 등 기타 대표, 공무원 및 그의 직계가족의 수하물 및 소지품
9806.00.10	외국 정부의 외교특사의 수하물 및 소지품
9806.00.15	공공국제기구의 임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의 수하물 및 소지품
9806.00.20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군인과 그의 직계가족의 수하물 및 소지품
9806.00.25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외국 정부의 고위관료와 특별 방문자 및 그의 직계가족의 수하물 및 소지품
9806.00.30	애국적 기념식, 축제, 기타 공익적 시위에 참석하기 위하여 단기간 친선 방문을 하는 외국인, 단체, 대표단의 개인용품 및 장비로서 방문이 끝난 후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것
9806.00.40	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대사관, 장관, 담당차관, 비서관, 참사관 및 직원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
9806.00.45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군인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
9806.00.50	외국 정부의 기타 대표, 공무원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
9806.00.55	법 또는 미국 상원에서 비준된 조약에 따라 지정된 자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
9807.00.40	외국 또는 외국시민이 미국 내에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트로피, 상품 등의 금속제품
9807.00.50	미국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게 외국 시민이 수여하는 물품

주: 1) 재무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9804.00.65호, 제9804.00.70호, 제9804.00.72호에 따른 면세를 30일 이내에 청구한 적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물품 중 하나만 면세를 청구할 수 있음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4절 APERSONAL EXEMPTIONS EXTENDED TO RESIDENTS AND NONRESIDENTS; 제5절 PERSONAL EXEMPTIONS EXTENDED TO UNITED STATES PERSONNEL AND EVACUEES; 제6절 PERSONAL EXEMPTIONS EXTENDED TO DISTINGUISHED VISITORS AND TO PERSONNEL OF FOREIGN GOVERNMENT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7절 OTHER PERSONAL EXEMPTIONS

3) 정부, 국제기구 또는 종교·교육·과학기관 물품

- 제98류 제8절 내지 제10절은 정부기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종교·교육·과학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제8절은 미국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물품, 제9절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음
 - 제10절은 종교적, 교육적, 과학적 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는 물품의 면세규정임

〈표 2-V-4〉 정부, 국제기구, 교육·과학용품 면세

HTSUS	요건
9808.00.10	미국의 정부기관이 사용할 목적의 판화, 동판화, 사진인쇄물,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노출된 사진필름,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또는 이와 유사한 필름매체형태의 정부공식간행물
9808.00.20	국무부를 위한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법」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음성녹음물 및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9808.00.30	국방부를 위하여 공인조달기관이 해외에서 구입한 비상전쟁물자로 관세청장이 인증한 것
9808.00.40	총무청을 위하여 「전략 및 필수적 재료 보급법」에 따라 조달된 전략적 및 필수적 재료로 관세청장이 인증한 것
9808.00.50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에너지부를 위한 공공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원재료로 관세청장이 인증한 것
9808.00.60	농무부 또는 국립식물원을 위한 식물, 종자 및 모든 재식 재료
9808.00.70	상품금융공사를 위한 농산물과의 물물교환 결과로 얻은 전략적 재료로 관세청장이 인증한 것
9808.00.80	미국항공우주국이 사용하거나 미국항공우주국과 외국기관의 국제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을 관세청장이 인증한 재료로 우주 발사체와 부품, 지상지원장비 등을 포함함
9809.00.10	외국 정부, 외국 정부의 하부조직 또는 둘 이상의 외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의도와 비용으로 발행된 공공문서
9809.00.20	외국 정부의 대표 또는 공공국제기관의 직원이 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용품 및 장비
9809.00.30	외국 군인이 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9809.00.40	외국 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관이 미국에 주재하는 동안 유지하는 자산으로 비상업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9809.00.50	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에게 제공하는 보철기구
9809.00.60	외국 정부가 미국에 매장된 전쟁참전용사의 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묘비
9809.00.70	미국 정부, 주 또는 지역 정부, 기타 미국의 공공기관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외국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구의 자산
9809.00.80	외국 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구의 자산으로 무료로 배포되는 인쇄물(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것)
9810.00.05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그림, 조각,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음성기록물,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사진 및 기타 인쇄물, 노출된 사진필름
9810.00.10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인쇄, 착색된 유리 또는 스테인드글라스와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전문 예술가가 제조하였거나 전문 예술가의 지시로 제조된 것으로 평방미터당 가격이 161달러 이상의 것
9810.00.15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휘장
9810.00.20	제의를 만드는 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수직직물
9810.00.25	공동묘지, 학교, 병원, 고아원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활동을 관리하는 종교적 목적의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제대, 설교단, 세레테이블, 세레반, 성물함, 모자이크, 성화 또는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조각상

〈표 2-V-4〉의 계속

HTSUS	요건
9810.00.30	공공도서관 또는 기타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치료적 목적 또는 순수미술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그림, 도면 및 그들의 복제품, 조각, 동판화, 석판화, 목판화, 구체, 음성기록물,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사진 및 기타 인쇄물, 노출된 사진필름
9810.00.35	공공도서관 또는 기타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치료적 목적 또는 순수미술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문자, 숫자 및 기타 기호, 숫자 카드 및 기타 산술적 재료, 인쇄물, 블록 및 기타 차원의 도형, 기하학적 도형, 평면 및 입체물, 지구의, 튜닝벨 및 기타 음악적 재료, 생물 모형, 퍼즐 및 게임, 깃발, 의생활정리대, 모형시계, 병, 상자 및 기타 용기로 어린이를 지도하기 위한 학습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
9810.00.40	공공도서관 또는 기타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치료적 목적 또는 순수미술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휘장
9810.00.50	공공도서관 또는 기타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치료적 목적 또는 순수미술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물기계 또는 그들의 부분품으로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것
9810.00.55	공공도서관 또는 기타 교육적, 과학적, 문학적, 치료적 목적 또는 순수미술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시회 또는 교육 용도의 도안 및 모형
9810.00.60	공공 또는 사립인지 불문하고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장치 및 기구(미국에서 동일한 과학적 가치를 가지는 장치 및 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9810.00.65	제9810.00.65호의 장치 및 기구를 수리하기 위한 구성품
9810.00.67	제9810.00.65호의 장치 및 기구를 유지, 관리, 점검, 수리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도구
9810.00.70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공공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야생동물
9810.00.75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구조선 및 구조물품
9810.00.80	공공 또는 사립인지 불문하고 교육적, 과학적, 또는 치료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용 진단 또는 치료 장비와 이들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9810.00.85	인공신장기구 및 장치에 사용되는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재료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 또는 환자가 수입한 것
9810.00.90	종교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교적 관습에 따라 사용하는 기도용 술 및 이를 보관하는 가방, 모자류
9810.00.95	종교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교적 관습에 따라 사용하는 고흐존(Gohonzon)으로 알려진 목제 또는 지제의 두루마리 또는 서판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8절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제9절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10절 IMPORTATIONS OF RELIGIOUS, EDUCATIONAL, SCIENTIFIC AND OTHER INSTITUTIONS

4) 담보제공 물품

- 제98류 제12절 내지 제14절은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한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12절에는 수입 후 5년 동안 공공기념물의 건립 또는 전시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명시함²⁰⁰⁾
 - 해당 물품을 수입 후 5년 이내에 판매, 양도,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 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 어느 때든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²⁰¹⁾
 - 제13절은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⁰²⁾
 - 해당 물품은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과 합계하여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제14절은 테인, 카페인 등의 화학적 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입항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 수입된 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⁰³⁾

〈표 2-V-5〉 담보제공 물품 면세

HTSUS	요건
9812.00.20	농업, 예술, 교육 또는 과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의 전시회 또는,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전시회를 위하여 수입된 물품
9812.00.40	공공기념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9813.00.05	수리, 대체 또는 가공을 위한 물품
9813.00.10	제조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여성의류용 모형
9813.00.15	삽화가 또는 사진사가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물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9813.00.20	상품의 주문을 위한 견본
9813.00.25	재생산을 위한 검사용 물품, 이러한 검사 및 재생산을 위한 물품, 영화 광고 필름
9813.00.30	시험, 실험 또는 검토를 위한 물품

200) HTSUS(2017) 제98류 제12절 주1

201) HTSUS(2017) 제98류 제12절 주2

202) HTSUS(2017) 제98류 제13절 주1

203) HTSUS(2017) 제98류 제14절 주1

〈표 2-V-5〉의 계속

HTSUS	요건
9813.00.35	경기 및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비행기, 비행선, 기구, 보트, 레이싱 쉘 및 이와 유사한 탈것, 이들의 장비
9813.00.40	장애물 제거, 진화, 긴급 수리 등을 위한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장비
9813.00.45	압축가스용기, 운송 중 내용물을 보호하고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
9813.00.50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장비, 도구 및 이들의 수리용 장비 및 도구, 캠핑장비
9813.00.55	수출하기 위한 제조품 또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물품
9813.00.60	사육, 전시회, 대회를 위한 동물 및 가금류, 이들을 위한 장비
9813.00.70	전시용 또는 예술, 과학,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가, 작가, 과학자가 수입하는 순수미술작품, 조각, 사진, 철학적 또는 과학적 장치
9813.00.75	전시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 새시, 자동차 몸체, 이들의 단면을 자른 것과 부분품
9814.00.50	테인, 카페인 또는 기타 화학물질(원재료의 정체성, 특성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변경된 것에 한함)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 차 찌꺼기, 차 침전물 및 차 부스러기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12절 ARTICLES ADMITTED FREE OF DUTY UNDER BOND FOR PERMANENT EXHIBITION; 제13절 ARTICLES ADMITTED TEMPORARILY FREE OF DUTY UNDER BOND; 제14절 TEA ADMITTED FREE UNDER BOND

5) 비상업용 물품

- 제98류 제11절, 제16절은 견본, 개인 및 가정용품, 선물 등 판매용이 아닌 비상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절은 주문수집용으로 사용하는 견본의 면세규정으로 이 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도 면세가 적용됨²⁰⁴⁾
 - 제16절에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 선물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비상업용 물품에 대한 감세를 명시하고 있음
 - 원래 무세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16절이 적용되는 물품은 기타 다른 관세율을 대신하여 해당 절에서 규정한 관세율이 적용됨²⁰⁵⁾

204) HTSUS(2017) 제98류 제11절 주1

205) HTSUS(2017) 제98류 제16절 주1

〈표 2-V-6〉 비상업용 물품 감면

HTSUS	요건
9811.00.20	상업용으로 수입하려는 자가 주문수집용으로 수입하는 주류 샘플(맥아로 만든 것은 300ml, 와인은 150ml, 기타 주류는 100ml를 초과할 수 없음)
9811.00.40	상업용으로 수입하려는 자가 주문수집용으로 수입하는 담배조제품, 껴련지, 껴련튜브 샘플(시가 3개비, 껴련 3개비, 담배 3.5g, 코담배 3.5g, 껴련튜브 3개, 껴련지 25장을 초과할 수 없음)
9811.00.60	외국 제품의 주문요청용으로 수입되는 1달러 미만의 견본으로 천공, 절단 등 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9816.00.20	미국에 도착한 자의 휴대품으로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 선의의 선물 등 대행구매 물품이 아닌 것
9816.00.40	아메리칸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군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착한 자의 책임으로 수입되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 선의의 선물 등 대행구매 물품이 아닌 것

주: 1) 제9816.00.20호, 제9816.00.40호에 따른 감세를 30일 이내에 청구한 적이 없어야 함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11절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제16절 NONCOMMERCIAL IMPORTATIONS OF LIMITED VALUE

6) 기타 특정물품

- 제98류 제15절, 제17절 내지 제18절에는 다른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제15절에 따라 공해 또는 외국영해에서 어류 또는 수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미국어선²⁰⁶⁾이 채집한 어류 등이 면세됨
 - 다만, 미국 거주자가 아닌 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필레, 토막, 슬라이스 형태의 어류는 면세되지 않음²⁰⁷⁾
 - 제17절은 그물, 시각적 또는 음향적 재료, 가공되지 않은 금속, 유기화학제품, 국제 운동경기대회 참가자의 개인용품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제18절은 미국 「관세법」에 따라 입항신고가 필요한 선박인 외국 또는 연안 무역에 이용되는 선박²⁰⁸⁾의 수리용품 또는 부분품에 대한 감면규정임

206) HTSUS(2017) 제98류 제15절 주1

207) HTSUS(2017) 제98류 제15절 주2

208) HTSUS(2017) 제98류 제18절 주2

〈표 2-V-7〉 기타 특정물품 감면

HTSUS	요건
9815.00.20	외국에서 하선하지 않거나, 환적을 위하여 하선을 한 경우 상태를 개선하지 않은 미국어선의 수산물
9815.00.40	미국어선에서 채집된 어류로 외국에 하선되어 머리, 내장, 꼬리를 제거하거나 냉각 또는 냉동 등의 가공을 거친 것
9815.00.60	레브라도, 마들렌느섬,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미국어선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
9817.00.20	어류 표본추출(fish sampling)에 사용되는 모노필라멘트 자망
9817.00.30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야생 조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그물
9817.00.40 /44/46/48	대통령이 지정한 연방기관이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단체로 승인한 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사진필름, 사진슬라이드, 슬라이드, 음성기록물,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 모형, 해도, 지도, 지구의, 포스터 / 레이저 프로젝터용 홀로그램,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피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음향 및 사진이 기록된 영화필름 / 음성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자기식 기록물, 비디오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해도, 지구의, 분자구조 또는 수화공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모형 또는 시각화자료, 프로그램된 지시를 위한 자료, 인쇄물 및 음향자료가 들어있는 키트 및 이들의 조합품
9817.00.50	농업용 또는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
9817.00.60	제8432호, 제8433호, 제8434호, 제8436호에 사용되는 부분품
9817.00.70	미국에서 방사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동물
9817.00.80 /90	미가공 구리로 피그, 잉곳, 빌릿 형태의 재용용 스크랩을 포함하며, 결합이나 흠이 있는 것,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로부터 생산된 것, 재생작업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 용융을 통하여 재생작업에 사용되는 것, 분쇄, 절단, 압축 또는 금속성분을 회수하는 데 적합한 이와 적합한 가공을 거친 것 / 기타 금속의 것
9817.00.92 /94/96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책, 음악, 팸플릿, 점자 인쇄물 / 점자판, 계산판, 특별한 도구, 기계 등 /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물품, 그 부분품과 부속품
9816.00.98	연극, 발레, 오페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작품의 소유자 또는 매니저가 해당 작품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무대 장치, 물품 및 의상
9817.22.05	제2208.40호, 제2208.90호의 럼, 타피아, 리큐르 및 증류주로서 「카리브연안 경제부흥법」 수혜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직접운송된 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
9817.29.01	제19류의 방향족 또는 변형된 방향족 구조를 갖는 환형 유기화학물로 사진용 커플러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진용 커플러
9817.29.02	공해 또는 외국 해상의 선박의 천연가스에서 발생한 메탄올
9817.57.01	대량 생산 키트의 비늘 공예 전시모형

〈표 2-V-7〉의 계속

HTSUS	요건
9817.60.00	미국에서 주최되는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스페셜올림픽, 월드컵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체육행사의 참가자, 공무원, 대표단 및 이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용품, 이러한 행사와 관련 있는 장비 및 물품, 이러한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의 문화를 설명하는 전시회에 사용되는 물품 등
9817.61.01	충전재, 구조, 기타 다른 특성으로 스키경주에 따른 부상을 방지하는 데 특별히 고안된 것이 명백한 스키의류
9817.64.01	질병, 수술 또는 부상당한 발을 지지하거나 고정하는 신발류(제9021호의 것은 제외하며, 주문 제작되고 한 쌍이 아닌 한 족만 제시되는 것이어야 함)
9817.82.01	다결정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도구 및 드릴 날의 블랭크, 다결정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도구의 블랭크
9817.84.01	자전거 바퀴의 제조에 사용되는 휠 조립, 휠 트루잉, 바퀴 피팅 등에 적합한 기계
9817.85.01	독점적 개발, 시험, 평가, 품질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원본
9817.95.01	종교적 또는 문화적 기념일을 위한 의식이나 축제행사에 사용되는 유월절 용품, 겹, 촛대 등의 용품
9817.95.05	미국의 특별한 기념일과 관련된 상징 또는 주제를 표현하는 물품
9818.00.01	래시션(Lighter Aboard Ship)의 장비, 장비 부분품, 수리부품, 수리비용으로 미국의 항구에 최초로 입항한 것
9818.00.03	미국, 해상 또는 외국에서 설치 또는 사용하기 위한 선장 또는 선주가 보증한 예비 수리부품으로서 선박이 최초로 미국에 입항했을 때 관세가 납부된 것
9818.00.05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한 예비부품으로 선박이 미국에 처음 입항할 때 설치되어 있는 것
9818.00.07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외국에서 구입한 기타 부품 또는 재료, 수리비용

자료: HTSUS(2017) 제98류 제15절 PRODUCTS OF AMERICAN FISHERIES; 제17절 OTHER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제18절 VESSEL PARTS AND REPAIRS

7) 「무역특별법」 또는 FTA에 따른 감면

- 제98류 제19절 내지 제20절, 제22절에는 「무역특별법」이나 FTA에 따른 수혜국 또는 계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제19절은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제20절은 「카리브연안 무역협력법」(CBTPA)에 따른 면세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세관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됨
 - AGOA의 수혜국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페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

- 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임
- CBTPA의 수혜국은 바베이도스, 벨리즈, 퀴라소,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임
- 제22절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나. 기타 감면

1) 소액물품

- 19 U.S.C. 제1321조는 한사람에 의하여 같은 날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수출국의 공정가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⁹⁾
 - 면세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외국에 있는 자가 미국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선의의 선물의 경우 100달러(버진 군도, 괌,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는 자가 보내는 것은 200달러)
 - 미국에 도착한 자가 소지한 개인 또는 가정용품으로 제9804.00.03호(비거주자의 선물), 제9804.00.65호 또는 제9804.00.70호(거주자의 단기간 여행 취득물품)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200달러
 - 기타의 경우 800달러²¹⁰⁾
 - 다만, 단일의 주문 또는 계약과 관련된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하여 발송된 경우 적용되지 않음

2) 우편물

- 19 CFR 제145관(Part)에는 우편물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절에는 관세 및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다음과 같은 우편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209) 19 U.S.C. 제1321조 행정상 예외

210)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개정되었음

- 적재국에서의 가치가 800달러 이하인 물품²¹¹⁾, 외국에 있는 자가 보내는 200달러 이하의 선의의 선물²¹²⁾
- 해외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²¹³⁾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되었다가 해외에서 가치향상 또는 상태개선 없이 수입 되는 것으로 선적국의 가치로 2,500달러 이하의 것²¹⁴⁾
-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수입하는 책 및 기타 출판물 등²¹⁵⁾, 의회도서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등에 송부된 저작권물, 책 등, 기타 미국 정부에 송부된 공적인 서류²¹⁶⁾
- 공적인 서류 등이 담겨있는 외교행낭,²¹⁷⁾ 외교 공무원, 국제기구의 대표 및 이와 유사한 자에게 송부되는 물품²¹⁸⁾ 등

2 관세환급제도

- 관세환급이란 물품이 수입될 때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었던 관세, 수수료 또는 내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말함²¹⁹⁾
 - 관세환급이 가능한 세금은 관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등이며, 항만유지비, 물품취급수수료,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는 환급되지 않음²²⁰⁾
 - 미사용 물품 환급, 가공 완료된 석유파생물의 대체물품 환급 중 제조되지 않은 것은 물품취급수수료도 환급이 가능함
 - 수입물품이 관세할당 적용대상 중 할당량 초과 관세율이 적용된 농산물인 경우 관세환급은 허용되지 않음
 - 미사용 물품 환급대상 농산물이거나 제조품 환급대상 또는 미사용 물품 환급대상인 담배의 경우 환급이 가능함

211) 19 CFR 145.31 Importations not over \$800 in value

212) 19 CFR 145.32 Bona-fide gifts

213) 19 CFR 145.34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tools of trade

214) 19 CFR 145.35 United States products returned

215) 19 CFR 145.36 Articles for institutions

216) 19 CFR 145.37 Articles for the U.S. Government

217) 19 CFR 145.38 Diplomatic pouches

218) 19 CFR 145.39 Articles for diplomatic officers,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military personnel

219) 19 CFR 191.2 (i) Drawback

220) 19 CFR 191.3 Duties and fees subject or not subject to drawback

- 관세환급은 제조품 환급, 미사용 물품 환급, 인수거절 물품 환급 등으로 구분되며, 각 환급별로 수입물품의 대체물품 인정, 제조 또는 수출의 기한 등이 상이함²²¹⁾
- 관세 등의 환급에 대한 각 규정은 19 U.S.C. 제1313조와 19 CFR 제191관(Part)에 명시하고 있음

가. 제조품 환급

1) 일반물품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된 경우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의 100분의 99가 환급됨²²²⁾
 - 제조 또는 생산이란 물품의 고유한 이름, 성질, 용도를 새롭거나 다르게 만드는 과정이나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함²²³⁾
 - 환급에 있어서 물품이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거나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공기에 적입된 경우 수출이 발생되었다고 간주됨²²⁴⁾
 - 또한 폐기란 물품을 상업적 가치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폐기하는 것²²⁵⁾을 말하며, 물품이 원자재로 복원되는 것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잔존하는 원재료의 가치에 해당하는 관세는 환급에서 제외되어야 함²²⁶⁾
- 또한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물품을 수취하고 3년 이내에 수입물품 및 동종·동질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한 경우, 실제로 수입물품이 해당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이 수출 또는 폐기되었다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 환급됨²²⁷⁾
 -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은 수입 또는 국산인지 불문하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은 수출 또는 폐기 전에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함

221) CBP, "Drawback," 2004, p. 7

222) 19 U.S.C. 제1313조 (a) 수입물품으로 만들어진 물품

223) 19 CFR 191.2 (q) Manufacture or production

224) 19 CFR 191.2 (m) Exportation

225) 19 CFR 191.2 (g) Destruction

226) 19 U.S.C. 제1313조 (x) 복원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

227) 19 U.S.C. 제1313조 (b) 관세환급을 위한 대체물품

- 동종·동질물품이란 수입물품과 동일한 종류 및 품질의 물품으로서 수출 또는 폐기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상호대체 사용할 수 있어야 함²²⁸⁾
- 환급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5년 이내에 수출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한 경우만 청구할 수 있음²²⁹⁾
 - 대체물품의 경우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을 수취한 후 3년 이내에 제조 또는 폐기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수입 후 5년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하여야 함
- 환급청구는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할 수 있으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기타 중간 당사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음²³⁰⁾
 -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환급청구권을 포기하며, 수출 또는 폐기에 따른 환급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조 및 인수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 and delivery)를 발급하여야 함²³¹⁾
 - 제조 및 인수증명서는 양도물품이 환급을 청구하는 수입물품임을 확인하고, 환급 권리가 양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환급청구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제조 및 인수증명서에는 물품의 수량, 종류 및 품질, 수입신고번호, HTSUS 6단위, 관세액, 제조일, 양수인의 신원 등이 기재되어야 함

2) 알코올

- 내국세를 납부한 알코올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된 방향추출물, 조제의약품 또는 화장실용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용된 알코올에 부과된 내국세는 환급됨²³²⁾

228) 19 CFR 191.2 (x) Substituted merchandise or articles

229) 19 CFR 191.27 Time limitations

230) 19 CFR 191.28 Person entitled to claim drawback

231) 19 CFR 191.24 Certificate of manufacture and delivery

232) 19 U.S.C. 제1313조 (d) 방향추출물, 조제의약품 또는 화장실용품

- 국내산 알코올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제조자는 알코올, 담배 및 화기관리국에 환급신청서와 함께 환급청구를 했는지, 할 것인지 여부를 표시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²³³⁾
- 알코올에 대한 환급청구는 방향추출물, 조제의약품 또는 화장실용품이 수출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²³⁴⁾

3) 수입 소금

- 보세상태의 소금을 어류의 염장에 사용한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²³⁵⁾, 수입 소금을 육류의 염장에 사용한 경우 수입 소금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환급됨²³⁶⁾
- 수입 소금이 어류 또는 육류의 염장에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관세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납부된 관세액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 환급됨

4) 외국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건설 및 의장(機裝) 재료

- 외국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나 외국 정부를 위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위한 건설 및 의장 재료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출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 시 부과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²³⁷⁾
- 환급이 가능한 건설 및 설비 재료란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성하는 최초 원재료나 크기 또는 운반능력 변경, 유형 변경, 수명 연장 등의 근본적인 변경에 사용되는 원 재료를 말함²³⁸⁾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개조나 수리에 필요한 원재료는 포함하지 않음
- 외국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란 외국인 거주자의 계산하에 건설 또는 의장된 것으로 완성 후 외국 국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것을 말함²³⁹⁾

233) 19 CFR 191.102 (e) Time period for completing claims

234) 19 CFR 191.103 (b) Manufacturer does not claim domestic drawback

235) 19 U.S.C. 제1313조 (e) 어류 염장을 위한 수입 소금

236) 19 U.S.C. 제1313조 (f) 수입 소금으로 염장된 육류의 수출

237) 19 U.S.C. 제1313조 (g) 외국인을 위한 선박의 건설 및 설비 재료

238) 19 CFR 191.133 (a) Materials, (c) Major conversion

239) 19 CFR 191.133 (b) Foreign account and ownership

5) 제트기의 엔진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트기의 엔진을 미국 내에서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정밀 검사, 수리, 개조 또는 재건한 후 수출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가 환급됨²⁴⁰⁾
-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5년 이내에 완제품이 수출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되어야 함

나. 미사용 물품 환급

- 수입 시 연방법에 따라 관세, 내국세, 수수료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후 3년 내에 수출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된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의 100분의 99는 환급됨²⁴¹⁾
- 수입물품에 일정한 작업이 수행된 경우 해당 작업이 제조품 환급에서 규정한 제조 또는 생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으로 보지 않음²⁴²⁾

- 수입 시 연방법에 따라 관세, 내국세, 수수료가 부과된 수입물품과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물품이 수입물품의 수입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거나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된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의 100분의 99는 환급됨²⁴³⁾
- 이 경우 대체물품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수입물품, 대체물품 또는 이 둘의 결합물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양도증명서를 수입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수취한 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상업적인 호환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산업표준, 부품번호, 품목번호, 관세평가 가격 등을 이용하여 물품의 특성을 평가하여야 함²⁴⁴⁾

240) 19 U.S.C. 제1313조 (h) 제트기의 엔진

241) 19 U.S.C. 제1313조 (j) (1)

242) 19 CFR 191.31 (c) Operations performed on imported merchandise

243) 19 U.S.C. 제1313조 (j) (2)

244) 19 CFR 191.32 (c) Determination of commercial interchangeability

- 환급청구는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할 수 있으나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기타 중간당사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음²⁴⁵⁾
 -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환급청구권을 포기하고, 수출 또는 폐기에 따른 환급청구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대체환급의 경우 수입자가 직접 대체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면 수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갖고,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수입자가 아니면 수입자로부터 수입물품, 대체물품 또는 이 둘의 결합물품을 양도받았다는 인수증명서(Certificate of delivery)를 수취하여야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대체환급 또한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증명서를 통하여 환급청구권을 수입자, 기타 중간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수출자 또는 폐기자가 환급청구를 하는 수출물품 또는 폐기물품을 수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 또는 기타 중간당사자로부터 인수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함²⁴⁶⁾
 - 인수증명서는 양도된 물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환급청구 시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환급은 거절됨

- 미사용 물품 환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예정일 최소 2영업일 전에 세관에 공지하여야 함²⁴⁷⁾
 - 해당 공지는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B/L 번호, 물품의 소재지, 연락 가능한 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관은 공지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 실시 답변을 받은 당사자는 신속하게 수출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함
 - 수출물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환급은 거절되며, 세관이 검사 미실시 답변을 하거나,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음
 - 검사는 물품이 제시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음

245) 19 CFR 191.33 Person entitled to claim drawback

246) 19 CFR 191.34 Certificate of delivery required

247) 19 CFR 191.35 Notice of intent to export; examination of merchandise

다. 인수거절 물품 환급

1) 일반물품

- 수입물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 견본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세관관할구역으로 반입된 후 수출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의 100분의 99는 환급됨²⁴⁸⁾
 - 물품이 견본 또는 명세서와 다르거나, 수하인의 동의 없이 선적되었거나, 수입 시에 물품의 결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세관에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여야 함²⁴⁹⁾

- 환급청구인은 물품이 세관관할구역에서 반출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물품을 다시 세관관할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함²⁵⁰⁾
 - 3년이 경과된 후에 세관관할구역으로 반입되거나 세관관할구역으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 또는 폐기한 경우 환급은 거절됨

- 환급청구인은 물품이 샘플 또는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수하인의 동의 없이 선적되었거나, 수입 시에 결함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²⁵¹⁾
 - 환급청구인이 수입자가 아닌 경우 수입자를 포함하고, 최종구매자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가 다른 어떤 당사자에 의하여도 환급이 청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문언에 서명하여야 함

- 미사용 물품 환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출 또는 폐기예정일 최소 5영업일 전에 세관에 공지하여야 함²⁵²⁾
 - 해당 공지에는 B/L 번호, 물품의 소재지, 연락 가능한 자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 및 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248) 19 U.S.C. 제1313조 (c) 견본 또는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는 물품

249) 19 CFR 191.41 Rejected merchandise drawback

250) 19 CFR 191.42 (a) Return to customs custody

251) 19 CFR 191.42 (b) Required documentation

252) 19 CFR 191.42 (c) 내지 (f)

- 세관은 공지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 실시 답변을 받은 당사자는 신속하게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함
 - 기간 내에 물품의 검사 실시 답변을 받았으나 물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환급은 거절되며
 - 세관이 검사 미실시 답변을 하거나,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관할구역에 재반입한 것으로 간주됨
- 검사는 물품이 제시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음

2) 증류주, 와인, 맥주

- 증류주, 와인, 맥주가 판매 불가함을 물품신고 후에 발견하였거나 견본 또는 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아 세관관할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하거나 결정되었던 내국세를 환급, 면제, 배제, 또는 보증할 수 있음²⁵³⁾
 - 증류주, 와인, 맥주의 내국세 환급의 절차는 인수거절 물품에 대한 환급규정을 준용하지만²⁵⁴⁾, 세관관할구역 반입 기간은 제한이 없음²⁵⁵⁾
 - 판매 불가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판매 불가한 구체적인 이유와 환급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²⁵⁶⁾
 - 환급신청이 수리된 후 90일 이내에 물품이 수출 또는 폐기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또는 폐기 기한이 이전 90일에 더하여 90일 더 연장될 수 있음²⁵⁷⁾

253) 19 CFR 191.161 Refund of taxes

254) 19 CFR 191.162 Procedure

255) 19 CFR 191.164 Return to customs custody

256) 19 CFR 191.163 Documentation

257) 19 CFR 191.168 Time limit for exportation or destruction

라. 가공 완료된 석유파생물의 대체물품 환급

- 수입 시 관세가 납부된 석유파생물로 구성된 인정된 물품(Qualified article),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이 미사용 물품 환급규정에 따라 수출되거나, 제조품 환급규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후 수출된 경우 납부된 관세를 환급함²⁵⁸⁾
 - 인정된 물품이란 제2707호, 제2708호, 제2710호 내지 제2715호, 제2901호, 제2902호, 제2909.19.14호,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물품을 말함²⁵⁹⁾
 - 동종·동질물품이란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하거나 HTSUS 8단위가 동일한 물품을 말함²⁶⁰⁾
 - 예를 들어 제2710.00.15호의 무연휘발유와 제트연료유는 상업적으로 호환할 수 없더라도 HTSUS 8단위가 동일하므로 동종·동질물품으로 간주됨

- 인정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이 제조품 환급규정에 따른 제조를 거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물품이 물품신고된 후 180일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²⁶¹⁾
 - 이 경우 수출자는 최소한 인정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과 동일한 양의 인정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교환받아야 함
 - 환급액은 미사용 물품 환급규정에 따른 환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정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이 제조품 환급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생산을 거친 후 수출되는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²⁶²⁾
 - 이 경우 수출자는 최소한 인정된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과 동일한 양의 인정된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거나 생산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교환받아야 함
 - 환급액은 제조품 환급규정에 따른 환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258) 19 CFR 191.171 General; drawback allowance

259) 19 CFR 191.172 (a) Qualified article

260) 19 CFR 191.172 (b) Same kind and quality article

261) 19 CFR 191.173 Imported duty-paid derivatives (no manufacture)

262) 19 CFR 191.174 Derivatives manufactured under 19 U.S.C. 1313(a) or (b)

- 환급은 수출자, 정유업자, 생산자, 수입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환급을 청구할 다른 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음²⁶³⁾
 - 환급청구인은 환급신청 시 제조 및 인수증명서 또는 인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된 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동종·동질물품을 수출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정된 물품의 양보다 적은 양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제조 및 인수증명서 또는 인수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중간당사자 또한 수출자 또는 다른 중간당사자에게 동종·동질물품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정된 물품의 양보다 적은 양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인수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263) 19 CFR 191.175 Drawback claimant; maintenance of records

VI. 원산지제도

1 원산지 개관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함²⁶⁴⁾
 - 원산지 관련 법령은 원산지표시제도, FTA 원산지규정(「비특혜 및 특혜원산지 관련법령」), 협정별 국내법 규정 등으로 구분됨²⁶⁵⁾
 - 일반적으로 비특혜가 적용되며 WTO 원산지규정 협정도 비특혜로 한정되어 있음
 - 특혜원산지는 양자협약으로 규율함

- 원산지규정의 입법취지는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정확한 생산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임²⁶⁶⁾
 -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기능은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 무역장벽, 보건위생 및 자연보호 기능 등임

264) WTO 원산지규정(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따르며 국제법규, 법률,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행정판정 등이 포함됨

265) 정재호·정재완(2015);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pp. 47~58

266) 김성문, 『미국의 통관절차 및 관세형벌』,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1, p. 24

- 원산지 운영방식은 관할 당국이 개별 국가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정착되고 있음²⁶⁷⁾
 - 관련 법령이 있지만 교역 시 관련 규정은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자국 권한임

2 원산지 표시제도

가. 관련 규정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²⁶⁸⁾, 「통상무역법」²⁶⁹⁾, 「연방무역위원회법」²⁷⁰⁾, NAFTA 등에 규정되어 있음²⁷¹⁾
 - 1890년 「맥킨리 관세법」²⁷²⁾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최초 도입됨
 - 「관세법」 제1304조 원산지 표시기준에 규정함²⁷³⁾
 - NAFTA과 이행법 중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규정은 협정 제311조,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및 이행규칙²⁷⁴⁾ 중 원산지 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 이행규칙²⁷⁵⁾에 있음
 - 그 외 「덤핑방지법」(원산지 결정), 「자동차라벨링법」(원산지 표시의무), 「원산지 결정기준법」(수입섬유류)²⁷⁶⁾,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1994년 GATT 실시법 등에도 원산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267)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2, p. 23

268) 19 U.S.C. 제1304조

269) Commerce and Trade Act 제45조

270)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271) 오원석,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원산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p. 45

272) Mackinley Tariff Act of 1890

273) 19 U.S.C. 제1304조 (a)

274) 19 CFR 102.0~102.21

275) 19 CFR 181.111~181.16

276) 19 CFR 134, 19 C.F.R. 102.21

-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목적은 소비자에게 원산지정보를 제공하고 과세가격 과소평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함임²⁷⁷⁾
-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폭넓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함²⁷⁸⁾
 - 우리나라는 지정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표 2-VI-1〉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률

분야		우리나라	미국		
근거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USC § 1304 • 19 CFR § 134.0 	
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 		
원산지판정기준 (실질변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품목: 품목별기준(섬유, 육류 등) • 기타품목: 세번변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류: 품목별 기준 • 기타품목: 「관례법」 (예외: NAFTA산 -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 102.0~ § 102.19, § 102.20, 21 	
표시대상품품		산업통상자원부 지정품목	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 134.11 	
표시의무의 면제		매우 제한적	광범위하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 134.32 	
표시 방법	품목별 표시 방법	일부 지정	일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 134.43(a), (b), (c), (d) 	
	Assembled in 국명 표시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인정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CFR § 134.43(e) 	

자료: 박광서,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 87

277) 오원석(2008)

278) 박광서,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 86

〈표 2-VI-2〉 미국 「연방법」 Title 19, CFR Part 134(Country of Origin Marking)의 표시의무

	일반물품	섬유 및 의류제품	NAFTA 물품(섬유류 제외)
근거 법령	19 CFR 134.1(Definition) (b) Country of Origin	19 USC 3592(Rules of Origin for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19 CFR 102.21(Textile and Apparel Products)	NAFTA Marking Rules ① NAFTA Annex 311 (Country of Origin Marking) ② 19 USC 1304 (k) (Treatment of Goods of NAFTA Country) ③ 19 CFR Part 102 (Rules of Origin)
판정 기준	제조과정에서 구별되는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갖는 새롭고 다른 물품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국가	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
비고	사례별 방식이 명료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	사례별 방식보다 명확하며, ① 「관세법」 적용 시 원산지결정이 필요한 경우와 ② 수량제한에 적용	NAFTA Marking Rules ① 관세법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원산지 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 ② 관세특혜 부여 목적으로 원산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 무역구제조치를 제외한 비특혜 무역제도까지 확대 적용하는 Uniform Rules of Origin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미 CBP 입장

자료: 관세청, 『FTA 교역비중 70%에 대비한 원산지제도 발전방안』, p. 25

- 원산지표시 의무는 최종구매자에게 있으며, 적절한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이때 최종구매자는 수입자 또는 소매업자를 의미함
- 원산지표시는 ‘영구적이며 최종구매자가 구매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부착되어야 함
 - 단, 재포장으로 원산지가 없어질 경우에는 원래의 원산지표시를 다시 하여야 함

나. 원산지 표시방법²⁷⁹⁾

- 원산지 표시방법은 일반적 표시방법과 특정물품의 표시방법으로 분류됨
 - 특정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유형의 4가지 임²⁸⁰⁾
 - NAFTA 국가물품을 제외한 칼, 포크, 강철제품, 식칼, 손톱깎이, 가위 등과 같은 유형의 물품
 - 시계(휴대용 및 비휴대용)
 - 미국의 전통적인 디자인 주제, 재료 또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는 전통 미국식 장신구류
 - 전통 미국식 예술품 및 공예품

- 일반적 표시방법은 4개의 관련 규정이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확실히 보이는 자리에
 - 물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식별이 쉬울 뿐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③ 미국 내의 최종구매자들이 알 수 있도록(④ 물품 원산지국의 영어명(the English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내용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담은 용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용기 자체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임

- 보세구역에서 재포장 등 단순작업을 거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소비를 해 인취되는 시점에서 원산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 어떤 물품이 수입 후 최종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고 그 후에도 수입물품의 원산지명이 외관상 드러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 자체만의 원산지명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는 수입 후에 결합된 물품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나 기호가 기재되어야 함
 - 포장용기 또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알콜 음료병에 대한 특별원산지 표시 요구 등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에 의한 별도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279) 19 U.S.C 제1304조 (a) 번역본 발췌

280) 19 CFR 134.43

- 다른 정부기관에 의한 별도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장 바깥쪽 포장용기 또는 케이스(내용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내용물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내용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함
 - 그 밖의 포장용기 또는 케이스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해서는 포장용기의 재사용 여부 및 원산지 표시 불가능 물품을 담은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품목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함
- 물리적으로 당해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 표시로 물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다음은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임
 -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품목
 -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손상되는 품목
 -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 비싸짐으로써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
 - 포장용기(container)의 원산지 표시가 타당한 방식으로 당해 품목의 원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 천연의 물질
 - 수입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품목, 즉 수입된 상태로 판매되지 않는 품목
 - 수입자가 미국에서 가공할 품목으로서 그의 책임하에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영구히 감추어지는 경우
 - 당해 품목의 성질이나 수입할 때의 사정으로 보아 원산지 표시가 없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경우
 - 20년 이전에 생산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
 - 미국으로 수입된 후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 비싸지게 됨으로써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품목
 -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 또는 운송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3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과정이 필요함
 -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지위(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 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²⁸¹⁾
- 원산지검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되며, 판례와 「관세법」이 판정기준임²⁸²⁾²⁸³⁾
 -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원산지 규정의 절차적 요건, 입증책임, 과실,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판례를 제공함²⁸⁴⁾
-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닌 수입자의 선택사항임²⁸⁵⁾
- 원산지 규정은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됨
 -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의 경우 주로 판례법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 시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일반 물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섬유류와 관련해서는 수량규제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²⁸⁶⁾

281) 조만희, 『원산지 규정과 자유무역 협정』, 삼일인포마인, 2014, p. 48

282) 세계법령정보센터,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http://world.moleg.go.kr/World/InternationalOrganization/WT/law/36946>

283)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284)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https://www.cit.uscourts.gov/Judicial_Conferences/17th_Judicial_Conference/17th_Judicial_Conference_Papers/ConnorPaper.pdf (검색일자: 2017. 10. 13)

285) 허위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며 관련 본보고서 V. 벌칙에 관련 형벌 수록함

286) 19 CFR 102.21

〈표 2-VI-3〉 비특혜 및 특혜 원산지 규정 관련법

비특혜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례법 - 주로 원산지 판정기준 ○ 관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304조, 시행규칙 제134조 - 원산지 판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섬유류: 시행규칙 제102.21조, 「관세법」 제3592조 • 기타 품목: 관례 - 원산지 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181.111~181.16조 ○ 「덤핑방지법」: 상무성의 원산지 결정 ○ 「자동차라벨링법」: 원산지 표시의무 ○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 1994년 「GATT 실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스라엘 FTA 및 이행법 ○ NAFTA 및 이행법 ○ 미-싱가포르 FTA 및 이행법 ○ 미-칠레 FTA 및 이행법 ○ 미-호주 FTA 및 이행법 ○ 미-바레인 FTA 및 이행법 ○ 미-모로코 TPA 및 이행법 ○ 미-페루 TPA 및 이행법 ○ 미-오만 FTA 및 이행법 ○ CAFTA-DR 및 이행법 ○ 미-요르단 FTA 및 이행법 ○ 미-파나마 FTA 및 이행법 ○ 미-콜롬비아 FTA 및 이행법 ○ 미-한국 FTA 및 이행법 ○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협정(AGOA), 일반관세특혜제도(GSP), 미속령 특혜제도 등

자료: 박광서,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p. 75 재인용

- 원산지 규정은 기업의 생산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 정책적 기능도 수행함
 - 기업의 투자와 부품조달 등을 포함하는 생산방식은 원산지 판정과 직결되는 동시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가. 비특혜원산지

-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은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실질변형 기준²⁸⁷⁾이 적용되며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정함²⁸⁸⁾

287)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1) 세 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의 기준이 사용됨

288) NA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함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시 성질·용도 변화와 부가가치·투자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예외적으로,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따름²⁸⁹⁾
- 비특혜원산지 판정은 미국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함²⁹⁰⁾
- 대표적인 판례로 Anheuser-Busch사 판결(연방대법원, 1907.1.6.), Belcrest Linens사 판결(연방항소법원, 1984), National Juice 연합사건(1986), Superior Wire사 사건(미국국제무역법원, 1987) 등이 있음

〈표 2-VI-4〉 비특혜원산지 판례

Anheuser-Busch사 판결(연방대법원, 1907.1.6.)은 ‘제조는 변화를 말하나, 모든 변화가 제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형(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한다. 즉 새롭고 다른 제품이 다른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지고 출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변형의 판정요소로서 명칭·성질·용도의 변화를 제시

Belcrest Linens사 판결(연방항소법원, 1984)은 ‘실질적 변형은 제품이 공정을 거친 결과 다른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지게 될 때 생긴다’고 판시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확립

National Juice 연합사건(1986)은 미국국제무역법원은 ‘제품 명칭의 변경은 실질적 변형의 입증수단으로서 가장 미약한 증거이며, 생산자 제품에서 소비자 제품으로의 변화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으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정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또한 제품의 성질이 변하면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판시

Superior Wire사 사건(미국국제무역법원, 1987)에서는 명칭과 세 번의 변경만으로는 실질적 변경 여부 판단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역시 부가가치율 15%로는 실질적 변형의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투자액의 다과가 실질적 변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 변형유무를 성질·용도의 변화 외에 부가가치·투자액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

자료: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p. 43 유형별 판례 발췌

289) 19 CFR 102.21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251844052f5b301b056cd4205b09661&mc=true&node=se19.1.102_121&rgn=div8

290)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p. 43 유형별 판례 발췌

나. 특혜원산지

-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등 특혜원산지 적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²⁹¹⁾
- 특혜원산지 요건은 협정마다 다르며, 요건 충족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NAFTA의 경우 협정문에서 4가지 특혜관세 요건을 제시함²⁹²⁾
 - 첫째,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당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 둘째, 특혜관세 신청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 셋째, 세관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 넷째, 특혜신청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즉시 특혜관세 신청을 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단, 수입신고 시점에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²⁹³⁾
- 특혜원산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취소와 함께 벌금 부과, 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객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함
- 미국은 특혜원산지 판정 시, FTA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제하는 특징이 있음²⁹⁴⁾
 - 절차적 요건에는 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등이 있음
 - 정해진 기간의 예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수입일로부터 1년내, 청구인의 이의 제기 가능기간은 수입자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등임

291) 특혜원산지로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GSP), 개도국특혜관세(GSTP) 등이며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 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음.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조합기준 등임

292)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2, p. 5

293) NAFTA 제502조 (3)항

294)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국제무역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2, p. 20

- 판례를 통해 국제무역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은 구제조치와 관련된 여타 국내 법령에도 불구하고 1년의 사후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함²⁹⁵⁾
- 특혜관세에 관한 한 세관의 잘못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수입자가 사후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함

□ 절차적 요건 외에도 입증책임, 과실, 합리적 주의,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구비 요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짐

○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할 시 특혜원산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원산지서식으로 CBP Form 28²⁹⁶⁾과, CBP Form 29²⁹⁷⁾이 있음

○ Form 28은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서식임

- 원산지검증인 경우 Form 28 내에 'UKFTA verification'이라는 문구가 포함됨
- 미국 수입자는 수령한 Form 28을 대한민국 수출자에게 보내 자료 제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함

○ CBP Form 29는 결과통지(Notice of Action) 서식으로 미국 세관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함

- Form 29는 총 2회에 걸쳐 발행될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Form 29에 의한 예비결정('Proposed')을 발행함

295) Xerox Corp. v. U.s., 423 F3d 1356, 1365(Fed.Cir.2005), 열람: <https://openjurist.org/423/f3d/1356/xerox-corporation-v-united-states> (검색일자: 2017. 9. 22.)

296) https://www.ftatex.or.kr/ftafiles/originSample/originSample.CBP_Form_28.pdf (검색일자: 2017. 9. 22.)

297) https://www.ftatex.or.kr/ftafiles/originSample/originSample.CBP_Form_29.pdf (검색일자: 2017. 9. 22.)

VII. 보세제도²⁹⁸⁾

-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수입물품에 대한 제세의 납부 없이 보관, 분류, 조작, 재포장, 제조공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구역을 말함
 - 관련법은 보세창고의 지정권(19 U.S.C. § 1555), 보세공장 및 제련·가공창고 지정권(19 U.S.C. § 1311, 1312), 보세창고 전반(CFR Title 19, Chap. 1, Part 19) 등이 있음

- 미국의 보세구역은 11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보세공장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보세 구역은 허가 요건, 승인 절차, 화물 반출입 절차, 기록유지 등의 기준이 동일함
 - Class 1: 지정보세장치장
 - Class 2: 자가용보세창고(Private Bonded Warehouse)
 - Class 3: 영업용보세창고(Public Bonded Warehouse)
 - Class 4: 보세야적장
 - Class 5: 보세저장소
 - Class 6: 보세공장
 - Class 7: 철강가공 보세공장
 - Class 8: 보세작업장

298) 19 CFR Part 19 – CUSTOMS WAREHOUSES, CONTAINER STATIONS AND CONTROL OF MERCHANDISE THEREIN,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9> (검색일자: 2017. 9. 22.)

- Class 9: 면세점(duty-free stores)
 - Class 10: (유보)
 - Class 11: 일반명령(General Order) 물품 보세창고
- 보세구역의 유형별로 장치가능 물품은 상이함²⁹⁹⁾
- 지정보세장치장의 경우 세관검사물품, 압류 및 유치물품 장치 가능함
 - 자가용보세창고의 경우 기업의 자가 사용물품 장치 가능함
 - 영업용보세창고의 경우 개별 화주의 물품 장치 가능함
 - 보세야적장은 중량품과 벌크화물, 보세저장소는 곡물 등,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의 원재료 등 장치 가능함
 - 철강가공 보세공장은 철강의 장치가 가능하며, 보세작업장은 청소, 분류, 재포장 또는 상태변경을 위한 물품 장치 가능함
 - 면세점은 출국지점에서 판매되는 면세물품 장치 가능함
 - 일반명령(General Order) 물품 보세창고는 미국 도착 후 15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권리가 주장되지 않은 물품의 장치가 가능함
- 단, 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은 장치 불허하며 수입금지 물품은 장치할 수 없으나 수출용 또는 합법적인 물품으로 변경될 경우 장치 가능함
- 보세창고 1회 허가기간은 최장 5년이며 연장 가능함
- 지정보세창고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물품 장치 가능함
 - 자가용보세창고, 영업용보세창고, 보세야적장, 보세저장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 단 세관장이 허가할 경우 연장 가능함
- 보세창고에 물품 반입 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 신청 후 세관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보수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보세창고 운영인은 재고량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운송, 보관, 조작, 제조, 제련, 파손된 모든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해야 함

299)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계 선진화방안』, 2013. 12, p. 46

- 보세창고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없으며 그 외 인적요건, 시설요건, 지리적 요건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보세창고 설립이 가능함
 - 세관장은 신청인의 자질, 상도덕, 개인이력, 재무 및 거래 기록, 신용과 개인신용 조회서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 보세창고 운영인은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야 함
 - 건물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판 또는 강철로 엮은 울타리 구조 또는 목재로 구축해야 함
 - 세관이 효과적으로 보세창고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항만으로부터 56km 이내에 위치해야 함

- 보세창고 설립 신청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창고, 위치, 창고유형(등급)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된 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인은 보세창고에 장치될 재고의 관리 및 보관체계(Inventory Control and Record Keeping System)가 기재된 업무매뉴얼을 보유해야 함
 - 신청인은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해야 함
 - 화재보험에 부보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화재보험 목적상 적합한 창고라는 사실을 보증한 보험회사 2개사가 각각 서명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건물, 부지의 넓이, 창문 등을 표시한 청사진(blueprint)을 제출해야 함
 - 건물의 일부가 보세창고로 사용된다면 모든 건물의 구조와 자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함
 - 지정보세장치장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보세창고로 특허를 받게 되면, Customs and Borders Protection Form(CBPF) 301호 양식의 관세담보를 제공해야 함³⁰⁰⁾

-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당사자는 관세담보가 반드시 필요함
 - 관세담보의 성격은 보험증권과 유사하며 미국 세관에게 관세, 세금, 수수료 등의 지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
 - 관세담보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임
 - 관세담보의 용도는 수입업자가 세관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물품을 점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임

300) 19 U.S.C. 제1623조 관세담보 요구

- 관세담보 유형은 지속형 관세담보와 개별(1회용) 관세담보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관세담보 금액과 관세담보 결정방법이 다름
- 지속형 관세담보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많은 물량을 여러 항만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적합함
 - 수송을 많이 하는 운송인, 세관과 정기적으로 관계하는 물품관리자(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인, 면세점 운영인, CFS 운영인, 기타 화물관리인 포함)에게 필요함
 - 지속형은 1년 단위로 매년 자동갱신되며 최소 관세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5만달러임
 - 당사자 또는 보증인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는 유효함
- 개별(1회용) 관세담보는 단일거래에 이용됨
 - 개별(1회용) 관세담보 금액은 관세담보를 수취하는 세관장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보다 높음
- 관세담보 당사자(주채무자)는 수입업자, 중개인, 운송인, 보세창고 운영인, 자유무역지역 운영인, 기타 세관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당사자 등임
 - 당사자는 자신의 임무 완수를 보증하기 위해 관세담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보증인은 재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보험회사임
 - 보증인은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지불할 것에 동의함
- 수입업자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 세관에 물품을 재인도할 의무를 지님
- 보세화물의 관리자³⁰¹⁾는 보세화물의 수령, 운송,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그러한 물품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고 세관의 요청 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지님

301) 보세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인, 면세점운영인, CFS 운영인, 기타 화물관리인 포함

- 모든 관세담보에 대한 수익자는 세관임
 - 관세담보가 납세로 이용될 시 이에 대한 수익자는 세관임

- 당사자들의 의무불이행 시, 세관은 당사자들과 보증인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
 - 보상청구는 관세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세관은 관세미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세관은 당사자가 관세담보상의 다른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금은 관세담보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됨

VIII. 수입규제제도

- 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임
 - 관세의 경우 WTO 협정에 따라 점차 인하되어 관세장벽이 완화되는 추세임
 - 비관세 조치의 경우 과거 수입금지, 수량규제 등 국경을 기점으로 한 무역정책에서 기술적 규제,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적용범위와 용처가 확대됨
 -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란 상품의 국제 교역, 교역량의 변화 또는 가격 또는 둘 모두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적인 관세를 제외한 정책 수단임³⁰²⁾

- 미국은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수입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음
 - 미국 수입규제 목적은 자국 산업의 보호, 미국인의 건강 및 후생, 미국 내 동식물 등의 보호 유지 등임

302) 비관세 조치는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아 공통된 분류기준이 없음. 대표적 분류방식으로 볼드윈(1970), UNCTAD(2012), WTO 규정 등이 있으며, 본 연구보고서는 Non-Tariff Measures: Evidence from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and Future Research Agenda를 참고. (UNCTAD/DITC/TAB/2009 /3, United Nations 2010. 공통된 정의는 없으나 UNCTAD의 정의가 통용)

- 미국 수입규제정책의 목적은 크게 소비자 보호, 공정무역 및 국내산업 보호, 정치·외교적 목적의 통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는 각종 위생 및 안전기준(FDA, U.S. CPSC 등)을 통해 수입규제함
 - 공정무역 및 국내산업 보호차원은 쿼터관리, 지적재산권 등의 수단을 통해 규제함
 - 정치·외교적 목적의 통제는 테러국가제재, 아동노동착취방지 등의 제한법이 있음

-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어 반덤핑관세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무역규제조치는 수입품에 대한 자국 기업의 제소를 가능하게 하며 제소 후 조사기간 동안 수입물품의 자국 판매가 금지됨

1 수입규제제도³⁰³⁾

가. 관세

- 관세감축은 다자무역협상(Round)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왔음
 -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고관세, 보조금 등의 관세장벽이 금지(banned)됨

- 미국은 관세를 다른 나라와 교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행정부 재량으로 관세부과와 수입쿼터 시행이 가능함
 - 「무역확대법」 제232(b)조, 「통상법」 제122조, 1974년 「통상법」 제301~307조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무역협정상 미국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업계 제소 또는 USTR 자체 조사를 통해 양자협약(12~18개월)을 우선 추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함

303)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 및 국별 관련 법령에 근거함, WTO 홈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검색일자: 2017. 10. 11.)

- 다른 나라로부터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를 받기 위해 보복관세조항을 두고 있음³⁰⁴⁾

나. 무역구제(불공정무역행위)제도

- WTO 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입규제 형태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들 수 있음³⁰⁵⁾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임
 - 상계관세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임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임
-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강화되고 있음
 - 2015년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2001년 이후 최대 건수(64건)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현재까지 49건의 조사가 개시됨³⁰⁶⁾
 - 주요 피제소국은 중국(18건), 우리나라(6건), 인도(4건) 등임

304) 정재호·정재완(2015), p. 16

305)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분류 및 정의, Kita.net/import/classificationAndDefinition.screen?menuid=ntb040101 (검색일자: 2017. 10. 11.)

306) 11월 현재까지 총 49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이루어졌으나, 2건은 조사 종료됨

〈표 2-VIII-1〉 최근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

(단위: 건)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일본	전세계
2015	11	7	8	5	4	2	2	64
2016	18	6	4	3	3	2	2	49

주: 조사개시 건수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각각 1건으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https://www.commerce.gov/tags/antidumping>(검색일자: 2017. 10. 11.)

- 미국은 덤핑 등에 대한 조사판정에 대한 재량범위가 큰 국가로 미 업계에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음³⁰⁷⁾
 - WTO 체제의 출범 이후 반덤핑규제 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음
- 1980년대부터 직접적인 수입제한방식보다는 공정무역 개념에서 출발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간접적인 수입제한방식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함³⁰⁸⁾
 - 무역구제조치가 외국 제품에 대한 통상적인 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음³⁰⁹⁾
- 상무부와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덤핑조사와 산업조사 부분을 두 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이중체제이며 상무부가 조사개시의 책임을 맡고 있음³¹⁰⁾
 - 조사는 대개 덤핑이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 산업이 서면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됨³¹¹⁾

307) UNCTA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procedures -use or abus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2009, p.13, http://unctad.org/en/Docs/itcdtab10_en.pdf (검색일자: 2017. 10. 13.)

308) ROPPA, "Rebuilding all agricultural policies on food sovereignty," 2012, p. 8,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c10_e/roppappmc10_e.pdf (검색일자: 2017. 10. 11.)

309) UNCTA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procedures -use or abus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2009, p.13, http://unctad.org/en/Docs/itcdtab10_en.pdf (검색일자: 2017. 10. 11.)

310) Judith M. Czako,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WTO, 2013, p. 28

311) 협정 제5.2조

- 조사개시 건수 증가 등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이용가능자료 (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됨³¹²⁾
 - AFA는 피소업체(피제소국)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는 규정임³¹³⁾
 - 피소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규제국인 미국 측 상무부는 AFA를 활용해 이에 대해 피제소국이 문제삼기 어렵게 함

- 현재 상무부 자체적으로 조사개시가 가능하며,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³¹⁴⁾
 - 현재 진행 중인 무역구제현황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함³¹⁵⁾
 - 수입규제 관련법은 1988년 「종합무역법」, 수퍼301조, 스페셜301조,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제4421조 등임

[그림 2-Ⅷ-1] 미국 「통상법」 Unfair trade practices 관련 규정

1930년 「관세법」 제701~709조 및 제731~739조

전통적으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던 외국 수출자의 덤핑과 외국 정부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를 명문화함. 입법 초기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는 드물게 활용되었지만 이후 74년 「통상법」, 88년 「종합무역법」, 94년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 등의 개정을 거치며 수입규제조치로 활발히 활용됨

1974년 「통상법」 제301조

‘공정무역’의 개념이 최초로 미국 국내법 체계에 도입됨

* 제301조가 속한 1974년 「통상법」 제3편의 제목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Unfair Trade Practices)”임.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여 미국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아래 요건에 따라 의무적 조

3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2017. 2, p.10

313) 미 국제무역법원 홈페이지 참조, 607 F.3d at 766., https://www.cit.uscourts.gov/Judicial_Conferences/18th_Judicial_Conference/18th_Judicial_Conference_Papers/Reference%20Material%20for%20Panel%201.pdf (검색일자: 2017. 10. 20.)

314) 미 국제무역위원회, https://www.usitc.gov/press_room/usad.htm (검색일자: 2017. 10. 13.)

315) https://www.usitc.gov/research_and_analysis/what_we_are_working_on.htm (검색일자: 2017. 10. 14.)

치를 취하거나 재량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 미국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 수출 지원정책 유무, 정부의 노동권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을 판단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2조(수퍼 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1974년 「통상법」에 ‘외국의 우선 불공정 관행(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을 지정하는 310조가 강화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수퍼 301조’로 불림.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것을 의미함. ‘외국의 우선 불공정 관행’이란 폐지되었을 경우 미국의 수출을 가장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무역장벽과 무역왜곡관행을 의미함. 미 무역대표부에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연례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강력한 무역보복조치 권한을 부여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03조(스페셜 301조)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대한 수정조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스페셜 301조’로 불림. 미 무역대표부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나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무역보복조치 권한을 부여

1988년 「종합무역법」 제1371~1381조(통신부문 스페셜 301조)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교역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고 호혜적 시장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일명 ‘통신부문 스페셜 301조’로 불림.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산 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상호호혜적인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교역상대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

1988년 「종합무역법」과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수입에서의 불공정 관행들(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에 관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개정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피해당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 수입상품이, 미국 산업을 파괴하거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우려나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산업의 설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또는 미국 내 상거래를 제약하거나 독점화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수단(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 행위(unfair acts)’로 간주함

2000년 「버드 수정법」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한 관세 수입액을 제소기업에게 분배하여 미국 기업이 입은 피해를 상쇄하고자 함. 외국 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WTO에서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이후 결국 2005년 폐지됨

1988년 「종합무역법」 제2202조 및 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제4421조

외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교역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 재무부는 교역상대국이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1988년 「종합무역법」 제2202조)

- 재무부는 반기별로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구제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2015년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제4421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외에도 낮은 환경오염기준, 저임금 노동, 인위적 비관세장벽, 기술 이전 강요, 국영기업의 독점행위,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을 통한 우회수출 등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

자료: 연방법 중 「관세법」, 「74통상법」, 「79통상협정법」,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 개념(한국무역협회)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비관세 장벽

□ 비관세 장벽은 제7차 도쿄 라운드(Tokyo Round, 1964~1979년)에서 최초로 언급됨

○ 비관세 장벽은 가격조치(관세 및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비가격조치(금융조치, 수량제한, 반독점), 기술조치(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등), 제도적 조치(무역 관련 투자조치, 비수출 관련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로 분류됨³¹⁶⁾

1)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및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316) UNCTAD 분류기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ver. 2012, UNCTAD,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ditctab20122_en.pdf (검색일자: 2017. 10. 13.) 부록 I. NTM 분류표 참조.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formalities, Contingent trade-protective measures, Non-automatic licensing, quotas, prohibitions and quantitycontrol measures other than for SPS or TBT reasons, Price-control measures, including additional taxes and charges, Finance measures, Measures affecting competiti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Distribution restrictions, Restrictions on post-sales services, Subsidies (excluding export subsidies under P7), Government procurement restrictions, Intellectual property, Rules of origin, Export-related measures

- 위생검역조치(이하 SPS) 협정은 WTO 회원국이 합의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SPS 조치 규율에 대한 최초 논의는 도쿄라운드(1979) TBT 협정에서 이뤄짐
 - 동 협정에서 잔류농약 한계치, 검사요건 및 라벨링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s) 등에 대해 다룸
 - SPS 협정 위반 판단 조항은 제2조와 제3조, 제5조에 명시됨³¹⁷⁾
 - 용어의 정의와 의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미국 SPS 정책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됨³¹⁸⁾

- 미국의 SPS 관련 분쟁은 가금류(2010)와 동물(2015) 사례에서 두 차례 발생함
 - 2004년 조류독감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미국은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했고, 2008년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³¹⁹⁾

〈표 2-Ⅷ-2〉 미국 가금류 SPS 분쟁 사례

당사국		협정문 인용 조항	분쟁 개요	
제소국	중국	SPS Arts. 2.1, 2.2, 2.3, 3.1, 3.3, 5.1, 5.2, 5.3, 5.4, 5.5, 5.6, 5.7, 8 / AA Art. 4.2 / GATT Arts. I:1 and XI:1	패널구성	31 July 2009
규제국	미국		패널리포트발행	29 September 2010
			Circulation of AB Report NA	
			채택	25 October 2010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1pagesum_e/ds392sum_e.pdf (검색 일자: 2017. 10. 13.)

317) 강민지,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8
 318) 2010~2013년까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함
 319) 농업, 농촌개발, 식품의약품 및 유관기관 예산세출법(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이하 예산세출법) Section 733

- US-Animal SPS 분쟁사례의 제소국은 아르헨티나로, 미국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함
 -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최남단) 지역이 구제역 안전지역(FMD-free region)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미국은 아르헨티나 북부로부터의 냉장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파타고니아 지역으로부터의 동물, 육류 및 다른 육제품 수입을 금지함

〈표 2-Ⅷ-3〉 미국 Animals SPS 분쟁 사례

타이틀	US - Animals
제소국	Argentina
규제국	United States
제3당사자 ¹⁾	Australia; Brazil; China; European Union; India; <i>Republic of Korea</i>
협정문 인용 조항	GATT 1994: Art. I:1, III:4, XI:1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rt. 1.1, 2.2, 2.3, 3.1, 3.3, 5.1, 5.4, 5.6, 6.1, 6.2, 8, 10.1, Annex 1c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 XVI:4
협의요청	30 August 2012
WTO 패널 리포트(결정)	24 July 2015

주: 1)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제도로서 당해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분쟁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를 가지는 회원국. 이러한 제3자에게는 분쟁해결 패널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주어짐

자료: WTO 분쟁사례, US-Animal(Patagonia) 201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47_e.htm (검색일자: 2017. 10. 13.)

- 미국 내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와 식약청 검역이 강화되어 대미 식품수출 장벽이 높아짐³²⁰⁾
- 한편, 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 등을 개정할 때 회원국에게 개정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함
 - 통보목적은 인간의 건강 및 안전, 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품질규정, 소비자 정보제공, 국내법 채택, 무역장벽 해소 및 제거, 국제기준 부합화,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보호, 무역원활화, 비용절감, 국가안보 등이 있음

320)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제정,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

- TBT 통보문은 신규, 개정, 추가, 정정으로 분류됨
 - 신규는 기술규정 제·개정 최초로 기술규제를 통보하는 경우
 - 개정은 최초 통보된 TBT 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 추가는 최초 TBT 통보문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정정은 최초 통보된 TBT 통보문에 경미한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

- 무역기술장벽은 TBT 통보문을 상대국에 발행함으로써 시작되며, 미국의 TBT 통보문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³²¹⁾
 - 미국은 TBT 통보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국가로, 2015년 12월 기준 누적통보 건수는 2,459건임
 - TBT 통보문을 발행하는 주요 분야는 화학세라믹, 교통, 생활용품, 소재나노 등임³²²⁾

-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기한 TBT 관련 의제 6개 중 5개 의제는 합의가 도출됨
 - 6개 의제는 타이어식별번호규제, LED 램프규제, 할로젠계 난연제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규제, 화장품 색소 성분, 낙뢰보호시스템(이하 LPS) 등임
 - 이중 LPS의 경우 협의 중에 있음
 - 미국의 LPS 표준(NFPA)이 국제표준(IEC62305)과 다른 제약 조항이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 측에 미국표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임³²³⁾

- STC는 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특정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무역 관련 특정 현안임
 - 신규 또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기술규제가 수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함

321) 무역장벽 이용한 특정 국가의 무역기술장벽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분석이 활용되며 건수가 많을수록 기술장벽에 대한 활용이 높다고 평가됨.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4_e.htm#TRS (검색일자: 2017. 10. 25.)

322) 우리나라 동 기간 765건(11위)

32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6. 4. p. 88

- 미국의 STC(Specific Trade Concerns: 이하 STC)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STC 누적 건수(1995~2015년)는 197건으로, 유럽연합(224건)에 이어 두 번째임
 - 유럽연합에 이어 기술장벽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은 이의제기를 함
 - WTO TBT 위원회에 28개국이 86건을 제기함³²⁴⁾

-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기한 STC는 총 2건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임

2) 서비스장벽

-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미국은 조사대상인 44개 국가 중 개방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임³²⁵⁾
 - OECD의 STRI는 2014년 각료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지수개발목적은 회원국 간의 규제개선을 통한 무역자유화 진전에 있음
 - 미국은 서비스업 22개 분야 중 16개 업종은 서비스개방도가 OECD 평균 이상임

- 하지만 항공(Air transport), 해운(Maritime transport), 택배운송업(Courier), 보험업(Insurance) 등 총 4개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장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³²⁶⁾

- 항공업의 STRI 수치는 0.541로 44개국 중 브라질, 러시아,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음³²⁷⁾
 - 해운업의 경우 STRI 0.371로 5번째, 택배운송업의 경우 STRI 0.4로 12번째, 보험업의 경우 STRI 0.29로 8번째임

324) 2015년 12월 기준

325) OECD, "Reform services trade policies to boost the global economy," <http://www2.compareyourcountry.org/service-trade-restrictions?page=1&cr=usa&cr1=oe&lg=en> (검색일자: 2017. 10. 20.)

326) OECD,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http://www2.compareyourcountry.org/service-trade-restrictions?cr=kor&cr1=oe&lg=en&page=0> (검색일자: 2017. 10. 20.)

327) STRI지수는 0에서 1 사이 숫자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강하고 개방도가 낮다고 해석됨. OECD STRI Stimulator, <https://sim.oecd.org/Simulator.ashx?lang=En&ds=STRI&d1c=trair&d2c=usa> (검색일자: 2017. 10. 20.)

- 정부조달시장은 오직 GPA 회원국(members of the WTO's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게만 개방되어 있음
 - GPA 회원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도가 높은 편임
- 외국 법인에 대해 R&D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R&D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외국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이 있음
-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스페셜 301조를 통해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를 관찰함

라. 수입금지품목 및 제한품목

-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 자유화되어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할당(쿼터)으로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외국자산관리규제 및 쿠바자산규칙, 「관세법」 등에 따라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금지됨³²⁸⁾
 - 북한과 쿠바로부터의 수입이 금지이며, 무기·탄약·전쟁 수단 물질의 수입이 금지됨
 - 알코올·담배 총기국(AFT)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제외함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및 사법부 규칙에 따라 수입되는 이외의 것도 수입이 금지됨
 - 미국 세관은 농무부와 식약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불법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328) 미국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Tariff Act of 1930, 19 U.S. Code) Sub Title II, Part1, § 1301~132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2/subtitle-II/part-I> (검색일자: 2017. 10. 13.)

- 음란서적, 사진, 미국에 대한 반역 및 반란을 조장하는 서적도 수입 금지 대상이며, 죄수 또는 강제 노동에 의해 제조된 물품과 위조 화폐, 위조 증권 및 위조물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 기기도 금지됨
- 수입금지품목 외에 일부 품목은 수입라이선스품목, 수입할당품목, 특수 수입조건 절차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규제 이유는 미국 경제의 유지와 안전보장, 소비자의 건강 및 후생, 국내 동식물 보호 등임
 - 수입라이선스품목은 수입 라이선스 감독 관청의 수입 허가, 검사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품목임
 - 특수 수입조건 절차품목은 「연방 종자법」, 「에너지 절약법」, 「방사선 관리 건강 안전법」,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 「독극물 관리법」 등 안전 기준에 의거, 라벨 표시 등 특수한 수입 조건이 의무화된 품목임

마. 인증

- 미국 인증제도는 의무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제인증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가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인식됨
- 인증의 종류마다 대상품목별 규정이 다르며, 인증소요기간 및 인증획득비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품목에 필요한 인증에 대한 숙지가 요구됨

1) 의무인증

- 미국의 대표적 의무인증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등임
 - 강제인증제도는 FDA, FCC, ABS 등을 포함해 총 134개임³²⁹⁾

329)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findCertOfNation.do#> (검색일자: 2017. 10. 17.)

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승인

- FDA 인증의 경우 품목에 따라 적용 요건과 기준이 다름
 -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그 품목에 따라 요건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 근거법령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바이오테러방지법」, 연방법령(CFR Title 21 Food and Drugs Section 1084, 1105, 1136, 1147)임³³⁰⁾

- FDA 인증의 목적은 수입물품 안전성과 소비자보호로 미국 정부의 강제적 인증이 이행됨³³¹⁾
 - 미국 식품의약품청은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생약제제, 의료기기, 국가 식량 공급, 화장품, 방사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기관임³³²⁾

- FDA 인증은 미국 식품의약품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며 필요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획득 여부가 결정됨
 -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는 공장등록증, 시판전신고서, 시판전승인신청서 등임
 - 인증획득은 해당 품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

- 식품의 경우 FDA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시설 등록,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함³³³⁾
 - 음식물 시설 등록의무는 미국으로 식품 반입 전 음식물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

330) 관련 법령은 FD&C Act(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Bioterrorism Act),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1 CFR 1084: Acidified foods; Thermal processing of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CFR 1105: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 CFR 1136: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CFR 1147: Acidified foods임

331) FDA,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default.htm> (검색일자: 2017. 10. 17.)

332) FDA, <https://www.fda.gov/AboutFDA/WhatWeDo/default.htm> (검색일자: 2017. 10. 17.)

333) FDA,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의 Food Facility Registration, LACF Registration 참조 (검색일자: 2017. 10. 17.)

-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 등록의무는 산화 및 저산통조림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하는 사업자는 FDA에 회사정보(회사명, 주소, 가공시설 및 가공방식, 시설에서 가공되는 모든 음식의 목록)를 제출·등록하는 것을 말함
- 식품 중 육류, 가금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식품의약처와 함께 농무부 위생검역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사·규제함
- 의약품의 경우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되며, 처방약의 경우 FDA 인증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임³³⁴⁾
 -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제321조를 따름
 - 의료인의 처방전이 필요한 처방약의 경우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등 FDA 허가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 비처방약의 경우 유효성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처방약 각조(Over the Counter Monograph)를 만족하는 경우 3단계 검토 후(FDA 등록) 시판 가능함
 - 단, approved OTC drug은 임상실험이 필수적임
- 신약, 처방약의 경우 시판허가(FDA 승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이 필수적임
 - 임상실험을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이하 IND)이 필요함
-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1등급(Class 1), 의료기기 2등급(Class 2), 의료기기 3등급(Class 3) 등 3단계로 분류되어 품목별 인증을 위한 규제수준이 다름³³⁵⁾
 - 일반규제, 특별규제, 시판전 허가 등 3단계로 분류됨
 - 의료기기 1등급의 경우 일반규제가 적용되며 기업등록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 Device listing)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는 등록으로

334) Drug Compliance Programs의 OTC drug monograph implementation, Title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PG 450.200(CPG 7132b.15), CPG 450.300(CPG 7132b.16), Inspection Operations Manual, Chapter 5,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Part 8를 참조, 일반의약품 각조라고도 하며 비처방약 카테고리 내에서 유효성분, 1회 복용량, formulation, 라벨링, 테스트 등을 규정, <https://www.fda.gov/downloads/ICECI/ComplianceManuals/ComplianceProgramManual/UCM125425.pdf> (검색일자: 2017. 10. 17.)

335) FDA CDRH 규정 인용

시판이 가능함

- 의료기기 2등급의 경우 특별규제(Special Control)가 적용되며 FDA 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 등의 절차가 추가됨
 - 의료기기 3등급의 경우 시판전 허가(Premarket Approval)와 임상실험이 필수이며 임상실험은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실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심사가 요구됨
- 화장품의 경우 일반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약용화장품)으로 구분하며 분류에 따라 시판요구사항이 다름³³⁶⁾
- 일반화장품은 제품상 일체의 효능·효과 표기가 불가하며 완제품의 안전성, 영문 표기한 레이블링을 요구함
 - 기능성 화장품은 자외선차단, 미백, 주름제거, 아토피, 발모 등의 특정기능(효능)이 포함된 화장품으로 의약품등록이 필요함³³⁷⁾
- 승인신청양식 및 상세기재사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별로 다름³³⁸⁾

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 인증

- FCC 인증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를 규제하는 것임
- FCC는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대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임
- FCC 인증은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됨
-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됨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³³⁹⁾

336) FDA CFSAN 규정 인용

337) OTC drug registration & listing 참고

338) APEC 규제조화센터, 『미국 의약품허가제도』, 2016. 6, pp. 16~74 참조

- 인증대상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 및 전기전자기기임
 - 무선통신장비 외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임
 - 전자파를 발생하는 부품, TV, PC,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전구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류, 전화기 등임

- FCC는 제품에 따라 Type Approval, Type Acceptance, Certification, Notification, Verification, Registration 등으로 인증유형이 구분됨
 - 신청자는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해야 함
 - Certification은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 후 인증하는 고강도 인증유형임
 - Verification은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유형임

- FCC 인증절차는 ① 제품검사 → ② Grantee Code 취득 → ③ 인증신청 → ④ 심사결과 통보 → ⑤ FCC 마크 사용, 순서임
 - 제품검사는 FCC에서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FCC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만족한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³⁴⁰⁾
 - Grantee Code는 일종의 업체등록코드로 코드발급까지 약 2~4주 정도 소요됨
- 신청자는 제품에 FCC ID No.를 결정하며 Grantee Code 기본 3자리가 부여됨 (최대 14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
 - 인증신청은 FCC에 Form 731³⁴¹⁾을 작성하여 시험결과서, 수수료(Form 159 작성 포함)와 함께 신청하며 심사결과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6~8주 정도임

-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2,000~5,000달러 정도이나 품목별로 다름³⁴²⁾

339) FCC, <https://www.fcc.gov/general/rules-regulations-title-47> (검색일자: 2017. 11. 7.)

340) 우리나라에는 약 34개의 검사회사가 FCC 승인하에 검사를 대행

341) Application for Equipment Authorization

342) FCC 홈페이지에서 인증획득 시 필요비용 조회 가능, <https://www.fcc.gov/licensing-databases/fees> (검색일자: 2017. 11. 7.)

- 예산조정법(Omnibus Reconciliation Act of 1989)에 따라 인증에 대해 비용을 부과함
- Section 3001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9, Section 8, revising 47 U.S.C. 158

〈표 2-VIII-4〉 인증지정품목

제품 종류	인증 필요 여부
Intentional radiator (carrier current system, tunnel radio system, cable locating equipment)	Verification
Other intentional radiato	Certification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Cer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a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DoC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Va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arification
All other devies	Varification
Consumer ISM equipment	DoC or Certification
Consumer ultrasonic equipment generating less than 500Watts and operating below 90kHz	Varification
Non consumer equipment	Varification

다)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인증

- ABS는 미국 선급협회로 인증 대상품목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부품임³⁴³⁾
 - 1862년 미국선장협회(American Shipmaster's Association)로 발족하여 선박 및 선박 관련 부품의 기계·구조적 적합성을 결정하고 표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 ABS의 형식승인(Type Approved)은 신청된 제품이 표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판단함
- 제조자는 ABS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충분한 자료를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함
- 제품설계평가 후 PDA(Product Design Assessment Certificate)가 발행되며 관리 및 생산 평가를 거쳐 Manufacturing Assessment Certificate가 발행됨
- ABS의 승인서는 5년간 유효하며 매년 공장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심사받음

2) 자율인증

- 미국의 대표적 자율인증은 UL, ANSI, Energystar 등임
 - 자율인증제도는 UL(Underwriters Laboratory),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 178개임

가) UL(Underwriters Laboratory) 인증

- UL 인증은 1894년 처음 개발되었으며 미국 제품에 대해 약 600개 종류의 안전규격을 개발함³⁴⁴⁾

343) <http://www.eagle.org/eagleExternalPortalWEB/ShowProperty/BEA%20Repository/Materials/TypeApprovalProductList> (검색일자: 2017. 11. 8.)




344) UL은 1894년, Delaware 주의 법률에 의거, 미국 내 UL 신뢰성 높이 평가, 소비자 선호도로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UL 마크 요구. 임의규격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은 역할, https://www.ul.com/consumer-retail-services/wp-content/uploads/2016/10/EN_US_CRS_Cosmetics_AUG-2015_LT_WEB.pdf (검색일자: 2017. 11. 8.)

- 인체와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관해, 재료, 기구, 기기, 설비, 구조, 기술, 및 시스템의 조사를 위하여 시험소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설립 인가를 받음
 - UL은 미국 내에 5개의 주요 시험시설과 연방정부 연락사무소 1개소가 있으며 지역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무소 14개소와 약 200개소의 검사센터가 있음³⁴⁵⁾
- UL은 마크 승인제도 외 다양한 업무도 병행함
- ISO9000 심사등록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검사 서비스, EMC 시험 서비스, LAN 케이블 클래스 분류 서비스, 식품서비스기기에 관한 위생시험, 안전교육, 출판(옐로우 북, 그린 북 등) 등의 업무가 있음
- UL은 제품 안전에 관한 표준 개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임
- 사설 인증기관으로 1894년 설립되었음
 - UL 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 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음³⁴⁶⁾
- UL 인증은 가전기기, 냉동공조기기, 산업용 제어기기 등을 포함해 약 19,000개의 제품을 시험 및 인증함
- 인증 대상품목은 소방기기, 오디오·비디오, 의료기·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PWB, 기계류, EMC 등임

345) 노스브룩(Northbrook) 시험소: UL 본사, 최대 규모; 메르빌(Melville) 시험소; 산타클라라(Santa Clara) 시험소: 극동아시아 담당;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 시험소; 카마스(Camas) 시험소: 가장 최근 설립

346) 해외인증센터, <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508> (검색일자: 2017. 11. 15.)

〈표 2-Ⅷ-5〉 주요 UL 인증 종류 및 대상제품

인증구분	내용	대상제품
Listing Service 	UL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넓게 승인되어 있는 서비스로 제조자가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최종제품을 생산할 만한 능력의 유무를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	코오드, 탬프홀더, 코오드셋트, 퓨우즈 등의 부품과 조명기기, TV, 라디오, 카세트, 사무용기기, 냉장고, 모니터 등
Classification Service 	제조자가 UL의 필요사항에 합치하는 안전한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부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것을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	일부 건축물 및 방화용 제품 등
Component Recognition Service 	최종제품 중에서 사용되는 구성부품 또는 반조립품의 시험에 대한 서비스	트랜스포어, 사출, 플라스틱 원료, 인쇄회로기판, 와이어, 캐패시터, 절연 튜브, 라벨, 와이어링 하네스 등
Certificate Service	옥외설치 시스템 또는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는 한정된 수량의,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조자 또는 설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	특정의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수량확인과 생산자 이외의 자가설치하는 시스템

나)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이하 ANSI)는 각종 규격들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총괄관리하고 조정함³⁴⁷⁾
- 미국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임

347) 미국표준협회, https://www.ansi.org/about_ansi/overview/overview?menuid=1 (검색일자: 2017. 11. 15.)

- ANSI는 국제규격과 지침서 및 GATT 협정에 부합하는 각 인증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미국 인증기관들의 업무를 총괄함³⁴⁸⁾
 - 다방면의 임의 규격들을 개발, 보급, 적용하고 이들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보호장치의 역할을 수행함

- ANSI는 독자적인 제품인증과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 및 인증마크 사용 허가를 관리함
 - ANSI는 우리나라의 KS격으로, 국제시장 진출에 있어서 외국인인증기관의 인증획득이 요구됨

- 주요 적용대상은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생활용품 등임
 - 창문과 문, 불투명 절연유리, 가공된 목재, 식수첨가제, 식수처리단위, 풀장과 부대 시설, 플라스틱 파이프와 부속품, 폐수처리단위, 식품공급기, 물병과 얼음주머니, 가스기기와 부대시설, 전기기기와 부대시설 등의 기기제품 및 서비스 등임

〈표 2-VIII-6〉 미국의 주요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American Bureau of Shipping(ABS)	http://www.eagle.org/	ABS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AEM)	http://www.aem.org/	AEM	유압브레이커 전 기종
VCA North America	http://www.dft.gov.uk/vca/vca-north-america/	AEM	유압브레이커 전 기종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http://www.ansi.org/	ANSI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생활용품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https://www.asme.org/	ASME	모든 압력용기 / 원자로 및 관련 자재
Accugen Laboratories, Inc.	http://www.accugenlabs.com/	ASTM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348) 미국표준협회, https://www.standardsportal.org/usa_kr/k/standards_system/ansi_private.aspx (검색일자: 2017. 11. 15.)

〈표 2-Ⅷ-6〉의 계속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Accutek Testing Laboratory	http://www.accutektesting.com/	ASTM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Advanced Material Center	http://amclabs.net/	ASTM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Advanced Plastic and Material Testing Inc.	http://www.apmtesting.com/	ASTM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ASTM	http://www.astm.org/	ASTM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B83 Testing & Engineering	http://www.b83test.com/	ASTM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섬유제품
Cooling Technology Institute(CTI)	http://www.cti.org	CTI	수냉식 냉각탑 전제품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AHRI)	http://www.ari.org/	Energystar	생활용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American Certification Body(ACB, Inc.)	http://acbcert.com/	Energystar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AHAM)	http://www.aham.org/	Energystar	섬유제품, 생활용품, 가정용 전자제품
Bureau Veritas North America	www.us.bureauveritas.com	Energystar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CSA International	http://www.csagroup.org	Energystar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생활용품
Home Ventilating Institute(HVI)	http://www.hvi.org/index.cfm	Energystar	생활용품(환풍기, 팬 등)
IAPMO R&T	http://www.iapmort.org/	Energystar	전기제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Keystone Certifications	http://www.keystonecerts.com/	Energystar	비철금속제품
MET Laboratories, Inc.	http://www.metlabs.com	Energystar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NFRC)	http://www.nfrc.org/	Energystar	비철금속제품
Intertek	http://www.intertek.com	Energystar,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생활용품
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www.tuv.com	Energystar,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표 2-VIII-6〉의 계속

기관명	홈페이지	대상인증	시험·인증 업종
NSF International	http://www.nsf.org/	Energystar, NSF	가정용전자제품, 생활용품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http://www.ul.com/global/eng/pages/	Energystar, UL,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전선, 생활용품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www.fda.gov/default.htm	FDA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용약품, 사료, 유아용유동식, 식품첨가물, 저산성통조림, 산화식품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http://www.nhtsa.gov/	FMVSS	자동차 부품
National Personal Protective Technology Laboratory(NPPTL)	http://www.cdc.gov/niosh/npptl/	NIOSH	호흡장치 및 보조기구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Inc.	http://arl-test.com/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생활용품
FM Approvals LLC (FM)	http://www.fmglobal.com	NRTL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생활용품
SGS US Testing Company Inc.	http://www.ssgroup.us.com/	NRTL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http://www.swri.org/	NRTL	생활용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TUV SUD America Inc.	http://tuvamerica.com/newhome.cfm	NRTL	생활용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전자부품, 충전기

자료: 코트라, 『해외인증제도와 시사점: 북미편』, 2006 참고, <http://125.131.31.47/Solars7DMME/004/79687.PDF> (검색일자: 2017. 10. 17.)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품목, 즉 조치 대상품목은 가전제품,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해 확대되는 추세임
 - 기존의 철강, 화학, 섬유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가전제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 조치 대상품목이 확대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반덤핑 관세를, 탄소합금 후판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함

- 2017년 5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의 수입에 대해 덤핑마진 7.39%, 보조금율 4.31%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
- 2017년 4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인정 최종판정으로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확정됨
 - 한국산 페로바나듐은 2015년 미국 전체 수입시장 중 2위임

〈표 2-Ⅷ-7〉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

	한국HS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CODE			
21	8482.20, 8...	원추롤러베어링 (Tapered Roller Bearings)	반덤핑 (조사 중)	2017-06-28
20	5503.2	저융점폴리에스터 (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조사 중)	2017-06-27
19	5503.2	합성단섬유 (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조사 중)	2017-05-31
18	7304.31, 7...	냉간압연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	반덤핑 (조사 중)	2017-05-09
17	7213.91 72...	탄소합금강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반덤핑 (조사 중)	2017-04-18
16	4002.19	ESBR 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반덤핑 (조사 중)	2016-07-27
15	2917.39, 3...	가소제 (DOTP; Dioctyl Terephthalate)	반덤핑 (조사 중)	2016-07-20
14	7202.92	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반덤핑 (규제 중)	2016-04-19
13	7405	인동 (Phosphor Copper)	반덤핑 (규제 중)	2016-03-30
12	7306.61	강벽사각파이프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반덤핑 (규제 중)	2015-07-21
11	7305.11/12...	송유관 (Welded Line Pipe)	반덤핑 (규제 중)	2014-11-05
10	7317.00, 8...	강철못(Steel Nail)	반덤핑 (규제 중)	2014-06-19
9	7225.50, 7...	무방향성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규제 중)	2013-10-22

〈표 2-VIII-7〉의 계속

	한국HS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CODE				
8	7304.29, 7...		유정용강관 (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 (규제 중)	2013-07-10
7	8504.23/90		유입식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 (규제 중)	2011-07-14
6	7306.61		연벽사각파이프 (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 (규제 중)	2007-07-18
5	7312.1		PC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 (규제 중)	2003-02-27
4	5503.2		폴리에스터단섬유사 (Polyester Staple Fiber: PSF)	반덤핑 (규제 중)	1999-04-30
3	7221		스테인레스선재 (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 (규제 중)	1997-08-26
2	7306.4		스테인리스용접강관 (ASTM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반덤핑 (규제 중)	1991-11-01
1	7306.3		스탠다드강관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반덤핑 (규제 중)	1991-10-04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NAC&nation=US&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
(검색일자: 2017. 10. 11.)

〈표 2-VIII-8〉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

	규제국	한국HS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CODE				
7	미국	7208.40, 7...		탄소합금후판 (Carbon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중)	2016-04-28
6	미국	7208.10/25...		열연강판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중)	2015-09-01
5	미국	7209.15/16...		냉간압연강판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 상계관세 (규제 중)	2015-08-17

〈표 2-Ⅷ-8〉의 계속

	규제국	한국HS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CODE			
4	미국	7210.30/41...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Corrosion-Resistant Flat-Rolled Steel)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	2015-06-23
3	미국	8450.20, 8...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	2012-01-09
2	미국	7208.40/51...	철강후판 (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	1999-03-16
1	미국	7219.13/14...	스테인레스냉연강판코일 (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in Coils)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	1998-06-30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NAC&nation=US&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 (검색일자: 2017. 10. 11.)

〈표 2-Ⅷ-9〉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규제국	한국HS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CODE			
2	미국	8450.20, 8...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 (조사 중)	2017-06-05
1	미국	8541.40, 8...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and Modules)	세이프가드 (조사 중)	2017-05-17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ndition_card.screen?menuid=ntb040201&continent=TNAC&nation=US&searchGb2=RA0003&searchGb3_1=S0001&searchGb3_3=S000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tps://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 (검색일자: 2017. 10. 11.)

- 미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제조 기업들의 조사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미 상무부의 피조사 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가 엄격해지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규정을 보다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덤핑마진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커져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음³⁴⁹⁾
 -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산 변압기에 대해 AFA 규정 적용으로 6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더불어 위생 및 검역(SPS), 기술 장벽(TBT) 조치 역시 확대되는 추세임³⁵⁰⁾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TBT 건수가 크게 증가함
 -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제정에 따라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제가 강화됨
-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산업별 기술 장벽(TBT)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임³⁵¹⁾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 식약 17.5%, 자동차 15.1% 등임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산업별 위생 및 검역(SPS) 통보 건수의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됨³⁵²⁾
 - 2009~2016년 누적 기준, 식품·의약품에 대한 SPS 통보 건수는 각각 1,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임
- 미국의 동식물위생검역 조치 중 우리나라의 농생명공학, 잔류농약기준, 소고기, 감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음

349) AFA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 제공

350) 현대경제연구원,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14호, 2016. 10,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102813463\[1\].pdf](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102813463[1].pdf), (검색일자: 2017. 8. 22.)

351) 현대경제연구원(2016)

352) 현대경제연구원,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14호, 2016. 10, [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102813463\[1\].pdf](http://hri.co.kr/upload/publication/2016102813463[1].pdf), (검색일자: 2017. 8. 22.)

-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제품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미국의 농산품 수출에 어려움을 언급함
 -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 시기와 수출 시기의 잔류농약 수치가 다를 수 있음과 검역 절차상의 요구사항 증가에 대한 우려 표시함
 - 우리나라는 2008년 이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이 재개함
 -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소고기 수출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2016년 총 수출이 10억달러를 초과함
 - 우리나라는 2012년 8월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해당 지역 감자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여전히 유지 중임
- TBT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규제완화 요구에는 「화평법」, 인증, 라벨링 이슈 등이 있음
- 2015년 1월 발효된 「화평법」(K-Reach)³⁵³⁾ 이행 계획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법률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기간 및 기업 기밀 보호가 부족함을 언급함
 -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관련, 공장별 별도 안전인증 요구, 부담스러운 라벨링 요구사항,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CB(Certification Bodies' Scheme) 보고서 접수 거부 등에 대해 불만을 포함
 - 우리나라 공공기관용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절차가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인증을 획득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려함
- 그 외 주류, 목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함
- 주류용기의 건강유해 경고문구 의무표시제는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분류해 유해성을 경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불만이 있음
 - 우리나라 목재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목제품의 품질표준을 반영하지 않고 발표한 산림청 자체 표준에 대해 우려함
-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기존의 철강 및 철강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세탁기, 태양광, 반도체로 규제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353)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세탁기의 경우 미국은 2016년 9월 WTO에서 반덤핑 관세부과 분쟁에서 패소하였으나 현재 시점(2017년 12월 기준)에도 WTO 판정에 대한 관세부과철폐판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³⁵⁴⁾
 - 태양광,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의견을 공고함³⁵⁵⁾
- 미국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IPR Protection)와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함
- 단,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함
- 콘텐츠, 법률서비스, 신용카드, 프랜차이즈, 통신 분야, 디지털 무역장벽, 고객정보 보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함
- 우리나라에서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반기 중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되어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임
 - 해외 로펌과 합작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해외 로펌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으며 분야의 제한이 규제적 성격임
 -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국내법 관련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함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브랜드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진출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외국의 위성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와 진출을 제한한다고 강조함
 -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교통정보, 내비게이션과 같은 양방향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진출에 제한적임
 -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한국 시장만을 위한 지불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354) USITC, *Certai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and Mexico*, 2013, https://www.usitc.gov/publications/701_731/pub4378.pdf

355) USITC Press Room, 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7/er10311l858.htm (검색일자: 2017. 12. 1.)

IX. 행정구제제도

1 개관

- 미국의 경우 납세고지 전 납세자의 불복이유를 청취하는 청문(hearing)제도가 발달되어 있음
 - 조세쟁송제도의 절차 여러 부분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등 납세자 우호적임³⁵⁶⁾

- 미국의 행정구제는 행정심판과 사법심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실시됨
 - 행정심판은 납세자가 세관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사법심판은 처분에 불복 시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임

- 과세처분 전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사전협의(conference)가 가능하며 이는 선택적 절차임
 - 납세자는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전치 없이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³⁵⁷⁾

356) 김영조·이재교·김재광,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연구』, 2005. 7, pp. 196~226

357) Rosenberg v. Commissioner, 304 F2d 560 (4th Cir. 1962), 김영조·이재교·김재광,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연구』, 2005. 7, p. 24에서 재인용

2 행정심판³⁵⁸⁾

- 행정심판의 경우 담당부서는 미 관세청(관할세관 포함)이며, 관련 법률은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19 U.S.C.)의 행정절차(Subtitle III)절의 수입통관과 과세 및 납세절차(Part III)관의 제1514~1516항까지임
 - 제1514항은 관세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Protest against decisions of customs service) 조항임
 - 제1515항은 이의제기 심사(Review of protests) 조항임
 - 제1516항은 국내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청(Petitions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 조항임

- 미국은 행정심판신청 전에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사전협의절차(Conference)를 운영하고 있음³⁵⁹⁾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미국으로 수입될 물건에 대해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정보나 「관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장치임

358) <https://www.gpo.gov/fdsys/granule/USCODE-2011-title19/USCODE-2011-title19-chap4-subtitleIII-partIII-sec1514> (검색일자: 2017. 8. 25.), <https://www.gpo.gov/fdsys/granule/USCODE-2011-title19/USCODE-2011-title19-chap4-subtitleIII-partIII-sec1515> (검색일자: 2017. 8. 25.), <https://www.gpo.gov/fdsys/granule/USCODE-2011-title19/USCODE-2011-title19-chap4-subtitleIII-partIII-sec1516> 번역 (검색일자: 2017. 8. 25.)

359) 김영조 외(2005. 7.), p. 25

[그림 2-IX-1] 이의신청 양식(CBP Form 19)

Approved OMB No. 1651-0017
Exp. 03/31/201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ROTEST

Pursuant to Sections 514 & 514(a),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CFR Part 174 et. seq.

NOTE: If your protest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and you wish to CONTEST the denial, you may do so by bringing a civil action i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mailing of Notice of Denial. You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stitution of an action by writing the Clerk of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e Federal Plaza, New York NY 10007 (212-264-2800).

1. PROTEST NO. (Supplied by CBP)		2. DATE RECEIVED (CBP Use Only)	
----------------------------------	--	---------------------------------	--

SECTION I - IMPORTER AND ENTRY IDENTIFICATION

3. PORT	4. IMPORTER NO.	5. ENTRY DETAILS		
6.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OR OTHER PROTESTING PARTY	PORT CODE	FILER CODE	ENTRY NO.	CHECK DIGIT
	DATE OF ENTRY		DATE OF LIQUIDATION	
7. Is Accelerated Disposition being requested (19 CFR 174.22)?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SECTION II - DETAILED REASONS FOR PROTEST

8.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of merchandise, set forth, separately, (1) each decision protested, (2) the claim of the protesting party, and (3) the factual material and legal arguments which are believed to support the protest. All such material and arguments should be specific. General statements of conclusions are not sufficient.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SECTION III - REQUEST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CTION ON PREVIOUSLY FILED PROTEST

Protesting party may request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ion taken on a previously filed protest that is the subject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and is alleged to involve the same merchandise and the same issues. (See 19 CFR 174.13(a)(7).) To request such disposition, enter in Blocks 8 and 9 the protest number and date of receipt of such previously filed protest.

	9. PROTEST NO. OF PREVIOUSLY FILED PROTEST	10. DATE OF RECEIPT
--	--	---------------------

SECTION IV - SIGNATURE AND MAILING INSTRUCTIONS

11. NAME AND ADDRESS OF PERSON TO WHOM ANY NOTICE OF APPROVAL OR DENIAL SHOULD BE SENT	12. NAME, ADDRESS, AND CBP IDENTIFICATION NUMBER TO WHICH REFUND SHOULD BE SENT	13. IF FILING AS ATTORNEY OR AGENT, TYPE OR PRINT YOUR NAME, ADDRESS AND IMPORTER NUMBER, IF ANY
14. SIGNATURE X		DATE

(Optional) SECTION V -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Fill in item 1 above if this is a separate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15. MARK BOX CORRESPONDING TO YOUR ANSWER TO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YES	NO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 Have you made prior request of a port director for a further review of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substantially similar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Have you received a final adverse decision from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or do you have action involving such a claim pending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Have you previously received an advers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CBP or his designee or have you presently pending an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16. JUSTIFICATION FOR FURTHER REVIEW UNDER THE CRITERIA IN 19 CFR 174.24 AND 174.25 (Include Applicable Rulings)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SECTION VI - DECISION (CBP USE ONLY)

17.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EXPLANATION: Approved* Denied for the reason checked: Untimely filed Does not meet criteria Other, namely

*When further review only is approved the decision on the protest is suspended, pending issuance of a protest review decision.

18. PROTEST EXPLANATION: Approved Rejected as non-protestable Denied in full for the reason checked: Denied in part for the reason checked: Untimely filed See attached protest review decision Other, namely

19. TITLE OF CBP OFFICER	20. SIGNATURE AND DATE
--------------------------	------------------------

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 CBP Form 19 (05/10)

- 세관이 관세율 및 관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정산절차(liquidation)를 거친 뒤 수입자가 해당 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관세 불복에 대해 일차적인 이의신청 접수기관은 미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 또는 관세청)³⁶⁰임
 - 이의신청서는 정산일로부터 180일 내에 처분청 또는 부작위 행정청에 제출함
 - 청구인이 해당 세관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하며 피청구인은 관할 세관 또는 관세청임

- 대부분 이의신청은 수입신고지 해당 세관³⁶¹에서 이뤄지지만 예외적인 경우³⁶² 관세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함
 - 기존에 내려진 유권해석과 불일치한 경우
 - 관세청 및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은 법 또는 사실에 관한 문제인 경우
 - 과거에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수입자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또는 법적 쟁점사안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 법무관실에서 내부지침 요청 형태로 답변을 거부한 사안인 경우

- 「관세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청구인)은 신고인, 수하인, 보증인 등임
 - (A) 신고서에 표기된 수입자 또는 수하인, 또는 그들의 보증인
 - (B) 비용 또는 징수액을 납부하는 자
 - (C) 신고 및 인도 업무를 이행하는 자
 - (D) 관세환급 청구자
 - (E) 이 편의 제3332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북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관련된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360)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약칭 CBP)

361) 관할지세관이라고도 부름

362)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검증: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판정사례」, 『관세무역정보해설』, 제1543호, 관세무역개발원, 2013. 3.

- 이의제기 대상범위는 물품평가액, 품목분류, 관세율, 관세액 등임
 - 이의제기 대상범위는 물품평가액, 품목분류, 관세율, 관세액, 재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모든 비용 또는 징수액 등임
 - 이의제기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과 형식 및 방법에 맞춤³⁶³⁾
 - 그 외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물품의 신고처리 또는 인도 거부 처분, 또는 세관의 관리로의 재반입 요청 거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신고의 처리 또는 재처리, 또는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조정, 또는 신고서 처리를 포함하여 이 편의 제1500조 또는 제150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타 수정 또한 이의제기 가능함
 - 관세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 신고서 재처리 거부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함

- 이의신청을 위한 문서에는 신청인 정보, 수입자 정보, 세관처분일, 피청구인에게 세관처분 불복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함
 - 신청인 정보는 신청인 이름과 주소 등임
 - 수입자 정보는 수입자, 수탁인, 대리인 등의 이름과 주소, 수입자 번호 혹은 에이전트의 수입자 번호, 통관일, 통관번호, 정산일 또는 정산 혹은 재정산 (Reliquidation)을 포함하지 않는 세관처분일 등임
 - 기존 미해결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접수일과 이의제기 번호를 기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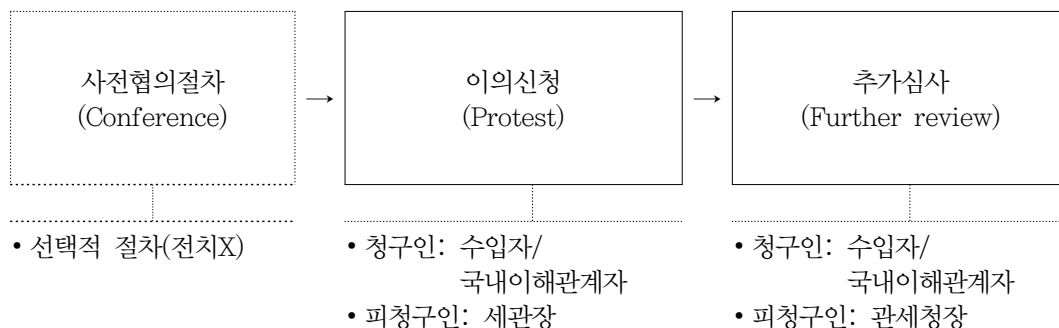
-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이의제기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해야 함

- 이의제기 후 이의신청이 인용된다면 초과부과에 대해서는 환급됨
 - 초과부과란 Any duties, charge, or exaction found to have been assessed or collected in excess로 모두 해당됨
 -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판정 시 고지내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당사자의 권리와 반려처분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며 우편통지(Any protest shall be mailed)됨

363) 미 CBP는 미 재무부(Secretary of the Treasury) 산하 조직임

- 이의제기의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추가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또 다른 담당 세관공무원에 의해 추가심사(Further Review)³⁶⁴를 받을 수 있음
 - 다른 담당 세관공무원이란 이의신청 건을 담당한 공무원이 아닌 것을 뜻하며, 청원자의 추가심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세관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추가심사에 대한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신청에 대한 심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 만약 추가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의제기는 추가심사를 이행할 세관 공무원에게 발송함
 - 이때 재심신청인은 재심요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 추가심사를 결정하는 심사인은 세관장이 지정하며 이의신청 심사담당자보다 상급직으로 지정됨

[그림 2-IX-2] 미국 행정구제제도 절차(행정심판)



자료: 저자 작성

364) 우리나라 재심에 해당

3 사법심판³⁶⁵⁾

- 관세청에서 이의제기·추가심사가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제기(Commencement of a civil action) 가능함³⁶⁶⁾
 - 소송담당기관은 국제 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임
 - 단,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관련된 소송절차는 별도의 조세법원(Tax Court)에서 진행되며 내국세법(26 U.S.C. Internal Revenue Code)을 준용함

- 제소된 불복 건에 대해서 CIT의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 처분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심리함
 - CIT로 소송 시 피고는 미국 정부가 되고 원고는 수입자, 외국의 수출자 또는 미국의 생산자임³⁶⁷⁾
 - CBP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CBP와 관련한 대부분의 CIT 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가 단독으로 진행함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
 - 메일로 기각통지가 발송된 날, 혹은 2년의 처리기간 후 세관의 처분이 내려진 익일, 신속처리에 따라 처분한 익일로부터 180일 이내임

-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노동부 장관 또는 상무부 장관이 내린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CIT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CIT의 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 C.F.R 176에서 다루고 있음

365) U.S. Code > Title 28 > Part VI > Chapter 169 사법부 및 사법절차 참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part-VI/chapter-169> (검색일자: 2017. 8. 28.)

366) Commencement of a Civil Action 28 U.S.C. 263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632> (검색일자: 2017.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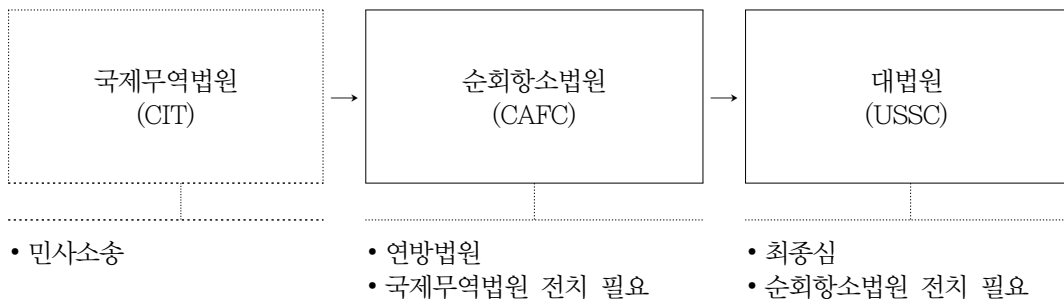
367) Commencement of a Civil Action 28 U.S.C. 263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2631> (검색일자: 2017. 8. 28.)

- CIT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 가능함³⁶⁸⁾
 - 순회항소법원은 CIT의 사실에 기반을 둔 판결이 분명하게 쟁점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함

- 미연방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시 최종적으로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USSC)에 상소 가능함
 - 대법원의 권한은 헌법이나 미국의 법률·조약 등과 관련한 모든 사건, 미국이 당사자가 되고 2개 이상의 주(State)가 개입되는 논쟁사안, 한 개의 주와 또 다른 주의 시민 간에 발생하는 논쟁사안, 내국인과 외국인과 관련한 사안 등을 포함함³⁶⁹⁾

- 미국에서 납세자가 법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10% 내외이며, 사전협의절차에서 85% 정도가 합의에 의해 종결됨³⁷⁰⁾
 - 미국의 소송률이 낮은 이유는 소송 관련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타국가 대비 높고, 국가기관과 국민이 협상을 통하여 거래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³⁷¹⁾

[그림 2-IX-3] 미국 행정구제제도 절차(사법심판)



자료: 저자작성

368) 김영조 외(2005. 7.) p. 25

369)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2, p. 82

370) IRS의 홈페이지, <http://www.irs.gov/irs/article/0,id=96750,00.html> (검색일자: 2017. 8. 28.)

371) 이진오, 「미국의 조세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3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김영조 외 (2005. 7.), p. 25에서 재인용

X. 벌칙

1 관련 법령

- 미국 「관세법」은 벌금, 몰수 등 민사적인 제재와 처벌 등의 형사적인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민사제재의 경우 「미연방법」(U.S. Code)의 「관세법」(Customs Duties)에서 규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과 몰수가 있음
- 형사제재의 경우 「미연방법」(U.S. Code)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을 따르며 벌칙으로 벌금, 몰수, 징역이 있음
 - 「관세형법」은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내용임

<표 2-X-1> 미 관세제재 관련 규정(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민사적 제재 규정)

Chapter 4 Tariff Act of 1930

SUBTITLE III – ADMINISTRATIVE PROVISIONS (§ § 1401 to 1654)

PART V – Enforcement Provisions (§ § 1581 to 1631)

- § 1509 Examination of books and witnesses
- § 1526 Merchandise bearing American trade-mark
- § 1584 Falsity or lack of manifest; penalties
- § 1592 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and negligence
- § 1593 Sec. 1593a. Penalties for false drawback claims
- § 1599. Officers not to be interested in vessels or cargo
- § 1641 Customs brokers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형사적 제재 규정)

Part I CRIMES (§ § 1 to 2725)

Chapter 27 Customs (§ § 541 to 555)

- § 541 – Entry of goods falsely classified
- § 542 – Entry of goods by means of false statements
- § 543 – Entry of goods for less than legal duty
- § 544 – Relanding of goods
- § 545 – Smuggling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 § 546 – Smuggling goods into foreign countries
- § 547 – Depositing goods in buildings on boundaries
- § 548 – Removing or repacking goods in warehouses
- § 549 – Removing goods from customs custody; breaking seals
- § 550 – False claim for refund of duties
- § 551 – Concealing or destroying invoices or other papers
- § 552 – Officers aiding importation of obscene or treasonous books and articles
- § 553 –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stolen motor vehicles, off-highway mobile equipment, vessels, or aircraft
- § 554 – Smuggling goods from the United States
- § 555 – Border tunnels and passages

2 민사제재 및 벌칙³⁷²⁾

- 민사제재는 죄의 경중에 따라 사기, 중과실, 과실로 나누어짐
- 민사제재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로 인한 벌칙에 대한 것임
 - 통관 관련해서 기록보존 관련 위반행위, 가짜상표 관련 위반행위, 적하목록 관련 위반행위, 약물 관련 위반행위, 상업적 사기 과실, 관세환급과 위반, 불법 수입 방조, 관세사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 몰수(Forfeiture)와 벌금(Civil penalty)³⁷³⁾ 규정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은 관세범죄 및 관세형벌로 전자무선위조변조죄 등,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허위신고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³⁷⁴⁾
- 기록보존 관련 위반행위(장부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의 경우 물품의 반출에 대해 100,000달러 또는 물품 평가가격의 100분의 75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 부과됨³⁷⁵⁾
 - 불이행이 요청된 정보에 대한 보존, 보관, 복구에 대한 당사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의 결과인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함
 -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i) 미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 또는 수입을 야기하는 자,
 - (ii) 북미 자유무역협정 가입국으로 또는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안 캐나다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야기하는 자,
 - (iii)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을 야기하는 자,
 - (iv) 신고, 신청, 관세환급 청구를 관세청에 제출한 자는 법률이나 규정에서 물품 신고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관세청이 신고 시점에 그것에 대한 제출 요구와

372) 관세청, 「미연방법」 중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번역본 일부 발췌 및 수정 인용, http://www.customs.go.kr/kcshome/cmm/fms/FileDown.do;jsessionid=q6pYWVRGkQqR7hgQw47v3sdDnrJptwnZ73HDMc1zPnJwhvt04w0!463229449?atchFileId=FILE_000000000067415&fileSn=0, 미 연방법 중 Title 19. Customs Duties 부분 중 민사제재 해당 부분(Part V) 번역 후 인용,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chapter-4/subtitle-III/part-V> (검색일자: 2017. 8. 29.)

373) 민사제재금

374) 박영기, 『관세제재법 - 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 세창출판사, 2009. 2, pp. 131~140

37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09> (검색일자: 2017. 8. 29.)

- 관계없이), 그것에 대한 제출 요구가 있는 후에, 요구된 항목의 수, 형태, 연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함
- 단, 해당 불이행이 요청된 정보에 대한 보존, 보관, 복구에 대한 당사자의 부주의의 결과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각 물품의 반출에 대해 10,000달러 또는 물품 평가 가격의 100분의 4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대상임
- 위조로 미국 상표가 부착된 물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에 처하며, 대상물품은 몰수됨³⁷⁶⁾
- 미국의 시민 또는 미국에서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이나 협회에 의해 소유된 상표 및 미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해당 물품, 라벨, 표식, 인쇄, 포장, 상자, 또는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제조된 그러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임
 - 압류 대상인 물품의 판매 또는 공공의 배포를 위해 물품 수입을 지시,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 또는 원조 및 교사한 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됨
 - 이 항에서 정하는 벌금의 부과는 관세청이 결정권을 가짐
 - 미국으로 수입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압수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됨
- 적하목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³⁷⁷⁾
- 적하목록 관련 위반행위란,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선박의 선장과 운송수단 책임자가 세관원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적하목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임
 - 처벌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상기 적하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는 또는 목록에 일치하지 않은 물품이 배 또는 운송수단에 실려 있거나 또는 선적 이후 나중에 배에서 내려져 없어진 것으로 발견된다면 그러한 배의 선장, 책임자, 선박이나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기술 적하목록과 적하물품 간의 차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10,000달러 또는 승선되거나 하선된 그 물품의 국내 가격 중 낮은 금액의 벌금에 처하고,
 - 그러한 물품이 그 선박의 선장 관리나 선원 또는 운송수단의 책임자나 소유주에

376)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26> (검색일자: 2017. 8. 29.)

37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84> (검색일자: 2017. 8. 29.)

- 속하거나 연서된 물품일 경우, 이를 몰수하고, 만약 적하목록에 명시된 어떤 물품이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면 그러한 배나 운송수단의 선장 책임자나 소유주 또는 기술 적하목록과 그 물품과의 차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함
- 헤로인, 모르핀, 코케인, 이소니페카인이나 아편제로 된 그 어떤 물품이 발견된다면 해당 선박의 선장이나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선박이나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헤로인, 모르핀, 코케인, 이소니페카인이나 아편제가 든 그러한 물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발견된 물품에 대한 각 온스당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함
 - 흡연이 금지된 아편이나 마리화나로 구성된 물품이 발견된다면 해당 선박의 선장이나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선박이나 운송수단 소유주나 흡연토록 제재된 아편이나 마리화나가 포함된 물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견된 물품에 대해 각 온스당 500달러의 벌금에 처함
 - 천연 아편으로 된 물품이 발견된다면, 해당 선박의 선장이나 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선박이나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천연아편이 포함된 물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발견된 물품에 대해 각 온스당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통상 관련 상업적 사기와 과실에 관한 법령은 관세포탈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 중과실 및 과실에 대해 위법으로 간주하여 죄질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³⁷⁸⁾
 -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 상업시장에 어떤 물품을 들이거나 들여오거나 또는 그러한 시도
 - (i) 허위의 서류,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나 정보, 서면 또는 구두진술서, 또는 실질적인 행위, (ii) 어떤 실질적인 노력의 방법으로 미국 내 시장에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하도록 어떤 사람을 돕거나 조장하는 일
 - 부정행위(Fraud)는 그 물품의 국내 가치를 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처벌의 대상이 됨
 - 중과실(Gross negligence)로 인한 위반은 (i) 그 물품의 국내 가치, (ii) 미국이 포탈 당하거나 포탈 당할 수도 있는 합법적인 관세, 세금 그리고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중에 더 적은 금액이 벌금 부과됨

37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92> (검색일자: 2017. 8. 29.)

- 과실(Negligence)로 인한 위반은 (i) 그 물품의 국내 가치, (ii) 미국이 포탈 당하거나 포탈 당할 수도 있는 합법적인 관세, 세금 그리고 수수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처벌 대상이 됨
 - 만약 관련자가 그러한 위반행위의 정식 조사 개시 전이나 또는 그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이 조 제(a)항의 위반 정황들을 신고한다면, 그러한 위반에 관련된 물품은 압류되지 않으며 이 조의 제(c)항하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벌칙도 다음을 초과하지 않음
- 부정 관세환급 청구에 대한 처벌은 부정행위적 위반에 해당하며 실질적 또는 잠재적 세입 손실의 최고 3배의 금액으로 민사적인 벌칙에 처해짐³⁷⁹⁾
- 구체적인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음
 - (i) 허위의 서류, 서면 또는 구두 진술서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데이터나 정보 또는 실질적인 행위
 - (ii) 실질적으로 중요한 누락을 이용하여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세환급 청구에 대한 지급을 받거나 인정을 받도록 추구하거나 유도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초범에 한해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세입 손실의 최고 100분의 20의 금액으로 민사 벌칙에 처해짐
 - 반복적 과실 위반행위의 경우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은 그 실질적 또는 잠재적 세입 손실의 최대 100분의 50이 부과됨
 - 그 이후 각각의 반복적 과실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은 그 실제 또는 잠재적 세입 손실액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비반복적인 위반을 범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은 실제 또는 잠재적 세입 손실의 최고 100분의 20의 범칙금 대상이 됨
- 불법 수입 방조는 위법으로 이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³⁸⁰⁾
- 미국의 관계 당국에 고용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수입에 대한 관세나 선박톤세를 징수함에 있어 어떤 선박(요트나 다른 레저용 보트를 제외하고)을 부분적이든 전체적으로든 소유할 수 없음

379)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93> (검색일자: 2017. 8. 30.)

380)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99> (검색일자: 2017. 8. 30.)

- 수사관, 검사나 소유주의 수탁인 또는 어떤 선박이나 수화물을 선박에 선적한 소유주처럼 행동할 수 없음
- 관세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³⁸¹⁾
 -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 시 (ii) 관세 거래행위에서 기인하는 경우 (iii) 절도, 도둑, 강탈, 위조, 불법적 은폐, 불법적인 환전, 자금횡령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관세거래를 유일하게 그 사람 자신이 대표하는 경우 이외에 이 항에서 그 사람에게 승인된 타당한 관세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래하려는 모든 자에게 이 조에서의 다른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도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이러한 벌칙은 이 조의 제(d)항 제(2)호 제(A)소호항에 제시된 벌금과 마찬가지로 부과됨

3 형사제재 및 벌칙

- 형사제재는 형사위반행위에 따라 중죄(Felony)와 경죄(Misdemeanor)로 구분해서 처벌됨
- 형벌 종류는 「형법」상의 형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형법」상 몰수·추징, 「관세법」상 몰수·추징 등이 있음
- 허위 분류된 물품 수입(§ 541 Entry of goods falsely classified)의 경우 2년이 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의도적으로 실제 무게보다 낮게 측정하거나, 물품분류 오류, 실제 상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세납부 의무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허위 분류된 물품 수입으로 간주하여 형벌함³⁸²⁾

38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641> (검색일자: 2017. 8. 30.)

38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1> (검색일자: 2017. 8. 30.)

- 허위 서류에 의한 물품 수입(§ 542 Entry of goods by means of false statements)의 경우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송장(Invoice), 통관서류(Declaration), 증빙서류(Affidavit), 기타 서류 등 모든 허위 서류가 포함된 수입된 상품을 미국에 진입시키거나 소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허위 또는 사기행위를 이유로 형벌함³⁸³⁾

- 정해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 수입(§ 543 Entry of goods for less than legal duty)의 경우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합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고의로 입국하여 물품의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여 형벌함³⁸⁴⁾

- 불법 재반입물품(§ 544 Relanding of good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되며 물품과 물품으로 인한 이익은 몰수됨
 - 수출입에 대한 관세 지불 없이 또는 관세환급을 얻기 위한 의도로 수출 또는 출국한 상품이 미국 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은 법에 위배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³⁸⁵⁾

- 밀수물품(§ 545 Smuggling goods into the United States)의 경우 벌금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하며 밀수된 물품은 몰수됨
 - 고의적으로 비밀리에 미국으로 밀수입 또는 사취(defraud)하여 속인 의도가 있거나 위조된 수입 관련 문서 혹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자, 불법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 은닉, 매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을 운송, 은폐한 자는 위법으로 간주하여 형벌함
 - 밀수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배심원에게 합당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 동 조항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승인하는 데 충분한 증거로 간주되며 물품으로 인한 취득 이익은 몰수함³⁸⁶⁾

38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2> (검색일자: 2017. 8. 30.)

38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3> (검색일자: 2017. 8. 30.)

38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4> (검색일자: 2017. 8. 30.)

386)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5> (검색일자: 2017. 8. 30.)

- 외국으로 물품밀수(§ 546 Smuggling goods into foreign countrie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외국으로 물품밀수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밀수를 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의 경우, 상품 수출에 대한 허위, 허락 또는 환불 지불에 대한 허위 또는 사기 진입 또는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함³⁸⁷⁾

- 국경 사이에 위치한 건물에 물품예치(§ 547 Depositing goods in buildings on boundarie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법에 위배되어 국경에 있는 건물에 물품을 수령하거나 예금한 사람에 해당함³⁸⁸⁾

-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 제거 또는 재포장(§ 548 Removing or repacking goods in warehouse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하며 물품은 몰수함
 -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위장·제거·재포장하거나 예치된 물품에 표시된 표식이나 숫자를 부정하게 변경, 파기 또는 폐기하는 자에 대해 처벌함³⁸⁹⁾

- 세관 구류 중인 물품 제거(§ 549 Removing goods from customs custody; breaking seals)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세관 인장이 없는 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세관 구류 중인 물품을 제거했을 경우 처벌받으며, 보증인이 아닌 사람이 세관에 물품 또는 수하물을 담고 있는 모든 선박, 차량, 창고 또는 포장물에 부착된 모든 인감도장 또는 기타 표시를 고의로 제거, 파손, 손상 또는 훼손하는 사람은 세관의 수하물을 불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아 처벌함
 - 보세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는 선박이나 차량에 악의적으로 들어간 사람, 또는 그러한 선박, 차량 또는 보세창고에서의 물품 또는 수하물을 불법적으로 제거하는 행위 또는 통제; 또는 그러한 선박, 차량 또는 창고에서 불법적으로 제거된 물품 또는 수하물을 불법적으로 수거하거나 운송한 사람, 불법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임³⁹⁰⁾

38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6> (검색일자: 2017. 8. 30.)

38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7> (검색일자: 2017. 8. 30.)

389)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8> (검색일자: 2017. 8. 30.)

390)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49> (검색일자: 2017. 8. 30.)

- 관세환급 허위청구(§ 550 False claim for refund of dutie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며 상품으로 인한 이익은 몰수함
 - 관세환급금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허위청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³⁹¹⁾

- 송장 또는 기타서류의 은닉 또는 파기(§ 551 Concealing or destroying invoices or other papers)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 관련 서류에 대해 의도적으로 은닉 또는 파기하는 사람이나 그 서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사람은 처벌 대상임³⁹²⁾

- 외설 또는 반역을 조장하는 서적이거나 물품 수입을 도운 공무원(§ 552 Officers aiding importation of obscene or treasonous books and articles)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외설적인 메일로 수입, 광고, 거래, 전시 또는 발송 또는 수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돕거나 미국에 대한 반역을 주장하거나 저항을 강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책, 팸플릿, 서류, 저서, 광고, 회람판, 지문, 그림에 대해 처벌함³⁹³⁾

- 도난된 자동차, 오프하이웨이 차량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수출입(§ 553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stolen motor vehicles, off-highway mobile equipment, vessels, or aircraft)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a) 의도적으로 수입, 수출 또는 수입 또는 수출 시도를 한 사람 -
 - (1) 자동차, 고속도로 이동 장비, 선박, 항공기 또는 자동차의 일부, 고속도로 이동 장비,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난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또는
 - (2) 자동차, 오프하이웨이 차량 또는 부품의 식별 번호가 제거되거나, 지워지거나, 변경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³⁹⁴⁾

39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0> (검색일자: 2017. 8. 30.)

39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1> (검색일자: 2017. 8. 30.)

39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2> (검색일자: 2017. 8. 30.)

39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3> (검색일자: 2017. 8. 30.)

- 밀수출(§ 554 Smuggling goods from the United States)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미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물건, 물건 또는 물건을 미국에서 사기 또는 고의로 수출하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거나 그 물건을 수령, 은폐, 매매,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출 이전에 그러한 상품, 물품 또는 물건의 운송, 은폐 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미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³⁹⁵⁾

- 국경 터널과 통로 통행(§ 555 Border tunnels and passages)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 병과함
 - 합법적으로 승인된 터널이나 국토안보 장관이 알고 있고 검사 대상이 되는 통행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터널 또는 지하통로 건설을 고의적으로 건설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자의 경우 처벌함
 - 단, 위 기술 된 터널이나 통로를 사용하여 외국인, 물품, 규제 물질, 대량 살상 무기(생물 무기 포함) 또는 제3국의 구성원을 불법적으로 밀수입하는 자, 테러 조직은 불법 활동이 있었을 경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구금 기간의 두 배인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³⁹⁶⁾

4 개인 처벌 및 법인 처벌³⁹⁷⁾³⁹⁸⁾³⁹⁹⁾

- 미국 「형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은 중죄, 이하는 경죄로 구분함

- 중죄는 5단계로 차등분류되며 징역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부터 무기징역까지 차등처벌됨
 - Class A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39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4> (검색일자: 2017. 8. 30.)

396)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555> (검색일자: 2017. 8. 30.)

39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92> (검색일자: 2017. 8. 30.)

398) U.S. Code Chapter 227 - SENTENC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I/chapter-227> (검색일자: 2017. 8. 30.)

399) 18, U.S. Code 357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571> (검색일자: 2017. 8. 30.)

- Class B는 25년 이상의 징역
 - Class C는 10년 이상 25년 미만의 징역
 - Class D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 Class E는 5년 미만의 징역
- 경죄는 3단계로 차등분류되며 징역의 경우 최소 5일부터 최대 1년까지 차등처벌됨
 - Class A는 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 Class B는 30일 초과 6개월 이하의 징역
 - Class C는 5일 초과 30일 이하의 징역
- 중죄(Felony)와 경죄(Misdemeanor)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형량은 동일하나 벌금에 있어 차별적으로 부과됨
- 개인이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50만달러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 중죄는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경죄는 개인 최소 5천달러 이하의 벌금부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며, 법인의 경우 최소 1만달러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Class A는 개인의 경우 10만달러, 법인의 경우 2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 Class B, C는 개인의 경우 5천달러, 법인의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 경죄로 사망한 경우 2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XI. AEO 제도

1 C-TPAT(AEO) 제도 개요

-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경우 AEO라는 명칭 대신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이하 C-TPAT)라고 부름
 -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AEO는 통용되는 약칭이지만 미국은 C-TPAT, 브라질은 Linha Azul(Blue Line) 등 다른 명칭으로 부름

- AEO 제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전체 물류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됨
 -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002년 미국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고, 세관 당국(CBP)과 수입업자 간의 일종의 테러방지 협약으로 발전함
 - AEO 제도는 WCO는 SAFE Framework(2005)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범국가적 차원의 수입화물보안에 대한 규정으로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고, 무역원활화 원칙을 확대시킴⁴⁰⁰⁾

400)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the revised Kyoto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을 비준, SAFE Framework(th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통해 화물보안 의정서(protocol)를 도입함

- C-TPAT은 2002년 제도화되었으나, 테러 예방에 대한 모든 조치가 포함된 항만 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이 제정되면서 C-TPAT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⁴⁰¹⁾
- C-TPAT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담보받을 수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제도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됨

2 미국 C-TPAT 특징

가. 대상

- C-TPAT 공인대상은 수입업자부터 화물중개인 등 모든 무역공급망 당사자임
 - 공인대상은 수입업자, 미국과 캐나다 간의 육상 운송업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운송업체, 철도 혹은 해운회사, 미국 관세사, 미국 항만국, 터미널 운영회사, 화물중개인 등임⁴⁰²⁾
 - 구체적으로 운송분야의 공인대상의 경우 항공운송인, 해상 또는 항만터미널운영자, 항공운송혼재업자, 해상운송중개인, NVOCC 등이 있음
 - 수입업자의 경우 1년 전 수입실적이 있는 IOR 소지자⁴⁰³⁾여야 C-TPAT 공인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소재수입자(IOR)도 미국상품반입이 가능하며 미국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자(IOR)는 미국 내 보증회사(Surety Company)에서 보장하는 CBP에 등록된 통관본드(Continuous import bond)⁴⁰⁴⁾를 제출해야 함

401) 최재선, 『미국의 항만보안법 제정 의미와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1, p. 4

402) 미 관세청(CBP) Home >> Border Security >> At Ports of Entry >> Cargo Security and Examinations >>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 (검색일자: 2017. 9. 11.)

403) 미국 수입자에 대한 세관의 정식명칭은 Importer of Record ID로 신고되는 수입자여야 함

404) 1년 짜리 Bond로 수입통관을 위한 담보금 성격

나. C-TPAT 사업파트너 요구조건(Business Partner Requirement)

- 수입자의 경우 제조업자, 물품공급자, 판매자를 포함한 사업파트너 선정을 위한 검증가능한 절차(verifiable processes)를 서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⁴⁰⁵⁾

- 수입자는 C-TPAT 인증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업파트너가 C-TPAT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소지해야 함
 - 사업파트너는 운송업체, 항구, 터미널, 브로커(관세사), 혼재업자(consolidator) 등임
 - C-TPAT 인증 문서로는 C-TPAT 증명서, SVI 번호 등이 있으며, C-TPAT 인증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업파트너에 대하여 외국 제조업체는 사업파트너에게 서면 또는 전산확인을 통해 C-TPAT 보안기준에 부합함을 보이도록 요구해야 함
 - 외국 제조업체는 사업 모델에 근거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위험을 결정하는 문서화되고 승인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그 예로 물량, 국적, 라우팅, C-TPAT 회원,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한 테러범의 위협가능성, 미흡한 보안, 과거 보안 사건 등이 있음
 - 외국 제조업체는 사업 모델에 근거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위험을 결정하는 문서화되고 승인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하며, 그 예로 물량, 국적, 라우팅,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한 테러범의 위협 가능성 등이 있음
 - 문서화된 위험 평가 과정에 근거하여, C-TPAT 자격이 없는 사업파트너는 외국 제조업체에 의한 C-TPAT 보안기준의 준수를 확인받아야 함

- 화물수탁지점(Point of Origin)과 관련해서, 수입업자는 사업파트너가 일관된 보안 프로세스 및 절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C-TPAT 보안기준에 따라 발송물의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위험기반(risk based) 사업파트너의 프로세스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유지해야 함

405) Importers must have written and verifiable processes for the selection of business partners including manufacturers, product suppliers and vendors

다. 내부공인기준⁴⁰⁶⁾

- C-TPAT는 정부에서 민간업체가 갖추어야 할 보안관리 시스템의 최소 관리기준을 결정하며, 공인대상에 따라 상이한 보안기준(security criteria) 및 보안 가이드라인(security guidelines)을 적용함
 - 업체의 특성에 따라 상세규정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안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인해 상위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임
 - 공인기준을 보안기준이라고 통칭하는 이유는 C-TPAT 도입이 테러방지를 위한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임

- 물리적 접근통제(Physical Access Controls)는 직원(Employees)과 방문자(Visitors)로 구분하여 통제됨
 - 직원의 신원파악이 필요하며 직원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한 출입은 직무이행 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관리자나 보안담당자는 사원증 발급⁴⁰⁷⁾과 위험 시 발급취소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문서화함
 - 방문자는 회사방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모든 방문자는 임시방문임을 표시해야 함
 - 배달(deliveries)의 경우 문서화를 위해 벤더(vendor) ID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도착우편과 화물은 개봉 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 절차적 보안(Procedural Security) 기준은 공급망(Supply Chain)에서 화물의 운송,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상품·화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문서 통제 기능에는 컴퓨터 접속 및 정보보안이 포함됨
 - 적하목록 절차는 화물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사업파트너로부터 수령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적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함

406) 공인대상별 최소 보안기준 및 가이드라인(C-TPAT Minimum Security Criteria and Guidelines)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customs-trade-partnership-against-terrorism/apply/security-criteria> (검색일자: 2017. 9. 10.), supply chain security best practices catalog,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tpat_bp_2006.pdf(공인기준 p.14), importer minimum security criteria, CBP,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importer_security_criteria_3.pdf, pp. 1~7 (검색일자: 2017. 9. 11.)

407) 출입통제장치는 열쇠, 키카드 등임

- 선적 및 인수는 선적되어 출발하는 화물 적하목록에 있는 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해야 함
 - 화물 내용, 중량, 라벨, 표 및 개수 표시
- 화물 불일치 시 내용조사가 필요하며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생기면 필요에 따라 세관 또는 기타 적절한 경찰기관에 통지함

- 인사보안(Personnel Security)은 미래 직원을 선별하고 기존 직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채용 전 확인, 배경조사, 해고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
 - 채용 전 직장 경력과 참조인 등 신청서 정보를 확인함
 - 미래 사원에 대한 배경을 점검·조사하며 회사에서 해고된 사원에 대해 시설 및 시스템 접근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실시함

- 컨테이너보안(Container Security)은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7개 검사과정이 권장되며 선적 전 잠금장치를 포함한 컨테이너의 물리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함
 - 컨테이너 7개 검사 위치는 컨테이너 정면, 왼쪽 및 오른쪽 측면, 바닥, 천정, 옥내외 도어, 외부입

-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은 해외에 위치한 화물 취급 및 보관 시설에 무단 출입하지 않도록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 물리적 보안 세부기준으로 울타리, 게이트 및 초소, 주차, 건물구조, 잠금장치 및 열쇠, 조명, 알람 장치 및 비디오 감시카메라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음
 - 주변 울타리는 화물 취급 및 보관 시설을 둘러 설치되어야 하며 화물 취급 구조 내에 위치한 내부 울타리는 국내, 국외, 고가치 및 위험 화물의 격리에 사용함
 - 게이트 및 초소 차량 및 인원이 출입하는 게이트에는 반드시 인력을 배치하고 감시하며 게이트의 숫자는 적절한 출입과 안전에 필요한 만큼 최저로 유지해야 함
 - 개인 차량은 화물 취급 및 보관 장소의 내부나 주위에서의 주차를 금지함
 - 건물은 불법 출입에 견디는 자재로써 건축해야 하며 구조물의 정기검사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함
 - 모든 외부 및 내부의 창문, 게이트 및 울타리는 잠금장치가 필요하며 관리 및 보안 인원은 모든 개폐열쇠의 발급을 통제함
 - 출입구, 화물 취급 및 보관 지역, 울타리 선, 주차 지역에는 조명을 배치함
 - 알람 장치 및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화물 취급 및 보관 지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금지함

- 정보기술보안은 암호보호, 시스템설치, 보안교육 및 위협인지도, 위협인식 등에 대한 기준임
 - 정보기술보안의 내부기준은 부적절한 출입 또는 사업데이터 변조 등의 IT 남용을 파악하는 시스템인지 등의 보안교육에 대한 것임

- 초기에는 미국 세관직원들이 생산지까지 방문해 조사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내 회사만 실사를 하고 인증을 해주는 추세임
 - 미 관세청(CBP)의 C-TPAT 담당자는 매년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했으며,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테러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함
 - 2012년 기준 약 1만개 이상의 업체를 실사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미국 C-TPAT 담당자가 방문해 1년에 많게는 50여개, 적게는 5개 업체를 실사함⁴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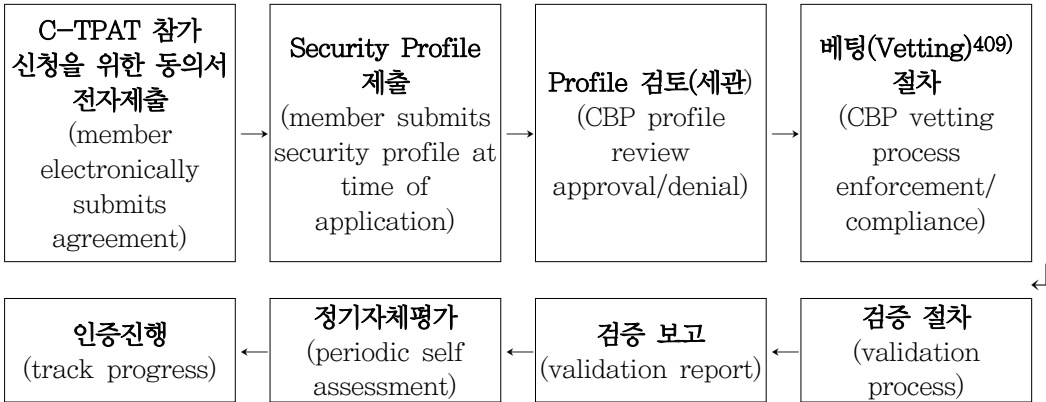
라. 공인인증 절차

- 수입업자 등이 C-TPA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CBP에서 제시하는 보안지침에 따라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한 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보안평가와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한 기업에게 공인번호를 부여함
 - C-TPAT 신청 후 미 세관에서 C-TPAT에 승인된 회사를 방문해 승인된 대로 보안 지침이 운영되는지를 조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인증(Validation)이 최종 확정됨

408) 최형권, 「한·미국 AEO MRA 혜택과 사례」, 관세청 심사정책과/AEO 센터

[그림 2-XI -1] C-TPAT 공인인증 절차



자료: 미 CBP 참고 저자 작성,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customs-trade-partnership-against-terrorism/apply/validation> (검색일자: 2017. 9. 11.)

마. 혜택

- C-TPAT은 공인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혜택이 상이함 410)
 - Tier 1: 검사비율 경감, 신속통관
 - Tier 2: Tier 1보다 낮은 검사비율, 검사 시 우선 취급
 - Tier 3: Tier 2보다 낮은 검사비율, 검사 시 최우선 취급

- 미국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C-TPAT 공인기업의 혜택은 세관조사 횟수 감축, 물품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 시 우선 검사 혜택 등이 있음⁴¹¹⁾
 - 세관조사 횟수 감축(Reduced number of CBP examinations)
 - 수입화물의 통관 검사 시 C-TPAT에 승인이 되지 않은 회사에 비해 세관조사 횟수가 줄어 화물검사로 인한 수입통관지연의 확률이 낮아짐

409) 배경 및 진위 여부 조사

410) C-TPAT Executive Summary, https://www.miq.com/wp-content/uploads/2014/06/ctpat_executivesummary082012.pdf (검색일자: 2017. 9. 12.)

411) CBP, <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cargo-security/ctpat> C-TPAT Benefits 번역 (검색일자: 2017. 9. 12.)

- 우선 검사
 -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우선 검사로 인해 통관시간을 줄일 수 있음
 - 화물검열면제
 - 수입화물의 국경(주로 화물선착장) 시간 축소
 - 공인 시 업체에 안전관리공급전문가 배정
 - FAST(Free and Secure Trade) 통관 보장
 - C-TPAT 관련 정보·트레이닝자료 이용 권한
 - 외국과 교역 시 상호인정(MRA) 혜택
 - 식약처 공급안전망제도 등의 미국 타 정부부처 파일럿제도 참여자격 부여
 - 자연재해 또는 테러로부터 사업재개 우선권 부여
 - 자체평가(ISA) 제도 참여자격 부여
- 공인을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수 후 납세신고가 가능함
- 수출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화물에 대해 수출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⁴¹²⁾
- 그 외에도 기업 자체 운영기준이 확립되어 화물관리, 고객만족 등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음
- AEO 인증을 받은 대기업은 거래업체가 AEO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납품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⁴¹³⁾
 - C-TPAT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그 과정에서 회사사무실의 보안조치, 화물 및 방문자의 확인절차 과정, 직원들의 ID 카드 부착, 각종 운영지침 등 회사가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수입화물의 추적경로도 쉬워지며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⁴¹⁴⁾

412) KOTRA 뉴욕무역관 기업참여마당 사례 참조함

413) KOTRA 뉴욕무역관 기업참여마당 사례 참조함

414) 김진정, 해외시장뉴스(미국), KOTRA, 2013-12-21,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26424> (검색일자: 2017. 9. 12.)

제3편 수출입 통관절차

I. 수입 통관절차

1 일반수입 통관

- 수입 통관이란 화주가 물품의 반입을 허가받기 위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신고로부터 시작하여, 세관의 물품검사 및 신고서 심사를 거쳐 반입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함⁴¹⁵⁾
 - 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① 신고서의 제출 및 접수등록의 단계, ② 신고서의 심사 및 물품검사의 통관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③ 통관을 허용하는 의사결정인 신고서의 수리와 물품의 반출의 단계의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⁴¹⁶⁾
- 통관절차를 거치는 방법에 있어서 특례가 규정되지 않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도록 제도화된 원칙적인 통관절차를 일반통관절차라고 함⁴¹⁷⁾
 - 특정물품에 대한 특수통관절차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수입 통관절차는 물품신고 및 반출,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⁴¹⁸⁾

415) 김기인(2007), p. 673

416) 김기인(2007), p. 683

417) 김기인(2007), p. 683

418) 송선욱(2010), pp. 81~82

-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미국 관세영역에 도착한 후 15일 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함
 - 물품신고를 한 물품을 검사하여 반출이 허가되면 관세담보를 제공하고 반출할 수 있음
- 물품신고 후 10일 내에 납세신고를 하고 예정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최종 정산함
 - 미국은 수입신고를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인 물품신고(Entry)와 관세의 납부에 대한 신고인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구분하고 있음

가. 물품신고(Entry)

- 「관세법」 제1484조는 수입업자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관세청의 물품 반출 여부 결정, 적정한 관세 산정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을 세관 관리하에서 반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데이터교환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⁴¹⁹⁾
 - 또한 관세청의 적정한 관세 산정,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결정을 위하여 신고가격, 품목분류 및 관세율, 기타 관련 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데이터교환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⁴²⁰⁾

1)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 수입업자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CBP의 물품 반출 결정, 관세평가, 통계수집, 요건확인 등을 위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점검표(Checklist)나 사전심사(Advance Rulings)를 이용할 수 있음
 - CBP는 수입자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입거래와 관련된 질문들로 법규준수를 위한 점검표(checklist)를 마련하였음⁴²¹⁾

419) 19 U.S.C. 제1484조 (a) (1) (A)

420) 19 U.S.C. 제1484조 (a) (1) (B)

421) CBP, "Reasonable Care (A Checklist for Compliance)," 2004, p. 7

- 사전심사(Advance Rulings)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관세청에서 답변⁴²²⁾해주는 제도임

가) 법규준수를 위한 점검표(Checklist)

- CBP는 수입자가 법규준수 문제를 피하고, 상당한 주의 의무를 충족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점검표를 마련함⁴²³⁾
 - 수입거래와 관련된 환경과 상황은 수입자의 경험, 수입물품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점검표에 따른 질문들은 완벽하거나 철저하지는 않음
- 점검표는 CBP나 수입자에게 법적구속력이나 선례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⁴²⁴⁾
 - 단지 점검표는 수입자가 법규준수 관련 계획, 절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 또는 장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표 3-1-1〉 법규준수를 위한 점검표(Checklist)

항목	질문
일반	1. 관세 관련 규정, HTSUS, CBP 결정문 등에 접근 가능 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계시판 등 「관세법」 및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접근 가능 여부
	2. 조직 내에 세관서류의 정확성을 검토할 책임자가 있는지, 세관서류가 외부에서 작성된 경우 정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전송받을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3. 세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에 대하여 전문가와 의논하고, 수입거래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4. 동일한 거래 또는 물품이 다른 입항지 또는 동일 입항지의 CBP 사무소에서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
물품명세 및 품목분류	1. CBP에 완전하고 정확한 물품명세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여부
	2. CBP에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여부
	3. 물품명세 또는 품목분류에 관하여 세관의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적 있는지 여부, 해당 결정에 따르는 절차의 수립 여부

422) 19 CFR 제177.1조 (d) (1)

423) CBP, "Reasonable Care(A Checklist for Compliance)," 2004, p. 7

424) CBP, "Reasonable Care(A Checklist for Compliance)," 2004, p. 7

〈표 3-1-1〉의 계속

항목	질문
	4. 물품명세, 품목분류 정보가 즉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공받을 절차의 수립 여부 및 그 절차의 준수 여부
	5. 적절한 물품명세, 품목분류와 관련한 세관의 사전 분류 참여 여부
	6. 물품명세,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판례, 사전심사 결정문 등의 참고 여부
	7. 물품명세,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변호사, 관세사 등의 전문가의 협조 여부
	8. 조건부 면세, 특혜관세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요건의 충족 여부, 요건 증빙서류 구비 관련 절차 수립 여부
	9. 적절한 물품명세, 품목분류를 위한 실험 분석 등의 필요 여부
	10. 물품신고 서류 등을 발급, 보관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과세가격	1. CBP에 적절한 물품의 신고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여부
	2. 과세가격에 관하여 세관의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적 있는지 여부, 해당 결정에 따르는 절차의 수립 여부
	3.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과세가격 규정 및 편람, 판례, 사전심사 결정문 등의 참고 여부
	4.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변호사, 관세사 등의 전문가 협조 여부
	5.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물품신고 시 보고하는 절차, CBP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6. 수입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또는 지급을 CBP에 신고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7. 구매자가 아닌 자가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미국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 기초가 되었는지 여부
	8. 조건부 면세, 특혜관세 적용대상인 경우 요구되는 가격 정보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신고하는 절차 수립 여부
	9. 물품신고 서류 및 증빙 정보의 발급 절차 수립 여부
	1. 물품신고 서류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2. 물품신고 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3. 원산지에 관하여 세관의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적 있는지 여부, 해당 결정에 따르는 절차의 수립 여부
	4. 원산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변호사, 관세사 등의 전문가 협조 여부
	5. 물품 수입 전 세관의 원산지 표시 관련 요구사항을 외국의 판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6. 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었거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이를 증빙하는 조치 여부
	7. 섬유 및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법 환적, 기만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8. 물품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생산되는지 인지 여부
	9. 할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 여부
원산지/ 할당	10. 물품의 할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BP에서 발행한 수입할당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표 3-1-1〉의 계속

항목	질문
	11. 허가 대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의 수립 여부
	12. 섬유제품의 경우 물품신고 시 생산국가 신고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여부
	13. 원산지증명서 등의 물품신고 서류 및 증빙 정보 발급 절차 수립 여부
지식재산권	1. 등록된 상표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진품 여부, 병행수입 요건 등에 따른 수입 제한 여부, 상표권자의 수입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 여부
	2. 등록된 저작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 여부
	3. 물품이 국제무역위원회, 법원의 반입금지 명령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 여부
	4. 물품신고 서류 등을 발급, 보관하는 절차의 수립 여부
기타	1. 물품신고 전 허가, 승인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절차 수립 여부
	2.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대상 여부 확인 절차 수립 여부
	3. 할당·허가 대상 물품의 경우 정확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수립 여부
	4. 정확한 유형의 물품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물품신고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여부

자료: CBP, "Reasonable Care(A Checklist for Compliance)," 2004, pp. 8~12

나) 사전심사(Advance Rulings)

- 수입자는 물품의 수입 시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가지고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주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심사라는 행정결정을 CBP에 요청할 수 있음⁴²⁵⁾

(1) 사전심사 신청

(가) 신청인 및 신청방법

-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해당 문의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⁴²⁶⁾

425)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7

- 여기에서 사람이란 개인, 법인, 협회, 기타 단체 등을 포함함
- 사전심사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담당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⁴²⁷⁾
 - 품목분류는 국가상품분류국(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⁴²⁸⁾에서 담당하며, 관세평가, 운송수단, 원산지 등에 관한 심사는 본청의 법규국(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⁴²⁹⁾에서 담당함
- 사전심사는 온라인⁴³⁰⁾을 통해서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요구할 수 있음⁴³¹⁾
 - 온라인 사전심사는 국가상품분류국에서 담당하며, 신청이 전송되고 1영업일 내에 접수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의 발송으로 신청이 접수 완료됨
- 구두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 당국은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음⁴³²⁾
 - 세관 공무원의 구두 의견이나 조언은 세관 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나) 신청내용⁴³³⁾

- 사전심사 신청에는 문의하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서에 권한 있는 자가 서명하여야 함
 - 이러한 사실에는 ①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름, 주소, 기타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거래의 대상인 물품이 도착하거나 반입될 항구나 장소, ③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포함됨

426) 19 CFR 177.1 (c) Who may request a ruling

427) 19 CFR 177.2 (a) Form

428) Director,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Regulations and Ruling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 Varick Street, Suite 501, New York, New York 10014.

429) Executive Director, Regulations and Ruling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Headquarter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9.

430) <https://apps.cbp.gov/erulings/index.asp>

431)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17. 7. 21.)

432) 19 CFR 177.1 (b) Oral advice

433) 19 CFR 177.2 (b) Contents

- 품목분류 사전심사에서 거래에 대한 명세는 신청 물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말함
 - 물품의 명세에는 ① 미국에서의 주된 용도와 상업적, 보편적, 기술적인 명칭, ② 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 구성비율과 각 부분의 가치, ③ 물품의 구매 가격과 대략적인 미국에서의 판매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거래에 대한 명세에는 관세 목적을 위한 과세가격 평가가 포함됨
 - 따라서 관세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정보, 송장 기재 내용, 인도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해당 관계, 공정한 거래 여부, 수출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판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운송수단 사전심사는 항해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선박이 건조된 장소, 등록된 국가, 미국 관할권 내의 수역에서 운행한 경우 운행 장소 등이 거래 명세에 포함되어야 함
 - 연안 운송수단 규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경우 모든 항구에서의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간, 항해조정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원산지 사전심사는 물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기구⁴³⁴⁾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로 원산지 결정이 필요한 물품의 명세, 물품이 생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국가 또는 기구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함⁴³⁵⁾
 - 또한 세관이 물품의 생산 국가 또는 기구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수입거래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에 대한 사진, 도면, 기타 시각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물품의 견본을 제시하여야 함
 - 송장, 계약서, 협의문 또는 기타 서류의 사본을 사전심사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에 나타나 있는 관련 사실, 문제에 대한 신청인의 견해가 포함되어야 함

434) 정부의 기관, 부서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EEC와 같은 협정은 포함됨

435) 19 CFR 177.25 (b)

- 견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견본의 반환을 원하면 신청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견본은 시험, 분석 등 심사와 관련하여 수행된 조치에 의하여 일부가 손상되거나 소비될 수 있음
-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 당국 또는 법원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세관 당국 또는 법원에서 검토를 하였거나 검토 중인 일련의 거래 중 하나와 관련된 물품인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원하는 특정한 심사결정이나 결론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결정을 뒷받침해줄 관련 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함

(2) 심사 및 결정

- 제출된 신청서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관 당국은 불충족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0일 또는 통지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⁴³⁶⁾
 - 보완이 통지되면 심사는 중단되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 배제된 신청건은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
- 신청인은 심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토론할 기회를 갖고 싶은 경우 사전심사 신청서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승인되면 회의장소와 시간이 통보됨⁴³⁷⁾
 - 회의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청인과 세관 당국은 회의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의한 의견에 구속되지 않음

436) 19 CFR 177.3 Nonconforming requests for rulings

437) 19 CFR 177.4 Oral discussion of issues

-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문이 발급되기 전 어느 때라도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⁴³⁸⁾
 - 심사가 철회된 경우라도 세관 당국에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본청은 심사가 철회된 거래에 대한 견해나 제출된 자료에서 도출한 정보를 관할 세관 사무소에 전달할 수 있음

- 세관 당국은 신청이 규정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거래가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심사 결정문을 발급함⁴³⁹⁾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이 되며, 실험 보고서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연될 수 있음⁴⁴⁰⁾
 - 신청이 ① 규정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신청과 관련된 거래가 ② 가상의 거래인 경우, ③ 관세 및 관련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④ 정산이 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거래인 경우, ⑤ 미국국제무역법원 등에 계류 중인 경우 결정문은 발급되지 않음⁴⁴¹⁾

(3) 심사의 효력 및 결과의 공개

- 사전심사 결정문을 받은 신청인은 관할 세관 사무소에 해당 결정문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에 대한 관련 서류에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⁴⁴²⁾
 - 결정문을 받은 자는 심사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는 거절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결정문은 특정 거래 또는 문제에 대한 세관 당국의 공식입장을 나타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모든 세관 공무원을 구속함⁴⁴³⁾
 - 결정문의 효력은 발행일에 발생하며, 결정문에 나타난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원칙은 동일한 상황의 거래에 대한 처분에 인용될 수 있음

438) 19 CFR 177.6 Withdrawal of ruling requests

439) 19 CFR 177.8 Issuance of rulings

440) CBP, <https://www.cbp.gov/trade/rulings/erul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17. 7. 21.)

441) 19 CFR 177.7 Situations in which no ruling will be issued

442) 19 CFR 177.8 Issuance of rulings

443) 19 CFR 177.9 Effect of ruling letters

- 결정문은 이미 수입되었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은 거래, 세관 당국이 최종적인 처분을 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함
 - 품목분류 결정문은 견본과 동일한 물품의 거래 또는 결정문에 명시된 물품명세와 동일한 명세를 가지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문은 동일한 물품이 동일한 요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운송수단 결정문은 동일한 사실과 상황의 거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
- 세관 당국은 결정문이 발급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관련 결정문을 세관 게시판에 공보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함⁴⁴⁴⁾
-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결정문의 경우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나 그 사본이 발급됨⁴⁴⁵⁾
 - 신청인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는 결정문을 통하여 공개되는 사실이 당사자의 경쟁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비밀, 상업적 또는 금융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에 손해를 끼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⁴⁴⁶⁾
 - 비공개 요청과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결정문에 포함된 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이름, 주소, 기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정보공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⁴⁴⁷⁾
 - 결정문이 발급되기 전 비공개 요청이 거절된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은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⁴⁴⁸⁾

2) 신고인

- 물품신고를 할 때 요구되는 문서 및 정보는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에 의하여 제출 또는 전송되어야 함⁴⁴⁹⁾
- 수입업자란 화주 또는 구매자를 말하며, 화주, 구매자 또는 수하인에 의하여 지정된 관세사 또한 물품신고를 할 수 있음
 - 수하인이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구매자인 경우 관세청은 그에 대한 책임 없이 물품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444) 19 CFR 177.10 Publication of decisions

445) 19 CFR 177.8 (a) (3) Disclosure of ruling letters

446) 19 CFR 177.2 (b) (7) Privileged or confidential information

447) 19 CFR 177.8 (a) (3) Disclosure of ruling letters

448) 19 CFR 177.8 (a) (3) Disclosure of ruling letters

449) 19 U.S.C. 제1484조 (a) (1) (B)

- 물품신고를 할 수 있는 화주 또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하여⁴⁵⁰⁾ 운송인은 물품신고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⁴⁵¹⁾
 - 물품신고 권리 증빙서류란 ①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 ② 운송인이 인증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초록, ③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부분과 운송인의 증명서, 또는 ④ 운송인의 증명서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명과 함께 기재된 인도지시 등이 있음
 - 물품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기타 물품신고 권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장은 선하증권 등의 발급을 위한 담보(Bond)를 제공받은 후 물품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⁴⁵²⁾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비를 위한 수입물품의 반입을 할 수 없지만, 대리인이 업무를 대리하고, 관세납부를 보증하는 담보(Bond)가 제공되는 경우 물품신고를 할 수 있음⁴⁵³⁾
 - 대리인은 물품신고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입항지에 소재하거나, 원격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담보는 추가되거나 증가되는 관세의 납부를 거주자인 보증법인이 보증함이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관세법」 제1484조에 따른 물품신고를 한 수하인은 물품신고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기술된 선언문(Declaration of Entry)을 제출하여야 함⁴⁵⁴⁾
 - 물품신고의 사실을 확인하는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품을 구매목적으로 또는 구매약정에 따라서 수입하였는지, 물품을 구매 또는 구매약정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
 - 물품이 구매되었거나 구매약정된 경우 송장에 기재된 가격이 진실하다는 것, 구매 또는 구매약정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된 경우 송장상의 가격이 신고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정확한 가격이라는 사실
 - 신고, 송장 또는 다른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사실
 - 신고 가격 또는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할 것이라는 사실

450) CBP, "Entry," 2004, p. 9

451) 19 CFR 141.11 Evidence of right to make entry for importations by common carrier

452) 19 CFR 141.15 Bond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453) 19 CFR 141.18 Entry by nonresident corporation

454) 19 U.S.C. 제1485조 (a) 요건; 양식 및 내용

- 수하인의 대리인이 물품신고를 한 경우 그 대리인은 수하인 선언(Declaration of consignee)⁴⁵⁵⁾을 하거나 선언 발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⁴⁵⁶⁾
 - 대리인이 수하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대리인이 물품신고 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⁴⁵⁷⁾
 -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명목상 수하인(Nominal Consignee)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물품 신고를 한 자도 물품신고 선언(Declaration of Entry)을 하여야 함⁴⁵⁸⁾
 - 명목상 수하인은 운송주선인, 화물혼재업자, 특송업자 등이 있음⁴⁵⁹⁾

- 물품 신고를 한 수하인이 실제 화주가 아닌 경우 추가되거나 증가되는 관세의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화주 선언(Declaration of owner)⁴⁶⁰⁾을 물품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⁴⁶¹⁾
 - 화주 선언에는 ① 물품신고 당시 수하인이 실제 화주가 아니라는 사실, ② 실제 화주의 이름과 주소, ③ 물품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되거나 증가된 관세를 실제 화주가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⁴⁶²⁾
 - 추가 또는 증가되는 관세의 납세의무를 수하인이 계약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물품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주의 담보(Bond)를 제공하여야 수하인이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⁴⁶³⁾

3) 신고시기

- 선박, 항공기 또는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양하된 후 15일 이내에 또는 보세상태로 다른 항구 등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항구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물품신고가 이루어져야 함⁴⁶⁴⁾

455) Customs Form 3347-A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은 부록 참조

456) 19 CFR 141.19 (b) Declaration by agent of consignee

457) 19 U.S.C. 제1485조 (c) 대리인

458) 19 CFR 141.19 (b) Declaration by agent of consignee

459) CBP, "Entry," 2004, p. 9

460) Customs Form 3347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양식은 부록 참조

461) 19 CFR 141.20 Actual owner's declaration and superseding bond of actual owner

462) 19 U.S.C. 제1485조 (d) 증가한 관세액에 대한 수입업자의 책임

463) 19 CFR 141.20 Actual owner's declaration and superseding bond of actual owner

464) 19 CFR 141.5 Time limit for entry

- 기한 내에 수입물품의 물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명령(General Order: GO)에 따라 보세창고에 보관됨⁴⁶⁵⁾
 - 물품이 양하된 후 반출허가를 받지 못한 물품은 양하된 후 15일까지 적재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하며, 선주 또는 선장은 물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20일 이내에 세관에 통보하여야 함⁴⁶⁶⁾
 - 또한 운송인은 미통관 또는 미반출 물품의 존재를 GO 물품을 보관할 자격이 있는 물품 양하 후 20일 이내에 보세창고에 통보하여야 함⁴⁶⁷⁾
 - 수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운송 및 보관하는 것은 보세창고 운영인의 책임임⁴⁶⁸⁾

- GO 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모든 관세 및 발생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에도 세관 관할하에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됨⁴⁶⁹⁾
 - 항만장이 GO 물품이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판매 불가인 경우 또는 GO 물품을 공매 하여도 제세 등을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됨

- 물품신고 서류가 적정한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다음을 물품신고일(Time of entry)이 되며,⁴⁷⁰⁾ 물품신고일은 납세신고 및 관세율 적용의 기준이 됨⁴⁷¹⁾
 - 물품신고를 한 수입물품 또는 그 일부의 반출을 세관공무원이 승인한 때
 -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물품신고서류가 제출된 때 이미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경우 그 서류가 제출된 때
 -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물품신고서류가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한 때

465) 19 CFR 127.1 Merchandise considered general order merchandise, GO를 받는 사유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음 ① 예상 관세의 미납부로 물품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 항만장이 적정한 서류 또는 다른 이유로 물품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항만장이 송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합법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466) 19 CFR 141.5 Time limit for entry

467) 19 CFR 141.5 Time limit for entry

468) 19 CFR 141.5 Time limit for entry

469) 19 CFR 127.14 Disposition of merchandise in Customs custody beyond time fixed by law

470) 19 CFR 4.37 General order

471) CBP, "Entry," 2004, p. 11

4) 신고서류

- 물품반출을 위한 물품신고서류는 물품신고서, 송장, 물품신고 권리의 증빙, 포장 명세서, 기타 CBP, 연방, 주 또는 지역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⁴⁷²⁾
 - 물품신고서는 CBP 양식 3461⁴⁷³⁾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서류여야 하며, 타자되거나 잉크, 지울 수 없는 연필 또는 영구적인 매체로 작성되어야 함⁴⁷⁴⁾
 - 또한 송장 등 첨부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물품 심사 및 관세 결정을 위하여 정확한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⁴⁷⁵⁾

- 송장은 물품에 대한 명세, 물품의 수량, 물품의 가격, 적절한 HTSUS 8단위 품목 번호 등을 포함하여 물품신고 시, 물품반출 승인 전에 구비되어야 함⁴⁷⁶⁾
 - 수입물품의 송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⁴⁷⁷⁾
 - 물품신고 예정 항
 - 물품이 판매되거나 판매되기로 약정된 일시, 장소, 판매자 및 구매자
 - 물품의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업적인 명칭, 그 물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 등급 또는 품질,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에서 판매할 때 표시하는 마크, 숫자, 표식, 물품이 포장될 때 포장지에 표시되는 마크 및 숫자
 - 물품이 발송된 국가 또는 장소에서의 중량 및 수량 또는 미국에서의 중량 및 수량
 - 물품이 구매 또는 구매약정대로 발송된 경우 결제통화로 표기된 각 품목의 구매 가격
 - 물품이 구매 또는 구매약정대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거래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표기된 구매가격
 - 금, 은, 지폐 등 통화 종류
 - 운임, 보험료, 수수료, 용기, 컨테이너, 덮개, 포장비용 등을 포함한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 물품의 수출 시 허용되는 별도로 구분된 모든 할인, 환급, 교부금

472) 19 CFR 142.3 Entry Document required

473) 양식은 부록 참조

474) 19 CFR 141.61 Completion of entry and entry summary documentation

475) 19 CFR 141.86 (d) Invoice to be in English

476) 19 CFR 142.6 Invoice requirements

477) 19 U.S.C. 제1481조 송장; 내용

- 물품의 원산지⁴⁷⁸⁾
-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생산을 위하여 제공된 모든 용역 및 재화(금형, 다이스, 공구 등)⁴⁷⁹⁾

5) 신고방법

- 물품신고는 관세청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⁴⁸⁰⁾
 - 전자시스템의 사용은 제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며, 비전자적 제출에 따른 신고처리의 지연은 없음⁴⁸¹⁾

- 미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가 사용되고 있으며, CBP는 ACE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⁴⁸²⁾
 - ACS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추적·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ACE는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추적·통제·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음

-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는 전자적으로 물품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ACS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중개인, 수입업자, 운송업자, 항만 당국 등이 이용할 수 있음⁴⁸³⁾
 - CBP의 수입 및 수출물품 처리가 ACE로 전환됨에 따라 ABI를 통하여 ACE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 물품신고를 위하여 제출자는 인증된 데이터를 ABI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유효하고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됨⁴⁸⁴⁾

478) 19 CFR 141.86 (a) (10)

479) 19 CFR 141.86 (a) (11)

480) 19 U.S.C. 제1484조 물품신고

481) 19 CFR 143.31 Applicability

482) CBP, <https://www.cbp.gov/trade/acs> (검색일자: 2017. 11. 21.)

483) CBP, <https://www.cbp.gov/trade/acs/abi/contact-info> (검색일자: 2017. 11. 21.)

484) 19 CFR 143.34 Procedure for electronic immediate delivery or entry

- 전자 물품신고가 이루어지면 CBP는 선별기준(Selectivity criteria)에 따라서 위험을 평가하여 일반심사, 서류검토와 일반심사, 집중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함⁴⁸⁵⁾
- 선별기준과 데이터 검토를 통하여 서면형태의 물리적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물품은 반출되고, 관세청은 제출자에게 이를 전자적으로 통보함⁴⁸⁶⁾
- 관세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송장은 제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송장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서면, AII(Automated Invoice Interface) 또는 EDIFACT(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형식으로 송장을 제출하여야 함⁴⁸⁷⁾
 - AII와 EDIFACT는 ABI를 통하여 송장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임

나. 물품검사 및 반출

1) 검사 및 반출

- 법 또는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 또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은 물품이 조사 등을 마치고 관세청에서 그 물품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다고 통보될 때까지 세관의 관리로부터 반출될 수 없음⁴⁸⁸⁾
 - 물품신고서류가 제출된 제품은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또는 견본을 통하여 평가,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견본이 제출되기 전까지 반출될 수 없음⁴⁸⁹⁾
- 관세청은 평가 또는 기타 목적으로 개장검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포장 또는 수량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발송하도록 지시하여야 함⁴⁹⁰⁾
 - 관세청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물품의 수량을 조사하고 충분한 신고 건수를 검사하여야 함

485) 19 CFR 143.32 (o) Selectivity criteria

486) 19 CFR 143.34 Procedure for electronic immediate delivery or entry

487) 19 CFR 143.36 Form of immediate delivery, entry and entry summary

488) 19 U.S.C. 제1499조 (a) 물품신고 검사

489) 19 CFR 142.7 Examination of merchandise

490) 19 U.S.C. 제1499조 (a) 물품신고 검사

- 검사 결과 송장 또는 신고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누락이 부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관세청이 판단한 경우 그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 전체를 압수하여야 함⁴⁹¹⁾
 - 부정한 의도가 아닌 경우 그 물품의 가격을 해당 신고 건에 추가하여 그 건에 납부된 관세, 수수료 및 제세에 합계하여야 함

- 관세청은 물품이 검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5업무일 이내에 물품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⁴⁹²⁾
 - 5업무일 내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반출이 보류된 것으로 봄
 - 반출이 보류된 경우 관세청은 수입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물품에 대해 반출 보류를 결정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지연의 개시, 사유, 이행될 조사 등을 통보하여야 함

- 물품이 검사를 위하여 제시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보류 물품에 대한 반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물품에 대한 신고는 거부된 것으로 봄⁴⁹³⁾
 - 반출결정은 30일 이내 또는 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입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서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30일째 되는 날에 기각된 것으로 봄

- 물품신고서류를 관세청에서 접수할 때 개별 또는 포괄담보(Bond)가 제출되지 않는 한 물품은 반출되지 않음⁴⁹⁴⁾
 - 담보는 공인된 법인의 보증, 현금기탁(deposits)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반출이 결정된 물품은 운송인이 직접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이 반출 지시(Release order)가 있을 때 반출될 수 있음⁴⁹⁵⁾
 - 반출지시는 물품신고서, 물품신고 권리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운송인 증명서, 또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의 인증된 사본 등에 기재되어야 함

491) 19 U.S.C. 제1499조 (a) 물품신고 검사

492) 19 U.S.C. 제1499조 (c) 지연

493) 19 U.S.C. 제1499조 (c) 지연

494) 19 CFR 142.4 Bond requirements

495) 19 CFR 141.111 Carrier's release order

- 운송인이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반출을 허용하는 백지지시서를 제출한 경우 운송인의 반출지시가 없어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명의자에게 물품은 반출될 수 있음
- 물품이 물품신고 시 반출된 후 해당 물품이 수입금지물품임을 알게 된 경우 CBP는 해당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세신고서류의 제출 및 예정관세의 기탁은 요구되지 않음⁴⁹⁶⁾
 - 이 경우 물품신고일 10일 이내에 수출을 위한 물품신고 또는 세관 감시하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 즉시 수출 또는 폐기가 이루어져야 함
 - 또는 물품신고일 10일 이내에 운송 후 수출을 위한 물품신고를 하고, 내륙운송이 이루어져야 함

2) 즉시반출

- 물품신고에 앞서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기타 즉시반출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반출허가서를 발행하여⁴⁹⁷⁾ 물품이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수 있음⁴⁹⁸⁾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육로로 도착한 물품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항만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반출할 수 있음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도착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포괄담보가 제출된 경우 수입항 내의 수입자의 작업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즉시반출이 허가될 수 있음
 -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수입자의 작업장 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없는 부분은 폐기될 수 있음
 - 미국 정부 기관 또는 사무소, 공무원, 공적 대리인이 위탁하거나 그들의 책임하에 선적된 물품의 경우 즉시반출할 수 있음
 - 무역박람회 위한 물품은 즉시반출 절차에 따라 반출이 가능함
 -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항만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반출 허가에 따라 반출이 가능함

496) 19 CFR 142.18 Entry summary not required for prohibited merchandise

497) 19 U.S.C. 제1448조 (b) 특별반출허가서

498) 19 CFR 142.21 Merchandise eligible for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 다음의 경우 분할운송물품의 각 부분이 도착할 때마다 반출되는 점진적 반출 (Incremental release)이 가능함
 - 단일운송으로 송장작성이 되었으나 운송인이 단일운송으로 취급할 수 없어 운송인에 의하여 분할되어 선하증권 원본상의 입항구로 선적된 경우
 - 판매, 송장작성, HTSUS에 따른 품목분류가 단일하게 되었으나 물품의 크기 또는 성질에 따라 단일운송되지 못하고 분할운송된 경우
 - 기타 CBP 본부가 즉시반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가 제공되어야 함
- 즉시반출을 위한 특별허가서의 신청은 CBP 양식 3461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송장은 요구되지 않음⁴⁹⁹⁾
- 수입자는 상업송장 대신 견적송장, 운송장 또는 물품의 명세, 수량, 가격을 알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예정관세를 기탁하여야 함⁵⁰⁰⁾
-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할당종료일과 특별허가일로부터 10일 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서류제출, 관세기탁이 있어야 함
 - 할당기간 만료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품은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수입자는 할당초과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⁵⁰¹⁾
 - 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만장은 즉시 담보금액에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여야 함⁵⁰²⁾
- 항만장은 수입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세관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즉시반출을 정지할 수 있음⁵⁰³⁾
- 적기에 세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또는 예상관세, 제세, 수수료에 대한 수입담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즉시반출은 정지됨

499) 19 CFR 142.22 Application for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500) 19 CFR 142.23 Time limit for filing documentation after release

501) 19 CFR 142.21 (e) Quota-class merchandise

502) 19 CFR 142.27 Failure to file documentation timely

503) 19 CFR 142.25 Discontinuance of immediate delivery privileges

- 신속한 조치란 손해배상청구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 구제를 청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제출 및 예상관세를 기탁하는 것을 말함
- 또한 지속적이고 상승적으로 관세청의 청구에 대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장은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즉시반출 특권이 정지되었음을 통보함⁵⁰⁴⁾
 - 통지에는 조치의 이유와 10업무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의 즉시반출 특혜가 모든 세관 항구에서 정지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만약 수입자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정지는 해제되고 수입자의 즉시반출 특혜는 즉시 회복되어야 함
- 물품이 특별허가에 따라 즉시반출된 후 해당 물품이 수입금지물품임을 알게 된 경우 CBP는 해당 물품의 반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세신고서류의 제출 및 예정관세의 기탁은 요구되지 않음⁵⁰⁵⁾
- 반입된 물품은 지정기간 내에 수출되거나 세관 감시하에 폐기되거나 수출을 위한 물품신고, 운송 후 수출을 위한 물품신고 또는 폐기신청서가 제출되어 즉시 수출 또는 폐기되어야 함

다. 납세신고(Entry Summary)

1) 신고시기

- 수입자는 물품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신고(Entry Summary)를 하고 예정관세를 기탁하여야 함⁵⁰⁶⁾
 -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세신고서류를 물품신고 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관세를 첨부한 납세신고는 물품 및 납세신고의 역할을 함
 - 만약 수입자가 납세신고서류를 물품신고 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신고서류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물품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음
 -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납세신고서류는 납세신고를 위하여 반환되어야 함

504) 19 CFR 142.26 Delinquent payment of Customs bills

505) 19 CFR 142.28 Withdrawal or entry summary not required for prohibited merchandise

506) 19 CFR 142.12 Time for filing or submission for preliminary review

- 납세신고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만장은 즉시 담보에 대하여 비용 정산을 요구하여야 함⁵⁰⁷⁾
 - 개별담보가 제공된 경우 담보액 전체를, 포괄담보가 제공된 경우 개별담보하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때의 금액을 청구함

- CBP는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경우 수입자에게 물품 반출 전 물품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예정관세를 기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⁵⁰⁸⁾
 -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납세신고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납세신고서류에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물품신고 시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기에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또는 예상관세, 제세, 수수료에 대한 수입담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물품신고 시 납세신고가 이루어 져야 함
 - 신속한 조치란 손해배상청구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내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서류제출 및 예상관세를 기탁하는 것을 말함
 -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물품신고 시 예정관세와 함께 납세신고가 제출되지 않으면 물품이 반출되지 않음
 - ABI를 통하여 물품신고 및 납세신고정보와 유효한 일정 선언이 전송된 경우 예정 관세는 첨부되지 않아도 됨
 - 또한 관세청의 청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이 있는 수입자에게 항만장은 서면으로 물품이 세관 관할하에서 반출되기 전 납세신고서류와 예정관세가 제출되어야 함을 통보하여야 함⁵⁰⁹⁾
 - 통지에는 조치의 이유와 10업무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반출 전에 예정관세와 함께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만약 수입자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요구는 철회되고 수입자는 오직 물품신고서류를 물품반출을 위하여 제출하면 됨

507) 19 CFR 142.15 Failure to file entry summary timely

508) 19 CFR 142.13 When entry summary must filed at time of entry

509) 19 CFR 142.14 Delinquent payment of Customs bills

- 기타 CBP 본부에서 지정한 물품의 경우 물품신고 시 예정관세와 함께 납세신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납세신고가 물품 및 납세신고의 역할을 하는 물품은 담보가 제공되거나 물품신고가 정산되기 전까지 반출될 수 없음⁵¹⁰⁾
 -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면 반출될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담보가 제공되고 검사가 다음과 같이 완료된 후에 반출될 수 있음
 - 송장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치하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반출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 만약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물품신고가 정산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물품이 반출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 특별관세, 수수료 등 모든 관세, 제세가 납부되거나 관세가 면제되어야 함
 - 항만장이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야 하고,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2) 신고서류

- 납세신고는 CBP 양식 7501⁵¹¹⁾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함⁵¹²⁾
 - 물품신고서류가 납세신고 전에 적절하게 제출된 경우 모든 물품신고서류의 사본 1부와 송장은 CBP가 물품반출을 승인한 후 반환되며,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납세신고 시에 구비하여야 함⁵¹³⁾
 - 물품신고 시 납세신고도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납세신고서류는 요구되지 않음

510) 19 CFR 142.19 Release of merchandise under the entry summary

511) 양식은 부록 참조

512) 19 CFR 142.11 Entry summary form

513) 19 CFR 142.16 Entry summary documentation

3) 신고형태

- 중앙청장은 분리된 물품신고를 하나의 납세신고로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⁵¹⁴⁾
 - 이 경우 동일한 원산지 물품이 동일 국가에서 수출되어야 하며, 동일한 운송인에 의하여 도착하여 동일한 수하인에게 양도되어야 함
 - 또한 첫 물품신고와 마지막 물품신고 간의 기간이 1주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신고가 첫 물품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 물품신고번호에 의하여 납세신고상에서 각 물품신고가 구분되어야 함

- 다만, 관세할당물품, 금지물품 등은 여러 건의 물품신고를 하나의 납세신고로 처리할 수 없음⁵¹⁵⁾
 - 주 단위보다 빈번하게 신고 처리 및 제출이 요구되는 물품, 정산이 보류된 물품도 하나의 납세신고로 통합할 수 없음
 - 물품신고가 제출된 물품이 동일한 HTSUS 8단위로 분류되지만, 관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도 하나의 납세신고로 처리할 수 없음
 - 관세율이 변경되기 전에 물품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관세율이 변경된 날 또는 후에 물품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임

- 중앙청장은 유사한 물품이 여러 명의 최종수하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중개인 이름의 담보로 납세신고를 통합하도록 할 수 있음⁵¹⁶⁾
 - 모든 물품이 동일한 운송인에 의하여 도착된 후 동일 날짜에 수입되고, 각 물품이 HTSUS 10단위로 항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물품신고나 즉시반출허가에 의하여 동일한 날짜에 반출되어야 함
 - 중개인은 통합 납세신고에 각 최종수하인을 구분하여야 하며, 물품신고번호 또는 즉시반출허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514) 19 CFR 142.17 One entry summary for multiple entries

515) 19 CFR 142.17 One entry summary for multiple entries

516) 19 CFR 142.17a One consolidated entry summary for multiple ultimate consignees

라. 관세납부 및 정산(Liquidation)

1) 관세납부

- 수입자는 예정관세(Estimated duties)를 물품신고서류 또는 물품 및 납세신고 역할을 하는 납세신고서류가 제출된 때 기탁(Deposit)하여야 함⁵¹⁷⁾
 - 납세신고 전에 제출된 물품신고서류에 따라 물품이 반출된 경우 납세신고가 제출되는 때에 예정관세가 기탁되어야 함
 - 보세창고 반입물품의 경우 소비를 위한 반출신고가 제출된 때에 예정관세를 기탁하면 됨
 - 다만 보세운송 또는 임시수입을 위한 물품신고, 보세상태에서 전시하기 위한 물품신고, 보세상태에서 무역박람회 등을 위한 물품신고, 이와 유사한 사유의 보세상태에서의 물품신고 시에는 관세를 기탁할 필요가 없음
- 예정관세는 물품이 신고될 때 발생하는 잠재적 관세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기탁되어야 함⁵¹⁸⁾

2) 정산(Liquidation)

가) 정산의 의의 및 절차

- 정산(Liquidation)이란 물품신고에 대한 최종계산 또는 관세의 확정⁵¹⁹⁾으로 임시담보수입을 제외한 모든 물품신고는 정산을 하여야 함⁵²⁰⁾
 - 관세청은 모든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가격에 대한 진술, 송장의 가격, 진술서, 선언문 기타 문서를 확인하여 물품의 최종평가를 확정하여야 함⁵²¹⁾
 - 또한 물품에 적용하는 최종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확정하여야 함
 -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최종 관세금액을 확정하고 증가되거나 추가되는 관세, 제세, 수수료 또는 초과 납부된 관세, 제세,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함

517) 19 CFR 141.101 Time of deposit

518) 19 CFR 141.103 Amount to be deposited

519) 19 CFR 159.1 Definition of liquidation

520) 19 CFR 159.2 Liquidation required

521) 19 U.S.C. 제1500조 평가, 품목분류 및 정산절차

- 정산에서 확정된 관세, 수수료, 제세, 이자의 총액과 기탁됐던 예정관세, 수수료, 세액의 총액의 차이가 20달러 이상인 경우 물품신고는 차액이 표시되어 수리되며, 청구서 또는 환급수표가 발행됨⁵²²⁾
 - 재정산된 관세, 수수료, 제세, 이자의 총액과 이전의 정산에서 확정된 관세, 수수료, 제세, 이자의 총액의 차이가 20달러 이상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됨

- 정산에서 확정된 관세, 수수료, 제세, 이자의 총액과 기탁됐던 예정관세, 수수료, 제세의 총액의 차이가 20달러 미만인 경우 이는 무시되며 물품신고된 대로 수리됨⁵²³⁾
 - 재정산과 이전의 정산의 차액의 총액이 20달러 미만인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통하여 재정산을 요청한 결과에 따라 환급을 결정한 때에는 차액이 20달러 미만인 경우도 환급함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재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징이 결정된 때에는 차액이 20달러 미만인 경우도 환급 또는 추징함

- 정산의 통지는 CBP의 공공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하여 게시되며,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참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자의 정보를 게시함⁵²⁴⁾
 - 정산통지에는 수입자의 정보가 웹사이트에 전자적으로 게시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자적 게시는 정산의 법적 증거로 간주됨
 - 정산통지는 게시일로부터 15개월간 유지됨
 - CBP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에게 선의로 정산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나 이는 비공식적이며, 직접적, 공식적, 결정적 고지가 아님

나) 정산의 기한

- 물품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물품신고는 수입자가 주장하는 관세율, 가격, 수량, 관세액으로 법의 적용에 따른 정산이 된 것으로 봄⁵²⁵⁾

522) 19 CFR 159.6 Difference between liquidates dutied and estimated duties

523) 19 CFR 159.6 Difference between liquidates dutied and estimated duties

524) 19 CFR 159.9 Notice of liquidation and date of liquidation for formal entries

525) 19 U.S.C. 제1504조 정산의 기한

- 정산의 법정기한이 만료된 경우 기한이 만료된 날에 정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CBP가 법의 적용에 따라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법적용에 따른 정산일자를 기재함⁵²⁶⁾
 - 이 경우 법적용에 따른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청장은 1년의 정산기간에 1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추가하여 정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⁵²⁷⁾
 - 적정한 평가, 품목분류를 위하여 CBP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입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 합당한 사유란 수입자가 CBP에 제공할 정보의 구비에 시간이 필요함을 중앙청장이 인정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제를 CBP도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중앙청장은 정산기간을 연장한 경우 웹페이지에 연장통지와 연장의 이유를 게시하여야 함⁵²⁸⁾
 - 연장통지는 게시된 후 15개월 동안 유지되며, 중앙청장은 제출자 또는 대리인에게 선의로 연장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중앙청장은 총 연장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⁵²⁹⁾
 - CBP의 추가 정보를 위하여 연장된 정산 건에 대하여 중앙청장이 그 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전 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통지를 통하여 1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입자의 요청으로 정산이 연장된 후 수입자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전 연장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면으로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청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통지가 웹페이지에 게시됨

526) 19 CFR 159.9 Notice of liquidation and date of liquidation for formal entries

527) 19 CFR 159.11 Extension of time for liquidation

528) 19 CFR 159.11 Extension of time for liquidation

529) 19 CFR 159.11 Extension of time for liquidation

- 정산기간이 연장된 물품신고는 물품신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정산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주장하는 관세율, 가격, 수량 및 관세액으로 정산된 것으로 봄⁵³⁰⁾

다) 정산의 중단

- 정산은 오직 법 또는 규정에 의하거나 관세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음⁵³¹⁾
 - 보세창고 반입 또는 재반입을 위한 물품신고는 보세기간 내에 반출, 포기, 폐기될 때까지 또는 보세기간 종료 전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세기간 종료일까지 중단됨⁵³²⁾
 - 조건부 면세 또는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물품은 요구되는 조건의 증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산이 중단되며, 증빙이 제시되거나 기간 내에 제시되지 못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산됨⁵³³⁾
 -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의 발급을 위하여 담보가 제공된 물품신고의 경우 담보가 이행되거나 불이행될 때까지 정산이 중단됨⁵³⁴⁾
 - 특정 식품, 약품, 화장품, 독성물질, 유해물질, 위험물질, 부식성 물질 등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물품신고의 정산은 미국으로의 입국허가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중단됨⁵³⁵⁾
 - 미국으로의 입국허가가 거절된 물품이 세관 감시하에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관세납부 대상이 아니며, 납부된 관세는 환급됨
 - 국내이해관계자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평가 또는 품목분류되는 물품이 미국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이 공표된 후에 물품신고된 경우 소송의 원인에 대한 최종처분이 있을 때까지 정산은 중단됨⁵³⁶⁾
 - 최종처분이 내려지면 각 물품신고는 최종 법원판결에 따라 정산되거나 필요한 경우 재정산됨

530) 19 U.S.C. 제1504조 정산의 기한

531) 19 CFR 159.51 General

532) 19 CFR 159.52 Warehouse entry not liquidated until final withdrawal

533) 19 CFR 159.53 Proof of duty-free or reduced-duty status

534) 19 CFR 159.54 Open bond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535) 19 CFR 159.55 Possible prohibited food, drugs, or other articles

536) 19 CFR 159.57 Merchandise affected by an American manufacturer's cause of action sustained by the court

-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예비공정판정, 최종공정판정, 계약위반통지가 발급된 경우 물품신고에 대한 정산은 중단됨⁵³⁷⁾
 - 중앙청장은 이 사실을 수입자, 수하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에는 확인 또는 결정되거나 예정된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포함되어야 함
- 정산의 중단이 해제된 경우 관세청은 물품신고에 대한 중단의 해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신고를 정산하여야 함⁵³⁸⁾
 - 해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에서 정산되지 않은 물품신고는 수입자가 주장하는 관세율, 가격, 수량 및 관세액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봄

마. 서류보관

- 수입물품의 화주, 수하인, 수입자, 신고인 또는 기타 당사자⁵³⁹⁾는 수입 등과 관련된 기록을 기록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⁵⁴⁰⁾
 -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화주, 수하인, 수입자, 신고인 또는 기타 당사자란 다음의 자를 말함⁵⁴¹⁾
 - 미국의 관세영역 내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환급을 청구하는 자 또는 보세상태에서 물품을 운송 또는 보관하는 자
 - 미국의 관세영역 내로 또는 미국의 관세영역으로부터 보세상태로 운송되거나 보관되는 물품의 수입, 운송 또는 보관을 의도한 자
 - 상기한 자들의 대리인
 - 물품신고나 선언문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 기록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다음의 행위를 말함⁵⁴²⁾
 - 수입, 물품신고 또는 선언
 - 미국의 관세영역 내로 또는 미국의 관세영역으로부터 보세상태로 운송 또는 보관되는 물품의 운송 또는 보관

537) 19 CFR 159.58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ion by Center director

538) 19 U.S.C. 제1504조 정산의 기한

539) 19 U.S.C. 제1508조 기록보존

540) 19 CFR 163.4 Record retention period

541) 19 U.S.C. 제1508조 기록보존

542) 19 CFR 163.4 1 (a) Records

- 관세환급의 청구
- 관세, 수수료, 제세의 추징 또는 납부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또는 서명 등 FTA 등 특혜세율의 적용을 위한 행위
- 기타 관세청에서 집행하는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행위

2 특수수입 통관

가. 소액물품(Informal Entry)

1) 약식신고 대상

-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선적 등은 담보제공, 정산 등이 생략⁵⁴³⁾ 되는 약식신고(Informal Entry)로 물품신고를 할 수 있음⁵⁴⁴⁾
- 약식신고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선적, 다만, HTSUS 제98류 제3절 (컨테이너 및 용기), 제4절(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인용품)의 물품 중 25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됨
 - 선의에 따라 다른 시기에 도착한 분할선적 중 1회분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하나의 위탁품이 부분으로 분리되어 수입된 경우 하나의 부분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HTSUS 제98류 제3절, 제4절의 물품 중 25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됨
 - 해외에서 사용된 가정용품 또는 개인용품으로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를 위하여 또는 구매주문에 따라 수입되지 않고, 판매의도가 없는 것
 - 해외에서 사용된 가정용품 또는 개인용품이 제9802.00.40호에 따라 수입되고, 수리비 또는 대체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 해외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의 개인용품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

543) CBP,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15/kw/INFORMAL%20ENTRY%20REQUIREMENTS (검색일자: 2017. 11. 27.)

544) 19 CFR 143.21 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

- 제490.00.00호, 제4904.00.00호, 제4904.91.00호, 제4905.99.00호, 제9701.10.00호, 제9701.90.00호, 제9810.00.05호에 해당하는 책 및 기타 물품으로서 제9810.00.05호, 제9810.00.30호의 기관에 의하여 수입된 것
- 연극무대, 장치, 효과, 영화필름, 상업적 샘플, 전문서적, 도구, 장비 및 생계수단 또는 직업용품
- CBP 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것으로서 물품의 성격, 디자인 등으로 인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결정되고 판매를 의도하지 않고, 구매에 의하여 또는 구매약정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닌 것
-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선적품의 합계 가격이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재수출하기 전에 수리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외국의 구매자가 거절하거나 반송하여 수입된 것
- 소액면세 적용대상 물품으로 800달러 이하의 것, 선의의 선물로 100달러 이하의 것 또는 개인·가정용품으로 200달러 이하의 것
- CBP는 집행목적, 세수보호, 효과적인 세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신고(Formal Entry)를 요구할 수 있음⁵⁴⁵⁾
 - 동일한 수하인을 위한 개인적인 선적들은 해당 선적들의 가격이 2,500달러 이하인 경우 하나의 물품신고로 통합될 수 있음

2) 약식신고 방법

- 약식신고 대상 물품은 CBP 양식 7501이나 동등한 전자문서로 물품신고를 하여야 함⁵⁴⁶⁾
 - 다만 다음의 물품은 다음에 정하는 방식으로 약식신고를 하여야 함
 - 여행객의 수하물은 수하물신고에 따라 통관할 수 있음
 - 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은 CBP 양식 3311(Declaration of Free Entry of Returned American Products)⁵⁴⁷⁾ 또는 동등한 전자문서
 - 개인용품 또는 생계수단은 CBP 양식 3299(Declaration of Free Entry of Unaccompanied Articles)⁵⁴⁸⁾ 또는 동등한 전자문서

545) 19 CFR 143.22 Formal entry may required

546) 19 CFR 143.23 Form of entry

547) 양식은 부록 참조

548) 양식은 부록 참조

-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적으로 무조건 면세대상이며 할당관세 또는 내국세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면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CBP 양식 7523(Entry and Manifest of Merchandise Free of Duty, Carriers Certificate and Release)⁵⁴⁹⁾
- 즉시반출절차 또는 물품신고서류에 따라 반출된 물품으로 CBP 양식 7501으로 물품신고가 된 것은 오른쪽 상단에 '약식신고'라고 기재
- 일반특혜관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가격과는 관계없이 비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CBP 양식 7523
- 재수출되기 전 수리 또는 대체되기 위하여 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은 CBP 양식 3311
- 해외구매자가 거절 또는 반송한 물품은 CBP 양식 7501의 오른쪽 상단에 '약식신고'라고 기재하고 CBP 양식 3311로 약식신고
- 소액면세 대상 물품으로서 상품의 원산지, 송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최종수하인의 이름, 주소, 물품의 상세명세, 수량, 선적중량,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또는 각 선하증권의 목록이 기재된 적하목록
- CBP 양식 7501은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 수입신고번호 배부, 관세 및 제세의 납부를 위하여 세관 수납원에게 제출될 때 수입자, 대리인 또는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함⁵⁵⁰⁾
- CBP 양식 7501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문서는 물품에 대한 적정한 명세와 HTSUS에 따른 품목번호가 기재되어야 함⁵⁵¹⁾
- 예상관세와 제세는 물품신고가 제출되고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될 때 기탁되어야 함⁵⁵²⁾
- 만약 물품검사를 통하여 추가 관세 및 제세가 발견된 경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기탁되어야 함

549) 양식은 부록 참조

550) 19 CFR 143.24 Preparation of Customs Form 7501 and Customs Form 368 or 368A

551) 19 CFR 143.25 Information on entry form, or its electronic equivalent

552) 19 CFR 143.28 Deposit of duties and release of merchandise

나. 우편물

1) 우편물 신고

-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우편물은 정식물품 신고(Formal Entry)를 하여야 함⁵⁵³⁾
 - 또한 CBP는 세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우편물에 대하여 정식물품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송부된 물품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게 분리선 적된 경우, CBP에 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서에 의하여 2,500달러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물품신고를 위하여 통합될 수 없음
 - 정식물품신고가 필요한 경우 물품의 도착과 물품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가 통지됨
 - 우편물이 CBP 항구 또는 세관역이 아닌 장소로 발송된 경우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항구가 통관항으로 통지됨

- 2,5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서 CBP로 송부되면 CBP 직원은 준비된 우편신고서를 첨부하여 물품의 배송과 관세의 징수를 위하여 통관우체국으로 재송부함⁵⁵⁴⁾
 - 수하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CBP 직원은 약식신고서를 준비하여 관세를 징수함
 - 우편물신고서 또는 약식신고서에 의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CBP 직원에 의하여 물품 신고 준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하인에게 송부할 준비가 된 때에 유효한 관세율이 적용됨

- 소액물품, 선의의 선물, 개인 및 가정용품, 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 정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우편물⁵⁵⁵⁾은 물품신고가 필요 없음⁵⁵⁶⁾

553) 19 CFR 145.12 Entry of merchandise

554) 19 CFR 145.12 Entry of merchandise

555) 자세한 대상은 제2편 V. 감면 및 환급제도 1. 관세감면제도 참조

556) 19 CFR 145.12 Entry of merchandise

2) 우편물 검사

- 미국 관세영역 밖에서 미국 관세영역 내로 송부되는 모든 우편물은 세관 검사대상임⁵⁵⁷⁾
 - 다만, 다음의 우편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송부된 우편물로서 공적문서만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지거나 믿어지는 것
 - 외국의 대사관 또는 장관에게 송부된 우편물
 - 외교특사, 영사관의 직원, 국제기구에 송부된 서신, 문서만 포함하고 있는 우편물, 국제기구에 송부된 서신, 문서 이외의 우편물은 세관 검사대상이 될 수 있음
 - 세관 공무원은 봉인된 편지 등의 우편물이 서신 외에 상품, 밀수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검사를 할 수 있음⁵⁵⁸⁾
 - 판사의 수색영장을 받은 경우, 발신인 또는 수취인에게 개봉승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만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편지 등은 개봉할 수 없음

- CBP의 물품검사 시 우편물이 관세 또는 국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하고, 세관 신고서가 송장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포함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수입인 경우, 해당 물품은 압류와 몰수의 대상이 됨⁵⁵⁹⁾
 - 다음의 우편물은 수입이 금지됨⁵⁶⁰⁾
 - 음란물
 - 불법낙태물품
 - 미국에 대한 반역, 반란을 주장하거나 미국법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주장하는 물품
 - 생명을 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협이 있는 물품
 - 복권용품(캐나다에서 인쇄되어 미국에서 행해지는 복권, 복권에 사용되는 인쇄물 또는 복권의 광고물은 제외)
 - 화기 및 전쟁무기, 상표권 및 저작권 대상 물품, 해외자산관리 규정 대상 물품 등은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허가가 필요함

557) 19 CFR 145.2 Mail subject to Customs examination

558) 19 CFR 145.2 Opening of letter class mail; reading of correspondence prohibited

559) 19 CFR 145.4 Dutiable merchandise without declaration or invoice, prohibited merchandise, and merchandise imported contrary to law

560) 19 CFR 145.51 Articles prohibited by section 305, Tariff Act of 1930

- 알코올음료는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없으며, 우편으로 수입된 경우 압류 및 몰수의 대상이 됨⁵⁶¹⁾
 - 이 경우 수취인은 해당 물품이 몰수되었으며 반출을 위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보받음
 - 항만장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음
 - 관세와 내국세의 납부
 - 물품 도착지의 관할 주 정부의 알코올음료에 적용하는 법의 준수
 - 기타 항만장이 요금, 벌금 등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건의 준수
 - 수취인, 대리인 또는 운송인이 세관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

다. 개인용품

1) 개인용품 신고

- 외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자는 미국으로 귀국할 때 해당 물품을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함⁵⁶²⁾
 - 물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과 CBP 양식 4457(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Personal Effects Taken Abroad)⁵⁶³⁾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세관 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명세를 심사한 후 신청서에 서명하여 물품과 함께 신청인에게 반환함
- 개인에 의하여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처음 도착한 미국 항구의 CBP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⁵⁶⁴⁾
 - 또는 개인물품의 신고를 위하여 외국에 설치한 사전통관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음

561) 19 CFR 145.4 Alcoholic beverages

562) 19 CFR 148.1 Registration of effects to be taken abroad

563) 서식은 부록 참조

564) 19 CFR 148.11 Declaration required

- 귀국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미국에 도착한 때에 구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승객과 그 소지품을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⁵⁶⁵⁾
 - 귀국하는 거주자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구두신고를 할 수 있음
 - 해외에서 취득한 휴대품의 취득국가의 공정가격과 반출 후 다시 가지고 돌아온 개인·가정용품의 해외 수리비 또는 대체 가격의 합계가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사모아, 팜, 북마리나제도 연방,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직항으로 또는 경유 후 미국으로 도착한 때에는 상기 물품의 가격이 1,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휴대품이 담보를 제공하고 운송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다른 사람의 책임 또는 판매를 위하여 수입되지 않은 경우
 - 미국에 도착한 비거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⁵⁶⁶⁾, 또는
 - 총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는 물품들로 소액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구두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도착하는 자에게 서면신고가 요구되며, 신고서를 여행객 수하물을 검사할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⁵⁶⁷⁾
 - 미국에 도착한 자는 CBP 양식 6059-B(Customs Declaration)⁵⁶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도착 시 소지품 중 해외에서 획득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 취득국가의 공정가격이 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들의 합계 가격이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기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다음의 물품은 신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고할 수 있음
 - 제9401.00.10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귀국 거주자의 소지품으로 해외로 가지고 간 생계용품, 제9804.00.45호의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가정용품(캐나다 또는 멕시코 이외의 나라에서 귀국하는 거주자의 차량, 해외로 가지고 간 물품의 수리비

565) 19 CFR 148.12 Oral declarations

566) 자세한 대상은 제2편 V. 감면 및 환급제도 1. 관세감면제도 참조

567) 19 CFR 148.13 Written declarations

568) 서식은 부록 참조

또는 대체 가격은 목록 작성을 하여야 함)

- 제9804.00.20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비거주자의 의류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품, 제9804.00.25호의 담배, 주류, 제9804.00.30호의 선의의 선물, 제9804.00.40호의 미국 관세영역 밖으로 운송 중인 휴대품
- 서적, 도서, 가구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으로 제9804.00.05호에 따라 면세 신고가 가능한 것

- 한 가정에서 거주하며 함께 여행하고, 같은 거주 지위를 갖는 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책임자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음⁵⁶⁹⁾
 - 가족구성원의 개인·가정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이 각 구성원별 취득가격이 800달러 또는 1,600달러(사모아 등에서 도착한 경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구두신고할 수 있음
 -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혈연, 결혼, 동거, 입양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말하며, 가족에 고용된 이는 포함하지 않음
- 제출된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구두 또는 서면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물수의 대상이 되며 벌금이 부과됨⁵⁷⁰⁾
 -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음
 - 해당 물품이 규제약물인 경우 500달러 또는 그 물품가격의 10배 중 더 큰 금액
 - 해당 물품이 규제약물이 아닌 경우 그 물품가격
 - 신고누락물품은 밀수품으로 취급되므로 관세는 징수되지 않음⁵⁷¹⁾

2) 개인용품 검사

- 세관 공무원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하물 검사를 하고자 하는 세관 공무원은 수하물의 소유자, 대리인 또는 점유자에게 검사를 위하여 개봉을 요구하거나 개봉을 위한 수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⁵⁷²⁾
 - 세관 공무원은 신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에 어떤 물품이 포함되어

569) 19 CFR 148.14 Family declarations

570) 19 U.S.C. 제1497조 신고누락에 대한 벌금

571) 19 CFR 148.18 Failure to declare

572) 19 U.S.C. 제1461조 상품 또는 수하물의 검사

있는지, 과세, 면세, 금지 대상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자의 수하물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⁵⁷³⁾

- 실무적으로 세관 공무원은 소유자 등에게 수하물을 개봉할 것을 요청하고, 소유자 등이 개봉을 할 수 없거나 거절한 경우 세관 공무원에 의하여 개봉됨⁵⁷⁴⁾

○ 세관 공무원은 수하물 개봉 후 그 내용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과세대상이나 수입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 모든 내용물을 몰수하여야 함⁵⁷⁵⁾

□ 세관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세관 공무원이 상주하는 장소가 외국에 설치된 경우 항공편을 통하여 미국으로 도착하는 자는 비행기 탑승 전에 수하물을 미국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함⁵⁷⁶⁾

○ 여행객은 미국 「관세법」과 상품 및 수하물과 관련된 민법, 형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짓·허위진술, 불법적 상품폐기 등은 미국 관세영역 내의 공항에 도착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됨

○ 외국 영역에서 수하물이 검사되는 경우 수하물 신고서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 전 세관 공무원에게 양도되어야(surrender) 함

○ 외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은 자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추가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 신고서를 양도받은 세관 공무원은 추가물품을 포함한 신고서의 수정을 허가할 수 있음

3) 개인용품 과세

□ 면세대상 수하물은 검사 후 즉시 통관이 가능하며, 과세대상 수하물은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 통관할 수 있음⁵⁷⁷⁾

○ 미국에 도착한 자의 수하물을 검사하는 검사원은 다음의 수하물을 가격과 관계없이 검사 후 통관시킬 수 있음

- 제98류 주4에 따라 면세되는 미국에 도착한 자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가정용품

- 제9701.10.00호(회화·데생·파스텔), 제9701.90호(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의 예술작품

573) 19 U.S.C. 제1496조 수하물 검사

574) 19 CFR 148.21 Opening of baggage, compartments, or vehicles

575) 19 U.S.C. 제1462조 몰수

576) 19 CFR 148.22 Examination of air travelers' baggage in foreign territory

577) 19 CFR 148.23 Examination and clearance of baggage

- 예술품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제9702.00.00호(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제9703.00.00호(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의 예술작품
- 검사원은 과세대상인 미국에 도착한 자의 개인·가정용품을 검사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징수한 후 통관시킬 수 있음
- 개인·가정용품이 아닌 수하물이나 판매용으로 또는 다른 이의 수수료를 받고 구입한 물품은 검사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될 수 있음⁵⁷⁸⁾
 -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가정용품이 아닌 수하물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객이 도착한 장소에서 수하물 신고를 함으로써 검사, 반입, 통관될 수 있음
 - 물품에 적절한 송장이 첨부된 경우, 그리고
 - 도착지에서 물품을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인 경우
- 과세대상인 수하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세관 검사원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고된 가격 또는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⁵⁷⁹⁾
 - 신고된 구매가격 또는 가치가 공정소매가격과 다른 경우 세관 검사원은 착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감가, 구매 또는 취득 환경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 조사원은 수입된 시점의 물품상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지만, 신고가격 또는 가치의 25%를 초과하여 착용 또는 사용 등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없음
 - 보다 더 큰 공제를 원하는 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정식신고(Formal Entry)를 하여야 함
- 수하물에 관세 및 내국세가 징수된 경우 여행객이 이를 현금으로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이 발급되며, 개인 수표로 납부한 때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표가 영수증으로 간주됨

578) 19 CFR 148.23 Examination and clearance of baggage

579) 19 CFR 148.24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II. 수출 통관절차

1 수출 통관 개요

-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관련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임
 - 수출 통관절차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수출신고, 물품검사, 수출허가의 일련의 행위임
 - 수출계약, 승인(요건 확인), 신고·수리, 선적, 출항 등 수출과정에서 업무주체와 업무행위는 관련법을 따라야 함

- 수출 통관절차란 수출신고 이후 물품의 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출항을 위한 물품 적재까지의 절차를 말함
 -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확인한 후 수출지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임

- 미국의 수출물품의 위험관리는 국가안보, 외교정책, 특정 부족물자의 수출로 인플레이션 유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짐

- 수출위험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법률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통제물질 수출입법」(Controlled Substances Import and Export Act of 1954), 「멸종위험동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대적성국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등임
- 국가안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암호해독기술(encryption) 수출통제 등임
- 외교정책은 침략국가, 테러국가 제재 등의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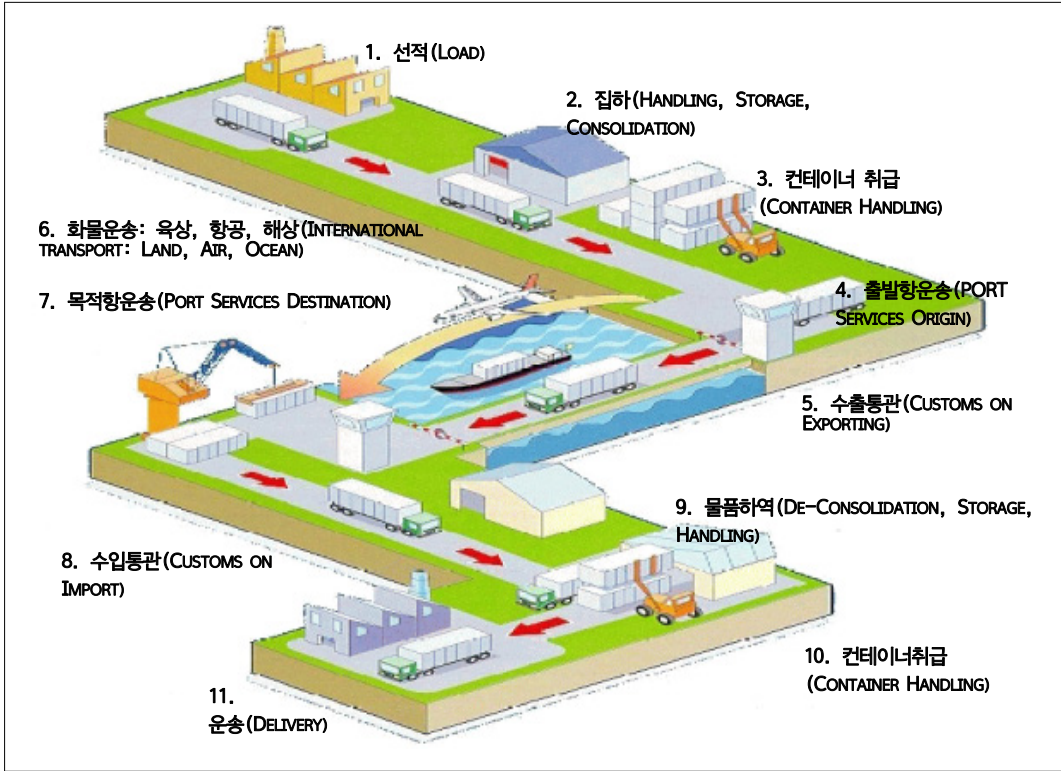
가. 수출신고

- 수출자(USPPI: United States Principal Part in Interests)는 수출신고와 수출화물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신고·제출할 의무를 가짐
- 미국의 모든 수출신고는 USPPI나 그 대리인이 CBP 승인된 자동수출신고시스템(Automatic Export System; 이하 AES)을 이용해야 함⁵⁸⁰⁾
 - AES를 통해 CBP에 전자신고(EDI)된 후 이 시스템은 자료의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확인번호인 ITN(Internal Transaction Number)을 생성하며 ITN을 취득하지 않은 물품은 수출이 불가함⁵⁸¹⁾
- 수출신고 대상은 미국 내 모든 항만, 공항, 국경을 경유하는 2,500달러 이상의 모든 수출화물임
 - 선박, 항공기, 철도 또는 트럭으로 미국 밖으로 수출되는 상업적 화물의 미국 내 주요 이해당사자(USPPI: United States Principal Part in Interests)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은, 화물이 특별히 면제대상이 아니면 화물에 관한 특정정보를 따로 규정한 시간 내에 CBP가 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화물은 인터넷 주문 화물도 포함되며 허가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580)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2010. 6, p. 440

581) 이 번호는 내부업무처리번호로 알려져 있음

[그림 3-11-1] 미국 수출 통관 절차



자료: MIQ 운송사, https://www.miq.com/wp-content/uploads/2014/06/ctpat_executivesummary_082012.pdf (검색일자: 2017. 10. 12.)

- 대외무역법시행규칙(Foreign Trade Regulation: FTR)에 따라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을 시 수출 후 신고가 가능함
 - 선박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화물은 항공기 출발 예정 2시간 전, 트럭이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우편과 기타 운송 수단인 경우 수출하기 2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함⁵⁸²⁾

- 수출자가 AES에 송신하는 전자수출정보 항목은 총 3가지로 분류됨
 - 모든 신고에 적용되는 필수항목, 라이선스 물품 등 특정화물 신고에 필요한 조건부 항목, 임의신고 항목 등임

582) <https://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export-docs/electronic-export>

- 미국 수출자 혹은 운송인은 물류안정성 및 명확성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가짐⁵⁸³⁾
 - USPP이나 그 대리인은 수출화물 정보를 AES를 통해 제출하였다는 사실 증명(내부 업무처리번호 ITN)이 필요함
 - 위험도가 낮은 수출자라는 증명(Option 4 방식 적용자라는 사실)이 필요함
 - 화물정보 사전보고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공술을 운송인에게 제공하여 운송인의 수출화물 적하목록, Waybill 기타 수출서류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운송인은 USPP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의 화물정보 제출 사실 또는 보고의무 면제에 대한 공술(Exemption Statement)을 제공받지 않으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출물품의 전자수출정보(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이하 EEI)를 AES에 전송하여 수출신고자료로 제출할 의무가 있음⁵⁸⁴⁾
 - 수출단체(Export Community)는 수출자를 통칭함
 - AESPcLink는 AESDirect에 접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임
 - EEI란 AES에 저장된 전자수출정보로, 전산화되기 전의 선박수출신고(SED) 정보와 동일하다고 보며⁵⁸⁵⁾
 - AES를 통해 신고된 정보는 CBP에서 연계공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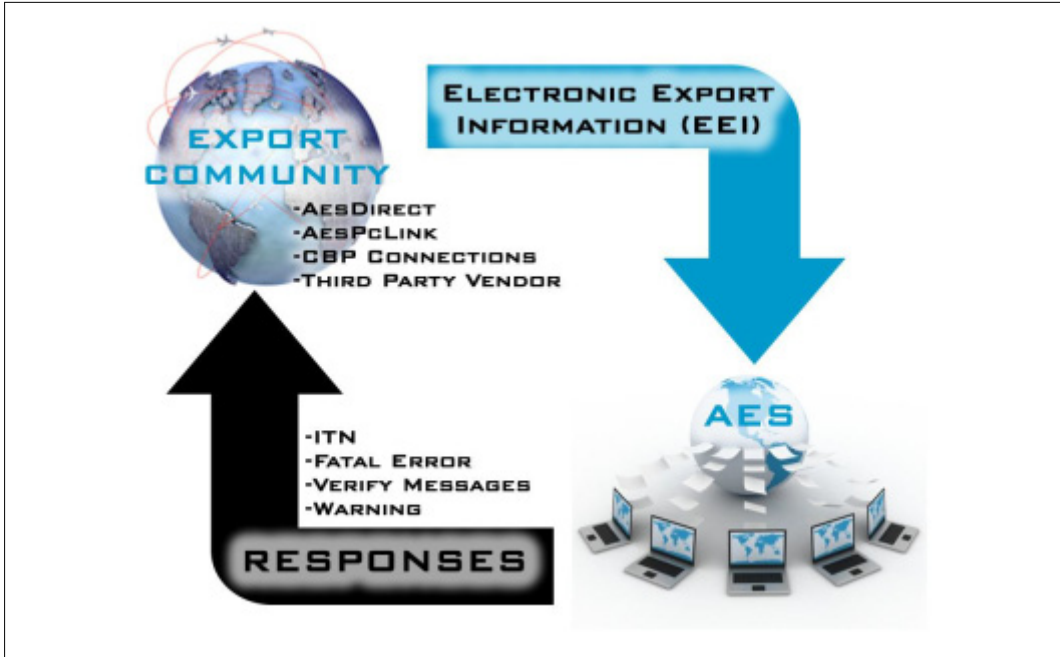
- AES는 수출자에게 ITN을 생성하여 전달하며 그 외 수출자가 인지해야 하는 치명적인 오류, 확인메시지, 경고사항에 대해 통보함

583) USPP Responsibilities FTR § 30.3(c)(1),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aes/documentlibrary/bp/2012AESComplianceBestPracticemanual082012.pdf> (검색일자: 2017. 10. 12.)

584) 15 CFR, § 30.2(a)

585) <https://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export-docs/electronic-export>, 대외무역법 시행규칙 Part 30, 대외무역규정(CFR Title 15, Subtitle B, Chapter I) (검색일자: 2017. 10. 12.)

[그림 3-II-2] 자동수출신고(AES) 운용 시스템



자료: U.S. census of Bureau 홈페이지,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aes/documentlibrary/bp/2012AESComplianceBestPracticemanual082012.pdf> (검색일자: 2017. 10. 12.)

나. 서류심사 및 화물심사⁵⁸⁶⁾⁵⁸⁷⁾

-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AES 시스템을 통해 ITN을 발급받아야 함
-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92.4(C)(4)에 따라 CBP가 잠재위험이 있는 화물에 대해 화물 검사를 위해 운송인은 화물을 관세청에 인도해야 함⁵⁸⁸⁾
 - 운송인은 CBP가 위험도가 높은 물품으로 선별하여 통보한 화물의 검사를 위하여 동 화물을 CBP에 인도할 의무가 있음

586) 「대외무역법 시행령」 15 CFR Commerce and Foreign Trade,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5>

587) U.S. census of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aes/documentlibrary/bp/aes_bestpractices.html (검색일자: 2017. 10. 12.)

588) 정재호·정경화·미정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0.

- 만약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화물이 이미 출발한 경우에는 CBP는 수출운송인이 국제운송인본드(International Carrier Bond)의 조건에 따라 화물을 회송시켜 CBP에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자는 출항 전 전자수출정보(EEI)인 화물정보(Commodity Data)와 운송정보(Transportation Data)를 제출해야 함
 - 화물정보는 필수정보, 조건부정보, 선택적 정보로 구성됨
 - 운송정보는 운송방법, 운송인 식별코드, 운송인명, 최종목적국, 수출예정일, 수출항의 내용을 포함함

〈표 3-II-1〉 EEI 제출정보 목록

구분	정보 종류	비고
필수 정보	수출자 및 수출자 확인 (USPPI and USPPI Identification)	수출자의 이름,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를 수출통관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수출일 (Date of Export)	수출일은 수출항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임
	최종양수인 (Ultimate Consignee)	최종양수인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로서 실제 수출화물을 받는 자를 의미
	U.S. State of Origin	물품이 수출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주 정부의 2-Character 우편번호임
	최종목적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물품이 소비되거나 추가적으로 가공되는 국가를 의미
	운송방법 (Method of Transportation)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방식임 - 캐나다, 멕시코, 다른 외국을 통한 환송에 대해 운송방식은 운송인이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방식임
	운송인명 (Conveyance Name/Carrier Name)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자로서 수출시점에 알려진 운송인명
	운송인 식별 (Carrier Identification)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운송인을 특정하는 운송인 식별번호임

〈표 3-II-1〉의 계속

구분	정보 종류	비고
필수 정보	수출항 (Port of Export)	수출항은 물품이 수출운송인에 선적되는 항구·공항이거나 미국 국경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육상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항구임
	특수관계자 표시 (Related Party Indicator)	수출자와 최종양수인 중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들 간의 거래임을 나타내는 표시
	내국 또는 외국 표시 (Domestic or Foreign Indicator)	수출품이 내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표시 -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국내생산 물품에서 외국산을 분리해 신고
	물품분류번호 (Commodity Classification Number)	10자리 물품분류번호를 신고
	물품명세 (Commodity Description)	Schedule B나 HS코드(HTS)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선적된 물품내역을 신고
	측정기본단위 (Primary Unit of Measure)	측정단위는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기본량과 일치해야 함
	기본량 (Primary quantity)	양은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최초 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적하물 무게 (Shipping Weight)	상품의 무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무게를 포함 적하물 무게는 항공기, 배, 철도, 트럭에 의한 수출과 가정용품의 수출에서 필요 우편,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출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컨테이너 화물에서 컨테이너 무게는 적하물 무게에 포함되지 않음
	가격 (Value)	전자수출정보(EEI)에 신고된 가격은 미국 수출항에서 물품가격이어야 함 - 내륙 운송, 보험, 미국 항구·공항·국경에서의 비용 등을 포함
수출정보코드 (Export Information Code)	수출적하물의 유형이나 수출된 물품의 조건을 확인하는 코드(예를 들어, 구호나 자선목적의 기증품,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에 의한 적하물, 가정용품 등)	

〈표 3-II-1〉의 계속

구분	정보 종류	비고
필수 정보	적하물 참조번호 (Shipment Reference Number)	신청자에 의해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신청자의 시스템에서 적하물의 확인을 가능하게 함
	라인번호 (Line Number)	적하물에서 특정한 물품라인의 물건을 확인하는 번호
	위험물 표시 (Hazardous Material Indicator)	적하물이 교통부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시
	담보번호(Inbond Code)	적하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지를 알려주는 번호
	허가번호/허가면제번호 (License Code / License Exemption Code)	연방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허가, 승인,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를 받은 물품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번호
	Routed Export Transaction Indicator	적하물이 Routed Export Transaction인지를 확인하는 표시
	Shipment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를 추가, 변경, 대체,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Line Item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 안에서 물품라인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조건부 정보	신고옵션 표시 (Filing Option Indicator)	신청자가 수출정보를 사전신고하는지 또는 사후신고하는지에 대한 표시
	대리인 및 대리인 확인 (Authorized Agent and Authorized Agent Identification)	대리인이 전자수출정보를 준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식별 번호, 대리인 이름, 대리인의 주소, 연락 정보를 제출해야 함
	중간양수인 (Intermediate Consignee)	중간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 - 중간양수인은 수출화물을 최종양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주로 판매자나 구입자) 또는 최종양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임
	FTZ Identifier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품이 반출되고 소비용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FTZ Identifier를 신고

〈표 3-II-1〉의 계속

구분	정보 종류	비고
조건부 정보	하역될 외국항 (Foreign Port of Unlading)	수출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이 제거되는 나라의 외국항으로서 목적지국에 소재할 필요는 없음
	수출허가번호, CFR Citation, KPC 번호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법무부 DEA, 핵규제위원회 등이 부여하는 허가번호, 승인번호, 주석
	수출규제분류번호 (ECCN)	상업규제리스트(CCL)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
	보조량 (Secondary Quantity)	측정보조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자동차확인번호/제품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Product ID)	신고된 중고차에서 발견되는 확인번호
	Vehicle ID Qualifier	신고된 중고차번호의 유형을 구분하는 Qualifier
	자동차 등록번호 (Vehicle Title Number)	자동차등록청이 발급한 번호
	자동차등록증 주정부 코드 (Vehicle Title State Code)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는 주 정부나 지역의 2-Character 우편번호
	수입번호 (Entry Number)	
	운송참조번호 (Transportation Reference Number)	해상운송을 위한 예약번호, 항공운송장 번호, 철도운송에 대한 BL 번호, 트럭운송을 위한 Freight or Pro Bill Number 를 신고
	국무부 요건 (Department of State Requirements)	DDTC 등록번호, DDTC 중요군수설비 표시, DDTC 적격당사자 증명 표시, DDTC USML 유형코드, DDTC 측정단위, DDTC did, DDTC 면제번호, DDTC 수출허가라인번호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번호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KPC)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KPC 협회에서 발행한 고유의 KPC 번호	
선택적 정보	봉인번호 (Seal Number)	설비나 컨테이너에 표시된 보안봉인번호
	설비번호 (Equipment Number)	컨테이너 또는 이글루 번호와 같이 운송설비별 확인번호를 신고

자료: 15 CFR 30.6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Data Elements,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5/30.6> (검색일자: 2017. 10. 13.)

참고문헌

- 강민지,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8.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관세청, 『미국관세법_The Tariff Act of 1930』, 2010. 1.
- _____, 『FTA 교역비중 70%에 대비한 원산지제도 발전방안』, 2016.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성문, 『미국의 통관절차 및 관세형벌』,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2011.
- 김수진,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우리금융연구소, 2017. 8.
- 김영조·이재교·김재광,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2005. 7.
- 박광서, 『원산지제도 관세법 일원화 및 합리적인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박상태, 「관세측면의 한-미 FTA 성과와 전망」, 법무법인 율촌, 2017. 3.
- 박영기, 『관세제재법-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 세창출판사, 2009. 2.
- 박홍규·박상태, 「한-미 FTA 재협상시의 대응방안 고찰」,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7. 2.
- 산업연구원,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17. 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5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6. 4.
- 성한경·이민선·김수영, 『주요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 송선옥, 「미국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0. 8.
- 오원석,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원산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원종현,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7. 8.
- 이전오, 「미국의 조세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변호사』, 제3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장근호, 「미국 특혜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호 제1권, 한국관세학회, 2016. 2.
-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 정재호·정경화·마정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10.
-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 조만희, 『원산지 규정과 자유무역 협정』, 삼일인포마인, 2014.
- 채형복, 『원산지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4.
- 최남석,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6. 12.
- 최영훈, 「한-미 FTA 원산지검증; 미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와 원산지판정사례」, 『관세 무역정보해설』, 제1543호, 관세무역개발원, 2013. 3.
- 최재선, 『미국의 항만보안법 제정 의미와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 최형권, 「한-미국 AEO MRA 혜택과 사례」, 『주간관세무역정보』, 통권 1747호, 관세무역개발원, 2017. 5.
- 코트라, 『해외인증제도와 시사점: 북미편』, 2006.
- _____, 『2016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2017. 2.
-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계 선진화방안』, 2013. 12.
- 한국무역협회,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17. 2.
- _____,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7. 3.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2017. 2.
- 한국은행(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17. 8.
- _____, 「미국 경기확장의 지속가능성 평가」, 2017. 11. 27.
-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12.
- 한상현·최준호, 「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AES)에 관한

-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2010. 6
- 현대경제연구원, 「미중의 대한민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714호, 2016. 10.
- APEC 규제조화센터, 『미국 의약품허가제도』, 2016. 6.
-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dustry Economic Accounts,” 2017.
- _____,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2017. 6.
- _____, “U.S. Direct Investment Abroad – All Countries Total,” 2017.
- _____,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nual Revision for 2016,” 2017. 6.
- _____, “U.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y Selected Countries and Areas, 1999–present,” 2017. 12. 5.
- CBP, “A summary of CBP facts and figures,” 2017. 6.
- _____, “Buying and Selling Commissions,” 2006.
- _____, “Customs Value,” 2006.
- _____, “Drawback,” 2004.
- _____, “Entry,” 2004.
- _____, “Merchandise Processing Fee Analysis,” 2016.
- _____, “MPF and Preferential Trade Programs,” 2015.
- _____,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_Fiscal Year 2016*, 2017. 3.
-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CUSTOMS BOND,” 2006.
- _____, “Reasonable Care(A Checklist for Compliance),” 2004.
- _____, “Tariff Classification,” 2004.
- _____, *Valuation Encyclopedia(1980~2015)*, 2016.
- _____, “VISION AND STRATEGY 2020,” 2015.
- Domenick Gambardella, “US/KOREA FTA,” PWC, 2011.
- Harry G. Johnson, “The Possibility of Income Losses From Increased Efficiency or Factor Accumulation in the Presence of Tariffs,” *The Economic Journal*, 제77권 305호, 1987.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2017. 7.
- Judith M. Czako, Johann Human and Jorge Miranda,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 2003.

- OECD, “Economic Forecast Summary,” 2017. 6.
_____, “Economic Forecast Summary,” 2017. 11.
_____, “Factor Accumulation in the Presence of Tariffs,” 2017.
_____, “Reform services trade policies to boost the global economy,” 2016.
_____,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2017.
ROPPA, “Rebuilding all agricultural policies on food sovereignty,” 2012.
Stiglitz, Joseph E. and Charlton Andrew,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Fair Trade For All)*, 2007.
UNCTA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procedures—use or abus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2009.
USITC, *Certai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and Mexico*, 2013.
USTR, *The Presi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 2017.
World Bank, “Gross External Debt,” 2017.
WTO, *Trade Policy Review Body UNITED STATES 2016*, 2017.
_____,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17*, 2017.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06*, 2007.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6*, 2016.
_____, *World Tariff Profiles 2017*, 2017.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List.do?layoutMenuNo=343>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세계법령정보센터, www.world.moleg.go.kr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www.ita.net

외교부, www.mofa.go.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해외인증정보시스템, www.certinfo.or.kr

미국 상무부, www.commerce.gov
미국 선급협회, www.eagle.org
미국 연방준비제도, www.federalreserve.gov
미국 통계청, www.census.gov
미국 표준협회, www.ansi.org
Bloomberg, www.bloomberg.com
BLS, www.bls.gov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ww.bea.gov
CBP, www.cbp.gov
CIT, www.cit.uscourts.gov
DHS, www.dhs.gov
e CFR, www.ecfr.gov
FCC, www.fcc.gov
FDA, www.fda.gov
GPO, www.gpo.gov
Inflation Calculator, www.usinflationcalculator.com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ww.law.connell.edu
OECD, www.oecd-library.org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United States Code, <https://uscode.house.gov>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usitc.gov>
UN Trade and Development, www.unctad.org
USTR, www.ustr.gov
World Bank, www.worldbank.org
WTO, www.wto.org

부록 I. 관세담보(Customs Bond) 양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50 Exp. 05/31/2017

CUSTOMS BOND

19 CFR Part 113

CBP USE ONLY	BOND NUMBER (Assigned by CBP)

Broker Filer Code: _____ Surety Reference Number: _____

In order to secure payment of any duty, tax or charge and compliance with law or regulation as a result of activity covered by any condition referenced below, we, the below name principal(s) and surety(ies), bind ourselve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amount or amounts, as set forth below.

SECTION I – Select Single Transaction OR Continuous Bond (not both) and fill in the applicable blank spaces.		
<input type="checkbox"/> SINGLE TRANSACTION BOND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 secured by this bond (e.g., entry number, seizure number, etc.)	Transaction Date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BOND	Effective Date	Port Code
This bond remains in force for one year beginning with the effective date and for each succeeding annual period, or until terminated. This bond constitutes a separate bond for each period in the amounts listed below for liabilities that accrue in each period.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is bond must be conveyed within the period and manner prescribed in the CBP Regulations.		

SECTION II – This bond includes the following agreements. Check one box only. (Except 3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3.)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input type="checkbox"/> 1	Importer or broker§113.62		<input type="checkbox"/> 8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 §113.70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a	Drawback Payments Refunds§113.65		<input type="checkbox"/> 9	Neutrality§113.71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2	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113.63 (Includes bonded carriers, freight forwarders, cartmen and lightmen, all classes of warehouse, container station operators)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0	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113.72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3	International Carrier.....§113.64		<input type="checkbox"/> 11	Airport Security Bond.....Part 113 App A	
<input type="checkbox"/> 3a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113.66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2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Exclusion Bond.....Part 113 App B	
<input type="checkbox"/> 4	Foreign Trade Zone.....§113.73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4	In-Bond Export Consolidation Bond	
<input type="checkbox"/> 5	Public Gauger..... §113.67		<input type="checkbox"/>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put type="checkbox"/> 6	Wool & Fur Products..... §113.68 Labeling Acts Importation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6	Importer Security Filing (ISF)Part 113 App D	
<input type="checkbox"/> 7	Bill of Lading.....§113.69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7	Marine Terminal Operator -Continuous Bond Only-	

PRINCIPAL	By checking the box you agree that you have a seal in accordance with 19 CFR 113.25	AFFIX SEAL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CBP Identific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Signature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any charge against the bond under any of the listed names is as though it was made by the principal(s).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they are bound to the same extent as if they executed a separate bond covering each set of conditions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the CBP regulations into this bond. If the surety fails to appoint an agent under Title 31, United States Code, Section 9306, surety consents to service on the Clerk of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r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here suit is brought on this bond. That clerk is to send notice of the service to the surety at:

SURETY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Surety Number	Agent ID Number
	Signature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Broker Filer Code: _____ Surety Reference Number: _____

Principal Name: _____ CBP Identification Number: _____

**AFFIX SEAL
or
Check Box**
By checking the box you agree
that you have a seal in
accordance with 19 CFR 113.25

CO-PRINCIPAL

<i>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i> 	CBP Identification Number: _____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Signature 	

SECTION III – List below the complete name of all trade names or unincorporated divisions that will be permitted to obligate this bond in the principal's name including their CBP Identification Number(s).

CBP Identification Number	Name	CBP Identification Number	Name
Total Number of Importer Names listed in Section III:			

CO-SURETY

<i>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i> 	Surety Number _____	Agent ID Number _____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Signature 		

부 록 Ⅱ. 수입 통관서류

1 CBP Form 3347-A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93
Exp. 12-31-2019

DECLARATION OF CONSIGNEE WHEN ENTRY IS MADE BY AN AGENT

19 CFR 141.19(B)(2)

If this declaration is made by an agent who does not present with the entry the declaration of the consignee, or who does not have proper authority to execute such declaration for this principal, bond must be given to produce such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485(c), Tariff Act of 1930.						
THIS DECLARATION MUST BE PRESENTED TO THE PORT DIRECTOR OF CBP AT THE PORT OF ENTRY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BOND GIVEN THEREFORE, UNLESS AN EXTENSION OF TIME IS GRANTED BY THE PORT DIRECTOR.						
1. NAME OF CONSIGNEE				2.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CODE)		
3. VESSEL/CARRIER ARRIVED FROM		4. NAME OF VESSEL/CARRIER		5. ENTRY NUMBER	6. DATE	
7. NUMBER OF PACKAGES	8. SELLER OR SHIPPER	9. PLACE AND DATE OF INVOICE	10. AMOUNT PAID OR TO BE PAID IN FOREIGN CURRENCY	11. RATE OF EXCHANGE	12. ENTERED VALUE (FOREIGN CURRENCY)	13. ENTERED VALUE (U.S. DOLLARS)
COMPLETE SECTION I, OR SECTION II, OR SECTION III (CHECK ONE) AND SECTION IV.						
<input type="checkbox"/> SECTION I DECLARATION OF NOMINAL CONSIGNEE						
14. NAME OF OWNER				15.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CODE)		
I, the undersigned, herewith declare that the consignee in whose name the entry covering the merchandise described herein was made, is not the actual owner of the said merchandise, but that such entry exhibits a full and complete account of all the merchandise imported in the vessel indicated therein by the above name person who is the actual owner for CBP purposes of the said merchandise except as listed below.						
<input type="checkbox"/> SECTION II DECLARATION OF CONSIGNEE FOR MERCHANDISE OBTAINED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I, the undersigned, representing the above name consignee, herewith declare that they are the consignees for CBP purposes of the merchandise described herein, that the entry covering the said merchandise exhibits a full and complete account of all the merchandise imported by them in the vessel indicated in the said entry and that the said merchandise was obtained by them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n agreement to purchase, except as listed below.						
<input type="checkbox"/> SECTION III DECLARATION OF CONSIGNEE FOR MERCHANDISE OBTAINED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I, the undersigned, representing the above name consignee, herewith declare that they are the consignees for CBP purposes of the merchandise described herein, that the entry covering the said merchandise exhibits a full and complete account of all the merchandise imported by them in the vessel indicated in the said entry and that the said merchandise was obtained by them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n agreement to purchase, except as listed below.						
16. EXCEPTIONS (IF ANY)						
<input type="checkbox"/> SECTION IV GENERAL DECLARATION						
I also decla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all statements appearing in the entry and in the invoice or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presented herewith and in accordance with which the entry is made, are true and correct in every respect; that the entry and invoices set forth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and all information as required by the law and the regulations made in pursuance thereof, that the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are in the same state as when received; that I have not received and do not know of any other invoices, paper, letter, document, or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currency, price, value, quantity, or description of the said merchandise, and that if at any time hereafter I discov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 of facts, I will immediately make the same known to the port director of CBP at the port of entry.						
17. SIGNATURE			18. ADDRESS		19. DATE	
20. TITLE (CHECK ONE)						
<input type="checkbox"/> PRINCIPAL <input type="checkbox"/> MEMBER OF THE FIRM <input type="checkbox"/> PRINCIPAL OFFICER OF THE CORPORATION: TITLE						
<input type="checkbox"/> AUTHORIZED AGENT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9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6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2 CBP Form 3347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93
Exp. 12-31-2019

**DECLARATION OF OWNER
FOR MERCHANDISE OBTAINED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19 CFR 24.11(a)(1), 141.20

This declaration must be presented at the port of entry within 90 days after the date of entry in order to comply with Section 485(d), of the Tariff Act of 1930. **LINE OUT EACH PHRASE SHOWN IN ITALICS NOT APPLICABLE TO THIS DECLARATION.**

1. NAME OF OWNER		2. ADDRESS OF OWNER (STREET, CITY, STATE, ZIP CODE)		3. SUPERSEDING BOND SURETY CODE	
4. PORT OF ENTRY		5. PORT CODE		6. IMPORTER NUMBER OF AUTHORIZED AGENT (SHOW HYPHENS)	
8. IMPORTER NUMBER OF OWNER (SHOW HYPHENS)		9. ENTRY NUMBER		10. DATE OF ENTRY	
				11. DATE OF ARRIVAL	

I, the undersigned, representing the above named owner in the capacity indicated herein, declare that they are the actual owners for CBP purposes of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entry identified in Blocks 9 and 10 above, and that they will pay all additional and increased duties thereon pursuant to Section 485(d), of the Tariff Act of 1930, and that such entry exhibits a full and complete account of all the merchandise imported by them in the vessel identified in the entry and obtained by them (otherwise than) in pursuance of a purchase, or an agreement to purchase, except as listed in columns 20-26 below.

I also declar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all statements appearing in the entry and in the invoice or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presented therewith and in accordance with which the entry was made, are true and correct in every respect; that the entry and invoices set forth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and all information as required by the law and the regulations made in pursuance thereof; that the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are in the same state as when received; that I have not received and do not know of any other invoice, paper, letter, document, or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currency, price, value, quantity, or description of the said merchandise; and that if any time hereafter I discov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 of facts, I will immediately make the same known to the Port Director of CBP at the port of entry.

I further declare, if the merchandise was entered by means of a seller's or shipper's invoice, that no CBP invoice for any of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said seller's or shipper's invoice can be produced due to causes beyond my control, and that if entered by means of a statement of the value or the price paid in the form of an invoice it is because neither seller's, shipper's, nor CBP invoice can be produced at this time.

12. EXCEPTIONS (IF ANY)		13. NOMINAL CONSIGNEE OR AUTHORIZED AGENT FILED BY:	
14. I REQUEST THAT:			
<input type="checkbox"/> BILLS, REFUNDS, AND NOTICES OF LIQUIDATION		<input type="checkbox"/> BILLS ONLY	
<input type="checkbox"/> CHECKS FOR REFUNDS ONLY		<input type="checkbox"/> NOTICES OF LIQUIDATION ONLY	
BE ADDRESSED TO ME IN CARE OF THE AUTHORIZED AGENT WHOSE IMPORTER NUMBER IS SHOWN ABOVE.			
15. SIGNATURE OF PRINCIPAL MEMBER OF FIRM		16. DATE	
18. TITLE		17. ADDRESS OF PRINCIPAL MEMBER OF FIRM (STREET, CITY, STATE, ZIP CODE)	

19. EXECUTE THIS PORTION **ONLY IF OWNER DOES NOT HAVE AN IMPORT NUMBER** (I.E., HAS NOT FILED CBP FORM 5106)

IRS EMPLOYER NUMBER OF FIRM OWNER		SUFFIX		NAME	
OR IF NO EMPLOYER NUMBER: SSN OF INDIVIDUAL OWNER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CODE)	
OR IF NEITHER OF THE ABOVE NUMBERS: CUSTOMS SERIAL NUMBER				NOTE: IF OWNER HAS NO IRS OR SOCIAL SECURITY NUMBER OR A CBP SERIAL NUMBER HAS NOT BEEN PREVIOUSLY ASSIGNED, FILE AN ADDITIONAL COPY OF THIS FORM. THE COPY WILL BE RETURNED TO OWNER WITH A CBP SERIAL NUMBER ASSIGNED. SUCH NUMBER SHALL BE USED BY OWNER IN ALL FUTURE CBP TRANSACTIONS REQUIRING THE IMPORTER NUMBER.	

20. NUMBER OF PACKAGES	21. SELLER OR SHIPPER	22. PLACE AND DATE OF INVOICE	23. AMOUNT PAID OR TO BE PAID IN FOREIGN CURRENCY	24. RATE OF EXCHANGE	25. ENTERED VALUE (FOREIGN CURRENCY)	26. ENTERED VALUE (U.S. DOLLARS)

3 CBP Form 346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8-31-2018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49.3

HEADER INFORMATION			
1. PORT OF ENTRY:	2. BOND TYPE: <input type="checkbox"/> Single Transaction Bond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Bond <input type="checkbox"/> No Bond Required	3. IMPORTER NUMBER: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4. IMPORTER NAME AND ADDRESS:
5. ENTRY NUMBER:	6. BOND VALUE:	7. ENTRY VALUE:	8. CES:
9. ENTRY TYPE:	10. ORIGINATING WHSE ENTRY NUMBER (For Entry Type 22 Only):		11. SURETY CODE:
12. PORT OF UNLADING:	13. MODE OF TRANSPORTATION: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type="checkbox"/> Ocean <input type="checkbox"/> Rail <input type="checkbox"/> Truck <input type="checkbox"/> Hand Carry <input type="checkbox"/> Pipeline <input type="checkbox"/> Other	14. LOCATION OF GOODS (FIRMS):	
15. G.O. NUMBER:	16. CONVEYANCE NAME/FTZ ZONE ID:		
HEADER REFERENCE INFORMATION			
17. REFERENCE ID CODE:		18. REFERENCE ID NUMBER (UP TO 50 CHARACTERS):	
HEADER PARTIES (MUST APPLY TO ENTIRE ENTRY; IF NOT, SKIP TO LINE INFORMATION)			
19. HEADER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20. HEADER PARTY TYPE NAME/ADDRESS	
21. HEADER ID #,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22. CERTIFICATION		23. CBP USE ONLY	
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		<input type="checkbox"/>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	
SIGNATURE OF APPLICANT:			
PHONE NUMBER:	DATE:	<input type="checkbox"/> CBP EXAMINATION REQUIRED.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		<input type="checkbox"/> ENTRY REJECTED, BECAUSE:	
DELIVERY AUTHORIZED:		SIGNATURE:	
		DATE:	
<p>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90 K Street, NE, Washington DC 20229.</p>			

24. LINE INFORMATION			
LINE 1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2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3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4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BILL OF LADING INFORMATION (Use additional block below for a second Bill of Lading)			
25. <input type="checkbox"/> Non-AMS	26. <input type="checkbox"/> Split Bill	27. BOL TYPE: <input type="checkbox"/> In-Bond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House <input type="checkbox"/> Regular/Simple	
29. IN-BOND NUMBER: _____		30. BOL NUMBER: _____	28. SCAC/CARRIER ID: _____
		31. QUANTITY: _____	32. UNIT OF MEASURE: _____
SECOND BILL OF LADING BOL TYPE: <input type="checkbox"/> In-Bond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House <input type="checkbox"/> Regular/Simple			SCAC/CARRIER ID: _____
IN-BOND NUMBER: _____		BOL NUMBER: _____	UNIT OF MEASURE: _____
		QUANTITY: _____	
33. VOYAGE/FLT/TRIP: _____		34. CONVEYANCE: _____	35. ARRIVAL DATE: _____

4 CBP Form 7501

Form Approved OMB No. 1651-0022
EXP. 10-31-2017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27. Line No.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A. Entered Value	
29. A. HTSUS No.		30. A. Grossweight		33. A. HTSUS Rate	
B. ADA/CVD No.		B. Manifest Qty.		B. ADA/CVD Rate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_____ Cents _____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CBP USE ONLY	
\$ _____		Total Other Fees		A. LIQ CODE	
\$ _____				B. Ascertained Duty	
				37. Duty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38. Tax	
				D. Ascertained Other	
				39. Other	
				E. Ascertained Total	
				40. Total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input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41. DECLARANT NAME		TITLE		SIGNATURE	
DAT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06/0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CONTINUATION SHEET

OMB No. 1651-0022
EXP. 08-31-2014

1. Filer Code/Entry No.

27. Line No.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Dollars	Cents

5 CBP Form 331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CLARATION FOR FREE ENTRY
OF RETURNED AMERICAN PRODUCTS**

Form Approved
OMB No. 1651-0011
Exp. 03-31-2018

19 CFR 7.8, 10.1, 10.5, 10.66, 10.67, 12.41, 123.4, 143.23, 145.35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1. PORT [Redacted]		2. DATE [Redacted]		3. ENTRY NO. & DATE [Redacted]	
4. NAME OF MANUFACTURER [Redacted]				5. CITY AND STATE OF MANUFACTURE [Redacted]	
6. REASON FOR RETURN [Redacted]				7. U.S. DRAWBACK PREVIOUSLY <input type="checkbox"/> CLAIMED <input type="checkbox"/> UNCLAIMED	
				8. PREVIOUSLY IMPORTED UNDER HTSUS 9813.00.05?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9. MARKS, NUMBERS, AND DESCRIPTION OF ARTICLES RETURNED				10. VALUE*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If the value of the article is \$10,000 or more and the articles are not clearly marked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U.S. manufacturer, please attach copies of any documentation or other evidence that you have that will support or substantiate your claim for duty free status as American Goods Returned.

11.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above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the articles described above are the growth, production, and manufac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returned without having been advanced in value or improved in condition by any process of manufacture or other means; that no drawback bounty, or allowance have been paid or admitted thereon, or on any part thereof; and that if any notice(s) of exportation of articles with benefit of drawback was were filed upon exportation of the merchandise from the United States, such notice(s) has have been abandoned.

12. NAME OF DECLARANT [Redacted]		13. TITLE OF DECLARANT [Redacted]	
14. NAM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if any) [Redacted]		15. SIGNATURE (See note) [Redacted]	
16. SIGNATURE OF AUTHORIZING CBP OFFICER [Redacted]			

NOTE: If the owner or ultimate consignee is a corporation, this form must be signed by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secretary, or treasurer of the corporation, or by any employee or agent of the corporation who holds a power of attorney and a certificate by the corporation that such employee or agent has or will have knowledge of the pertinent fact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11.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6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6 CBP Form 329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CLARATION FOR FREE ENTRY OF UNACCOMPANIED ARTICLES

19 CFR 148.6, 148.52, 148.53, 148.77

FORM APPROVED OMB NO. 1651-0014 Exp. 09-30-2019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1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45 minutes. The obligation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mandatory to obtain benefit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CBP PRA Officer,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10th floor, 90K Street NE., Washington DC 20229-1177.

PART I -- TO BE COMPLETED BY ALL PERSONS SEEKING FREE ENTRY OF ARTICLES (Please consult with the CBP official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assistance. REMEMBER--All of your statements are subject to verification. False declarations or failure to declare articles could result in penalties.)

1. IMPORTER'S NAME (Last, first and middle)		2. IMPORTER'S DATE OF BIRTH	3. IMPORTER'S DATE OF ARRIVAL
4. IMPORTER'S U.S. ADDRESS		5. IMPORTER'S PORT OF ARRIVAL	
6. NAME OF ARRIVING VESSEL CARRIER AND FLIGHT/TRAIN			
7. NAME(S) OF ACCOMPANYING HOUSEHOLD MEMBERS (wife, husband, minor children, etc.)			
8. THE ARTICLES FOR WHICH FREE ENTRY IS CLAIMED BELONG TO ME AND/OR MY FAMILY AND WERE IMPORTED	A. DATE	B. NAME OF VESSEL/CARRIER	C. FROM (Country)
			D. B/L OR AWB OR I.T. NO.
E. NUMBER AND KINDS OF CONTAINERS		F. MARKS AND NUMBERS	

PART II -- TO BE COMPLETED BY ALL PERSONS EXCEPT U.S. PERSONNEL AND EVACUEES

9. RESIDENCY ("X" appropriate box)
I declare that my place of residence abroad is was

A. NAME OF COUNTRY B. LENGTH OF TIME
Yr. Mo.

C. RESIDENCY STATUS UPON MY/OUR ARRIVAL ("X" One)
 (1) Returning resident of the U.S. (2) Nonresident a. Emigrating to the U.S. b. Visiting the U.S.

10. STATEMENT(S) OF ELIGIBILITY FOR FREE ENTRY OF ARTICLES
I the undersigned further declare that ("X" all applicable items and submit packing list):

A. Applicable to RESIDENT and NONRESIDENT
 (1) All household effects acquired abroad for which free entry is sought were used abroad for at least one year by me or my family in a household of which I or my family was a resident member during such period of use, and are not intended for any other person or for sale. (9804.00.05, HTSUSA)
 (2) All instruments, implements, or tools of trade, occupation or employment, and all professional books for which free entry is sought were taken abroad by me or for my account or I am an emigrant who owned and used them abroad. (9804.00.10, 9804.00.15, HTSUSA)

B. Applicable to RESIDENT ONLY
 All personal effects for which free entry is sought were taken abroad by me or for my account. (9804.00.45, HTSUSA)

C. Applicable to NONRESIDENT ONLY
 (1) All household effects acquired abroad for which free entry is sought were used abroad for at least one year by me or my family in a household of which I or my family was a resident member during such period of use, and are not intended for any other person or for sale. (9804.00.05, HTSUSA)
 (2) Any vehicles, trailers, bicycles or other means of conveyance being imported are for the transport of me and my family and such incidental carriage of articles as are appropriate to my personal use of the conveyance. (9804.00.35, HTSUSA)

PART III -- TO BE COMPLETED BY U.S. PERSONNEL AND EVACUEES ONLY

I, the undersigned, the owner, importer, or agent of the importer of the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for which free entry is claimed, hereby certify that they were in direct personal possession of the importer, or of a member of the importer's family residing with the importer, while abroad, and that they wer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termination of assignment to extended duty (as defined in section 148.74(d) of the Customs Regulations) at a post or st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he CBP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r because of Government orders or instructions evacuating the importer 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are not imported for sale or for the account of any other person and that they do not include any alcoholic beverages or cigars. Free entry for these effects is claimed under Subheading No. 9805.00.5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1. DATE OF IMPORTER'S LAST DEPARTURE FROM THE U.S.	2. A COPY OF THE IMPORTER'S TRAVEL ORDERS IS ATTACHED AND THE ORDERS WERE ISSUED ON:
--	--

PART IV -- TO BE COMPLETED BY ALL PERSONS SEEKING FREE ENTRY OF ARTICLES (Certain articles may be subject to duty and/or other requirements and must be specifically declared herein. Please check all applicable items and list them separately in item D on the reverse.)

A. For U.S. Personnel, Evacuees, Residents and Non-Residents <input type="checkbox"/> (1) Articles for the account of other person. <input type="checkbox"/> (3) Firearms and/or ammunition. <input type="checkbox"/> (5) Fruits, plants, seeds, meats, or birds.	<input type="checkbox"/> (2) Articles for sale or commercial use. <input type="checkbox"/> (4) Alcoholic articles of all types or tobacco products. <input type="checkbox"/> (6) Fish, wildlife, animal products thereof.	B. For Residents and Non-Residents ONLY <input type="checkbox"/> (7) Foreign household effects acquired abroad and used less than one year. <input type="checkbox"/> (8) Foreign household effects acquired abroad and used more than one year.	C. For Resident ONLY <input type="checkbox"/> (9) Personal effects acquired abroad. <input type="checkbox"/> (10) Foreign made articles acqui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aken abroad on this trip or acquired abroad on another trip that was previously declared to CBP. <input type="checkbox"/> (11) Articles taken abroad for which alterations or repairs were performed abroad.
---	---	--	---

CBP Form 3299 (07/16)

D. LIST OF ARTICLES			
(1) ITEM NUMBER CHECKED IN PART IV, A., B., C.	(2) DESCRIPTION OF MERCHANDISE	(3) VALUE OF COST OF REPAIRS	(4) FOREIGN MERCHANDISE TAKEN ABROAD THIS TRIP - State where in the U.S. the foreign merchandise was acquired or when and where it was previously declared to CBP.

PART V -- CARRIER'S CERTIFICATE AND RELEASE ORDER
 The undersigned carrier, to whom or upon whose order the articles described in PART I, 8., must be released, hereby certifies that the person named in Part I, 1., is the owner or consignee of such articles within the purview of section 484(h), Tariff Act of 1930.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section 484(h), Tariff Act of 1930, authority is hereby given to release the articles to such consignee.

1. NAME OF CARRIER 	2. SIGNATURE OF AGENT (Print and sign) Date
------------------------	--

PART VI -- CERTIFICATION TO BE COMPLETED BY ALL PERSONS SEEKING FREE ENTRY
 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is declaration is correct and complete.

1. "X" One <input type="checkbox"/> A. Authorized Agent* (From facts obtained from the importer) <input type="checkbox"/> B. Importer	2. SIGNATURE 	3. DATE
--	------------------	-------------

*An Authorized Agent i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actual knowledge of the facts and who is specifically empowered under a power of attorney to execute this declaration (see 19 CFR 141.19, 141.32, 141.33).

PART VII -- CBP USE ONLY (Inspected and Released)	1. SIGNATURE OF CBP OFFICIAL 	2. DATE
---	----------------------------------	-------------

7 CBP Form 752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13
Exp. 07/31/2017

**ENTRY AND MANIFEST OF MERCHANDISE FREE OF DUTY,
CARRIER'S CERTIFICATE AND RELEASE**

19 U.S.C. 1433, 1484, 1498; 19 CFR 123.4, 143.23

1. NO.

The undersigned, as the importer of merchandise described below, which arrived at the port or station identified, hereby claims free entry therefor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law indicated.

2. PORT CODE		3. DATE	
4. VESSEL OR OTHER CONVEYANCE		5. ARRIVAL DATE	6. COUNTRY OF EXPORTATION

7. MARKS AND NUMBERS	8. DESCRIPTION AND QUANTITY OF MERCHANDISE	9. VALUE	10. HTSUS HEADING NO. OR P.L. NO.

11.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12. AGENT'S SIGNATURE	
13. INSPECTED AND PASSED FREE OF DUTY BY:		14.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If different from Importer of Record)	
15. SIGNATURE (Inspector)		16. DATE	

CARRIER'S CERTIFICATE AND RELEASE ORDER

The undersigned carrier, to whom or upon whose order the articles described above must be released, hereby certifies that the person or firm named above as the importer is the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of such articles within the purview of section 484(h), Tariff Act of 1930.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484(j), Tariff Act of 1930, authority is hereby given to release the articles to such consignee.

17. CARRIER	18. AGENT'S SIGNATURE
-------------	-----------------------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1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8 CBP Form 4457

OMB Control Number: 1651-0010
Expiration Date: 08/31/201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PERSONAL EFFECTS TAKEN ABROAD 19 CFR 148.1		Number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Name of Owner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Address of Owner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Description of Article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40px;" type="text"/>		
<i>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shown here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i>		Signature of Owner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Port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Date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Signature of CBP Official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 Certifying officer shall draw lines through all unused spaces with ink. ◀		

CBP Form 4457 (08/16)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The Paperwork Reduction Act requires that we advise you of the purpose of this form and how the information will be used. The form is provided for your use, strictly at your option, in lieu of or in addition to bills of sale, appraisals, and/or repair receipts to show the CBP officer proof of prior possession of the article(s) in the U.S. The completion of this form by you is strictly voluntar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oes not maintain copies of the completed forms.

Statement Required by 5 CFR 1320.21: The estimated averag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3 minutes per respondent or record keeper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Comments concerning the accuracy of this burden estimate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should be directed to 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formation Services Branch, Washington, DC 20229, an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aperwork Reduction Project (1651-0010), Washington, DC 20503.

INSTRUCTIONS

1. Complete the **Original** only.
2. **Prior to Departure**, present the described articles and the completed form to a CBP Officer for comparison and signing of the form.
3. The signed form is to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and must be shown to CBP each time the registered article(s) are returned.
4.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5. **Note:** Foreign repairs or alterations to articles (whether or not the articles are registered with CBP) are dutiable. Such repairs or alterations must be declared to Customs when the articles reenter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they were done free of charge.

CBP Form 4457 (08/16)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

- 미국 편 -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주)정인애드
인 쇄
I S B N 978-89-8191-913-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